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0073-13

# 어촌 · 어항발전 기본계획 최종보고서

(부록Ⅱ 선진어촌 어항조사편)



#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최종보고서

[ 부록Ⅱ 선진어촌·어항조사편 ]

2008



# § 목            자 §

<b>제 1 편 어항·어장·어촌·해안에 관하여</b> .....	1
<b>제 1 장 어항 · 어장 · 어촌의 개요</b> .....	3
<b>제1부 어항 · 어장 · 어촌의 개요</b> .....	3
1. 오늘날의 어항 · 어장 · 어촌 .....	3
2. 어항 · 어장 · 어촌의 역할 .....	5
3. 어항어장정비법 제도(어항어장정비법) .....	6
4. 어항의 종류와 수 .....	14
5. 어항시설 분류 .....	18
6. 어장 분류 .....	19
<b>제2부 어항어장정비 장기계획</b> .....	20
1. 어항어장정비 장기계획(2002년 3월 26일 각의결정) 개요 .....	20
2. 지금까지의 장기계획 .....	21
3. 어항어장정비 장기계획 이외의 공공사업관련 장기계획 일람 .....	26
<b>제3부 수산관계사업예산</b> .....	28
1. 예산의 추이 .....	28
2. 수산관계사업예산 .....	34
<b>제4부 사업제도</b> .....	37
1. 수산기반정비사업 .....	37
2. 공공사업 .....	41
3. 수산기반정비사업보조율일람 .....	65
4. 수산기반정비사업 등을 위한 지방재정조치 .....	69
5. 비공공사업 .....	73
6. 조사사업 .....	93
7. 기타 사업 · 대처 .....	95
8. 수산기반정비관계의 세제 .....	117
9. 수산기반정비관계사업 사무절차 .....	118
10. 수산관계사업 실시 수 .....	119

<b>제 2 장 해안정비</b> .....	126
1. 해안법의 개요 .....	126
2. 해안보전기본방침의 개요 .....	131
3. 해안의 종류 .....	137
4. 해안연장 .....	138
5. 해안사업과 관련된 장기계획 .....	140
6. 해안사업 .....	147
7. 해안사업실시개소 경과표 .....	165
<b>제 3 장 어항·해안의 재해복구</b> .....	166
1. 재해복구의 법제도 .....	166
2. 재해 발생상황 .....	171
3. 재해복구관계데이터 .....	172
<b>제 2 편 항세·현황 데이터</b> .....	173
<b>제 1 장 어항·어촌의 현황</b> .....	175
1. 어항항세의 추이 .....	175
2. 어항항세(2004년) .....	190
3. 낙도 어항 .....	209
4. 어촌의 현황 .....	211
<b>제 3 편 관련자료</b> .....	217
<b>제 1 장 관련 시책·데이터</b> .....	219
1. 관련시책 .....	219
2. 관계법령 .....	236
3. 수산관계 데이터 .....	242
4. 사업실시관계데이터 .....	256
5. 어항관계 디플레이터(deflator) .....	261
6. 어항·어장·어촌정비의 효과사례 .....	262

<b>제 2 장 참고자료</b> .....	282
1. 수산기본법과 수산기본계획 .....	282
2. 수산업·어촌을 둘러싼 정세의 변화 .....	284
3. 정책시책의 방향성 .....	303
<b>제 3 장 일본의 어항역사</b> .....	319
1. 메이지 중기까지의 어항 .....	319
2. 근대적 어항건설의 개막 .....	320
3. 어항수축 보조제도의 확립 .....	321
4. 어항수축의 발전과 좌절 .....	322
5. 전후의 부흥(공공사업으로 지정) .....	323
6. 어항법의 제정과 이후의 어항 .....	324
<b>제 4 장 일본 어항어장정비법</b> .....	326
1. 총칙 .....	326
2. 어항의 지정 .....	328
3. 수산정책심의회 .....	331
4.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 .....	332
5. 어항의 유지관리 .....	341
6. 잡칙 .....	348
7. 벌칙 .....	350



# 제 1 편 어항·어장·어촌·해안에 관하여

제1장 어항·어장·어촌의 정비

제2장 해안의 정비

제3장 어항·해안의 재해복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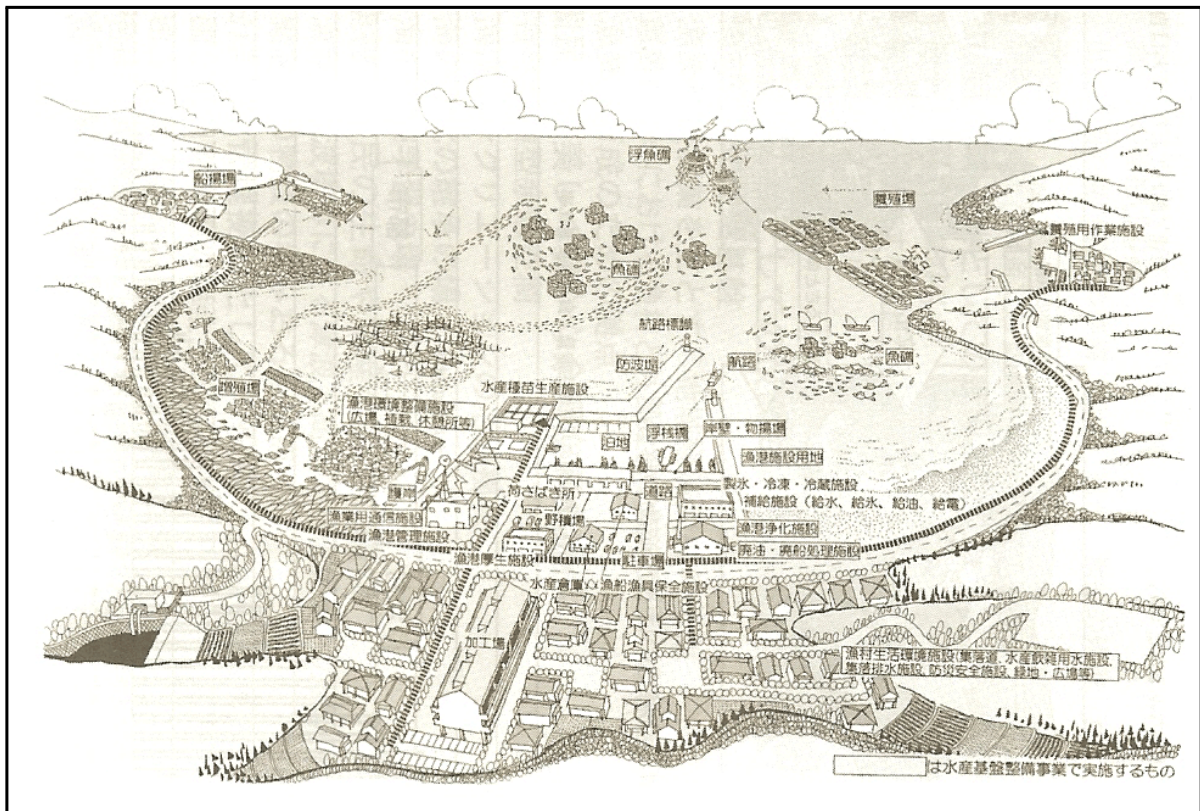


# 제 1 장 어항 · 어장 · 어촌의 정비

## 제1부 어항 · 어장 · 어촌의 개요

### 1. 오늘날의 어항 · 어장 · 어촌

#### (1) 어항 · 어장 · 어촌의 개념도



#### (2) 도시와 어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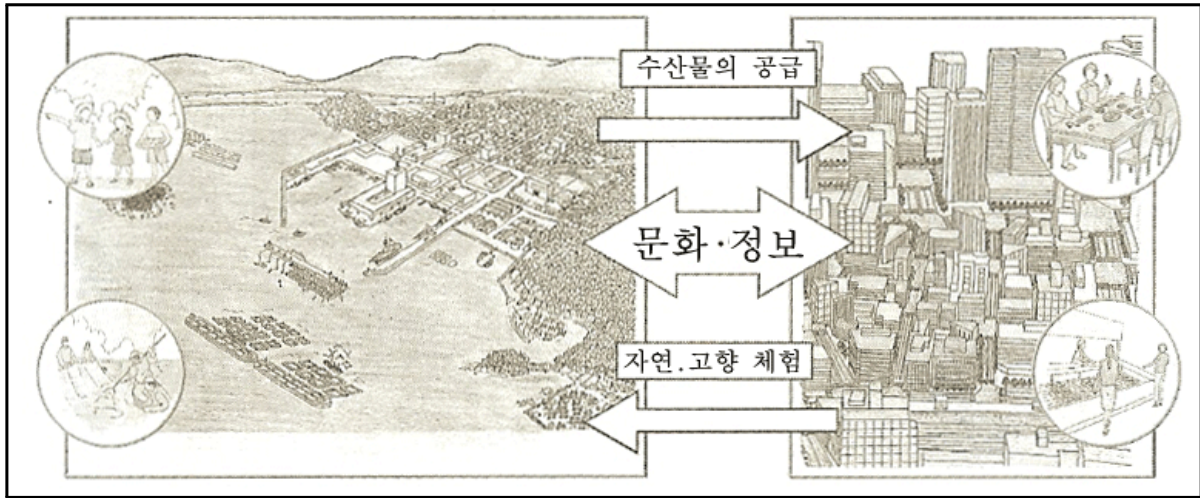
##### ○ 어항 어장 어촌

- 일본 해안부에는 약 6,200개의 어촌이 있으며, 매일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전국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해풍이나 파도 소리에 둘러싸인 공간은 바다가 사면인 일본의 소중한 고향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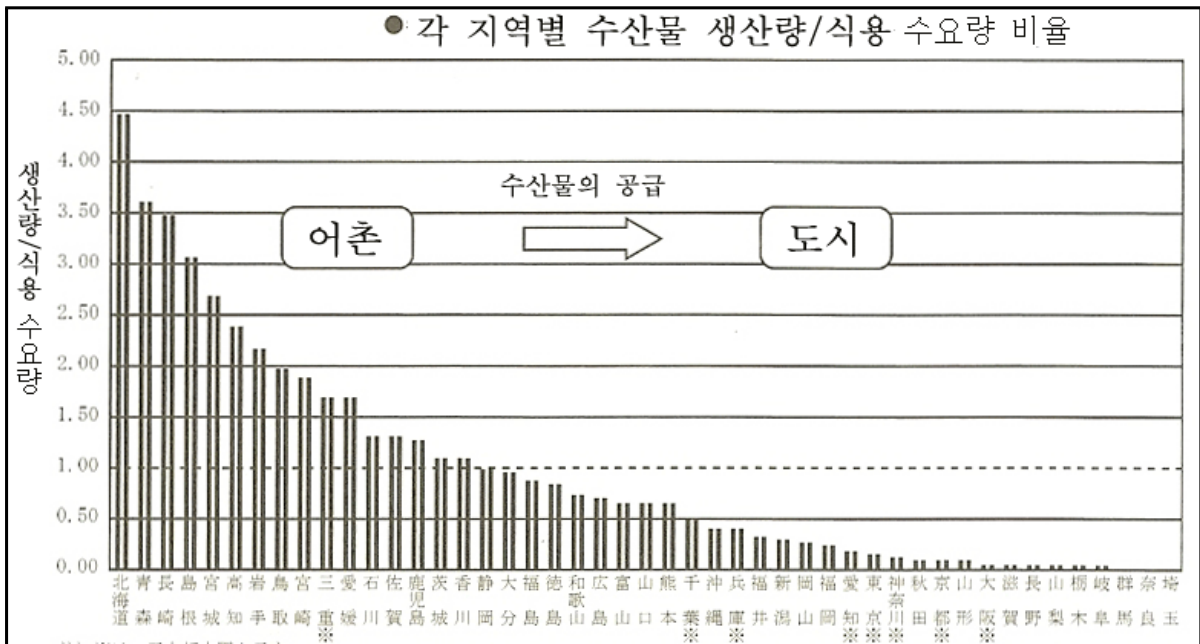
##### ○ 도시

- 산업과 정보가 집약되어 많은 사람들이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 생활공간은 기능적이지만 자연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식량을 자급할 수 없습니다.



- 도시와 어촌에서의 수산물 이동
  - 도도부현(都道府縣)별 수산물 생산량 / 식용 수요량 비교



주) ※ 는 3대 도시권을 나타냄  
 주)생산량은 「2000년 어업·양식업생산량(개략)」 (농림수산성 정보통계부)  
 주)식용 수요량은 「1999년도 식료수급표」(농림수산성 대신관방 조사표)의 어패류의 1인1년당  
 국내소비용량×2000년 국세조사 인구로 계산

## 2. 어항·어장·어촌의 역할

- (1)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 ① 해안생물자원을 육성하는 장
  - ② 자원관리형 어업·어장을 육성하는 어업기지로서의 역할
    - i. 치어생산과 중간육성 등, 치어육성의 장
    - ii. 단속선의 기지, 어장의 관리·감시 등 자원관리의 장
  - ③ 생산활동기지로서의 역할
    - i. 어획물의 양육 공간
    - ii. 출어준비의 장(어구준비, 급유, 급수, 어선수리, 어선원 휴식 등)
    - iii. 어업자의 주요재산인 어선의 안전한 정박의 장
  - ④ 유통가공기지로서의 역할
    - i. 화물처리 및 시장거래
    - ii. 소비지 등으로 출하하는 운송 터미널
    - iii. 활어유통 터미널
    - iv. 수산가공업의 기지
- (2) 지역사회 의 핵으로서의 역할
  - ① 어촌주민의 생활기반
  - ② 어업관련산업을 주로 하는 지역경제발전 기반
  - ③ 낙도나 주변지역 어촌과 외부사회를 연결하는 교통, 정보의 기지
  - ④ 어업자 육성을 위한 거점
- (3) 국민에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여가공간 제공
  - ① 자연체험형 여가 공간
  - ② 해양성 레크레이션 활동의 거점
  - ③ 바다문화계승의 장
  - ④ 바다체험학습의 장
- (4) 어촌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한 확보
  - ① 어항의 방파제 등으로 해일, 고조 배후에 있는 취락지로의 진입을 저지
  - ② 긴급 시 물자하역의 거점
- (5) 연안지역의 관리거점으로서의 역할
  - ① 국토, 자연환경 보전상의 공헌
  - ② 밀어, 밀입국 등의 조기발견, 정보전달

- ③ 태풍 등 이상기후시의 선박피난의 장
- ④ 재해대책상의 역할
- ⑤ 연안지역이 가지는 다면적인 기능 보전

### 3. 어항어장정비법 제도(어항어장정비법)

#### (1) 어항어장정비법의 개요

항목	조	개요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항법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식량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어업의 생산기반인 어항과 관련된 기본법으로 의원에 의해 제안되어 1950년 4월 8일 중의원 본회의 가결, 4월 19일 참의원 본회의 가결, 5월 2일 법률 제137호로 공포되어, 같은 해 7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 정세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개정을 이루어 왔으나 어항법 제정 약 50년이 지난 2001년 정기국회(제151회 국회)에서 수산업을 둘러싼 사회정세 변화에 비추어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어항 및 어장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개정을 시행하여 어항어장 정비법으로 개정되었다.</li> <li>▫ 이 개정안은 2001년 5월 29일 중의원 농림수산위원장에 의해 제안되어 같은 날 전 회원 일치로 채택, 같은 달 31일 참의원 본회에서 가결, 같은 해 6월 21일 참의원 농림수산위원회 채택, 같은 달 22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 6월 29일에 공포되었다. 본 법률 시행일은 2002년 4월 1일이다.</li> </ul>
목적	제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이에 의한 수산물의 공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어항어장 정비 사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또한 어항의 유지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여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여 풍부하고 살기 좋은 어촌진흥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li> </ul>
어항의 의의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항」 이라는 것은 천연 혹은 인공 어업근거지가 되는 수역 및 육지 및 시설의 종합체로 제6조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지정된 것이다.</li> </ul>
어항시설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항 구역 내에 있는 시설 「6. 어항시설 분류와 시설명」 참조</li> </ul>

항목	조	개요
어항어장정비 사업의 의의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항어장정비사업」이라는 것은 ①에 열거한 사업으로 국가가 시행하는 것 혹은 ①, 혹은 ②에 열거한 사업으로 지방공공단체 혹은 수산업협동조합이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li> <li>① 어항시설의 신축 등 어항정비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 및 이들 사업이외의 사업으로 어항에서의 공해방지를 위한 사업</li> <li>② 어초설치, 수산 동식물 증식 및 양식 추진을 위한 사업 및 어장 보전사업</li> </ul>
어항 종류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1) 어항 종류」 참조</li> </ul>
어항 지정	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종 어항(20이상의 시정촌(市町村)구역에 걸친 어항 제외)은 시정촌(市町村)장이 제2종 어항 및 2 이상의 시정촌(市町村) 구역에 걸쳐진 제1종 어항(2 이상의 도도부현에 걸친 것은 제외한다.)은 도도부현(都道府縣)의 지사가 그 외의 어항은 농림수산대신이 어항의 명칭 및 구역을 정하여 지정한다.</li> </ul>
어항어장정비 기본방침	제6조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수산대신은 어항어장정비사업 추진과 관련된 기본방침(이하 「어항어장정비 기본방침」이라고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어항어장정비 기본방침에서는 어항어장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기본적인 방향, 어항어장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시설과 관련사항, 어항어장정비사업 추진 시 고려해야할 환경과의 조화와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li> </ul>
어항어장정비 장기계획	제6조의 3 및 제6조의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수산대신은 어항어장정비사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 실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어항어장정비 기본방침과 관련된 어항어장정비사업관련 장기계획(이하 「어항어장정비 장기계획」이라고 한다.)안을 작성하여 각의(閣議)의 결정을 구하여야 한다. 어항어장정비 장기계획에서는 계획기간과 관련된 어항어장정비사업 실시의 목표 및 사업량을 정한다.</li> </ul>
수산정책 심의회	제13조 및 제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정책심의회는 조사권한, 어항어장정비 기본방침 및 어항어장정비 장기계획과 관련된 심의는 공개하는 등에 관한 규정</li> </ul>

항목	조	개요
<p>특정어항어장 정비사업</p>	<p>제17조에 서 제19조의 3</p>	<p>(1) 특정 어항어장 정비사업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지방공공단체가 어항어장정비사업 중 중요한 것으로 여겨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하 「특정어항어장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어항어장 정비 기본방침에 따라 특정 어항어장정비 사업계획을 정하며 이를 지체 없이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공표하여야 한다.</li> <li>② 특정 어항어장정비 사업계획에서는 해당 특정 어항어장정비사업에 따라 목적, 사업비와 관련된 사항, 효과와 관련 사항 등을 정한다.</li> <li>③ 특정 어항어장정비 사업계획을 정하려고 할 때에는 관계지방공공단체 및 관계어항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li> <li>④ 특정 어항어장정비 사업계획을 정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그 취지를 공고하고, 해당 특정 어항어장정비사업 계획안을 해당 공고일로부터 20일간 공공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특정 어항어장정비사업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자유열람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li> <li>⑤ 수산업협동조합이 특정 어항어장 정비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경우, 어항어장정비 기본방침에 따라 특정어항어장정비 사업계획을 규정한 후, 농림수산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li> <li>⑥ 국가가 특정 어항어장 정비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대신은 어항어장정비 기본방침에 따라 특정 어항어장정비사업계획을 정하여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지 않으면 안 된다.</li> </ul> <p>(2) 특정 어항어장정비사업과 관련된 폐지 및 정지 절차규정에 대해 정비특정 어항어장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정의 변경 및 기타 사유로 필요한 경우,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폐지하거나 혹은 그 시행을 정지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지의 경우에는 폐지한 취지 그 이유 등을 시행정지의 경우에는 시행을 정지한 취지 그 이유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p>

항목	조	개요
비용부담 및 보조	제20조	▫ 제2편 제2장의 5 수산기반정비사업보조율 일람참조
어항관리자	제2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제1종 어항에서 그 소재지가 하나의 시정촌(市村町)....소재지의 시정촌(市村町)</li> <li>② 제2종 ~ 제4종 어항에서 그 소재지가 하나의 도도부현(都道府縣).....소재지의 도도부현(都道府縣)</li> <li>③ 상기 이외의 어항....농림수산대신이 관계지방공공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 고시로 지정하는 하나의 지방공공단체</li> <li>④ 상기 ①-③외에 어항 소재지의 지방공공단체 협의로 하나의 지방공공단체를 어항관리자로 선정하여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할 수 있다.</li> </ul>
어항관리자의 직책	제26조	▫ 어항관리자는 어항관리규정을 정해 적정한 어항의 유지관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사연구 및 통계자료 작성을 시행한다.
어항 관리회	제27조	▫ 어항관리자는 어항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어항관리회를 둘 수 있다. 어항관리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어항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어항관리 규정 제정	제34조	▫ 어항관리자는 어항시설의 유지, 보전 및 운영 기타 유지관리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어항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이것을 공시함과 동시에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한다.
이요 대가	제35조	▫ 어항의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어항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사용료, 수수료, 점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어항대장	제36조의 2	▫ 어항관리자는 관리할 어항에 대한 어항대장 작성이 필요하다.
어항시설의 처분제한	제37조	▫ 어항시설의 형질 변경, 소재장소 변경, 양도, 임대, 수거 기타 처분 시에는 어항관리자의 허가가 필요하다.



항목	조	개요
어항시설 이용	제3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및 어항관계자 이외의 자가 기본시설인 어항시설을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혹은 이들 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하려고 할 때에는 이용방법 및 요율을 정하여 어항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li> </ul>
어항 보전	제3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항구역내의 수역, 공공 공지에서의 공작물 건설, 개량, 토사 채취, 토지굴착, 성토, 오수방류, 오물방치, 수면 · 토지 점유를 하려는 자는 어항관리자의 허가가 필요하다.</li> <li>▫ 어항구역 내에서 공유수면 매립에 관해서는 어항관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li> <li>▫ 또한 어항구역(어항관리자가 지정한 구역)내에서 함부로 선박, 자동차 등의 방치 등을 금지하다.</li> </ul>
감독처분	제39조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항관리자는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공작물을 건설한 자 등에 대해 개축, 이전 혹은 제거,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li> <li>▫ 또한 방치정 등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항관리자에 의한 대리 집행이 가능하다.</li> </ul>
간주 시설	제4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항의 구역 밖에 있더라도 시정촌(市町村)장 혹은 도도부현(都道府縣)지사는 농림수산대신의 인가를 얻으며, 농림수산대신은 어항심의회 의 의견을 거쳐 이를 어항시설로 간주할 수 있다.</li> </ul>
무이자대부 (보조금형)	부칙 제2항에서 제10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항어장정비사업 등과 관련한 무이자 대부.</li> </ul>
(수익 회수형)	부칙 제11항에서 제1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업협동조합이 행하는 특정정비사업과 관련한 무이자 대부.</li> </ul>

## (2) 「어항법의 일부 개정」(2001년 6월 29일 법92) 포인트

## ① 제목 및 목적 개정

## i. 제목 개정

- ①로부터 ④까지의 개정에 동반하여 제목을 「어항어장정비법」으로 개정한다.

## ii. 목적 개정

- ②에서 ④까지의 개정에 동반하여 목적규정에 대한 소요(所要) 개정을 시행한다.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 및 「풍요롭고 살기 좋은 어촌 진흥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규정에 명기한다.

## ② 어항 및 어장의 종합적 혹은 계획적 정비

## i. 정의규정 개정

- 정의규정을 개정하여 어항정비사업과 어장정비개발사업을 일체화하여 「어항어장정비사업」으로 한다.

## ii. 어항어장정비 기본방침

- a. 농림수산대신은 어항어장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정한다.
- b. 기본방침에서는 어항어장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한 방향, 어항어장정비사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환경과의 조화와 관련된 사항 등을 정한다.
- c. iii의 어항어장정비장기계획은 기본방침에 따라 작성하며, ③의 i의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계획은 기본방침에 따라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 iii. 어항어장정비 장기계획

- a. 농림수산대신은 어항어장정비사업의 종합적이면서 계획적 실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본방침에 따라 어항어장정비사업과 관련한 장기계획(이하 「장기계획」이라 한다.)안을 작성하여 각의(閣議)결정을 구한다.
- b. 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일본의 수산업 기반정비에서 과제와 적합하게 대응되는 관점에서 계획기간과 관련한 어항어장정비사업 실시목표 및 사업량을 정한다.
- c. 장기계획안 작성시 관계 도도부현(都道府縣)지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iv. 특정어항어장정비 사업계획의 공동작성

- 지방공공단체가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확보한 후 필요시 다른 지방공공단

체와 공동으로 특정어항어장정비 사업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주체적인 사업 실시

i. 특정 어항어장정비 사업계획

- 지방공공단체 등이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어항어장정비사업 중 중요한 것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시행하려고 할 경우에는 기본방침에 따라 특정 어항어장정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정한다.

※ 구법에서는 내각이 정하고 국회승인을 얻은 어항의 정비계획에 따라 어항수축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으며, 지방공공단체 등이 주체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없는 제도였다.

ii. 국가가 정한 기준 철폐

- 구법에서 지방공공단체 등은 국가가 작성한 어항시설 규모, 배치 및 구조 등과 관련한 기준에 따라야만 하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 규정을 삭제한다.

④ 어항어장정비사업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

i. 심의회 공개

- 심의회의 장기계획과 기본방침과 관련한 심의는 공개하는 것으로 하며, 이들 심의에 사용된 자료를 공표하기로 한다.

ii. 기본방침, 장기계획 및 사업계획 공표

- 기본방침, 장기계획 및 사업계획을 작성하거나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표하는 것으로 한다.

iii. 사업계획 작성 등의 때에는 관계지방공공단체 등과 협의

- 사업계획을 작성하거나 혹은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관계지방공공단체 및 관계어항관리자와 협의한다.

iv.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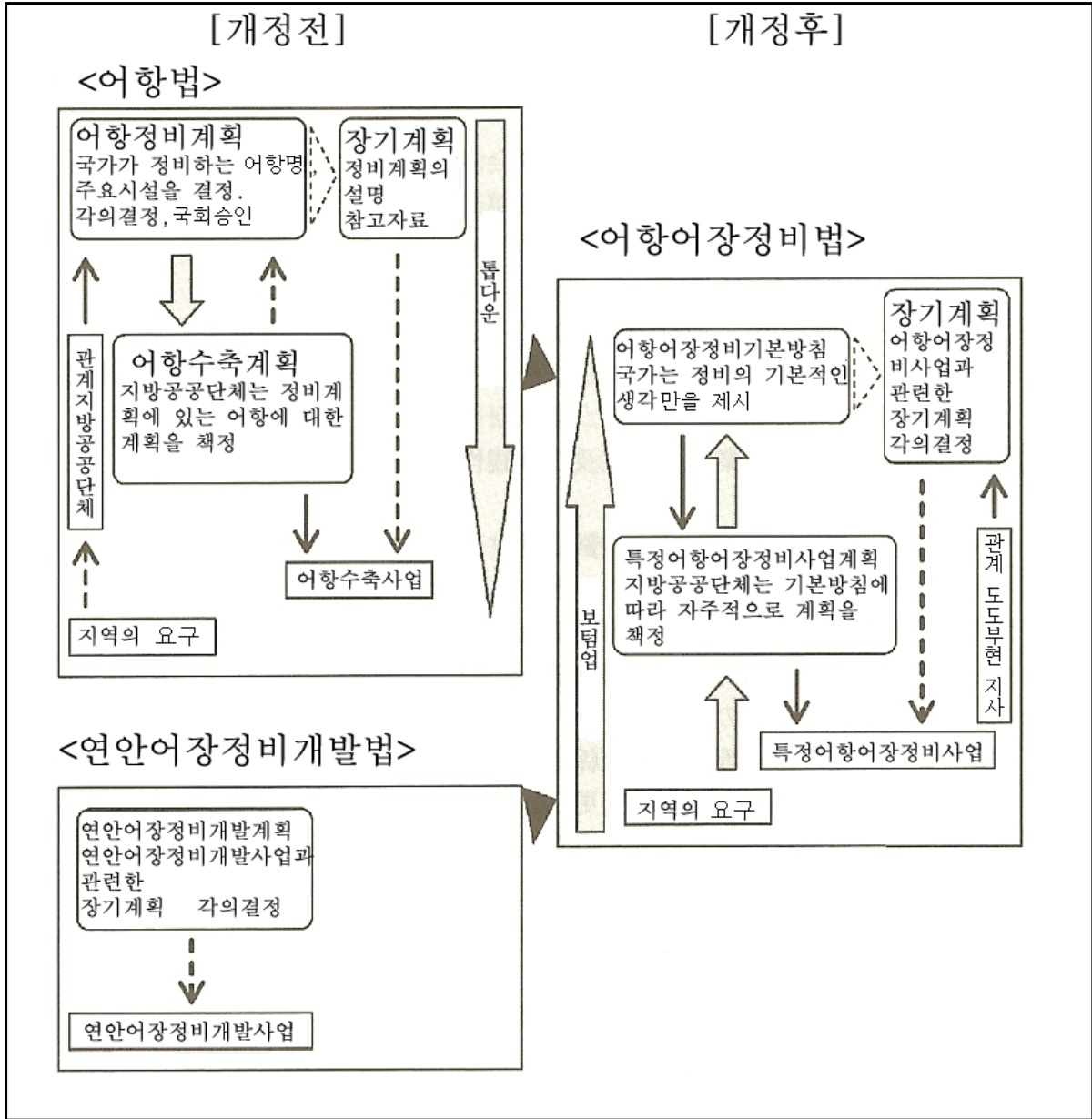
- 사업계획안은 20일간 공공에게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한다.

v.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의 폐지 혹은 정지와 관련된 절차정비

- a. 특정 어항어장 정비사업을 폐지하거나 혹은 정지하려고 할 때에는 관계지방공공단체 및 관계어항관리자와 협의한다.

- b. 특정 어항어장 정비사업을 폐지하거나 혹은 정지하는 경우 공표하는 것으로 한다.

■ 사업재편·통합에 대응한 법 개정 체계 ■



#### 4. 어항의 종류와 수

##### (1) 어항의 종류

- 어항의 종류는 어선의 이용범위에 따라 어항어장정비법 제5조 및 제19조의 3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되고 있다.

제1종 어항	▫ 그 이용범위가 지방 어업을 주로 하는 것
제2종 어항	▫ 그 이용범위가 제1종 어항보다 넓으며, 제3종 어항에 속하지 않는 것
제3종 어항	▫ 그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것
제4종 어항	▫ 낙도 기타 주변지역에서 어장 개발 혹은 어선의 피난 상 특히 필요한 것
특정 제3종 어항	▫ 제3종 어항 중 수산업의 진흥 상 특히 중요한 어항으로 정령으로 정한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다. ▫ 하치노에(아오모리), 시오가마(미야자키), 케센누마(미야자키), 이시마키(미야자키), 초우시(치바), 미사키(가나가와), 야이츠(시즈오카), 사카이(돗토리), 하마다(시마네), 시모노세키(야마구치), 하카타(후쿠오카), 나가사키(나가사키), 마쿠라자키(사고시마) 총 13항
이중 지정항 일부 어항어장정비법이 적용되는 항만	▫ 하치노에(아오모리), 가마이시(이와테), 이시마키(미야자키), 시오가마(미야자키), 쿠지(이바라키), 하마나(시즈오카), 마이즈루(교토), 카츠우라(와가야마), 나가사키(나가사키), 우시부카(쿠마모토), 아부라츠(미야자키)

#### ■ 항만 수 일람표 ■

(2006년 4월 1일 현재)

구분	총수	관리자					56조항만
		도도부현	시정촌	항무국	일부사무 조합	계	
특정 중요 항만	23	12	8	0	3	23	
중요 항만	105	85	16	1	3	105	
지방 항만	942	515	365	0	0	880	62
계	1,070	612	389	1	6	1,008	62

※자료 : 국토교통성 항만국 총무과 조사

(2) 도도부현(都道府縣)별 관리자별 어항 수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총계			높은 순위
	항 수	어항관리자		항 수	어항관리자		항 수	어항관리자		항 수	어항관리자		항 수	어항관리자		
		도도부현	시정촌		도도부현	시정촌		도도부현	시정촌		도도부현	시정촌		도도부현	시정촌	
홋카이도	(22)215	215	-	(1)30	30	-	(1)18	18	-	(4)22	22	-	(28)285	285	-	②
아오모리	-74	33	41	-11	11	-	-4	4	-	-3	3	-	-92	51	41	
이와테	-83	3	80	-23	23	-	-4	4	-	-1	1	-	-111	31	80	⑥
미야기	(13)115	-	115	(4)21	21	-	-5	5	-	-1	1	-	(17)142	27	115	④
아키타	-14	1	13	-6	6	-	-1	1	-	-1	1	-	-22	9	13	
야마가타	-12	3	9	-2	2	-	--	-	-	(1)1	1	-	(1)15	6	9	
후쿠시마	-2	2	-	-6	6	-	-2	2	-	--	-	-	-10	10	-	
이바라기	-19	5	14	--	-	-	-5	5	-	--	-	-	-24	10	14	
치바	-47	4	43	-12	5	7	-8	8	-	-2	2	-	-69	19	50	
도쿄	(16)16	14	2	(1)1	1	-	--	-	-	(4)6	6	-	(21)23	21	2	
가나가와	-19	-	19	-4	-	4	-2	2	-	--	-	-	-25	2	23	
니이가타	(27)47	-	47	(6)13	12	1	(1)2	2	-	(2)2	2	-	(36)64	16	48	
토야마	-10	1	9	-4	2	2	-2	2	-	--	-	-	-16	5	11	
이시가와	-55	-	55	-9	3	6	-2	2	-	(1)3	3	-	(1)69	8	61	
후쿠이	-35	-	35	-8	5	3	-1	1	-	-1	1	-	-45	7	38	
시즈오카	(1)34	-	34	-9	3	6	-4	3	1	-2	2	-	(1)49	8	41	
아이치	-17	-	17	(3)13	7	6	-3	3	-	-1	1	-	(3)34	11	23	
미에	(4)44	1	43	(4)23	4	19	-3	3	-	-3	3	-	(8)73	11	62	
시가	-20	-	20	--	-	-	--	-	-	--	-	-	-20	-	20	
쿄토	-20	-	20	-11	-	11	-1	1	-	-1	1	-	-33	2	31	
오오사카	-11	10	1	-2	2	-	--	-	-	--	-	-	-13	12	1	
효고	(4)36	2	34	(4)14	10	4	-3	2	1	--	-	-	(8)53	14	39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총계			
	항 수	어항관리자		항 수	어항관리자		항 수	어항관리자		항 수	어항관리자		항 수	어항관리자		높은 순위
		도도부현	시정촌		도도부현	시정촌		도도부현	시정촌		도도부현	시정촌		도도부현	시정촌	
와가야마	-78	2	76	-11	-	11	-4	4	-	-2	2	-	-95	8	87	⑩
툃토리	-14	-	14	-2	2	-	-2	2	-	--	-	-	-18	4	14	
시마네	(15)56	-	56	(6)22	22	-	(1)4	4	-	(2)3	3	-	(24)85	29	56	
오카야마	(5)17	5	12	(2)10	9	1	--	-	-	--	-	-	(7)27	14	13	
히로시마	(2)27	1	26	(4)18	18	-	-1	1	-	--	-	-	(6)46	20	26	
야마구치	(12)57	-	57	(5)34	1	33	-3	3	-	(1)3	3	-	(18)97	7	90	⑨
토쿠시마	(1)16	-	16	-11	11	-	-1	1	-	(1)1	1	-	(2)29	13	16	
카가와	(16)86	-	86	(1)6	-	6	--	-	-	--	-	-	(17)92	-	92	
에히메	(32)168	-	168	(4)22	-	22	-3	-	3	(1)2	2	-	(37)195	2	193	③
코우치	-74	15	59	-9	7	2	-4	4	-	(1)1	1	-	(1)88	27	61	
후쿠오카	(3)42	-	42	(4)20	4	16	-1	-	1	(2)2	2	-	(9)65	6	59	
사가	(6)35	1	34	(2)10	2	8	-2	2	-	--	-	-	(8)47	5	42	
나가사키	(146)243	11	232	(17)28	28	-	(3)5	5	-	(10)10	10	-	(176)286	54	232	①
쿠마모토	(6)82	3	79	(2)21	12	9	-1	1	-	--	-	-	(8)104	16	88	⑧
오오이타	(11)89	1	88	(1)17	7	10	-2	2	-	(1)2	2	-	(13)110	12	98	⑦
미야자키	(1)11	11	-	-5	5	-	(1)5	5	-	-2	2	-	(2)23	23	-	
가고시마	(29)94	-	94	(5)23	23	-	-5	5	-	(8)16	16	-	(42)138	44	94	⑤
오키나와	-76	19	57	-4	4	-	-1	1	-	-7	7	-	-88	31	57	
총계	(372)2,210	363	1,847	(76)495	308	187	(7)114	108	6	(39)101	101	-	(494)2,920	880	2,040	

- 주)1. ( )는 낙도 분량으로 내수  
2. 제4종에는 시정촌 관리가 없다.  
3. 제3종에는 특정 제3종을 포함한다.

## (3) 지정 어항 수 추이

년	제1종	제2종	제3종	특정3	제4종	계	비고
1960	2,295	304	70	8	56	2,733	
1965	2,202	408	86	8	74	2,778	
1970	2,118	466	93	11	78	2,766	
1971	2,109	467	93	11	81	2,761	
1972	2,155	471	93	11	87	2,817	
1973	2,156	468	96	13	91	2,824	
1974	2,158	468	96	13	91	2,826	
1975	2,164	468	96	13	91	2,832	
1976	2,162	468	96	13	91	2,830	
1977	2,151	499	96	13	91	2,850	
1978	2,157	498	96	13	91	2,855	
1979	2,168	498	96	13	91	2,866	
1980	2,173	498	96	13	91	2,871	
1981	2,181	498	96	13	91	2,879	
1982	2,180	519	96	13	93	2,901	
1983	2,183	519	96	13	93	2,904	
1984	2,193	519	96	13	93	2,914	
1985	2,196	519	96	13	93	2,917	
1986	2,203	519	96	13	93	2,924	
1987	2,213	519	96	13	93	2,934	
1988	2,221	513	101	13	100	2,948	
1989	2,225	513	101	13	100	2,952	
1990	2,225	513	101	13	100	2,952	
1991	2,225	513	101	13	100	2,952	
1992	2,225	513	101	13	100	2,952	
1993	2,226	513	101	13	100	2,953	
1994	2,221	512	100	13	101	2,947	
1995	2,218	512	100	13	101	2,944	
1996	2,218	512	100	13	101	2,944	
1997	2,218	512	100	13	101	2,944	
1998	2,217	512	100	13	101	2,943	
1999	2,211	512	100	13	101	2,937	
2000	2,205	512	100	13	101	2,931	
2001	2,220	497	100	13	101	2,931	
2002	2,219	495	101	13	101	2,929	
2003	2,217	495	101	13	101	2,927	
2004	2,217	495	101	13	101	2,927	
2005	2,213	495	101	13	101	2,923	
2006	2,210	495	101	13	101	2,920	

오키나와  
북귀(오  
키나와  
분 60항)

※자료 : 수산청 어항어장정비부

주) 2006년 4월 1일 현재, 기타 연도는 각 연도 12월 31일 현재



5. 어항시설 분류

분류		시설명	비고
기본시설	외곽시설	방파제, 방사제, 방조제, 도류(導流)제, 호안, 돌제(突堤), 수문(水門), 갑문(閘門), 제방 및 흉벽(胸壁)	○
	계류(係留)시설	안벽(岸壁), 물양장(物揚場), 잔교(棧橋), 계선부표(係船浮漂), 계선말뚝, 부잔교(浮棧橋) 및 선양장(船揚場)	○
	수역시설	항로 및 박지(泊地)	○
기능시설	운송시설	철도, 도로, 주차장, 다리, 운하 및 헬리포트	○
	항행보조시설	항로표식 및 어선 입출항을 위한 신호시설 및 조명시설	
	어항시설용지	각종 어항시설 부지	○
	어선어구보존시설	어선보관시설, 어선 수리장 및 어구보관수리시설	
	보급시설	어선을 위한 급수, 급빙, 급유 및 급전시설	
	증식 및 양식용 시설	수산치어생산시설, 양식용 먹이보관조정시설, 양식용 작업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어획물 처리보장 및 가공시설	하역소, 하역기계, 축양시설, 수산창고, 야적장, 제빙, 냉동 및 냉장시설, 가공처리장	
	어업용 통신시설	육상무선전신, 육상무선전화 및 기상신호소	○
	어항후생시설	어항관계자의 숙박소, 욕실, 진료소 및 기타 복리후생시설	
	어항관리시설	관리사무소, 어항관리용 자재창고, 선박보관시설 기타 어항관리를 위한 시설	
	어항정화시설	공해방지를 위한 도수시설 기타 정화시설	○
	폐유처리시설	어선 내에서 발생된 폐유처리를 위한 시설	○
	폐선처리시설	어선의 파손 기타 처리를 위한 시설	
어항환경정비시설	광장, 식물재배, 휴게소, 기타 어항환경정비를 위한 시설	○	

주) ○는 수산기반정비사업 보조대상시설

## 6. 어장 분류

### (1) 어초어장

- 주로 어류의 운집, 발생 및 육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생산성 높은 어초어장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되는 내구성 구조물(콘크리트 블록 등) 설치로 정비된 어장

### (2) 증식장

- 해역 및 이것과 이어지는 육지에서 유용수산생물 발생 및 육성에 적합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행하는 착정기질(着定基質) 설치 (투석, 콘크리트 블록 등의 설치 및 간석(간석 및 구획시설) 조성), 소파(消波)시설 등 (소파제(消波堤), 잠제(潛堤), 이안제(離岸堤), 방빙제(防氷堤))설치, 해수교류시설(도류제(導流堤,) 수로 등) 설치, 중간육성시설 설치 및 용지(중간육성시설설치용, 작업로 등) 조성 및 이와 관련된 시설(펌프실 등 간이부수시설)설치로 정비된 어장

### (3) 양식장

- 해역 및 해역과 이어지는 육지에서 미이용상태에 있는 양식 적지에 생산성 높은 양식어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소파시설 등(소파제, 잠제, 부소파제 및 방빙제)의 설치, 저질개선(바닥갈이, 준설, 객토, 경운(耕耘) 등) 및 용지(양식시설용)조성 및 이와 관련된 시설설치로 정비된 어장.

#### ◦ 조장(藻場), 간석(干潟)이란?

-조장 : 각종 해조가 숲처럼 무성한 곳

-간석 : 조수 간만의 차로 멀리까지 물이 얇고 모래, 흙 등으로 이루어져 비교적 평탄한 곳

#### ◦ 조장, 간석의 역할과 효용>

-조장

- 다시마, 전복 등과 같은 어업생산의 장
- 해조류에 의한 유기물 수거로 해역이 정화
- 도미류, 볼락 등이 서식, 산란하거나 혹은 유치어(幼稚漁)가 서식하는 양호한 곳

-간석

- 모시조개 등과 같은 어업생산의 장
- 미생물, 갯지렁이 등에 의한 유기물 분해를 통한 해역정화
- 해조(海鳥)를 비롯한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
- 갯벌에서의 조개잡이 등을 통한 바다와 인간과의 만남의 장

## 제2부 어항어장정비 장기계획

### 1. 어항어장정비 장기계획(2002년 3월 26일 각의결정) 개요

(1) 계획기간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5년간

(2) 어항어장정비사업 실시목표와 진척상황

① 기본개념

◦ 어항어장정비 장기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과제에 대하여 중점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처한다.

- i.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양질의 수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체제정비
- ii. 수산동식물의 생육환경이 되는 어장 등의 적극적인 보전, 창조
- iii. 수산업진흥을 중심축으로 한 양호한 생활환경형성을 목표로 한 어촌의 종합적인 진흥

② 지향목표(목표연도 : 2011년)

◦ 10년 후를 염두에 두고

- i. 1975년대 초반의 어장환경이나 연안어업의 생산수준을 염두에 두고, 어항어장 정비사업을 통하여 연안지역의 어장환경을 회복시킴과 동시에 어업생산량을 37만 톤까지 증산시킨다. 또한 생산유통기능 고도화를 실현한다.
- ii. 어업취락배수처리 실시 어촌의 인구비율을 소도시( 60%) 수준으로 만들 것을 목표로 수산물의 품질, 위생관리의 기초가 되는 어항어장의 수역환경과 어촌의 생활환경, 노동환경 개선도 함께 달성한다.

③ 2004년도 말 진척상황

- i. 어업생산량증산 : 약6만톤(추정치)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의 누계>
- ii. 어촌의 처리인구비율 : 약 35%

(3) 사업량(2002년-2006년 5년간)과 진척상황

사업량	2002년	2003년	2004년
◦ 수산동식물 증식 및 양식을 추진해야할 거점지 중에서 750지구를 정비한다.	604지구 (80.5%)	623지구 (83.1%)	638지구 (85.1%)
◦ 생산유통의 효율화 및 품질 위생관리 강화를 도모해야할 곳 중 350지구를 정비한다.	318지구 (90.0%)	323지구 (92.3%)	326지구 (93.1%)
◦ 5,000ha의 조장 · 간석 조성에 상응되는 수산동식물의 생육환경을 새로이 보전, 창조한다.	892ha (17.8%)	2,282ha (45.6%)	3,441ha (68.8%)
◦ 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정비를 430지구에서 실시한다.	295지구 (68.6%)	318지구 (74.0%)	344지구 (80.0%)

※ 지구(地區)수는 누적착공지구 수. ( )는 진척율

## 2. 지금까지의 장기계획

### (1) 어항정비 장기계획의 경위

구분/계획별		어항정비 장기계획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	제7차	제8차	제9차
계획	① 계획기간	1951년~ 목표연차 부정	1955년~ 목표연차 부정	1963~1970년 8개년	1969~1973년 5개년	1973~1977년 5개년	1977~1982년 6개년	1982~1987년 6개년	1988~1993년 6개년	1994~2001년 8개년
	② 계획항수	수축 450항	수축 604항	수축 380항 개수 약450항	수축 370항 개수 약550항	수축 420항 개수 약665항	수축 450항 개수 약820항	수축 480항 개수 약870항	수축 490항 개수 약920항	수축 480항 개수 약720항
	③ 총사업비(A)	544억엔	550억엔	수축1000억엔 개수 250억엔 일부개수150억엔 계 1,400억엔	수축1500억엔 개수 400억엔 일부개수200억엔 계 2,100억엔 조정비200억엔 합계2,300억엔	수축 4,800억엔 개수 1,500억엔 일부개수500억엔 계 6,800억엔 조정비 500억엔 단독비등200억엔 합계 7500억엔	수축8800억엔 개수3500억엔 일부개수1500억엔 계 1조3800억엔 조정비500억엔 단독비등 200억엔 합계 1조500억엔	수축 1조 3100억엔 개수 5000억엔 일부개수 1500억엔 계 1조 8500억엔 조정비 1300억엔 단독비등 300억엔 합계 2조 100억엔	수축 1조 3100억엔 개수 5500억엔 일부개수 1700억엔 계 2조 300억엔 조정비 3400억엔 단독비등 400억엔 합계 2조 4100억엔	일반공공분2조3500억엔 기본적시설정비2조엔 이중 수축 1조500억엔 어항어촌환경정비 3500억엔 조정비5900억엔 단독비등 600억엔 합계 3조엔
	④ 계획과제	전후 복구	전후 복구	1.원양어업의 근 거지정비 2.근해어업의 근 거지정비 3.연안어업의 중 심지정비 4. 피난항정비	1. 국민식량으로 서의 수산물 생 산 확보 2.어획물유통개선 3. 지역사회기반 강화	1.유통체계강화 2.생산활동의 원 활화 3.밝은 어촌건설	1. 국민식량으로 서의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2.근대적이고 매 력 있는 수산업 확립 3.풍요로운 지역 사회건설	1.수산물의 안정정인 공급 2.매력 있는 어업확립 3.어촌사회의 기반정비	1.일본 주변수역의 효과적인 이용 2.정보화시대에 대응 되는 유통가공체제 확립 3.활력 있는 어촌만 들기	1.일본 주변수역의 고도이용 2.소비자 요구와 일 치되는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3.만남으로서의 어항 공간창출 4.쾌적하고 활력 있 는 어항어촌 형성 5.아름다운 해변환경 보전과 창조

구분/계획별		어항정비 장기계획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	제7차	제8차	제9차
실적	⑤ 계획 목표			계선안 총족율 1970년 30% 1960년 16.2%	계선안 총족율 1973년 48.4% 1966년 21.8%	계선안 총족율 1977년 50% 1969년 24%	계선안 총족율 1982년 50% 1974년 32%	계선안 총족율 1987년 50% 1979년 34%	계선안 총족율 1993년 50% 1985년 38%	계선안 총족율 2001년 58% 1991년 48%
	① 실시 항수	수축 375항	수축 560항	수축 377항 개수 440항	수축 370항 개수 570항	수축 420항 개수 667항	수축 450항 개수 820항	수축 480항 개수 881항	수축 490항 개수 932항	수축 480항 개수 723항
	② 총 사업비 (B)	수축 121억 엔 개수 일부개 수 계 121억 엔	수축 393억엔 개수 일부개수 계 393억 엔	수축 633억엔 개수 172억엔 일부개수117억엔 계 922억엔	수축1,163억엔 개수 312억엔 일부개수135억엔 계 1610억엔	수축2370억엔 개수750억엔 일부개수288억엔 계 3408억엔	수축 6376억엔 개수 2740억엔 일부개수828억엔 계9944억엔	수축 8952억엔 개수 4125억엔 일부개수1256억엔 계 1조4362억엔	수축 1조1606억엔 개수 5630억엔 일부개수1462억엔 계 1조9618억엔	일반공공분 3조551억엔 기본시설정비 2조5872억엔 이중 수축 1조7258억엔 어항어촌환경정비 4680억엔 지방단독비등 1397억엔 계 3조1949억엔
③ 진척율 (B/A%)	24.0	71.5	65.9	70.0	45.4	68.9	71.5	81.4	106.5	

- 주)1. 농림수산성 자료에 따름.  
 2. 계획목표란에서 상단은 목표연차에서의 계선안 총족율이며 하단은 기준연차에서의 실적 계선안 총족율이다.  
 3. 제9차 어항정비 장기계획의 실시항수 중 개수에는 2001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지역수산물 공급기반정비사업, 광역어항정비 사업과 관련된 어항도 포함한다.  
 4. 사사오입을 적용하여 합계는 일치되지 않는 곳이 있다.

## (2) 연안어장정비 개발계획의 경위

구분/계획별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계획	① 계획기간	1976년~1981년 6년간	1982년~1987년 6 년간	1988년~1993년 6년간	1994년~2001년 8년간
	② 총사업비 (A)	어초:658억엔 증양식:1,087억엔 보전:88억엔 개발조사(직할) :5억엔 계:1,840억엔 예비비:160억엔 합계:2,000억엔	어초:1,400억엔 증양식:1,900억엔 보전:100억엔 계:3,400억엔 조정비:600억엔 합계:4,000억엔	어초:1,400억엔 증양식:2,000억엔 보전:100억엔 계:3,500억엔 조정비:1,300억엔 합계:4,800억엔	어초:1,600억엔 증양식:300억엔 보전:300억엔 계:4,200억엔 지방단독:200억엔 조정비:1,600억엔 합계:6,000억엔
	③ 기본방침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1.연안어장의 기반 형성 2.연안지역의 종합 적 정비추진 3.신기술 등의 도 입으로 해역의 고도이용	1.일본 주변수역의 수산자원·생산 량 증대로 대처 2.「푸르고 풍요로 운 바다」 확보 3.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종합적인 정비추진
	④ 정비목표		어장정비율 8.4 → 9.7%	어장정비율 9.4 → 10.7%	어장정비율 10.8 → 12.3%
실적	① 총사업비 (B)	어초:667억엔 증양식:775억엔 보전:69억엔 계:1,511억엔	어초:1,090억엔 증양식:1,124억엔 보전:76억엔 계:2,290억엔	어초:1,572억엔 증양식:1,591억엔 보전:136억엔 계:3,299억엔	어초:2,299억엔 증양식:2,678억엔 보전:407억엔 지방단독:164억엔 계:5,549억엔
	② 달성율 (B/A%)	81.7%	67.4%	94.3%	92.5%

## (3) 「어항법」 제정까지의 어항정비

- 1908년 이즈의 시키네(式根)섬에 어선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피난어항을 만들기 위하여 국가에서 2만엔의 보조금이 교부되었다. 이것이 어항정비에 대한 국고조성의 시작이다. 그러나 그 후 1918년까지 국가의 어항에 대한 보조는 없었으며 오직 항에 대한 조성방법만이 모색되어 전국 주요 200여항에 대한 현지

조사와 여러 항의 현지시찰 검토가 이루어졌다. ○ 1918년에 이르러 국가는 본격적으로 어항정비에 힘을 쏟아 붓게 되며, 27만엔의 보조금이 예산 계상되어 지방공공단체가 시행하는 수축사업 공사비의 2분의 1을 보조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1918년 오나하마(후쿠시마), 시라하마(치바), 노우(니이가타), 나키리(미에), 아부라츠(미야기)의 각 항이, 1919년에는 하치노에(아오모리), 1920년에는 타키(이시가와), 토미에(나가사키), 1921년에는 미사키(카나가와), 에토모(시마네), 무로리츠(코우치)와 당시 가장 필요하다고 여겨진 비교적 대규모 항의 공사가 연이어 착공된다. 그 후, 제1차 세계대전 후 불황속에서 피폐한 농어촌진흥책으로 1925년부터 어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선류(船溜)수축에 40%내외의 국고보조가 시작된다. 이는 큰 항과 선류의 중간단계에 있는 작은 항에도 1929년부터 조성사업이 이루어져 대규모 항, 소규모 항, 선류라는 세 가지를 축을 중심으로 하는 어항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제도가 한차례 정립되게 된다.

- 이외에도 홋카이도에서는 1919년부터 탁식비(拓殖費)로 도청의 직영공사로 어항수축이 시작되었으며, 선류는 시정촌의 보조사업으로 정비가 이루어졌다.
- 한편, 타이(台)만 등에서도 직영공사로 어항정비가 이루어졌다. 종전 이전까지 공사를 한 어항은 <표-1>과 같으며 대규모항 79항, 소규모항 57항, 선류 1,051군데이다. 1945년 패전으로 인한 어장상실과 극심한 식량난으로 수산업 부흥은 국가의 중요시책으로 부각되며 1947년부터는 어항정비도 공공사업에 포함되어 적극적으로 추진되게 된다. 이로 인해 우선 1948년 수산청에 어항과가 설치되어 행정기구가 정비되었고 1950년에는 전국어민의 간절한 소망이던 「어항법」이 제정되어 어항정비의 방향성과 어항관리의 적정화가 도모되게 된다. 어항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은 <표-2>와 같다. 1951년 어항법을 기반으로 최초의 어항정비계획이 책정되며 이때부터 어항정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다.

■ 어항정비관계사업의 연도별 실시항수(1918년~1940년) ■

연도	어항수축	소 어항설비		선박, 선착장 설비			
	산업 장려비	농림 진흥비	농업 토목비	농촌 진흥비	농업 토목비	재해비	산업 장려비
1918년	6						
1919년	7						
1920년	8						
1921년	11						
1922년	11						
1923년	15			20			
1924년	14			15			
1925년	12			16			
1926년	10			21			
1927년	10			19			
1928년	9			18			
1929년	9	8		17			
1930년	10	10		4			
1931년	9	12					
1932년	14	15	25		194		
1933년	17	14	35		624		
1934년	15	9	41		358		
1935년	15	8				152	
1936년	20	6					21
1937년	29	2					32
1938년	35	1					32
1939년	41						26
1940년	41						23

■ 어항정비관계사업의 연도별 실시항수(1947년~1950년) ■

구분 / 연도	도도부현 주도	시정촌, 기타 주도	계
1947년	71	59	130
1948년	77	50	127
1949년	94	49	143
1950년	115	52	167
계	357	210	567

주) 4년간 실시총사업비는 약 38억엔이다



3. 어항어장정비 장기계획 이외의 공공사업관련 장기계획 일람

항목	사회자본정비 중점계획	그린정비보전 사업계획	토지개량장기계획	폐기물처리시설 정비계획
소관 관청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 경찰청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성	환경성
근거 법	사회자본정비중점 계획법(1940년 법20)	삼림법 (1951년 법249)	토지개량법 (1949년 법 195)	폐기물 처리 및 청소관련 법률(1970년 법137)
각의 결정	2003년 10월 10일	2004년 6월 8일	2003년 10월 10일	2003년 10월 10일
계획 기간	2003년~2007년	2004년~2008년	2003년~2007년	2003년~2007년
시책 의 기본 목표 등	<p>[분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 생활공간의 충실 화를 통한 풍성 한 생활 실현</li> <li>○ 안전 방재성의 고도화 추진과 교통안전 대책 · 위기관리 강화</li> <li>○ 환경 지구환경에서 주 변생활환경에 이 르는 환경의 보 전 · 창조</li> <li>○ 활력 국제경쟁력강화, 도시재생, 지역 연대, 관광진흥 등을 통한 매력 과 활력 넘치는 경제사회형성</li> </ul>	<p>[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실현</li> <li>○ 공생 삼림과 인간이 공생하는 사회실 현</li> <li>○ 순환 순환을 기조로 한 사회 형성에 기여</li> <li>○ 활력 활력 넘치는 지 역사회형성에 기 여</li> </ul>	<p>[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명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 함으로 국민 · 소 비자의 「생명」 을 지키는 농업 · 농촌기반 형성</li> <li>○ 순환 자연환경을 기초 로 한 농업기반 형성으로 유기성 자원과 농업용수 순환 등 「순환」 을 기조로 한 사 회 구축</li> <li>○ 공생 농업의 지속적인 영위, 아름답고 평온한 국민의 고향 만들기로 사람과 자연, 도 시와 농촌의 「공생」 실현</li> </ul>	<p>[전체목표]</p> <p>폐기물 등의 적 정한 순환이용과 처분을 위한 시 설을 정비하여 순환형 사회 만 들기를 도모한다.</p>

항목	사회자본정비 중점계획	그린정비보전 사업계획	토지개량장기계획	폐기물처리시설 정비계획
어항 개항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저출산·고령화사 회에 대비한 배 리어프리 사회형 성 등</li> <li>②수역·녹지가 풍 성하고 아름다운 도시생활공간형 성 등</li> <li>③양호한 주거환경형 성</li> <li>④수해 등의 재해 에 강한 국토 만 들기</li> <li>⑤대규모지진, 화 재에 강한 국토 만들기 등</li> <li>⑥종합적인 교통 안전대책 및 위 기관리강화</li> <li>⑦지구온난화방지</li> <li>⑧도시의 대기오 염 및 소음과 관 련한 생활환경개 선</li> <li>⑨순환형 사회 만들 기</li> <li>⑩양호한 자연환 경보전·재생·창 출</li> <li>⑪양호한 수산환 경개선</li> <li>⑫국제적 수준의 교통 서비스 확 보 및 국제경쟁 력과 매력 향상</li> <li>⑬국내간선교통 이동성향상</li> <li>⑭도시교통의 쾌 적성, 편리성향 상</li> <li>⑮지역간 교류, 관광교류 등을 통한 지역과 경 제의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삼림의 수도(水 土)보전기능의 높은 발휘력으로 「국민이 안심하 고 살 수 있는 사회실현」</li> <li>②삼림의 다양성 유지증진, 인접생 활환경으로서의 삼림, 국민에게 자유롭게 열려진 삼림정비 및 보 전으로 인한「삼 림과 인간이 공 생하는 사회실 현」</li> <li>③삼림자원의 순 환이용에 따른 「순환을 기조로 한 사회형성에 기여」</li> <li>④삼림자원 활용, 도시와의 공생· 대류로 인한「활 력 있는 지역사 회형성으로의 기 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의욕적이며 능 력 있는 경영체 육성</li> <li>②종합적인 식재 료 공급기반 강 화</li> <li>③순환형 사회구 축을 위한 대처</li> <li>④자연과 농업생 산이 조화를 이 룬 풍요로운 전 원자연환경창조</li> <li>⑤개성 있고 아름 다운 마을 만들 기</li> <li>⑥안정적인 용수 공급기능 등의 확보</li> <li>⑦농업재해방지와 안전·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형 성에 공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쓰레기발생량을 줄이는 순환적 이용추진과 감량 효과가 높은 처 리를 실시함으로 최종처리량을 삭 감하여 착실히 최종처분을 실시 해 나간다.</li> <li>②소각쓰레기는 소각 시 가능한 발전(發電)을 실 시하여 서멀리사 이클(thermal recycle)을 추진 한다.</li> <li>③분뇨 및 정화조 오수의 해양투입 을 전면 폐지하 여 위생적인 육 상처리를 실시한 다.</li> <li>④정화조 배설물 및 생활잡배수처 리를 추진하여 수산환경 보전을 도모한다.</li> <li>⑤폐기물처리센터 의 산업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추진한다.</li> <li>⑥PCB처리시설부 의 귀중한 산물 인 PCB폐기물처 리를 추진한다.</li> </ul>

※ 「주택」은 「주(住)생활기본법」에 의하여 「주생활기본계획(전국계획)」이 책정될 예정(2006년 가을 예정)

### 제3부 수산관계사업예산

#### 1. 예산의 추이

##### (1) 일반 공공사업예산

(금액단위 : 백만원)

사항	2004년도 예산액(재편성 후)			2005년도 예산액			2006년도 예산액		
	통상분	전년대비	구성비	통상분	전년대비	구성비	통상분	전년대비	구성비
1. 자산·치수	1,133,357	0.944	14.64	1,075,723	0.949	14.42	1,027,339	0.955	14.41
치수	920,117	0.948	11.88	875,215	0.951	11.73	836,277	0.956	11.73
자산	134,725	0.926	1.74	126,776	0.941	1.70	119,622	0.944	1.68
해안	78,515	0.938	1.01	73,732	0.939	0.99	71,440	0.969	1.00
이중 어항해안	12,015	0.928	0.16	11,236	0.935	0.15	10,906	0.971	0.15
2. 도로정비	1,802,825	0.942	23.28	1,698,458	0.942	22.77	1,610,488	0.948	22.59
3. 항만·공항·철도 등	564,412	0.982	7.29	545,610	0.967	7.32	528,166	0.968	7.41
항만	277,087	0.941	3.58	258,128	0.932	3.46	242,084	0.938	3.40
도시·간선철도	48,760	0.931	0.63	45,896	0.941	0.62	43,179	0.941	0.61
공항	164,380	1.071	2.12	165,669	1.008	2.22	167,011	1.008	2.34
신간선	68,600	1.000	0.89	70,600	1.029	0.95	70,600	1.000	0.99
항로표식	5,585	0.950	0.07	5,317	0.952	0.07	5,292	0.995	0.07
4. 주택·시가지대책	1,726,925	1.019	22.30	1,726,026	0.999	23.14	1,653,094	0.958	23.19
주택대책	874,637	0.939	11.30	818,210	0.935	10.97	717,545	0.877	10.07
도시환경정비	852,288	1.117	11.01	907,816	1.065	12.17	935,549	1.031	13.12
5. 하수도수도폐기물처리 등 시설정비	1,260,677	0.932	16.28	1,136,964	0.902	15.24	1,042,055	0.917	14.62
하수도	829,093	0.941	10.71	752,332	0.907	10.09	689,589	0.917	9.67
수도	133,138	0.903	1.72	123,286	0.926	1.65	115,963	0.941	1.63
폐기물처리	142,283	0.900	1.84	115,006	0.808	1.54	98,900	0.860	1.39
공업용수	5,621	0.880	0.07	4,806	0.855	0.06	3,506	0.730	0.05
도시공원	130,924	0.943	1.69	123,461	0.943	1.66	116,587	0.944	1.64
자연공원	13,893	0.973	0.18	12,531	0.902	0.17	12,150	0.970	0.17
정보통신 격차시정	5,725	0.968	0.07	5,542	0.968	0.07	5,360	0.967	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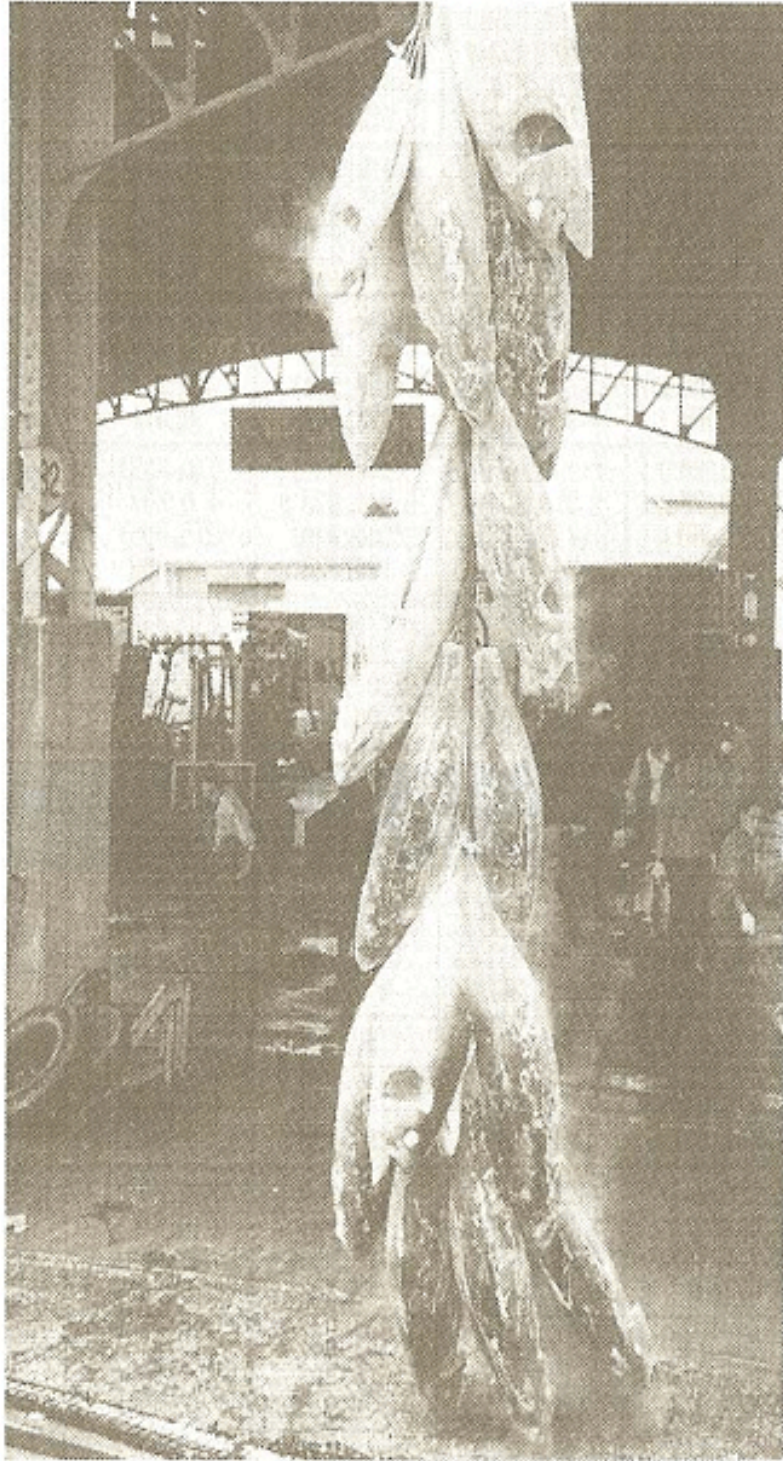
사항	2004년도 예산액(재편성 후)			2005년도 예산액			2006년도 예산액		
	통상분	전년대비	구성비	통상분	전년대비	구성비	통상분	전년대비	구성비
6. 농업농촌정비	834,542	0.950	10.78	775,591	0.929	10.40	727,829	0.938	10.21
7. 삼림수산기반정비	360,617	0.973	4.66	339,076	0.940	4.55	322,314	0.951	4.52
산림환경	182,469	1.005	2.36	174,192	0.955	2.34	169,210	0.971	2.37
수산기반정비	178,148	0.943	2.30	164,884	0.926	2.21	153,104	0.929	2.15
8. 조정비 등	59,905	1.501	0.77	160,905	2.686	2.16	217,535	1.352	3.05
조정비 등	59,905	1.501	0.77	79,905	1.334	1.07	79,835	0.999	1.12
지역재생교부금	-	-	-	81,000	-	1.09	137,700	1.700	1.93
일반 공공 합계	7,743,260	0.965	100.00	7,458,353	0.963	100.00	7,128,820	0.956	100.00
9. 재해복구 등	72,674	1.000	0.94	72,674	1.000	0.97	72,674	1.000	1.02
이중 수산기반·어항해안	832	1.338	0.01	1,196	1.438	0.02	1,113	0.931	0.02
합계	7,815,934	0.965	100.94	7,531,027	0.964	100.97	7,201,494	0.956	101.02
NTT-A	71,778	0.776	0.93	-	-	-	-	-	-
공공사업관계비 합계	7,887,712	0.963	101.87	7,531,027	0.955	100.97	7,201,494	0.956	101.02

(2) 수산관계예산

(단위:억엔)

구분 / 연도	2002년 (당초)	2003년 (당초)	2004년 (당초)	2005년 (당초)	2006년 (당초)
농림수산관계 예산총액	(△6.2)	(△2.5)	(△1.9)	(△2.8)	(△4.6)
통상분	31,908	31,123	30,536	29,672	28,310
NTT-A형	31,905	31,114	30,522	29,672	28,310
	3	9	14	-	-
수산관계 예산총액	(△12.2)	(△3.9)	(△4.1)	(△3.8)	(△3.9)
통상분	3,095	2,973	2,851	2,742	2,635
NTT-A형	3,092	2,964	2,837	2,742	2,635
	3	9	14	-	-
공공	(△12.6)	(△4.6)	(△5.5)	(△5.8)	(△5.2)
통상분	2,134	2,035	1,924	1,813	1,719
NTT-A형	2,131	2,026	1,910	1,813	1,719
	3	9	14	-	-
비공공	(△11.3)	(△2.3)	(△1.3)	(△0.2)	(△1.4)
	961	939	927	929	916
수산관계 예산총액(통상분)	9.69%	9.53%	9.29%	9.24%	9.31%
농림수산관계 예산총액(통상분)					
공공(통상분)	68.92%	68.35%	67.32%	66.12%	65.24%
수산관계 예산총액(통상분)					

- 주) 1. 상단 ( )는 신장율(%), △는 마이너스  
 2. 공공과는 수산기반정비, 어항해안, 재해복구의 합계  
 3. NTT의 사업상환분은 제외  
 4. 합계 수는 사사오입에 의한 것으로 단수에서 일치되지 않는 것이 있다.  
 5. 2003년도 수산관계 총예산액에서 소비안전국 이행분은 제외



제12회 어항어촌 사진콩쿠르 입상작품  
「냉동참치의 양륙」(静岡県焼津市·青木忠平氏)  
静岡県焼津漁港

(3) 수산공공예산

연도	일반공공	수산공공 합계	어항어촌	전년대비	쉐어	연안정비	전년대비	쉐어	어항해안	전년대비	쉐어
1996년	(11,027,630)	(292,049)	(240,189)	(0.856)	(2.18)	(32,832)	(0.899)	(0.30)	(19,028)	(0.521)	(0.17)
	10,926,089	290,453	238,593	0.858	2.18	32,832	0.899	0.30	19,028	0.521	0.17
	(9,651,685)	(270,872)	(221,069)	(1.010)	(2.29)	(32,170)	(1.040)	(0.33)	(17,633)	(0.570)	(0.18)
	9,550,144	269,276	219,473	1.013	2.30	32,170	1.040	0.34	17,633	0.570	0.18
1997년	(10,206,862)	(269,379)	(219,210)	(0.913)	(2.15)	(32,512)	(0.990)	(0.32)	(17,657)	(0.928)	(0.17)
	10,105,321	268,145	217,976	0.914	2.16	32,512	0.990	0.32	17,657	0.928	0.17
	(9,778,526)	(269,125)	(218,956)	(0.990)	(2.24)	(32,512)	(1.011)	(0.33)	(17,657)	(1.001)	(0.18)
	9,676,985	267,891	217,722	0.992	2.25	32,512	1.011	0.34	17,657	1.001	0.18
1998년	(14,251,961)	(356,318)	(290,423)	(1.325)	(2.04)	(43,528)	(1.399)	(0.31)	(22,367)	(1.267)	(0.16)
	14,157,528	355,307	289,412	1.328	2.04	43,528	1.399	0.31	22,367	1.267	0.16
	(9,012,091)	(245,415)	(199,401)	(0.911)	(2.21)	(30,000)	(0.923)	(0.33)	(16,014)	(0.907)	(0.18)
	8,917,658	244,404	198,390	0.911	2.22	30,000	0.923	0.34	16,014	0.907	0.18
1999년	(11,745,203)	(297,075)	(242,036)	(0.833)	(2.06)	(35,288)	(0.811)	(0.30)	(19,751)	(0.883)	(0.17)
	11,650,770	296,064	241,025	0.833	2.07	35,288	0.811	0.30	19,751	0.883	0.17
	(9,457,461)	(247,328)	(200,939)	(1.008)	(2.12)	(30,367)	(1.012)	(0.32)	(16,022)	(1.000)	(0.17)
	9,363,028	246,317	199,928	1.008	2.14	30,367	1.012	0.32	16,022	1.000	0.17
2000년	(11,651,772)	(277,005)	(223,933)	(0.925)	(1.92)	(33,844)	(0.959)	(0.29)	(19,228)	(0.974)	(0.17)
	11,557,339	276,342	223,270	0.926	1.93	33,844	0.959	0.29	19,228	0.974	0.17
	(9,452,461)	(248,414)	(201,586)	(1.003)	(2.13)	(30,547)	(1.006)	(0.32)	(16,281)	(1.016)	(0.17)
	9,358,028	247,751	200,923	1.005	2.15	30,547	1.006	0.33	16,281	1.016	0.17

연도	일반공공	수산공공 합계	수산기반	전년대비	쉐어	어항해안	전년대비	쉐어
2001년	(9,617,736)	(257,346)	(240,335)	(1.073)	(2.50)	(17,011)	(0.885)	(0.18)
	9,524,610	257,257	240,246	1.076	2.52	17,011	0.885	0.18
	(9,455,744)	(243,451)	(227,740)	(1.130)	(2.41)	(15,711)	(0.965)	(0.17)
	9,362,528	243,362	227,651	1.133	2.43	15,711	0.965	0.17
2002년	(9,784,818)	(225,177)	(210,954)	(0.878)	(2.16)	(14,223)	(0.836)	(0.15)
	9,690,994	224,852	210,629	0.877	2.17	14,223	0.836	0.15
	(8,445,055)	(212,789)	(199,154)	(0.874)	(2.36)	(13,635)	(0.868)	(0.16)
	8,351,231	212,464	198,829	0.873	2.38	13,635	0.868	0.16
2003년	(8,116,948)	(202,879)	(189,930)	(0.900)	(2.34)	(12,949)	(0.910)	(0.16)
	8,024,412	201,936	188,987	0.897	2.36	12,949	0.910	0.16
	(8,116,948)	(202,879)	(189,930)	(0.954)	(2.34)	(12,949)	(0.950)	(0.16)
	8,024,412	201,936	188,987	0.951	2.36	12,949	0.950	0.16
2004년	(8,049,725)	(193,532)	(181,517)	(0.956)	(2.25)	(12,015)	(0.928)	(0.15)
	7,977,947	192,163	180,148	0.953	2.26	12,015	0.928	0.15
	(7,815,038)	(191,532)	(179,517)	(0.945)	(2.30)	(12,015)	(0.928)	(0.15)
	7,743,260	190,163	178,148	0.943	2.30	12,015	0.928	0.16
2005년	{7,615,331}	{180,222}	{168,869}	{0.937}	{2.22}	{11,353}	{0.945}	{0.15}
	7,458,353	180,120	168,884	0.948	2.26	11,236	0.935	0.15
2006년	7,128,820	170,810	159,904	0.947	2.24	10,906	0.971	0.15

주) 상단 ( )는 통상분+NTT-A, 하단은 통상분, { }는 수정 후 예산액이다.

1999년도 수정 후 예산액은 공공사업 등의 예비비 및 지역전략플랜을 포함한다.

2000년도 수정 후 예산액은 공공사업 등의 예비비를 포함한다.

2001년도부터 어항어촌정비사업과 연안어장정비사업은 수산기반정비사업에 재편 통합된다.

2005년 이후는 지역재생기반 연대강화교부금을 포함한다.



2. 수산관계사업예산

(1) 2006년도 수산관계사업예산

(금액단위: 천엔)

사항	2005년도당초		2006년도 당초			
	사업비	국비			전년대비	
			사업비	국비	사업비	국비
① 수산기반정비예산	266,402,000	168,884,000	254,881,000	159,904,000	0.967	0.947
1. 수산기반정비사업	255,042,000	163,128,000	239,881,000	152,025,000	0.938	0.932
직할특정 어항어장정비사업	16,282,000	16,282,000	16,516,000	16,516,000	1.014	1.014
지역수산물 공급기반정비사업	86,086,000	53,270,000	77,331,000	47,012,000	0.898	0.883
광역어항정비사업	81,685,000	49,514,000	77,482,000	47,482,000	0.949	0.959
광역어장정비사업	23,557,000	11,947,000	24,008,000	12,173,000	1.019	1.019
어장기능고도화사업	7,476,000	3,771,000	3,771,000	1,900,000	0.504	0.504
(수산물공급기반정비사업 계)	215,086,000	134,784,000	199,108,000	125,083,000	0.926	0.928
어장환경보전창조사업	6,432,000	3,216,000	6,760,000	3,380,000	1.051	1.051
어항수역환경보전대책사업	426,000	213,000	426,000	213,000	1.000	1.000
(수산자원환경정비사업 계)	6,858,000	3,429,000	7,186,000	3,593,000	1.048	1.048
어항환경정비사업	3,662,000	1,831,000	2,694,000	1,347,000	0.736	0.736
어업취락환경정비사업	20,600,000	10,312,000	8,952,000	4,476,000	0.435	0.434
어촌 가꾸기 종합정비사업	2,174,000	1,213,000	1,547,000	914,000	0.712	0.754
어촌재생교부금	5,687,000	3,000,000	18,849,000	9,650,000	3.314	3.217
(어촌종합정비사업 계)	32,123,000	16,356,000	32,042,000	16,387,000	0.997	1.002
수산기반정비조사비	789,000	789,000	748,000	748,000	0.948	0.948
수산기반정비조사비보조	166,000	83,000	150,000	75,000	0.904	0.904
작업선 정비비	20,000	20,000	20,000	20,000	1.000	1.000
보조율 차액	-	7,667,000	-	6,119,000	-	0.798

사항	2005년도당초		2006년도 당초			
					전년대비	
	사업비	국비	사업비	국비	사업비	국비
3. 지역재생기반강화교부금	8,000,000	4,000,000	13,600,000	6,800,000	1.700	1.700
항정비교부금	5,000,000	2,500,000	8,500,000	4,250,000	1.700	1.700
오수처리시설정비교부금	3,000,000	1,500,000	5,100,000	2,550,000	1.700	1.700
② 어항해안예산	22,626,000	11,236,000	21,822,000	10,906,000	0.964	0.971
1. 어항해안사업	22,626,000	11,236,000	21,822,000	10,906,000	0.964	0.971
고조대책사업	9,798,000	5,131,000	10,366,000	5,400,000	1.058	1.052
침식대책사업	4,386,000	2,291,000	4,097,000	2,138,000	0.934	0.933
국부개량사업	969,000	359,000	623,100	230,000	0.643	0.641
보수통합보조사업	121,600	40,600	117,000	39,000	0.962	0.961
(해안보전시설정비사업 계)	15,274,600	7,821,600	15,203,100	7,807,100	0.995	0.998
해일·고조위기관리대책긴급사업	1,300,000	650,000	1,880,000	940,000	1.446	1.446
해안환경정비사업	6,014,000	2,008,000	4,707,000	1,571,000	0.783	0.782
공유지조성호안 등 정비통합보조사업	5,000	2,000	0	0	모두감소	모두감소
해안사업조사비	32,400	32,400	31,900	31,900	0.985	0.985
보조율 차액	-	722,000	-	556,000	-	0.770
수산공공 계	289,028,000	180,120,000	276,703,000	170,810,000	0.957	0.948
③ 재해복구예산	1,496,620	1,196,000	1,474,270	1,113,000	0.985	0.931
총계	290,524,620	181,316,000	278,177,270	171,923,000	0.957	0.948

주) 어항어장기능고도화사업 및 어항환경정비사업은 2005년부터 도도부현 분을 포함하여 통합보조금화되었다.  
어항이용조정사업은 2005년부터 어항어장기능고도화통합사업에 통합되었다.  
항정비교부금 및 오수처리시설정비교부금은 지역재생법에 따라 성청연대교부금(내각부 계상)이다.

[참고]재해복구사업예산

(금액단위: 천엔)

연도/ 사항	2005년도						2006년도	
	당초예산	전년 대비	수정	유용	예비 비	계	당초예산	전년 대비
재해 복구	1,116,000	144.6	12,413,991	0	0	13,529,991	1,091,000	97.8
직할	325,000	224.1	171,991	0	0	496,991	82,000	25.2
2004년 재해	180,000		171,991	145,000	0	496,991	-	
2005년 재해	145,000		0	△145,000	0	0	0	
2006년 재해	-		-	-	-	-	82,000	
보조	791,000	126.2	12,242,000	0	0	13,033,000	1,009,000	127.6
2003년 재해	52,000		104,000	△1,000	0	155,000	-	
2004년 재해	492,000		7,231,000	△66,040	0	7,656,960	611,000	
2005년 재해	247,000		4,907,000	67,040	0	5,221,040	188,000	
2006년 재해	-		-	-	-	-	210,000	
재해관 련	80,000	133.3	0	0	0	80,000	22,000	27.5
보조	57,000		0	0	0	57,000	1,000	
2003년 재해	5,000		0	5,280	0	10,280	-	
2004년 재해	52,000		0	△34,836	0	17,164	0	
2005년 재해	0		0	29,556	0	29,556	1,000	
2006년 재해	-		-	-	-	-	0	
보조율 차액	23,000		0	0	0	23,000	21,000	
합계	1,196,000	143.8	12,413,991	0	0	13,609,991	1,113,000	93.1

## 제4부 사업제도

### 1. 수산기반정비사업

#### (1) 수산기반정비사업의 개요

##### ① 취지

○ 수산업의 구조개혁을 정비하여 수산기본법 및 어항어장정비법 제정을 기반으로 지방분권의 추진 등에 대응하는 어항·어장·어촌의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제도 하에 소프트웨어적인 시책과 연대를 도모하여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자연과의 공생 및 도시·어촌의 공생·대류의 촉진을 추진한다.

i. 자원관리형어업 및 어장육성어업, 품질·위생관리에 대응되는 수산기반의 거점정비, 광범위하게 펼쳐진 자원의 증대효과를 갖는 대규모 어장정비 등을 실시하여 일본의 200해리수역 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산물공급체제 정비를 추진한다.

ii. 수산자원의 증대, 해양환경·생태계보전 기여를 위한 조장·간석조성 등을 긴급히 그리고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자원회복 도모를 위한 수산자원의 생식환경어장 등의 적극적인 보전·창조를 추진한다.

iii. 안전하고 쾌적한 어촌 가꾸기를 위하여 노동·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물을 설비하며, 수산업진흥을 중심으로 하는 양호한 생활환경형성을 목표로 한 어촌의 종합적인 진흥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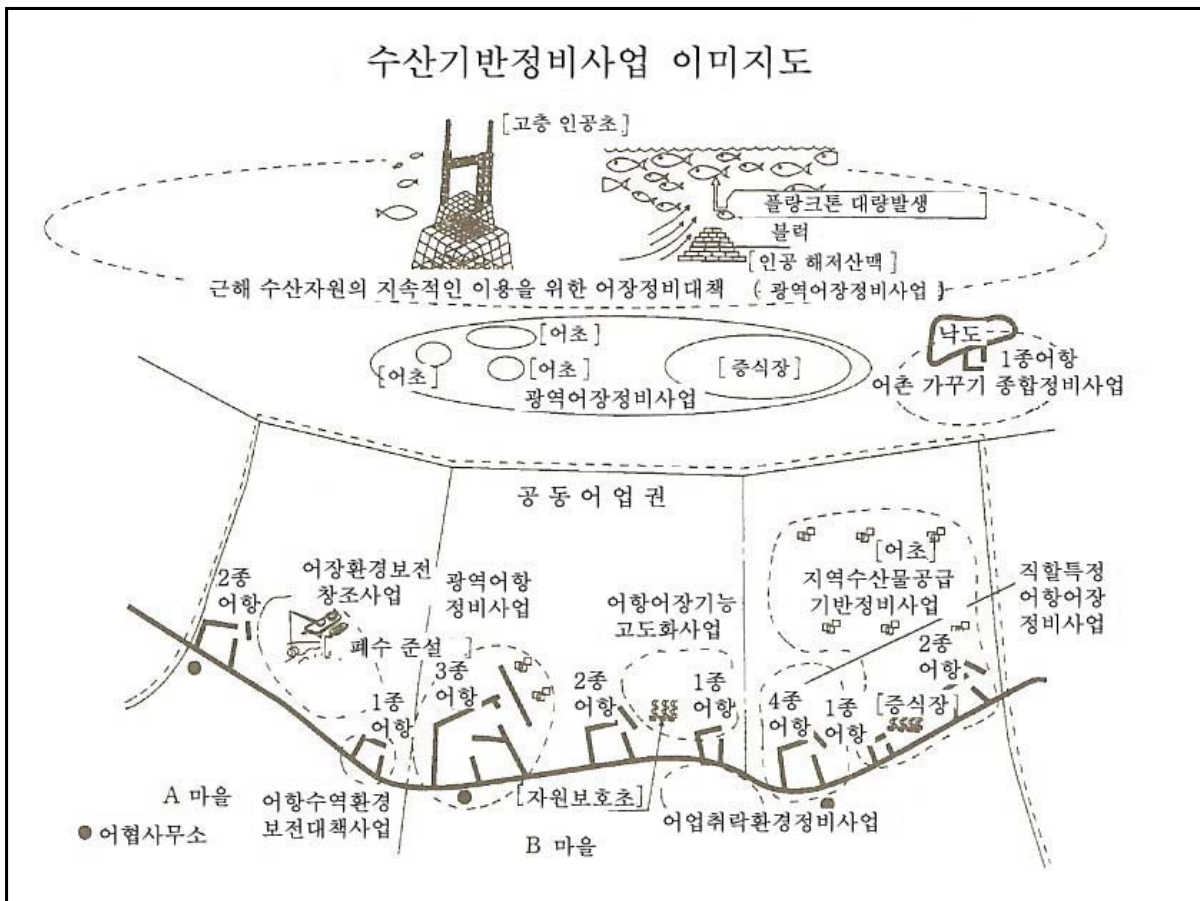
##### ② 수산기본정책의 세 가지 기본방향을 위한 사업체계

○ 일본의 수산업을 둘러싼 정세를 기반으로 수산정책과제에 적절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공공투자의 효율성·투명성확보의 관점에서 자원의 증식에서 생산, 유통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업을 전개하여 시책목적이 명확한 사업체계로 인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반정비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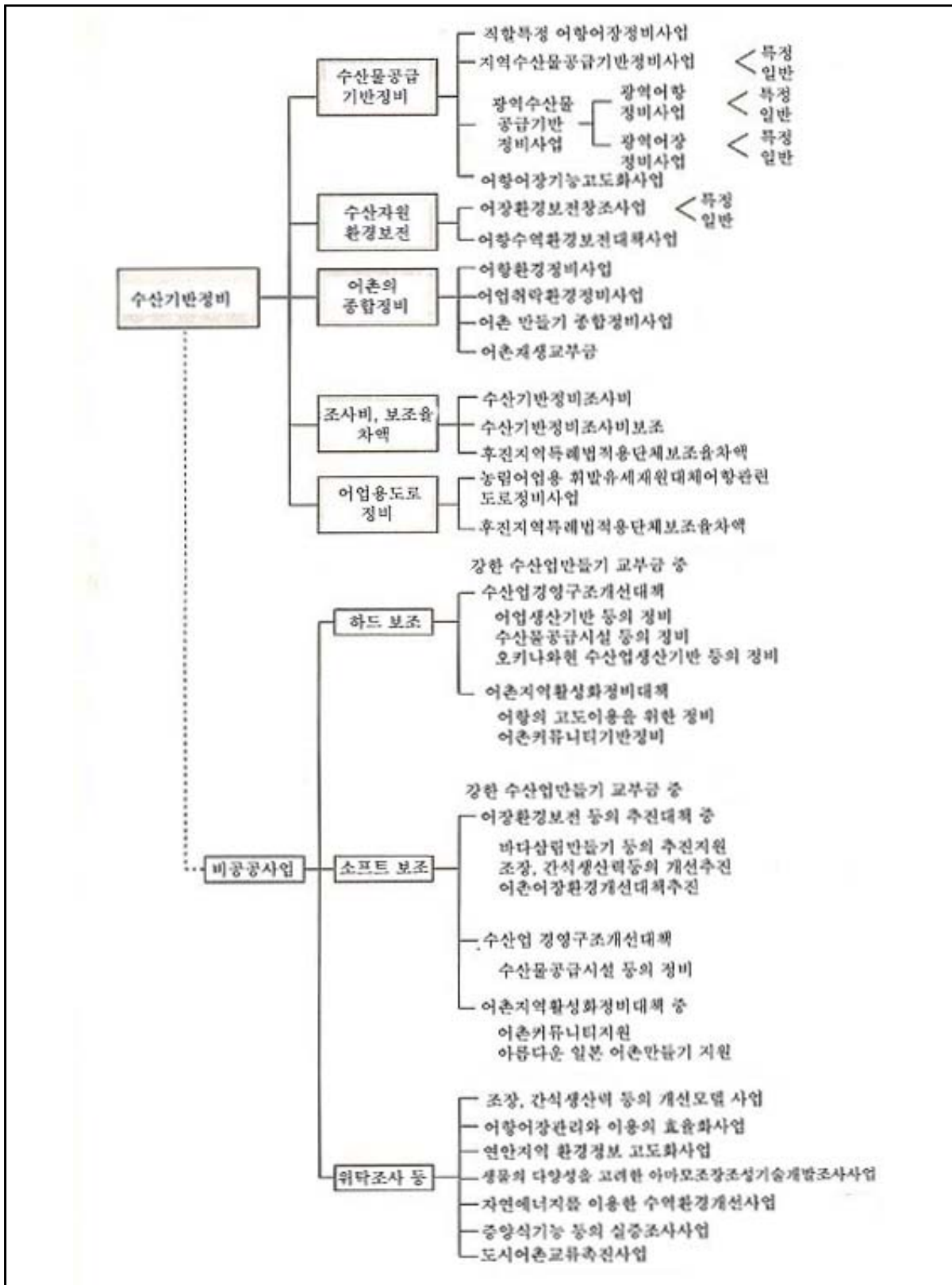
- i. 일본의 200해리수역 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산물공급체제정비 -> [수산물공급기반정비사업]
- ii. 자원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수산자원의 생식환경이 되는 어장 등의 적극적인 보전·창조 -> [수산자원환경정비사업]
- iii. 수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양호한 생활환경형성을 목적으로 한 어촌의 종합적인 진흥 -> [어촌종합정비사업]

③ 새로운 요청에 대응한 사업내용

- i 연안지역의 어장과 어항의 일체적 정비
- ii 근해에서 넓은 범위에 걸쳐 자원증대효과를 갖는 대규모 어장정비
- iii 비공공사업과 연대한 산지시장통합, 품질 · 위생관리강화 등의 요청에 대응한 생산, 유통가공의 거점정비
- iv 어장환경 등의 적극적인 보전 · 창조를 위한 조장 · 간석조성, 폐수제거 등 취락지배수시설의 적극적인 정비
- v 어촌의 종합적인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생활환경개선, 노동환경개선, 도시와의 교류촉진을 위한 시설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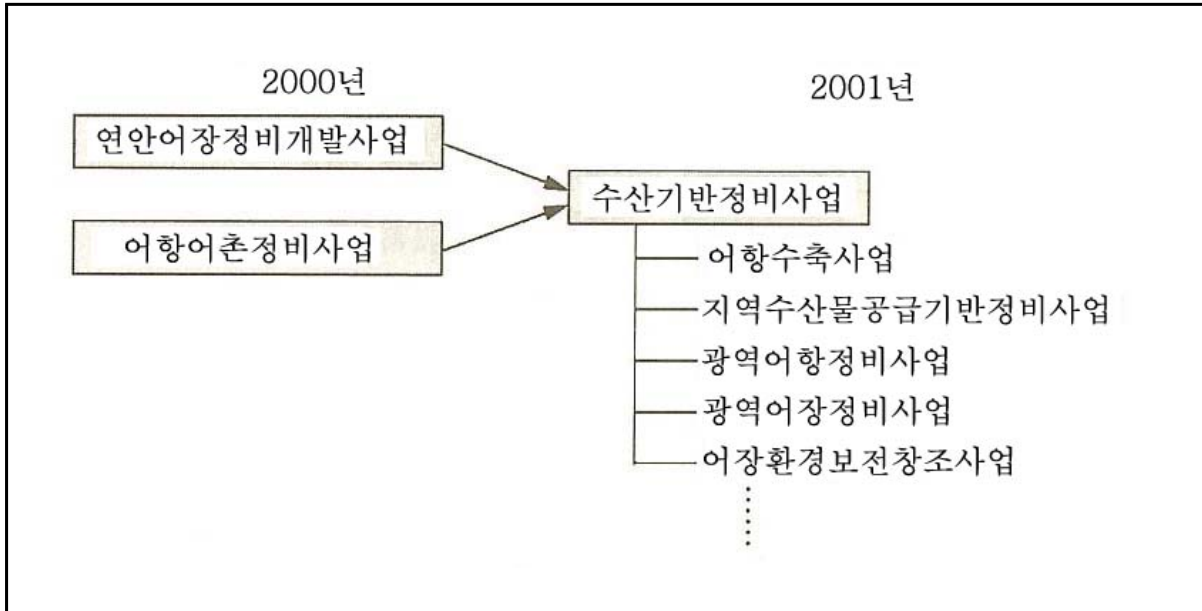


(2) 수산기반정비의 사업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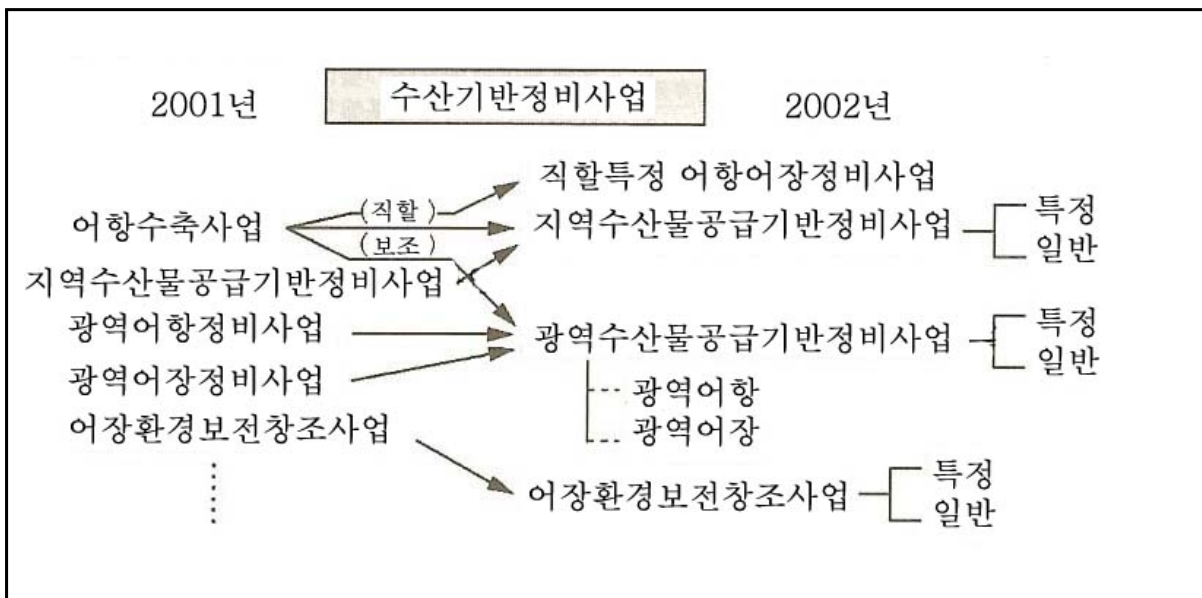


(3) 수산기반정비사업의 재편·통합 경위

- 2001년도에는 예산제도를 「어항어촌정비사업」과 「연안어장정비개발사업」을 「수산기반정비사업」으로 재편·통합하였다.



- 2002년도에는 어항법의 일부개정과 함께 어항어장정비법의 4월 1일 시행으로 어항수축사업 종료와 함께 특정 어항어장정비사업이 시작되었다.



## 2. 공공사업

### (1) 수산물의 공급기반정비

#### ① 직할특정 어항어장정비사업의 개요

##### i. 취지

-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과제에 대응함과 동시에 어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어항 및 어장을 수산자원증식 혹은 어획·양육, 유통·가공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수산물공급시스템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통일된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 a. 지역요구에 신속 혹은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 b. 공공투자의 효율성·투명성확보의 관점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산기반정비를 시행할 것
- c. 최근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과의 조화를 확보할 것

에 대한 대응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 어항법 개정으로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하여 어항시설정비의 기간사업인 어항수축사업을 폐지하여 특정 어항어장정비사업을 창설기로 하며 직할사업에 있어서도 해당 사업을 창설한다.

##### ii. 사업내용

###### a. 사업내용

- 어항어장정비법에 규정된 어항어장정비방침에 적합한 특정 어항어장정비사업계획을 기반으로 방파제, 안벽, 용지, 도로 등의 어장시설정비

###### b. 채택요건

- 계획사업비가 한 사업에 20억 엔을 넘는 등 일정한 요건을 만족시킬 것

##### iii. 사업주체 : 국가

##### iv. 부담률 : 10/10 (이 중 어항관리자의 부담금 15/100~45/100)

##### v. 과목

- (항) 훗카이도 수산기반정비비
- (목) 직할특정 어항어장정비비

##### vi. 2006년도 예산 내시액(2005년도 당초 예산액)

- 16,516백만엔(16,282백만엔)

##### vii. 사업개시년도 : 1951년도부터



◦ 직할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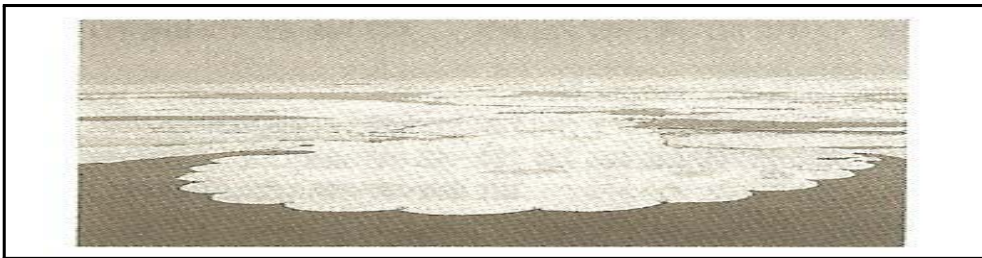
- 현재 홋카이도의 어획량은 일본 전체의 약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수산물의 생산 · 유통의 거점적인 역할, 어장개발 · 어선의 피난상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홋카이도의 제3종 · 제4종 어항에 대해 국가 직할특정 어항어장정비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 사업실시주체는 홋카이도 개발국이며, 어항시설 중 외곽시설, 계류시설, 수역시설, 운송시설, 어항시설 용지와 관련된 정비를 시행하기로 하고 있다.

◦ 2006년도 개소 수

- 직할특정 어항어장정비사업은 홋카이도의 제3종 어항 18항, 제4종 어항 15항 총 33항에서 실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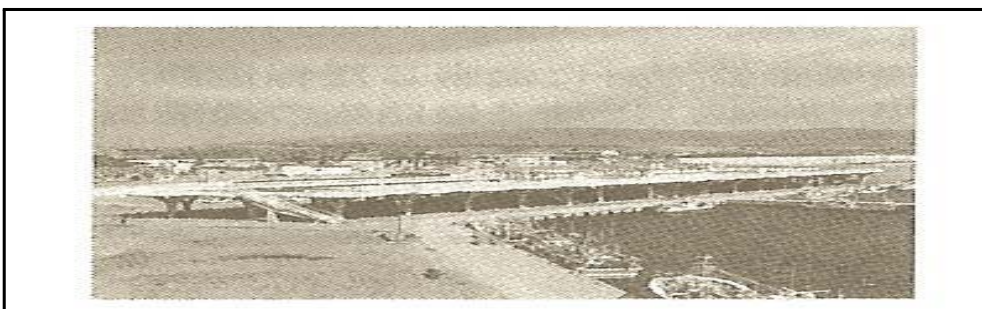
◦ 정비사례

- 직할사업으로 선구적인 기술을 이용한 정비사례를 나타낸다.



◦ 아이스봄 (제4종 사로마호 어장) :

- 국내에서 세 번째의 면적을 갖는 사로마호 내의 어항시설로 어선, 양식시설 등을 유빙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호구에 방빙제(아이스봄)를 정비하였다.



◦ 인공지반(제3종 치어어항) :

- 홋카이도 남서부의 지진(1993년) 해일피해를 받은 치어어항에서 협소한 토지의 고도이용, 작업효율향상, 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2층 건물로 인공지반을 정비하였다.

## ② 지역수산물공급기반 정비사업의 개요

## i. 취지

- 본격적인 200해리시대를 맞이하여 수산자원의 회복, 어장 등의 보전, 어촌진흥이라는 수산업을 둘러싼 주요과제에 대응하면서 자원관리형어업, 어장육성어업의 보다 심도 깊은 추진도모를 위한 수산물의 생산성향상 등이 긴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따라서 공동어업권구역 내 등 근해어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1종 어항 등을 계획적이고 일원적으로 정비하여 지역에서의 수산자원유지·확대와 수산물의 생산유통기능증대를 도모하여 국민의 요구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어업지역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 ii. 사업내용

## a. 사업내용

- 수산자원증대와 지속적인 이용에 이바지할 공동어업권구역 내 등 근해어장과, 해당어장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제1종 어장 등에서 연안어업 및 증양식진흥에 이바지할 어장을 일체적으로 정비한다.
- 단, 이미 천연어장 등이 형성되어 당면 어장정비가 예정에 없는 경우의 어장정비와 당면정비가 예정에 없는 어장 등과 이용 상 밀접하게 관련된 어장정비는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b. 채택요건

## 가. 계획사업비가 한 사업 당 3억엔을 넘을 것

- ▷ 이때 원칙적으로 동일 시정촌내의 복수의 어장 및 어항으로 해당어장이나 어항 등이 상호 밀접하게 이용되는 것 혹은 정비결과 밀접한 이용이 예상되는 것은 일괄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

## 나. 정비결과 사업단위 내의 어항 등에서 항세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것 등

## iii. 사업주체

- 지방공공단체 등

## iv. 보조율

- 1/2(지역 1/2~ 9/10)

## v. 과목

- (항) 수산기반정비비

- (목) 수산물 공급기반정비 사업비보조
  - (세목) 지역수산물 공급기반정비 사업비보조
- vi. 2006년 당초 예산액(2005년 당초 예산액)
- 47,012백만엔(53,270백만엔)
- vii. 사업개시연도 : 1962년~

## ③-1 광역 수산물공급기반정비사업 중 광역 어항정비사업의 개요

## i. 취지

- 본격적인 200해리시대를 맞아 일본 주변수역을 고도로 이용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효율적으로 공급해 나가기 위하여 산지시장통합촉진, 수산물의 품질·위생관리강화, 수산물의 생산성향상과 물류의 효율화 등으로 인한 수산물 집출하 기능 강화와 광역적으로 활동하는 어선의 안전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 따라서 제3종 어항, 제4종어항 등의 계획적인 정비에 의한 수산물의 생산·유통의 거점형성을 추진하고 국민의 요구에 정확하게 대응된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 ii. 사업내용

## a. 사업내용

## 가. 제3종 어항, 제4종어항 등의 정비

- 나. 가.의 대상어항을 본거지로 한 어선이 이용하는 공동어업권 구역 내 등 근해어장시설은 가.와 함께 일원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

## b. 채택요건

## 가. 계획사업비가 한 사업 당 3억엔을 넘을 것

## 나. 어항시설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킬 것

- ▷ 한 어항 당 계획사업비가 3억엔을 넘을 것
- ▷ 정비결과 어항의 항세가 일정한 요건을 만족시킬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것 등

## iii. 사업주체 : 지방공공단체 등

## iv. 보조율 : 1/2, 2/3(지역1/2~9/10)

## v. 과목

- 수산기반정비비
- 수산물공급기반정비사업비보조
- 광역수산물공급기반정비사업비보조

## vi. 2006년 당초 예산액(2005년 당초 예산액)

- 47,482백만엔(49,514백만엔)

## vii. 사업개시연도 1963년~

③-2 광역 수산물공급기반정비사업 중 광역 어항정비사업의 개요

i. 취지

- 본격적인 200해리시대를 맞이하여 일본 주변수역을 고도로 이용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효율적으로 공급해 나가기 위하여 어장환경의 적극적인 회복, 기술개발성과를 고려한 근해로의 전개가 요구되고 있다.
- 따라서 이용이 지방 어업보다 넓은 공동어업권 구역 이외의 어장을 계획적이고 일원화, 대규모로 정비함으로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사업내용

a. 사업내용

- 가. 공동어업권의 구역 내에서의 이용이 광범위하게 걸쳐있는 규모가 큰 어장시설을 정비하는 사업
- 나. 근해에서 최신기술을 응용하여 인공해저산맥을 조성하고 기초생산력 증대를 도모하는 등 넓은 범위에 걸쳐진 자원증대효과를 갖는 대규모의 어장을 정비할 것

b. 채택요건

가.의 사업

- ▷ 계획사업비가 한 사업 당 3억엔을 넘을 것
- ▷ 사업규모 등이 일정한 요건을 만족시킬 것 등

나.의 사업

- ▷ 계획사업이 한 사업 당 10억엔을 넘을 것
- ▷ 해역의 기초 생산력증대 등 일본의 자원, 생산증대에 큰 효과를 갖는 것
- ▷ 수익자가 일정한 요건을 만족시킬 것 등

iii. 사업주체 : 지방공공단체

iv. 보조율 : 1/2(오키나와 1/2, 6/10, 7/10)

v. 과목

- (항) 수산기반정비비
- (목) 수산물공급기반정비사업비보조
- (세목) 광역 수산물공급기반정비사업비보조

vi. 2006년 당초 예산액(2005년 당초 예산액)

- 12,173백만엔(11,947백만엔)

vii. 사업개시연도 1962년~

## ④ 어항어장기능고도화사업의 개요

## i. 취지

-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기반이 되는 어항 및 어장에 대한 각종 요구에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어항·어장시설 개량 등으로 어항·어장시설이용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수산자원의 생식환경 보전, 품질·위생관리강화, 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 신기술을 응용한 시설도입, 유어선(遊漁船)등을 수용하는 피셔리너정비 등으로 기존 어항·어장시설기능의 고도화, 다기능이용증대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전체사업계획 및 배분의 범위 안에서 도도부현의 재량으로 지구간의 유용(流用)을 실시하여 지방분권의 도모를 추진한다.

## ii. 사업내용

## a. 사업내용

- 어항어장기능고도화사업은 도도부현 사업도 포함하여 통합보조사업화

## &lt;어항어장기능고도화사업&gt;

가. 어항·어장시설의 효과적인 활용을 도모할 개량 등의 사업으로 어항·어장의 이용증진을 위한 사업

나. 지역특성에 따른 기존어항·어장시설기능의 고도화와 보다 이용하기 쉬운 시설로의 정비

- ▷ 어항시설에 수산자원의 생식환경이 되는 조장 등의 기능부가
- ▷ 어항시설에 품질·위생관리강화를 위한 방풍·방서시설 등을 설치
- ▷ 어항시설에 고령자를 배려를 위한 배리어프리화
- ▷ 어장시설에 해역의 고도이용을 위한 신기술응용시설 도입
- ▷ 어항시설에 유어선 등의 수용을 위한 피셔리너정비 등

## b. 통합보조사업의 기본구조

가. 전체사업계획에 따라 각 연도의 요청액, 남은 사업비, 남은 공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국가가 도도부현 마다의 배분범위를 결정(개소별은 나타내지 않는다.)

나. 가.의 배분범위 안에서 도도부현의 재량으로 지구별 배분을 실시

다. 전체사업계획 및 배분범위 안에서 도도부현의 재량으로 지구간의 유용을 실시(국가의 관여는 없다.)

## c. 채택요건

가. 어항시설

- ▷ 계획사업비가 한 사업 당 1억 5천만엔 이상(시정촌이 시행하는 사업은 5천만엔 이상), 3억엔 이하(피셔리너 정비는 10억엔 이하)인 것
- ▷ 이용어선 실 척수가 20척정도 이상
- ▷ 피셔리너를 정비하는 경우에는 상기 외 방치정 수용계획 책정 및 유어선 등 이용척수가 일정한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

나. 어장시설

- ▷ 계획사업비가 한 사업 당 5천만엔 이상(시정촌 등이 시행하는 사업은 3천만엔 이상), 3억엔 이하인 것
- ▷ 수익호수가 일정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

iii. 사업주체 : 현, 시정촌 등

iv. 보조율 : 1/2 (지역 1/2~2/3)

v. 항목

- (항) 수산기반정비비
- (목) 수산물공급기반정비사업비보조
- (세목) 어항어장기능고도화종합사업비보조

vi. 2006년 당초 예산액(2005년 당초 예산액)

- 1,900백만엔(3,771백만엔)

vii. 사업개시연도 1955년~

⑤ 농림어업용 취발유세 재원대체 어항관련도로정비사업의 개요

i. 취지

- 어업용으로 소비된 취발유의 면세상당액을 재원으로 어항과 간선도로 등을 잇는 도로를 정비하여 어획물유통 및 어업용자재운송의 합리화로 어업생산의 근대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어촌환경개선을 도모한다.

ii. 사업내용

a. 사업내용

- 어항과 국도·현도를 잇는 도로 혹은 어항과 기타 어항을 잇는 도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

가. 주요 어항관련도로정비사업

- ▷ 주요어항(제2,3,4종 어항 또는 지역수산물 공급기반정비사업, 광역 수산물공급기반정비사업으로 채택된 어항)과 관련된 연결도로정비

나. 부대관련도로정비사업

- ▷ 주요어항관련도로와 함께 개량할 필요가 있는 관련도로정비

다. 일반어항관련도로정비사업

- ▷ 주요어항 이외의 어항에서의 관련도로 정비

b. 채택요건

- 도로 정비 5개년 계획과의 조정 등 도로와 관련된 다른 시책과 조정하여 정비를 시행할 것

가. 주요어항관련도로

- ▷ 총사업비가 1억엔 이상 6억엔 미만(특별한 것은 6억엔 이상의 것도 인정한다.)

나. 일반어항관련도로

- ▷ 총사업비가 5천만엔 이상 6억엔 미만(특별한 것은 12억엔 미만의 것도 인정한다.)

다. 부대관련도로

- ▷ 총사업비가 약 1/2이내에서 5천만엔 이상

iii. 사업주체 : 지방공공단체

iv. 보조율 : 1/2(일반·부대의 용지보상은 1/3)

- (지역 주요 55/100, 7/10, 4/5, 일반·부대 1/2)



v. 과목

- (항) 농림어업용 취발유세 재원대체 어항관련도로정비사업비
- (목) 농림어업용 취발유세 재원대체 어항관련도로정비사업비보조

vi. 2006년 당초 예산액(2005년 당초 예산액)

- 1,016백만엔(1,693백만엔)

vii. 사업개시연도 1965년~

## (2) 수산자원의 생식환경정비

## ① 어장환경보전창조사업의 개요

## i. 취지

- 최근 연안지역의 공업화, 대도시화 추진으로 공업배수, 도시배수, 각종 폐기물 등의 유입으로 연안어장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어장으로서의 효용저하가 문제시되고 있다.
- 따라서 효용이 저하되고 있는 어장의 생산력 회복과 수산자원의 생식장 환경개선으로 수산자원의 생식환경보전·창조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 ii. 사업내용

## a. 사업내용

- 효용이 저하되고 있는 어장의 생산력 회복과 수산자원의 생식장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 ▷ 퇴적물 제거
  - ▷ 방치좌초선 처리
  - ▷ 저질개선(준설, 바닥갈이, 경운, 객토, 복토 등)
  - ▷ 해수교류시설 설치(수로 등)
  - ▷ 착정기질(着定基質) (투석, 콘크리트블록 등) 설치 등

## b. 채택요건

- 계획사업비가 한 사업 당 5천만엔 이상(시정촌, 어협 등이 시행하는 사업은 1천만엔 이상)의 것

## iii. 사업주체 : 지방공공단체, 어협 등

## iv. 보조율 : 1/2(오키나와 1/2, 6/10)

## v. 과목

- (항) 수산기반정비비
- (목) 수산자원환경정비사업비보조
- (세목) 어장환경보전창조사업비보조

## vi. 2006년 당초 예산액(2005년 당초 예산액)

- 3,380백만엔(3,216백만엔)

## vii. 사업개시연도 1976년~

② 어항수역환경보전대책사업의 개요

i. 취지

- 어항구역 내 수역에서의 수질오탁, 악취 등은 어항의 이용, 어업자의 노동환경, 어촌의 생활환경 등에 악영향을 미치며 또한 주변수역의 수산자원생식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원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어항의 이용촉진, 어업자의 노동환경 등의 개선을 위한 어항수역에서의 환경보전대책을 추진한다.

ii. 사업내용

a. 공해방지대책사업

- 어항구역 내의 수역에서 오니, 기타 공해의 원인이 되는 퇴적물의 제거, 혹은 수질개선 도모를 위한 도수시설정비 중 공해방지계획(환경기본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것)에 따라 실시되는 것

b. 수역환경보전사업

- 어항구역 내에서의 수질보전 등 수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시행하는 다음과 같은 사업(단, 공해방지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수질저질개선시설 : 어업활동, 어업자의 노동환경, 어촌의 생활환경 등에 악영향을 미칠 오니, 폐수제거와 수질 저질개선도모를 위한 복사(覆砂) 및 조장, 간석 등의 정비

나. 어항정화시설 : 어항구역 내 수역의 수질개선 도모를 위한 도수시설, 청정해수도수시설 등의 정화시설정비

다. 폐유처리시설 : 어선으로부터 발생하는 폐유를 처리하는 시설정비

라. 청소선 : 어항구역 내 수역에서의 부유물, 쓰레기 등을 집적(集積), 폐기하기 위해 필요한 청소용 선박(부속기관 포함)의 건조 및 구입 혹은 보수

마. 폐선처리 : 어항구역 내에 방치되어 어업활동에 방해가 되는 폐선처리

c. 채택요건

- 공해방지계획에 따른 공해방지대책사업
- 기타 농림수산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
- 방치좌초선 처리는 계획사업비가 5천만엔 이상인 것

iii. 사업주체 : 지방공공단체

iv. 보조율

a. 공해방지대책사업 1/2

- b. 수역환경보전사업 ①~③ 1/2, ④ 1/4, ⑤ 1/3
- v. 과목
  - (항) 수산기반정비비
  - (목) 수산자원환경정비사업비 보조
  - (세목) 어항수역환경보전대책사업비 보조
- vi. 2006년 당초 예산액(2005년 당초 예산액)
  - 213백만엔(213백만엔)
- vii. 사업개시연도 1972년~

(3) 어촌의 종합정비사업

① 어항환경정비사업

i. 취지

- 어항의 환경향상에 필요한 시설을 정비하고 어항의 경관유지, 미화를 도모할 뿐 아니라 쾌적하고 운택한 어항환경을 형성함과 동시에 작업의 효율, 안전성 향상 등에도 이바지 할 것.

ii. 사업내용

- 식물재배 : 수목, 잔디, 울타리, 화단, 방조책, 방사책 등의 시설
- 휴식처 : 휴식처, 음수장, 화장실 등의 시설
- 운동시설 : 배구장, 그라운드 등의 운동시설 및 간이 놀이기구
- 친수시설 : 해변, 산책로, 낚시터 및 이들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돌제(突堤), 이안제(離岸堤) 등의 시설
- 안전정보전달시설 : 옥외확성장치, 경보장치, 안전정보게시판 등의 시설
- 기타 : 상기 시설의 부속시설로 문, 책(柵), 통로, 수도, 배수, 주차장 등 정비

iii. 사업요건 등

a. 대상요건

- 사업대상은 어항어장정비법의 제6조 규정에 따라 지정된 어항구역내의 어항시설용지 등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이 사업에 따라 조성된 시설을 원칙적으로 어항관리자가 관리운영 하는 것일 것.

b. 사업비요건

- 전체사업비가 50백만엔 이상인 것.
- ※ 어항환경정비사업의 전체계획면적은 다음과 같다.
  - ▷ 제1, 2종 어항 : 1,200㎡ 이상
  - ▷ 제3, 4종 어항 : 2,500㎡ 이상

iii. 사업주체 : 어항관리자 혹은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공단체

iv. 보조율 : 1/2

vi. 항목

- (항) 수산기반정비비
- (목) 어촌종합정비사업비보조
- (세목) 어항환경정비통합사업비보조

vii. 2006년 당초 예산액(2005년 당초 예산액)

- 1,347백만엔 (1,831백만엔)

viii 사업개시연도 1980년~

## ② 어항취락지환경정비사업

## i. 취지

- 어항배후의 어업취락지 등에서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수산업 진흥을 중심으로 한 어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한다.

## ii. 사업내용

- 어업취락도로정비, 수산음료잡용수시설정비, 어업취락배수시설정비, 방재안전 시설정비, 녹지·광장시설정비, 지역자원이용활용기반시설 정비, 토지이용고도화재편정비, 용지정비, 특허사업

## iii. 사업요건 등

## a. 대상 취락지 요건

- 가. 어항배후의 어업의존도 혹은 어가비율이 1위인 어업취락지
  - 나. 폐쇄성수역에 인접한 어장배후의 어업취락지(취락배수시설 정비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다. 어항배후 이외의 어업의존도 혹은 어가비율이 1위인 어업취락지(취락배수 시설정비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라. 어획노력량삭감실시계획책정 시의 어업의존도 혹은 어가비율이 1위인 어업취락지로 동 계획을 실시하는 어업단체가 지구 내에 있는 어업취락지
  - 마. 어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이상적조현상에 의한 양식피해를 보충할 수 있는 수역에 인접한 어업취락지(취락배수시설정비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 단, 사업채택연도가 최근 5년 이내로 적조가 발생한 해역과 인접한 어업취락지나 수질오탁과 관련된 환경기준이 별도 표-2의 2의 가의 A유형의 관련 기준치 및 나의 II유형 관련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역과 인접한 어업취락지에 한정된다.

## b. 인구요건

- 대상취락지의 규모는 인구 300명이상 5,000명 이하(어업취락배수시설정비는 인구 100명이상 5,000명 이하)
- 단, 낙도지역, 변두리 시정촌, 신흥산촌, 과소(過疎)지역, 오키나와, 아미미 군도 각 지역에서는 인구50명 이상 5,000명 이하.

## c. 사업비요건

- 전체사업비가 30백만엔 이상인 것(※녹지·광장시설정비의 전체계획면적은

2,500㎡ 이상인 것)

iv. 사업주체 : 도도부현, 시정촌

v. 보조율

- 1/2(오키나와 55/100)

(※ 지역자원이용활용기반시설정비에서 퇴비화시설은 1/3)

vi. 과목

- (항) 수산기반정비비

- (목) 어촌종합정비사업비보조

- (세목) 어촌형성종합정비사업비보조

- (상세세목) 어촌취락지환경정비사업

vii. 2006년 당초 예산액(2005년 당초 예산액)

- 4,476백만엔(10,312백만엔)

viii. 사업개시연도 1978년~

## ③ 어촌형성 종합정비사업

## i. 취지

- 낙도, 주변지역 등의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활력 있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업의 진흥과 함께 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하여 종합적인 생활향상을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입지한 어촌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역의 생산과 생활기반인 어항시설 정비 및 어촌의 생활환경정비를 종합적이고도 일원적으로 추진한다.

## ii. 사업내용

-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정비 상황 등을 고려한 어촌 가꾸기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어항시설, 어업취락지환경시설, 어항환경정비시설로부터 2시설이상을 선택하며 동일 계획 하에서 일체적·종합적으로 정비한다.

## - 시설내용

- 어항시설(제1종 어항만)
  - ▷ 외곽시설, 구역시설, 계류시설, 운송시설, 어항시설용지
- 어업취락지환경정비시설
  - ▷ 어업취락도로정비, 수산음료잡용수시설정비, 어업취락배수시설정비, 방재안전시설정비, 녹지·광장시설정비, 지역자원 이활용시설 기반정비, 토지이용고도화재편정비, 용지정비
- 어항환경정비시설
  - ▷ 식물재배, 휴식처, 운동시설, 친수시설, 안전정보전달시설 및 쓰레기처리 시설정비에 필요한 용지조성
  - ▷ 또한, 고령자비율이 20%이상인 어업취락지에서는 어업노동조건향상을 위한 방풍·방서시설 등의 고령자 등의 어업생산활동 및 생활증진에 이바지할 시설정비도 대상으로 삼는다.

## iii. 사업요건 등

## a. 채택기준

- 조건이 불리한 지역(낙도, 변두리, 신흥산촌, 과소(過疎), 반도, 아미미(奄美), 오키나와)에 있는 어업취락지로 어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향후 어업·어촌진흥을 도모할 것이 필요한 어업취락지. (어업의존도 혹은 어가비율이 1위이고 취락인구가 50인 이상 800인 이하인 어업취락지)



- b. 계획책정
  - 사업주체는 계획을 만들 때에 어촌형성과 관련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의향을 사업실시에 정확하게 반영시키기 위하여 지역주민, 방문객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 등으로부터 의견·의향을 청취한다.
- c. 사업비요건
  - 어항시설 : 3억엔 이상 10억엔 미만
  - 어업취락환경정비시설 : 3천만엔 이상
  - 어항환경시설 : 5천만엔 이상
- iv. 사업주체 : 도도부현, 시정촌
- v. 보조율
  - 어항시설분 : 1/2 (지역1/2 ~ 9/10)
  - 어업취락환경시설분 : 1/2 (오키나와 55/100) (퇴비화 시설 1/3)
  - 어항환경시설분 : 1/2
- vi. 과목
  - (항) 수산기반정비비
  - (목) 어촌종합정비사업비보조
  - (세목) 어촌형성종합정비사업비보조
  - (상세세목)어촌형성종합정비통합보조사업
- vii. 2006년 당초 예산액(2005년 당초 예산액)
  - 914백만엔(1,213백만엔)
- viii. 사업개시연도 1994년~

## ④ 어촌재생교부금

## i. 취지

- 어업의 근거지임과 동시에 어업자를 포함한 지역주민의 생활의 장이 되는 어촌에서는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경관이 뛰어나며 풍요로워 살기 좋은 어촌이 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른 수산업의 생산기반과 생활환경시설의 종합적인 정비가 이루어져 왔다.
- 그러나 어장환경의 악화, 어업자원의 감소, 과소화·고령화진전 등으로 지역 전체의 활력이 저하되어 가고 있어 지역이 주체가 되어 활력 넘치는 어촌재생을 추진할 것이 긴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 이와 같은 과제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지역의 창조력을 살리기 위하여 국가의 관여를 축소하고 시정촌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하여 지역의 기존스톡의 효과적인 활용 등을 통한 생산기반과 생활환경시설의 효율적인 정비를 추진할 새로운 구조를 창설하여 개성적이고 풍요로운 어촌재생을 지원한다.

## ii. 사업내용

- a. 사업실시주체가 어업자 및 지역주민의 의향을 기반으로 어촌의 재생 목표 및 객관적인 지표를 책정하며, 국가가 이들 목표,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을 채택한다. 이것에 따라 사업채택시 관여를 대폭 축소한다.
- b. 사업내용은 현행 수산업의 생산기반(어장시설 및 어장) 및 생활환경시설정비에 사업시설주체가 제안하는 지역의 창조력을 살려 어촌의 재생에 필요한 정비(조사·사회실험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포함한다. 단, 제안과 관련된 정비는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한다.)로 한다.
- c. 어업정세·사회정세의 변화 등에 따라 수요가 현저하게 감소하였거나 혹은 효과가 저하된 기존스톡의 전용 등을 도모하며 어촌재생을 추진한다.
- d. 사업완료 후 목표달성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공표하는 구조를 도입한다.

## iii. 사업요건 등

- a. 채택요건 : 시정촌이 책정하는 「어촌재생계획」에 따른 것
- b. 사업채택기간 : 2005년부터 2009년

## iv. 사업주체 : 시정촌

## v. 보조율

- 1/2 (단, 홋카이도, 낙도 60/100, 아마미, 오키나와 75/100)

- vi. 과목
  - (항) 수산기반정비비
  - (목) 어촌종합정비사업비보조
  - (세목) 어촌형성종합정비사업비보조
  - (세부세목) 어촌재생교부금
- vii. 2006년 당초 예산액(2005년 당초 예산액)
  - 9,650백만엔(3,000백만엔)
- viii. 사업개시연도 2005년~

## (4)성청(省庁) 연대강화와 관련한 교부금조치

## ① 항 정비교부금

## i. 취지

- 지방의 자주성·재량권향상과 지역재생의 관점에서 지방의 이용이 주체가 되는 지방항만과 제1종 어항에서의 공통된 과제에 보다 심도 있게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에 재량권이 있는 연대 사업을 실시하여 항만·어장의 고도이용을 추진한다.

## ii. 제도의 개요

## a. 사업내용

- 지방항만과 제1종 어항에서의 공통과제에 대응하는 시설정비를 시행한다.

## b. 실시주체

- 항만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방공공단체 및 어항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방공공단체

## c. 교부한도액 산정

- 대상 시설마다 계획기간(3~5년간)내에서의 현행 보조사업의 보조율, 보조대상범위규정에 따라 산정된 액수의 합계로 교부한도액을 산정한다.

## d. 제도의 기본적인 구조

- 실시주체는 공동으로 항정비교부금과 관련된 계획을 작성
- 내각부는 사업소관 성청(국토교통성 및 농림수산성, 이하 동일)의 동의를 얻어 계획을 허가
- 내각부는 허가된 계획에 따라 연도마다 교부금 액수를 정한 예산을 일괄계상
- 사업소관성청은 내각부에 일괄계상된 예산을 이체하여 교부금을 교부
- 시행주체는 사업완료 후 스스로 설정한 목표에 대한 성과에 관하여 사후평가가 실시

## iii. 제도의 특징

## a. 사업간 연대강화

- 개개의 보조제도에 의하지 않고 지역재생계획에 따라 사업간 연대를 갖는 예산배분이 가능

## b. 지방의 자주성·재량권 향상

- 교부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매년 소요 교부액 요청이 가능

- 사업진척에 따라 단연도의 국가·지방의 부담비율과 연도간 사업량 변경조정이 가능
  - 교부 결정액의 1/2미만의 범위 내에서 변경교부신청서 등의 절차 없이 다른 시설정비로의 할당이 가능
- c. 사무절차의 간소화
- 계획신청, 예산요청 등과 관련된 사무절차는 창구를 일원화함으로 대폭 간소화
- d. 성과주의적인 정책으로 전환
- 지방이 스스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완료 후에 목표달성상황을 엄격히 평가하는 구조 도입
- iv. 2006년 당초 예산액
- 8,500백만엔[내각부에 일괄계상]
- v. 사업개시연도
- 2005년~

## ② 오수처리시설정비교부금

## i. 취지

- 「지역재생을 위한 기본방침」, 「향후 지역재생추진의 방향과 전략」 등에 따라 지역이 자주·재량권 높은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부담금 제도개혁을 시행하여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소관의 오수처리시설 정비 시 상호 사업진도조정을 가능케 하여 효율적인 오수처리시설 보급촉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 ii. 제도의 개요

- 시정촌이 책정한 지역재생계획에 따라 매년 「오수처리시설정비교부금」을 교부한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 a. 시정촌이 지역재생계획을 책정하고 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다음에 열거한 「오수처리시설」 정비와 관련된 사항을 정해놓은 것
    - 농림취락배수시설, 어업취락배수시설[농림수산성]
    - 공공하수도[국토교통성]
    - 정화조[환경성]
  - b. 동일 시정촌에서 소관이 다른 2종류 이상의 시설정비를 계획기간 중(5년)에 실시함으로 효율적인 오수처리시설보급촉진을 도모하는 것일 것.
  - c. 대상구역은 지역재생계획구역 안에 있으며 대상구역의 경계 및 정비방법이 명확한 것
  - d. 사업실시에 따른 효과가 명확한 것

## iii. 제도의 특징

- a. 성청을 넘어 오수처리보급을 연대하여 추진
  - 일정한 구역 내에서 실시하는 공공하수도, 취락지 배수, 정화조시설을 연대하여 정비하도록 사업간 융통이 가능한 교부금으로 효율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 개개의 보조제도에 따르는 절차에 의하지 않고 시정촌이 정한 계획에 따라 5년 분량을 일괄적으로 허가한다.
- b. 지방의 자주재량권 존중
  - 기존의 도도부현 구상과 상관없이 시정촌의 자주성·재량권을 중시함으로 현시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비방법을 선택하게 하여 도도부현 구상을 위한 다음 회 검토 시에 반영한다.

- 기존의 보조대상범위, 지방단독부분에 대한 구별 없이 교부금을 총당할 수 있다.
- 계획의 범위 안에 있으면 단연도 국가·지방 부담비율 조정이 가능하다.

c. 성과주의적 정책으로 전환

- 시정촌의 자주·재량권을 높임과 동시에 스스로 오수처리보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그 성과로 사업완료 후의 목표달성상황을 엄격하게 평가한다.

iv. 2006년 당초 예산액(2005년 당초 예산액)

- 국비 83,300(49,000)백만엔

v. 사업개시연도

- 2005년~

3. 수산기반정비사업보조율일람

사업명	소관	어항종별 등	어항시설					어장설비			비고	
			외곽시설	수역시설	계류시설	용지·운송	정화/폐유	어초	양식장	증식장		
특정 어항어장 정비사업 분	본토	제1종~제3종	1/2					1/2	1/2			☆
		특정 제3종	2/3	1/2	1/2	1/2	1/2					
		제4종	2/3	2/3	1/2	1/2	1/2					
	훗카이도	제1종~제2종	7/10	7/10	6/10	5.5/10	1/2			훗카이도의 낙도는 훗카이도와 낙도 중 높은 쪽을 적용(*1)		
		제1종~제3종	8/10	8/10	6/10	5.5/10	1/2				낙도가교는2/3(*2)	
	낙도	제4종	8.5/10	8.5/10	2/3	5.5/10	1/2					
		오키나와	제1종~제4종	9/10					1/2	1/2	6/10	
	아마미	제1종~제4종	9/10	9/10	8/10	2/3	1/2					
	광역어장정비분								광역어장정비사업과 동을			
	어장환경보전창조분								어장환경보전창조사업과 동을			
광역 수산물공급기반정비사업 (광역어항 정비사업)	본토	제2종~제4종	1/2					1/2			☆	
	훗카이도	제2종·제3종	7/10	7/10	6/10	5.5/10	1/2			(*1)		
		제4종	7/10	7/10	2/3	2/3	1/2			(*2)		
	낙도	제2종·제3종	8/10	8/10	6/10	5.5/10	1/2					
		제4종	8/10	8/10	2/3	5.5/10	1/2					
	오키나와	제2종~제4종	9/10					1/2	1/2	6/10		
	아마미	제2종~제4종	9/10	9/10	8/10	2/3	1/2					
광역 수산물공급기반정비사업(광역어장정비사업)	본사	일반/근해어장						1/2			( )안은 한 시설의 사업량이 3만㎡이상 인 것	
	훗카이도	일반/근해어장						1/2				
	낙도	일반						1/2				
	오키나와	일반						6/10 (7/10)	1/2	6/10		
		근해어장						6/10				
	아마미	일반						1/2				



사업명	소관	어항종별 등	어항시설					어장설비			비고
			외곽시설	수역시설	계류시설	용지·운송	정화/폐유	어초	양식장	증식장	
지역수산물공급기반 정비사업	본토	제1종·제2종	1/2					1/2			☆
	홋카이도		7/10	7/10	6/10	5.5/10		1/2			(*1)
	낙도		8/10	8/10	6/10	5.5/10		1/2			(*2)
	오키나와		9/10					1/2	1/2	6/10	
	아마미		9/10	9/10	8/10	2/3		1/2			
어항어장 기능고도화 사업	본토	신설	1/2				1/2	-	1/2	☆	
		개량·보수	1/2				1/2				
	홋카이도	신설	1/2				1/2	-	1/2	(*1)	
		개량·보수	1/2				1/2				
	낙도	신설	5.5/10				1/2	-	1/2		
		개량·보수	5.5/10				1/2				
오키나와	신설	2/3				1/2	-	6/10			
	개량·보수	2/3				1/2					
아마미	신설	5.5/10				1/2	-	1/2			
	개량·보수	5.5/10				1/2					
어장환경 보전창조 사업	본토						1/2				
	홋카이도						1/2				
	낙도						1/2				
	오키나와						1/2(1억엔 이상인 것 6/10)				
	아마미						1/2				

주) ☆ 원자력발전시설 등 진흥계획과 관련된 기본시설 및 운송시설정비에 필요한 경비는 5.5/10

사업명	소관	어항종별 등	어항시설					어장설비			비고
			외곽시설	수역시설	계류시설	용지·운송	정화/폐유	어초	양식장	증식장	
어항수역환경 보전대책사업		공해방지대책사업	1/2								
		수역 환경 보전 사업	수질저질 개선	1/2							
			정화·폐유	1/2							
			청소선	1/4							
			폐선처리	1/3							
어업취락환경 정비사업	오키나와 외		1/2								
	오키나와		5.5/10								
	지역자원의 퇴비화시설		1/3								
어항환경 정비사업			1/2								
어촌 가꾸기 종합 정비사업		어항시설분	지역수산물공급기반정비사업과 동물								
		취락환경시설분	어업취락환경정비사업과 동물								
		어항환경시설분	어항환경정비사업과 동물								
어촌재생 교부금	본토		1/2					1/2			
	훗카이도		6/10					6/10			
	낙도		6/10					6/10			
	오키나와		7.5/10					7.5/10			
	아마미		7.5/10					7.5/10			
농림어업용 취발유 세자원대체 어항관련도로 정비사업	본토	주요	1/2								
		일반·부대	1/2·1/3								
	훗카이도	주요	5.5/10								
		일반·부대	1/2								
	낙도	주요	5.5/10								
		일반·부대	1/2								
	오키나와	주요	4/5								
		일반·부대	1/2								
	아마미	주요	7/10								
일반·부대		1/2									

■ 직할사업 부담율 일람표 ■

사업명	소관	어항종별 등	어항시설					어장설비			비고
			외곽시설	수역시설	계류시설	용지·운송	정화/폐유	어초	양식장	증식장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	훗카이도	제3종	(8.5/10) 8/10	(8.5/10) 8/10	2/3	5.5/10				상단( )는 훗카이도의 낙도	
		제4종	(8.5/10) 8/10	(8.5/10) 8/10	7/10	7/10					

■ 지역재생교부금 ■

사업명	소관	어항종별 등	어항시설	어장설비	비고
항정비교부금		제1종	1/2		
오수처리시설정비교부금			1/2		

## 4. 수산기반정비사업 등을 위한 지방재정조치

(1) 수산기반정비사업 등과 관련된 기채(起債)·교부세 조치

① 수산기반정비사업

(2005년 9월 현재)

지방채의 종류	대상사업 등	기채총당율 (%)	교부세산입율 (%)	상환기한 (거치기한)	
일반회계채	일반공공사업채 (통상분)	· 직할특정 어항어장정비사업	약90	아래 어항 정비분과 동일	20년(3년)
	일반공공사업채(확대분)	· 특정 어항어장정비사업 · 지역수산물 공급기반정비사업 · 광역수산물 공급기반정비사업 (광역어항, 광역어장) · 어항어장기능고도화사업 · 어장환경보전창조사업 (퇴적물 제거, 방치좌초선 처리 및 저질개선은 제외) · 어항수역환경보전대책사업 · 어항환경정비사업 · 어촌만들기정비사업 (어업취락배수시설은 제외) · 어업취락환경정비사업 (어업취락배수시설은 제외) · 어촌재생교부금 (퇴적물 제거, 방치좌초선 처리 저질개선 및 폐선처리, 어업취락배수시설 및 시정촌의 창조형정비는 제외)	약 90※	어항정비와 관련된 분은 통상채, 재원대책채 모두 후년도 50%산입 어항정비와 관련된 분은 재원대책채 분에 대해 후년도 50%산입	20년(3년)
		· 어항관련도로정비사업	약 90	어장정비분과 동일	20년(3년)
		과소대책사업채(과소채)	· 어항어장정비사업 ※어업취락배수시설 · 어항관련도로사업	100 약50 100	다음년도 70
	변지대책사업채(변지채)	※어업취락배수시설	약 50	다음년도 90	10년(2년)

주1) 대상사업 등의 란의 「·」는 세목 및 상세세목레벨의 사업명으로 표시

주2) 대상사업 등의 란의 「O」는 어항어장정비법 제4조 제1호가 규정한 어항어장정비사업으로 원칙적으로 국고부담(보조)대상인 사업

주3) 대상사업 등의 란의 「※」는 대상 시설로 정해져 있는 것.

지방채의 종류		대상사업 등	기채총당율 (%)	교부세 산입율 (%)	상환기한 (거치기한)
공영 기업 채	하수도 사업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업취락환경정비사업 (어업취락배수로 한정)</li> <li>· 어촌가꾸기 종합정비사업 (어업취락배수로 한정)</li> <li>· 어촌재생교부금 (어업취락배수로 한정)</li> </ul>	약 90  약 85	다음 연도 45	30년(5년) 단, 특별조치분 은 10년(2년)
	일반공공 사업채	· 어항수역환경보전 (중, 공해방지계획에 따른 것)	90%	50%	
공해 방지 대책 관련 재정 조치	일반단독 사업채	· 어장환경보전창조 (중, 주무대신의 지정을 받은 것)	도도부현 지정도시 70% 시정촌 75%	50% 50%	

※ 1) 통상채로 30%, 자원대책채로 60%가 총당

② 성정연대강화와 관련한 교부금

지방채의 종류		대상교부금	기채총당율 (%)	교부세산입율 (%)	상환기한 (거치기한)
일반 회계 채	일반공공 사업채 (확대분)	항정비교부금	약90	어항정비와 관련된 분은 통상채, 자원대책채 모두 후년도 50%도입	20년(3년)
	과소채				
일반 회계 채	과소채	오수처리시설 정비교부금	약90	다음년도 45	30년(5년)단 특별조치분은 10년(2년)
일반 회계 채	변지채				
공영 기업 채	하수도사업 채				

(2) 수산기반정비사업 등을 실시할 경우의 건설재원 사례

① 어장정비의 경우(A유형)

국비 50%	통상채 15%	재원대책채 ☆1 30%	일반재원 5%
		이중, 50%교부세조치	

주1) 재원대책채는 원리상환금을 다음년도에 공채비로 50%도입

② 어항정비의 경우(B유형)

국비 50%	통상채 ☆2 15%	재원대책채 ☆1 30%	일반재원 5%
	이중, 50%교부세조치	이중, 50%교부세조치	

☆1) 재원대책채는 그 원리상환금을 다음년도에 공채비로 50%조치

☆2) 통상채는 원리상환금의 50%를 다음년도에 사업비보정방식으로 조치

주1) 항정비교부금도 ②에 해당된다.

③ 어업취락환경정비사업 등으로 어업취락배수시설을 건설할 경우

- (단독 사업분으로 보조 사업분 대상이 아닌 2호 미만의 배수로 및 배수관, 처리시설의 문, 책(柵)을 평행하게 정비할 경우)

■ 일반지역의 경우 ■

보조사업분			단독사업분	
국비50%	하수도사업비 $50 \times 0.90 = 45\%$	수익자부담금 등 5%	하수도사업비 95%	수익자부담금 등 5%
	이중, 45%교부세 조치		이중, 45% 교부세 조치	

■ 과소지역의 경우 ■

보조사업분				단독사업분		
국비 50%	하수도사업비 $50 \times 0.90 \times 1/2 = 22.5\%$	과소채 $50 \times 0.90 \times 1/2 = 22.5\%$	수익자부담금 등 5%	하수도사업비 $95\% \times 1/2 = 47.5\%$	과소채 $95\% \times 1/2 = 47.5\%$	수익자부담금 등 5%
	이중, 45% 교부세 조치	이중, 70% 교부세 조치		이중, 45% 교부세 조치	이중, 70% 교부세 조치	
	1/2	1/2		1/2	1/2	

주1) 교부세 조치는 다음년도 원리상환금으로 이루어진다.(상동)

주2) 오수처리시설교부금도 ③에 해당된다.

④ 공해재해특별법에 따른 총무대신지정사업

■ 복사(覆砂), 준설 등(아리아케(有明)해, 아고(英虞)만) ■

사업비		
국비50%	일반단독사업채 70% (시정촌은 75%)	일반재원(30%) (시정촌은 25%)
	이중, 50% 교부금조치	

주1) 지방부담액에 대한 교부세 조치 : 35%(시정촌은 37.5%)

## 5. 비공공사업

### (1) 강한 수산업형성 교부금

#### ① 경영구조개선목표

##### i. 취지

- 본 목표는 수산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육성하고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는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어업생산체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어업생산기반으로서의 공동이용시설 등의 정비를 추진한다.
- 2006년에는 최근의 수산물을 둘러싼 국제적인 정세의 변화, 유가상승, 도도부현의 정책제안, 지진 등에 대한 방재강화대책추진에 대응하는 메뉴내용확충 등으로 한층 더 지역의 실정에 대응되는 수산시책추진을 도모한다.

##### ii. 사업내용

##### a. 어업생산기반 등의 정비

- 어업자원의 유지·확대, 어장환경보전을 위한 정비 및 자원회복계획 실시 추진, 의욕과 능력 있는 담당자 확보·육성, 합병어협·인정어협의 경영기반강화, 산지기능 강화와 품질 높은 수산물공급추진을 위한 시설정비를 시행한다.

[대상시설 : 치어생산시설, 수산물하역시설, 수산물가공처리시설 등]

##### b. 수산물공급시설 등의 정비

- 공공사업 등과 관련된 사업과 일체화된 지역수산 종합위생관리대책기본계획 등에 따라 고도위생관리, 환경부하 저감추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정비한다.

[대상시설 : 수산선도유지시설, 수산폐기물 등 처리시설, 어체 선별기 등]

##### c. 오키나와현 수산업생산기반 등의 정비

- 오키나와현에서의 생산 확대 및 생산력향상도모를 위한 어장조성 및 개량을 위한 정비, 자원배양 및 관리추진, 어선어업의 근대화 및 산지에서의 수산물유통 등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을 정비한다.

[대상시설 : 부어초 설치, 치어공급시설, 어선보전수리시설, 수산물하역시설 등]

##### d. 유가상승 대책관련시설정비(신규)

- 유가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유가하락에 이바지할 수산관계공동이용시설정비를 시행한다.

[대상시설 : 유가보급시설, 육전시설]

##### e. 김 양식업 구조조정·경쟁력강화시설정비(신규)

- 어협 등이 책정한 구조개혁계획에 따라 김 양식업자가 대처할 고성능 김



채취선 및 대형 김 자동건조기도입에 대한 지원을 시행한다.

[대상시설 : 김 고성능채취선, 대형 김 자동건조선]

iii. 사업실시용 건수

- 수익호수 10호 이상, 내용연수 5년 이상 등

iv. 사업실시주체

- 지방공공단체, 수산업협동조합 등

v. 사업실시기간

- 2005년 ~ 2009년(5년간)

vi. 2006년도 개산 결정액

- 11,823,420천엔 이내

vii. 교부율

- 정액(1/2, 4/10, 1/3, 2/3 이내)

## ② 어촌지역의 활성화목표

## i. 취지

- 최근의 어항이용형태는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으며 어선의 안전한 계류, 효율적인 준비·양육 등의 작업 외에 해양성 레크리에이션, 교류학습 등의 도시어촌간의 교류 등 폭넓은 이용이 도모되고 있어 보다 빠르고 용이하게 이용하기 위한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것들의 다양화된 이용 등 어항이용의 고도화를 위한 시설정비를 추진한다.
- 또한 미래의 대규모지진·해일 등의 발생에 대한 「재해에 강한 어업지역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하여 하역시설 등의 내진강화, 비상용전원확보를 위한 시설 등을 추가한다.
- 한편 도시와 농어촌이 공생·대류 할 수 있는 활력 넘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람·사물·정보」가 순환되는 공통된 사회기반을 겸비한 새로운 마을 만들기 실현을 목표로 생활기반, 교류기반, 정보기반시설정비를 추진한다. 이들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산물관매·제공시설 등으로 보다 효과적인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 어업 취락지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육지 및 해상도 대상으로 삼아 대상지역을 확충한다. 또한 지역 내에 있는 시설의 에너지절약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절약형시설을 추가한다.

## ii. 사업내용

- a. 어항의 고도이용을 위한 정비(대상지역은 원칙적으로 어항어장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어항구역 내)
  - 가. 어항구역 내 혹은 주변어항구역 내에 계류하는 방치정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방치정 수용시설정비
  - 나. 어항환경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녹지·광장의 미화·이용정서질서촉진시설정비
  - 다. 어항의 안전성향상, 노동경량화, 오수처리로 인한 위생적인 환경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부잔교 등의 어항환경개선추진시설정비
  - 라. 형성육성어업 등의 지원을 위한 심층수 등의 이활용 시설정비
  - 마.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 등의 내진강화, 비상용전원확보를 위한 시설 등
- b. 어촌커뮤니티기반정비(대상지역은 어항어장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어항의 배후 취락지 및 어업인구조사 대상이 되는 어업취락지. 단, 지역산물관매·제

공시설, 자연환경활용시설 등에 대해서는 보다 효과적으로 목적이 달성될 경우 해당취락지주변의 육지와 해상도 대상에 포함)

가. 지역생활, 커뮤니티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방재안전시설(시설의 내진강화, 비상용전원확보를 위한 시설 등을 포함), 자원절약형 시설 등의 생활 기반시설정비

나. 지역특성에 따라 개성 있는 어촌 가꾸기를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와 어촌의 교류의 거점이 되는 어촌체험학습시설과 지역산물관매·제공시설 등의 교류 기반시설정비

다. 어항어촌에서의 고도의 정보 활용, 도시와 어촌의 쌍방향정보순환 등을 도모하기 위해 CATV 등의 정보기반시설정비

라. 아름다운 어촌 가꾸기를 추진하기 위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시설 등의 정비

iii. 사업비요건

- 도도부현 15,000천엔 이상 기타 5,000천엔 이상

iv. 사업실시주체

- 도도부현, 시정촌, 수산업협동조합 등

v. 사업실시기간

- 2005년~2009년(5년간)

vi. 2006년 개산 결정액

- 11, 823,420천엔 이내

vii. 교부율

- 정액(1/20이내 등)

(2)보조금

① 어촌어장환경개선대책사업

i. 취지

- 폐쇄성수역 등에서는 하수도 등의 정비가 늦어짐으로 하천 등을 통해 생활잡배수가 유입되어 수질, 저질악화가 초래된다. 이들 생활잡배수로 인한 수역환경악화는 어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게 되므로 어장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역에서의 정화대책사업실시와 더불어 하천 등의 상류지역도 포함하는 광역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또한 어촌에서는 도시와 비교해 현저하게 낙후된 생활환경시설정비가 시급함에도 개인적인 부담을 동반하는 오수처리시설정비와 접속은 지역의 합의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로 어장환경의 보전, 취락지의 정주환경개선이 라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 따라서 어촌과 어장환경개선을 위한 광역적이고 환경보전을 위한 대책을 촉진시켜나가기 위하여 전국적인 단위로의 보급과 계몽활동을 실시한다.

ii. 사업내용

a. 어촌과 어장의 환경보전과 관련된 보급개발활동실시

- 생활잡배수로 의한 어업에 대한 영향 등을 어장환경의 보전과 관련한 대처 및 보급개발활동 및 어촌에서의 오수처리시설정비에 대한 합의형성촉진을 전국적인 단위로 실시한다.

iii. 사업실시주체

-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iv. 사업실시기간

- 2002년 ~ 2006년

v. 2006년도 개산 결정액

- 13, 955천엔

vi. 보조율

- 정액

(3) 위탁비

① 어항어장관리와 이용의 효율화사업

i. 취지

- 어항과 근린앞바다에서의 증양식장 등의 어장은 어업생산활동의 기지로 그 적정한 이용과 안전성확보는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의 안정에 필수 불가결한 중요한 과제이지만, 최근의 의심스러운 어선 등의 출몰, 밀항 · 밀수사건과 밀어발생 등 어항어장의 안전성에서 문제가 발생함과 동시에 어장의 환경변화와 해일 등에 대한 방재상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 이와 같은 사회정세, 환경의 변화에 대해 정상적인 데이터수집, 정서관측에 따라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연락체제구축이 요구되고 있어 기존의 관리체제로는 충분한 대응이 곤란하다.
- 어항어장의 적절한 이용의 효율화, 안전성향상, 방재거점으로서의 기능 확보를 목표로 에너지 절약화 · 자동화를 도모한 고도의 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시스템구축으로 인한 운용체제방식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함으로 전국적으로 보급을 도모한다.

ii. 사업내용

a. 시스템설계 · 개발

- 어항어장의 안전기능향상과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항어장에서 선박의 입출항관리, 상시감시, 방재기능 확보 등을 실현하는 고도의 관리시스템을 설계, 개발한다.

b. 모델지역에서의 시스템도입 및 가이드라인 책정

- 모델지역에서의 시스템을 설치 · 도입하고 시스템의 평가결과를 분석한다. 운용체제방법 등을 검토한 후 범용적인 시스템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한다.

iii. 위탁처

- (재)어항어장어촌기술연구소

iv. 사업실시기간

- 2004년 ~ 2006년

v. 2006년 당초 예산액

- (목) 수산업진흥사업 위탁비 75,532천엔

## ② 재해에 대비한 방치정의 적절한 수용추진사업(신규)

## i. 취지

- 2004년도는 세계적으로도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국민의 재해에 대한 인식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항·항만·하천 등에 방치된 레저용 선박(Pleasure-boat) 등이 해일·고조·태풍 등의 재해 시 배후 어촌 등에 지대한 피해를 끼칠 것이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방치정은 재해발생시 피난과 구조 활동 등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된다.
- 어항에서는 어업 생산 활동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항만 하천에서도 각각 선박이용, 지수, 하천이용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레저용선박은 수역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므로 어항, 항만 및 하천의 각 관리자가 보다 연대를 강화하여 대책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 이상과 같이 관계성청이 연대하여 레저용 선박 등의 이용특성과 수역·지역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해대책의 일환인 방치정 대책추진을 도모한다.

## ii. 사업내용

## a. 시스템설계·개발

- 어항어장의 안전기능향상과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항어장에서 선박의 출입항관리, 항시감시, 방재기능 확보 등을 실현할 고도의 관리시스템을 설계, 개발한다.

## b. 모델지역에서의 시스템도입 및 가이드라인 책정

- 모델지역에서 시스템을 설치·도입하여 시스템의 평가결과를 분석한다. 운용체제를 검토하여 범용적인 시스템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한다.

## c. 방치정의 적절한 계류·보관을 위한 실태조사

- 국토교통성 항만국, 하천국과 연대하여 수역 및 주변 육상에서의 방치정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d. 방치정의 적절한 계류·보관을 위한 수용방법검토

- 수역과 지역별로 방치정 대책추진상황과 지역특성, 소형선박의 이용특성, 방치정으로 인한 재해 시 2차 피해 등을 감안한 규제조치도입방법(어항과 항만에서 통일된 방치금지구역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책정)과 계류보관 시설정비방법을 검토한다.

## e. 지해 발생시 피셔리너의 활용조사

- 피셔리너를 이용한 레저용 선박 등의 소유자의 의견을 얻어 지해발생시 피셔리너활용에 관한 조사·검토를 실시한다.

iii. 위탁처

- 민간단체

iv. 사업실시기간

- 2006년~2007년

v. 2006년도 예산액

- (목) 수산업진흥사업위탁비 25,000천원

## ③호소의 어장개선기술개발사업

## i. 취지

- 호소어장은 폐쇄성수역이라는 등의 이유로 수질 및 저질의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코이헤르페스(잉어에 감염되는 헤르페스) 등의 병균발생과 외래어 유입 등의 영향은 호소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호소어장의 보전·수복에 의한 어업재생은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호수는 음용수 등에도 이용되므로 호소어장의 보전·수복은 수질보전의 관점에서도 요구되는 바이다. 이와 같이 호소어장은 해면어장과는 다른 조건·과제를 안고 있어 어장재생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수질환경 그 자체의 개선 등 독자적인 시점과 기준에 입각한 어장 보전·수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ii. 사업내용

- a. 호소어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 정리 및 호소어장의 특성에 대응한 어장보전·수복기술검토
- b. 호소어장의 보전·수복기술을 활용한 모델사업실시 및 사업효과모니터링 등을 통한 모델사업검증(3지구)
- c. 모델사업의 검증결과에 따라 호소어장의 보전·수복의 가이드라인 책정

## iii. 위탁처

- (사)수산토목건설기술센터, 시가현, 시마네현

## iv. 사업실시기간

- 2006년~2008년

## v. 2006년 당초 예산액

- (목) 수산업진흥사업위탁비 77,000천엔



④ 생물의 다양성을 고려한 거머리말조장 조성기술개발조사사업

i. 취지

- a. 일본의 내항지역에서는 매립,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수산자원증식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거머리말조장이 감소되고 있다. 따라서 NPO법인, 시민단체 등이 주체가 되는 거머리말조장 등의 조장재생을 위한 시도가 각지에서 시작되고 있으며 「자연재생추진법」에 따라 자연재생과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연재생기본방침」이 2005년 4월에 각의 결정 되어 앞으로 자연재생을 목적으로 한 거머리말조장 조성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 b. 그러나 최근의 연구성과에 따르면 일본연안지역의 거머리말조장은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이 알려져 전혀 다른 유전적 특성을 가진 거머리말조장 파종과 이식이 이루어지면 거머리말조장의 유전적 다양성과 지역고유성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한 일부 해역의 거머리말조장류를 옮겨 심은 기반을 전국에 판매하려는 움직임도 있으나 이 같은 행위는 생물다양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가령 거머리말조장류의 유전적인 차이가 명확하지 않은 채로 거머리말조장조성이 추진된다면 거머리말조장류의 유전적다양성과 지역고유성이 저하될 우려가 생기게 되며 또한 이로 인해 조장조성에 대한 환경보호단체 등의 반발을 사게 되어 거머리말조장 조성사업은 그 자체의 실시도 곤란해지게 된다.
- c. 따라서 일본연안에 널리 분포된 거머리말조장을 채취, 분석하여 유전자단계에서의 유사·상이점을 파악하여 거머리말조장의 유전적인 다양성과 지역의 고유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등 현재의 생태계와 어업활동에 대한 영향 등을 안전하게 조성할 방법 등을 조사, 검토한다. 또한 이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바다의 자연재생가이드라인을 책정하여 지방공공단체, 전국의 NPO, 시민단체, 어업자단체 등 거머리말조장조성과 관련된 단체에 배포함으로써 기존의 어항어장정비사업에서의 거머리말조장조성사업과 함께 일반인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으로서의 조장조성의 자연재생도 추진한다.

ii. 사업내용

- a. 거머리말조장류의 유전적 다양성 해석조사
  - 주요 거머리말조장류의 유전자단계에서의 해석으로 지역별 종류별을 조사한다.

- 가. 전국주요해역에서의 거머리말조장(종) 샘플수집
- 나. 유전자단계에서의 거머리말조장류의 차이 해석
- 다. 해석결과 정리
- b. 거머리말조장의 자연재생 가이드라인 책정조사
  - NPO법인 등이 거머리말조장조성의 자연재생사업을 실시할 경우의 가이드라인을 작성한다.
- 가. 적절한 거머리말조장 조성방법 검토
- 나. 민간단체 등에 의한 거머리말조장 조성지침서 작성
- iii. 사업실시주체
  - 독립행정법인수산종합연구센터, 사단법인 마리노포럼 21
- iv. 사업실시기간
  - 2004년 ~ 2006년
- v. 2006년도 당초 예산액
  - 57,621천엔
  - (목) 수산업진흥사업 위탁비 16,625천엔
  - (목) 수산업진흥사업 민간단체 위탁비 10,996천엔

⑤ 연안지역환경정보고도화사업

i. 취지

- 일본연안지역의 환경적 상황은 매립 등으로 인한 조장·간석감소 등 다양한 원인으로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요소가 복합적이고 중첩되어 있어 악화된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다.
- 어장환경은 지금까지 도도부현의 수산부국 등에서 수산동식물의 생식상황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에 따라 측정기간 등이 다른 등 여러 현에 걸친 광역적이고 복수화된 조사로 어장환경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또한 관계성청에서도 소관기관은 각각의 목적에 따라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수산자원에 대한 영향에 특히 착안하여 실시되고 있지 않아 환경정보데이터 활용 등 유기적인 정보 연대는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우 복수의 현(관계현) 및 관계기관은 이를 조정하여 조사계획을 세워 새로이 공동조사가 필요하게 되는데 대책이 늦어지거나 조사비증대가 예상된다.
- 따라서 본 사업은 연안지역의 수산자원에 착안하여 통일된 환경조사방법을 개발함과 동시에 개발한 방법으로 유기적인 관리·활용체제시스템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연안지역에서의 환경정보의 고도이용을 도모하여 일본의 연안어장환경의 효율적이고 실효적인 보전창조를 촉진하는 것이다.

ii. 사업내용

- a. 수산자원에 착안한 통일된 어장환경조사방법개발
  - 광역적인 어장환경평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에 착안한 어장환경조사(항목, 정도, 빈도 등)의 통일된 방법 등 개발
- b. 어장환경정보의유기적인 관리·활용체제정비
  - 연안지역의 환경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서 유기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정보관리·활용시스템개발
- c. 모델지역에서의 검증시험
  - a, b와 함께 모델지역에서 환경정보 등에 관한 고도의 활용체제를 정비하고 모델시스템을 작성
- d. 시스템 및 가이드라인 제시
  - c의 실증으로 얻어진 자료를 통해 전국적인 보급을 위한 과제를 검토하고 이들을 정리한 시스템과 가이드라인을 제시

iii. 위탁처

- 독립행정법인수산종합연구센터

iv. 사업실시기간

- 2005년 ~ 2006년

v. 2006년 당초 예산액

- (목) 수산업진흥사업 위탁비 39,755천엔

⑥ 생육환경이 열악한 조건하에서의 증양식기술개발조사사업

i. 취지

- 일본의 오키나와 등 아열대지역과 파라오 등 해외 도서국(島嶼國)의 열대해역에서는 백화나 식해 등으로 인한 산호분포면적이 감소되면서 수산동식물의 생육환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들 해역에서는 신속한 산호초회복·창조가 요구되나 이를 위한 기술은 아직 확립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 이 같은 관점에서 산호의 생육조건이 열악하여 산호감소가 우려되는 『오키노토리(沖ノ鳥)섬』을 대상으로 넓게는 다른 해역에서도 적용 가능한 산호증양식기술개발을 시행하기로 한다.

ii. 사업내용

a. 현지상황파악

- 기존자료 분석, 현지조사 등으로 현상분석

b. 치어생산기술개발

- 오키노토리섬에 생육하는 산호의 효율적인 증양식방법개발을 위한 해당생물의 치어생산기술개발

c. 증양식기술대책 선정

- 오키노토리섬에 적용 가능한 증양식기술 선정 및 대책시설 등의 제작·준비

d. 실증실험실시

- 선정된 증양식기술을 이용하여 오키노토리섬에서 실증실험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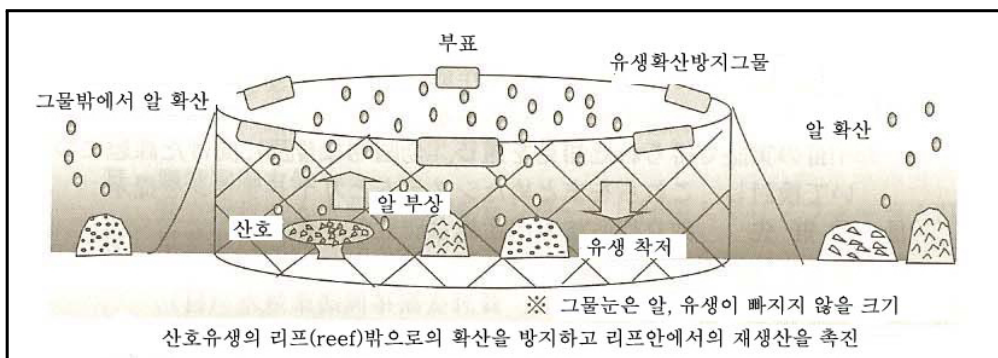
e. 증양식기술 확립

- 생육환경이 열악한 조건하에서 증양식기술의 가이드라인 작성

iii. 위탁처 : 사단법인수산토목건설기술센터

iv. 사업실시기간 : 2006년~2008년

v. 2006년도 당초 예산액 : (목) 수산업진흥사업 위탁비 300,000천엔



## ⑦ 조장·간석생산력 등에 관한 개선모델 사업

## i. 취지

- 조장·간석은 수생생물의 산란·유치어 육성·먹이확보의 장으로 수산자원의 유지·증대에 크게 기여함과 동시에 해수중의 유기물분해나 영양염 흡수로 인한 수질·저질정화기능이 뛰어나 양호한 연안지역환경을 유지하고 안정된 수산자원공급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에는 「이소야케(물가의 암석에 석회조류가 번무 하는 등의 현상)」로 불리는 조장의 대규모 소실, 간석에서의 생산력저하 및 수질악화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여 일본의 연안어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신속한 문제해결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 이소야케와 간석의 생산력저하는 그 원인추정과 대책제안이 몇 가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책의 지속적인 효과가 명확하지는 않는 등의 이유로 전국적으로는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본 사업에서는 이들에 대한 대책의 지속적인 효과를 검증함과 동시에 지방행정기관과 어업관련자 등이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에 몰두하여 그 성과를 가이드라인으로 정리하여 전국으로 보급함으로써 전국적인 이소야케대책, 간석생산력개선대책을 추진한다.

## ii. 사업내용

## a. 긴급한 이소야케대책 검토

- 이소야케대책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 성과 등을 수집·분석하여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이소야케대책방법을 검토하고 과제를 정리하여 이들 성과를 바탕으로 이소야케대책 가이드라인을 작성한다.

## b. 간석의 생산력개선대책 검토

- 간석의 생산력개선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성과 등을 수집·분석하여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생산력개선방법을 검토하고 과제를 정리하며 이들 성과를 바탕으로 간석의 생산력개선가이드라인을 작성한다.

## iii. 위탁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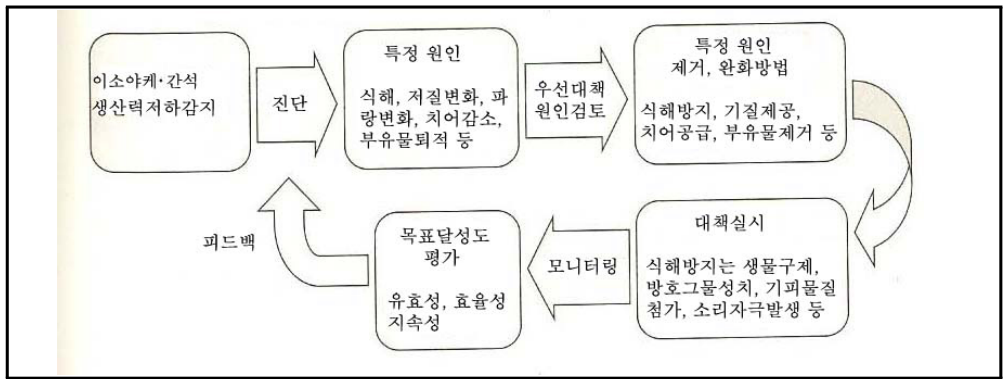
- 독립행정법인수산종합연구센터

## iv. 사업실시시간

- 2005년 ~ 2007년

## v. 2006년도 초기 예산액

- (목) 수산업진흥사업 위탁비 35,005천엔



## ⑧ 증양식기능 등 실증조사사업

## i. 취지

- 최근 가리비, 굴 등의 어패류양식생산량이 안정되며 지역의 어업경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패류양식으로 발생하는 껍질이 연간 약 50만톤에 이르는 등 환경문제 등도 우려되고 있다.
- 또한 어항시설은 많은 어패류의 산란·생육의 장으로 이용되며 연안지역의 수산자원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이 주목되어 왔으나 어항내외의 수역환경 악화 등으로 그 기능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 이들 과제를 해결함으로 연안지역의 환경개선을 도모함과 동시에 어장육성사업추진을 도모하는 등 지속적인 수산업발전 실현에 노력하고자 한다.

## ii. 사업내용

## a. 껍질을 활용한 증양식장조성 실증조사

- 껍질 등 수산관련 부산물의 리사이클 추진으로 순환형 어촌사회 만들기를 도모하기 위하여 껍질의 리사이클에 대한 범용적인 용도확대를 도모하면서 특히 요구가 많은 증양식장 조성으로의 활용에 대한 기술개발과 실증시험을 실시하여 가이드라인을 책정한다.

## b. 자원회복에 적합한 수역환경조사

- 수산자원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역별로 선정된 모델수역에서 수질 등의 환경조건을 조사함과 동시에 어항시설이 본래 갖는 생물육성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설개량방법 등에 관하여 조사검토를 실시하여 가이드라인을 책정한다.

## iii. 위탁처

- (재) 어항어장어촌기술연구소
- (사) 수산토목건설기술센터

## iv. 사업실시기간 2004년 ~ 2006년

## v. 2006년 초기 예산액 62,304천엔



⑨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수역환경개선사업

i. 취지

- 어항내외의 정온수역은 수산동식물의 생식공간과 산란장소로 상당히 효과적인 환경조건을 갖고 있어 치어방류나 양식 등, 어장육성어업의 장으로서의 활용이 도모되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효율적인 수산물 유통을 시행할 목적으로 이 수역을 활어유통의 축양수면(畜養水面)과 중간육성수면(中間育成水面)으로 활용할 기회가 증대되고 있다.

- 그러나 이들 수역의 대부분은

- a. 정온도가 높은 반면 외해와의 해수교류가 충분치 않아 수질 등의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 b. 일본의 연안해역에서는 매년, 적조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양식어업 등에 많은 피해를 미치고 있다.
- c. 최근 O-157 등으로 인한 식중독사건과 BSE문제 등을 계기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공급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수질환경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어항내외의 정온수역수질을 개선하고 적조 등의 어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식, 축양, 중간육성, 치어방류 등 수산이용형태에 따른 수질기준과 관리방법을 검토함과 동시에 풍력 등의 자연에너지를 활용한 저비용의 해수교환방법으로 수질개선방법을 검토하여 수역환경개선대책을 가이드라인으로 정리하여 전국으로 보급할 것을 도모한다.

ii. 사업내용

a. 수역환경개선방법 검토

- 대상어종과 수역의 이용형태마다 수질목표를 설정함과 동시에 자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한 해수교환방법, 수역의 유지관리방법을 검토한다.

b. 시뮬레이션에 의한 검토

- 수역의 형상과 이용형태별로 모델수역을 책정하고 수질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시뮬레이션에 의한 해수교환을 실시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해수정화방법 및 적조로부터의 피해방지방법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c. 가이드라인 작성

- 모델수역에서의 검토결과를 유형화하여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보급을 도

모한다.

iii. 위탁처

- (사) 수산토목건설기술센터

iv. 사업실시기간

- 2005년 ~ 2007년

v. 2006년도 당초 예산액

- 57,720천원

⑩ 도시어촌교류촉진사업

i. 취지

- 도시와 어촌의 교류는 국민의 수산업 및 어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건강하고 여유 있는 생활에 기여함과 동시에 수익기회증대 등 지역의 활성화와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므로 그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교류촉진방법검토, 교류정보조사, 보급계몽활동 및 교류실천활동 등을 실시해 오고 있다.
- 그러나 2007년 문제로 대두되는 회사 등을 정년퇴직한 후 시간과 돈에 여유가 생겨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는 부부나 아이양육을 마쳐 시간에 여유가 생긴 여성 등이 어촌 등에서 여가를 즐기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조사 · 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특히 이와 같은 층의 요구에 대응되는 활동방법을 제안하여 좀 더 효과적인 도시어촌교류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 또한 본 사업으로 얻어진 경험과 지식을 전국 각 지역에서 주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의식계몽 등을 위한 심포지움과 타운미팅 등의 전개도 도모한다.

ii. 사업내용

a. 시니어를 위한 교류활동조사사업(신규)

- 시니어(베이비붐세대 등)를 위한 교류활동방법을 제안한다.

가. 시니어가 의식을 갖고 어촌과 교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니어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함과 동시에 선진지역에서의 조사를 실시한다.

나. 모델지구에서의 실제 활동으로 문제점 파악 · 정리를 시행함과 동시에 개선과제를 보고한다.

b. 도시어촌교류대책사업(지속)

- 교류촉진방법검토, 교류정보조사, 심포지움이나 타운미팅 등의 보급계몽활동, 교류실천활동

c. 아이들의 체험활동조사사업(지속)

- 차세대를 담당할 아이들을 중심으로 초중학교와 연대한 체험활동보급 등을 실시

iii. 위탁처 : 민간단체

iv. 사업실시기간 : 2003년 ~ 2006년

v. 2006년도 개산 결정액 : 53,004천엔

## 6. 조사사업

### (1) 수산기반정비조사비

#### ① 사업 목적

- 이 사업은 수산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항 어촌 및 어장정비에 요구되는 바에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기 위해 수산기반정비의 향후 전개방향을 검토함과 동시에 그 실현화를 위해 필요한 계획기술 및 설계기술·시공기술 등의 개선과 방법확립을 도모함으로써 수산기반정비사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실시 등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사업 내용

- 이 사업에서는 수산기반정비조사로 다음에서 열거한 조사항목과 이와 관련된 조사과제의 전부 혹은 일부에 관하여 실시한다.

##### i. 수산기반정비 기초조사

- 어촌 등의 사회경제적조사, 향후 수산기반정비의 기본방침책정 및 수산기반정비효과를 지역경제에 대입하는 등의 사후에 필요한 조사

##### ii. 수산기반정비 기준조사

- 설계·계획기술기준책정 및 기술정보의 정리·분석에 필요한 조사

##### iii. 수산기반정비시공기술조사

- 적산시공에 필요한 표준적산·시공기준 등의 검토 및 시공기술개발에 필요한 조사

##### iv. 수산기반정비신기술개발조사

- 큰 효과가 기대되는 새로운 수산기반시설 신기술개발에 필요한 조사 및 실용화를 위한 실증시험

##### v. 수산기반정비 생물환경조사

- 수산기반정비의 생물환경에 대한 영향·효과파악과 생물의 생식장을 효과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생물환경 등의 조사

##### vi. 수산기반정비사업평가조사

- 수산관계공공사업 등의 사업평가 및 정책평가의 평가방법개발, 직할사업 등의 사업계획검토

##### vii. 광역어장정비개발해황조사

- 일본의 자원관리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규모어장정비를 염두에 둔 개발을 위한 조사

##### viii. 수산기반정비 실증조사

- 전국에서 특이한 환경에 있는 아리아케(有明)해의 저질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조사

(2) 수산기반정비조사비보조

① 사업의 목적

- 어항의 기능증진, 어장정비 및 개발, 어항배후에 있는 어장취락지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함으로 수산기반정비사업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이며 원활한 실시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사업의 내용

- i. 수산기반정비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실시에 관하여 기본이 되는 계획(마스터플랜)을 책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로 그 지역에서의 수산기반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 ii. 수산기반정비사업과 관련된 계획작성 및 그 실시와 관련된 과제를 갖는 사업·지구에 관하여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로 수산기반정비사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
- iii. 수산기반정비사업과 관련해 기술적인 과제를 갖는 사업·지구에 관하여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로 수산기반정비사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

## 7. 기타 사업·대처

### ① 어항특구(특정 어항시설운영고도화추진사업)

#### i. 취지

-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등 고도화되고 다양한 수산물에 대한 국민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자금, 경영노하우 등의 능력을 활용한 고도의 위생관리, 높은 수준에서의 선도유지 등 어항시설기능의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어 구조개혁 특별구역 내 어항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행정자산인 어항시설을 빌려주어 사업자 스스로 재량권을 갖고 시설을 운영하게 하는 특구제를 만든다.

#### ii. 제도의 개요

- 민간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어항관리자가 선정한 사업자가 수산물과 관련된 위생관리방법개선 등 어항시설기능의 고도화를 도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는 행정재산인 어항시설(어획물처리, 보관 및 가공용으로 제공되는 시설 등) 대여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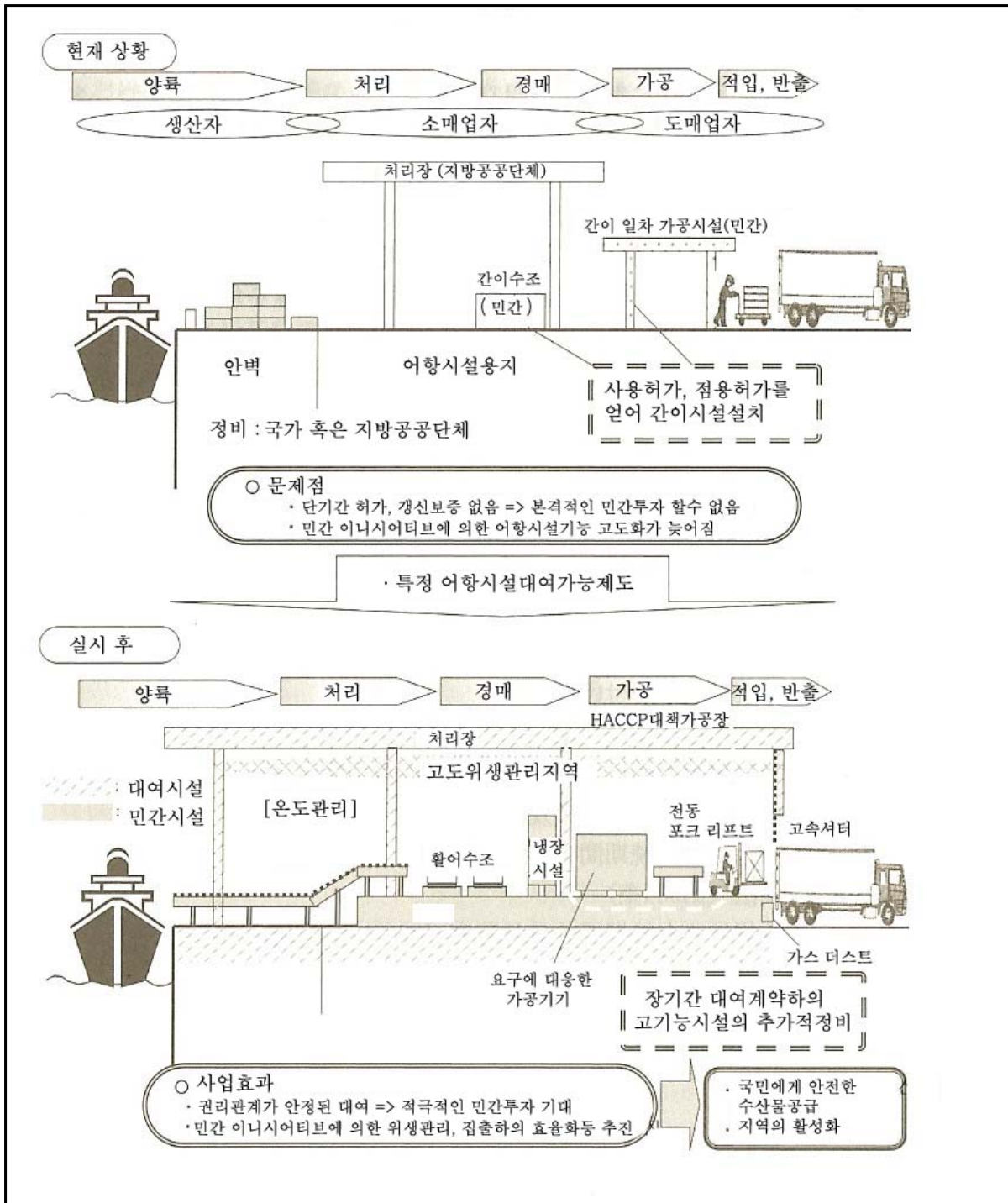
#### iii. 규제완화 내용

- 국유재산법(제18조 제1항)  
행정재산의 대여허가
- 지방자치법 (제238조의 4 제1항)  
행정재산의 대여허가
- 어항어장정비법(제37조 제1항)  
어항시설 대여와 관련된 어항관리자의 허가 면제
- 차지차가(借地借家)법 (제3조 및 제4조)  
차지권의 존속기간의 최단한도 (30년) 철폐
- 민법(제604조)  
임대차의 존속기간의 최장한도(20년) 철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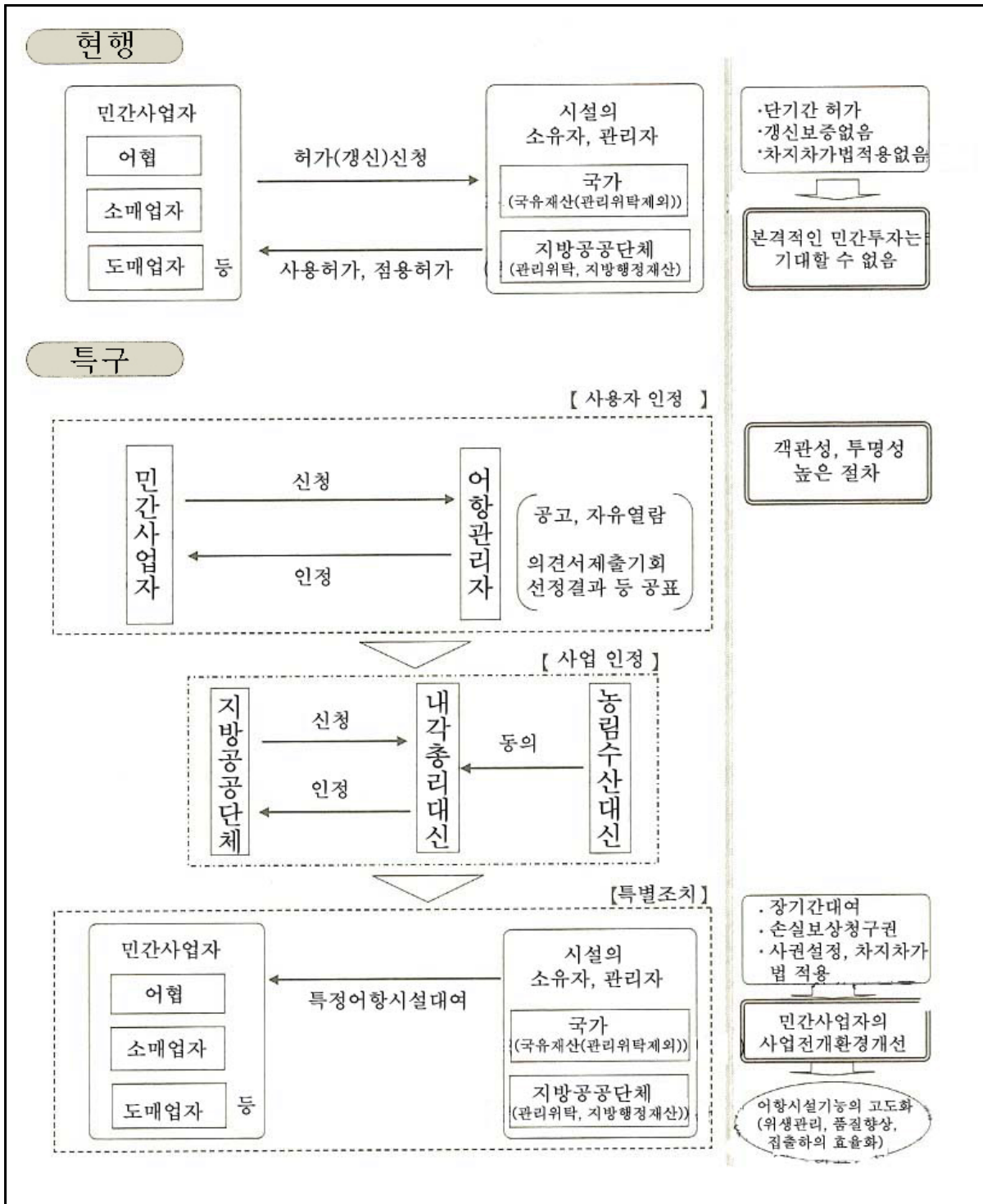
#### iv. 시행일시

- 2004년 10월 1일

■ 어항특구의 이미지 ■



■ 어항시설 사용, 대여와 관련한 행정제도와 특구제도의 비교 ■





② 지역수산 종합위생관리대책추진사업

i. 취지

- 수산물의 품질·위생관리대책의 전국적인 전개와 소비자로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산물의 품질·위생관리에 대한 대처의욕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사업인 수산기반정비사업과 비공공사업인 각종 수산관계사업이 일체화 된 종합적인 품질·위생관리대상으로 모델사업을 실시한다.

ii. 사업내용

- 수산물의 양륙, 유통의 거점이 되는 어항과 주변어항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며 공공사업과 비공공사업의 각종수산관계사업의 연대 및 조사·계몽보급 등의 소프트웨어적인사업을 일체화 되고 종합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검증을 위한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해상지역> (수질·저질개선)

- 어장·양식장에서 오니(汚泥)의 준설, 복사(覆砂) 등
- 어항내의 해수교환촉진 등
- 어업취락배수처리시설정비

<육상지역>

- 취수, 도수시설 등의 청정해수도입시설정비
- 수산물의 품질유지에 기여할 방풍방설방서시설, 조수 등의 진입방지시설정비
- 암벽의 부대시설 및 어항정화시설로 정비되는 오수정화시설정비
- 수산물 위생관리와 관련된 처리시설, 수산선도유지시설, 가공처리시설 등의 정비
- 차량의 소독시설 및 수산물어류박스 등의 세정시설정비

<기타>

- 원활한 물류확보를 위한 액세스도로 정비
- 심층수 등 이활용시설 등의 고도 위생관리에 기여할 시설정비
- 위생관리에 필요한 냉동차, 어체선별기 등의 어업생산관련기구정비
- 화장실, 세면장등 관련시설정비

iii. 채택요건

-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지역

- a. 수산물생산에서 양륙, 유통, 가공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위생관리체제가 확보되는 지역일 것
  - b. 지역 내에 수산물유통의 거점이 될 어항이 있을 것
  - c. 수산물의 종합적인 위생관리대책으로 선도적이며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될 사례가 될 것
- iv. 사업실시주체
- 국가, 지방공공단체 등
- v. 보조율 등
- 1/2등 (각종 사업의 보조율 등)
- vi. 사업실시기간
- 2003년~

③ 국산수산물강화 긴급정비대책사업(신규)

~ 수산물의 국제화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

i. 취지

- 수산업을 둘러싼 정세는 WTO, FTA교섭 등 국제화의 파도로 해마다 엄격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각종 어업지역에서는 브랜드화로 인한 국산수산물의 부가가치향상과 협업화 · 집약화, 어업노동환경개선 등으로 인한 어업경영효율화 등으로 국산수산물의 경쟁력강화를 추진함으로 수산업의 종합적인 진흥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IQ문제 등으로 대표되듯이 한층 더 엄격한 수산업의 국제화진행이 예상되므로 국가, 지방공공단체, 어업관계자가 유기적인 연대 하에 종합적인 진흥책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산물의 국제화에 대응한 국산수산물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행정과 지역이 하나가 되는 수산대책의 종합적인 추진전략에 따라 수산관련 각종기반정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

ii. 사업내용

- 수산물의 생산 · 유통의 거점이 되는 어항(연간 양륙량이 약 1,000톤 이상 혹은 양륙금액이 약 3억엔 이상)이 포함된 지역에서 국산수산물의 국제경쟁력강화를 도모하기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어업경영의 효율화와 수산물의 위생관리대책에 기여할 정비를 추진한다.

a. 어업경영의 효율화

• 공공

- ▷ 양륙안벽정비(양륙기능의 집약화)
- ▷ 방풍방설시설
- ▷ 양륙, 준비작업의 간소화에 기여할 부체식계선안(浮体式係船岸)정비와 안벽의 저천단화(低天端化)
- ▷ 안벽의 부대로서의 융설설비(추가메뉴) 등

• 비공공

- ▷ 협업화추진에 기여할 수산가공시설
- ▷ 어체선별작업 등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산물처리시설 등

b. 수산물의 위생관리대책

• 공공

- ▷ 취수, 도수시설 등의 청정해수도입시설

- ▷ 수산물의 품질유지에 기여할 방풍방설방서시설, 조수 등의 침입방지시설
- ▷ 안벽의 부대시설 및 어항정화시설로서의 오수정화시설 등

- 비공공

- ▷ 수산물의 위생관리에 대응한 처리시설, 수산선도유지시설, 가공처리시설
- ▷ 어업생산관련작업에 사용되는 해수의 살균처리시설 등

- ii. 사업실시주체

- 국가, 지방공공단체, 수산업협동조합 등

- iii. 사업실시기간(채택기간)

- 2006년~2011년(2006년~2009년)

- iv. 보조율 등

- 1/2등 (각종 사업의 보조율)

④ 수산관련 부산물활용추진모델사업

i. 취지

- 가리비, 굴 등의 패각은 연간 약 50만톤이 발생되고 있으나 그 처분지가 적어 방치되는 사례가 많아 악취발생과 경관악화, 불법투기 등의 환경적인 면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 한편, 패각은 부착된 유기물질 등을 제거하면 리사이클재로서 이용이 가능하므로 공공사업 등에서 그 적극적인 이활용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 이를 위하여 패각 등의 수산관련 부산물을 어장의 저질개량재, 증식초, 토목재료 등으로 수산기반정비사업에서 대량으로 활용하기 위한 모델사업실시 및 기술검증·개선을 시행함으로 수산관련 부산물의 리사이클재로의 활용을 전국으로 보급할 것을 추진하며 수산업에서의 순환형 경제사회 구축추진을 도모한다.

ii. 사업내용

a. 모델지역 선정(수산관련 부산물활용추진계획 책정)

- 껍질 등 수산관련 부산물의 발생량이 많아 그 처리에 적극적인 지역을 모델지역으로 선정한 후 대상지역에서 수산관련 부산물리사이클을 위한 활용추진계획을 책정한다.

b. 수산기반정비사업으로의 활용

- 모델지역에서 껍질류 등의 재생처리(열처리·분쇄처리 등)에 따라 처리된 제품을 어장의 복사(覆砂)재나 자원배양초 등의 어장환경개선과 관련된 수산기반정비사업에 활용함과 동시에 모니터링조사를 실시함으로 수질정화효과와 증식효과 등을 검증한다. 또한 지반개량재, 해변개량재료, 어항구조물의 토목재료로의 활용도 염두에 두어 처리된 껍질의 강도·내구성 등의 검증도 시행함으로 대량활용을 위한 리사이클기술확립을 도모한다.

c. 수산관련 부산물활용 가이드라인 작성

- 모델사업으로 인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지침과 정비매뉴얼 등의 수산관련 부산물활용가이드라인을 정리하여 수산기반정비사업에서의 수산관련 부산물활용을 위한 구조를 구축하고 전국적으로의 보급을 추진한다.

iii. 사업실시주체 : 국가, 도도부현, 시정촌 등

iv. 사업실시기간

v. 보조율 : 수산기반정비사업의 통상적인 보조율

⑤ 자연조화·활용형 어항어장 만들기 추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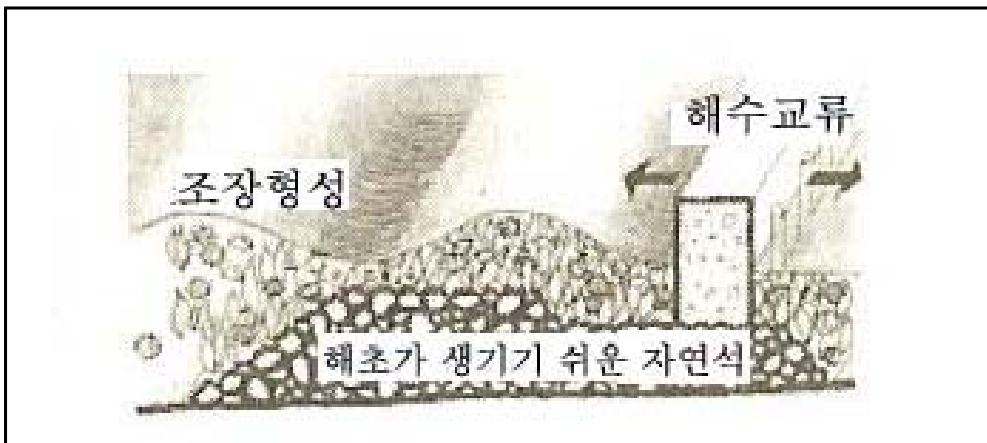
i. 취지

- 최근 자연해변, 조장·간석, 생태계 등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산업에서의 양호한 어장환경보전과 연안수역의 고도이용이 요구되고 있다. 수산기반정비사업에서는 앞으로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여겨지는 환경보전에 대한 요구에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자연환경과 조화된 구조물, 공법채용 등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자연조화·활용형 어항어장 만들기 추진사업」을 실시함으로 자연조화와 활용형기술의 집적 및 보급을 도모한다.

ii.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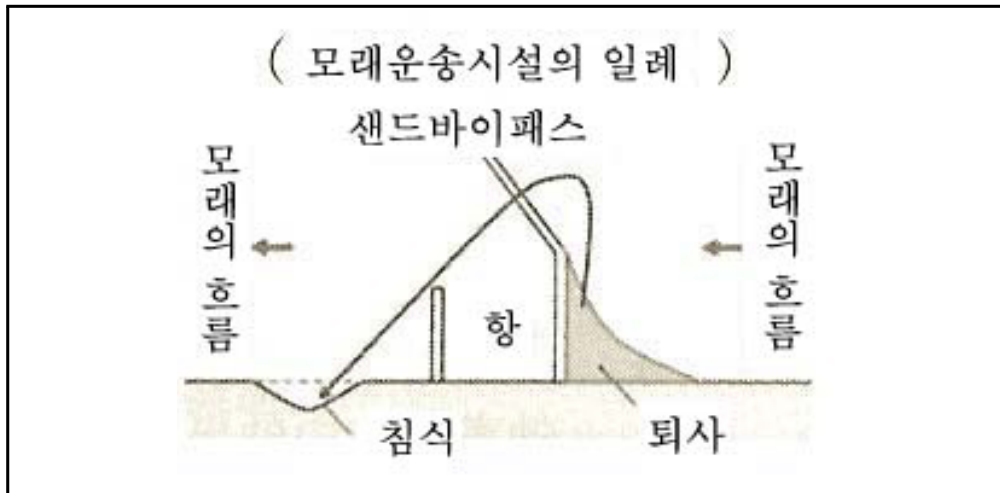
a. 자연조화형 어항만들기 추진사업

- 수질보전, 주변환경에 대한 영향완화 등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어항 시설정비를 시행한다. (조장형성, 해수교류, 수초가 생기기 쉬운 자연석 사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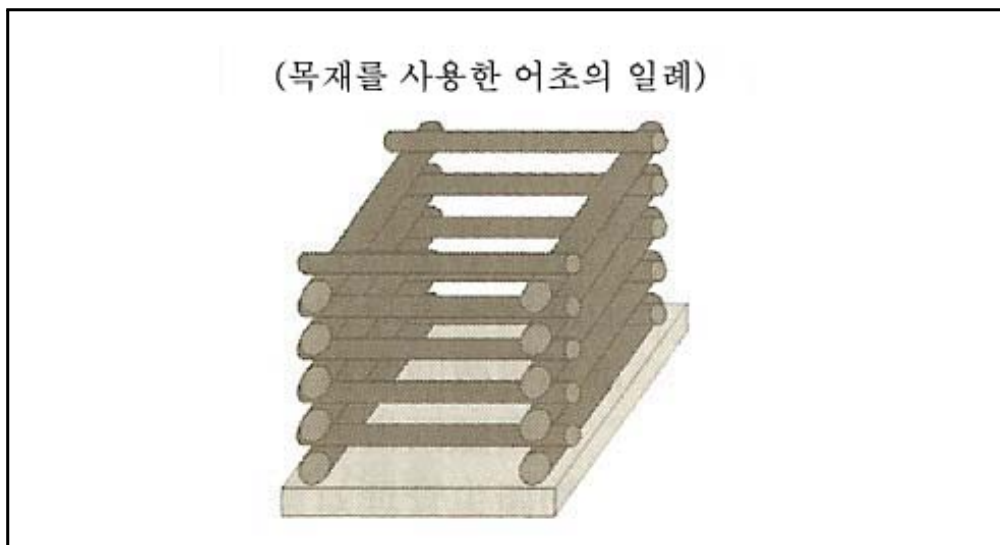
b. 어항 내 퇴적사 활용추진사업

- 연안에 표류하는 모래 등으로 어항의 박지(泊地)와 항로에 퇴적된 모래의 효과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린침식해안과 어패류증식장등으로 모래 운송시설을 정비한다.
- 모래운송시설
  - ▷ 연안에 표류하는 모래 등으로 인한 박지나 항로매몰 등에 대한 대책에 고심하는 어장을 대상으로 라이프사이클비용을 이용한 검토를 시행하여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매몰대책으로 모래 운송시설(파이프라인, 벨트컨베이어(belt conveyor) 등)을 정비



c. 목재활용추진사업

- 수산생물의 운집과 증산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간벌재 등의 목재와 철강재, 콘크리트를 조합한 구조의 어초를 설치
- 간벌재 활용: 수산생물의 운집과 증산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간벌재 등의 목재와 철강재, 콘크리트를 조합한 구조의 어초를 설치하고 그 운집효과와 내구성 등에 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효과 등을 검증한다.



iii. 사업실시주체

- 국가, 도도부현, 시정촌 등

iv. 보조율

- 수산기반정비사업의 일반적인 보조율로 한다.

v. 사업실시기간

- 1994년~

## ⑥ 자원회복지원기반정비사업

## i. 취지

- 일본 주변수역에서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해 나가는데 있어 감소경향을 띠는 자원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따라서 수산청은 1996년부터 어종마다 어획량의 총량을 제한하는 TAC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1년부터는 추가조치로 어획노력량의 종량규제를 시행하는 TAE제도를 도입함과 더불어 2004년까지 50종의 어종을 대상으로 자원회복계획을 책정하여 감소경향을 띠는 자원의 시급한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 그러나 해당자원회복계획은 현재 5년 계획으로 5해역 11어종에 대한 책정에 그치고 있어 수산기반정비사업으로 2003년부터 어획노력삭감의 관점에서 휴어어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어장보전사업실시와 수산동식물의 성장과 육성의 장인 조장·간석조성 등으로 인한 어장환경정비 등의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 앞으로는 자원회복계획의 한층 강화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로이 치어의 효율적인 방류로 인한 적극적인 증산대책 등을 도모함으로 수산자원의 시급한 회복을 지원한다.

## ii. 사업내용

- 2003년부터 자원회복지원사업으로 실시되는 조장·간석조성 등에 의한 어장환경정비와 휴어어업자대책 등으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가하여 실시한다.

## a. 수산자원의 적극적인 배양대책(확충)

-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산자원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회복계획책정에 따라 자원증대대책으로 중간육성시설을 정비할 경우 기존의 수조나 용지 등의 정비와 함께 효율적인 중간육성을 시행하기 위해 방풍·방서·방설 등이 필요할 경우 이들의 시설정비를 새롭게 보조 대상화한다.

## b. 조사비보조의 우선채택

- 수산기반정비사업으로 어장환경보전대책과 자원의 적극적인 증산대책에 임할 경우, 본 사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사의 우선채택 혹은 중점배분을 실시한다.

## c. 자원회복계획거점어항의 중점정비

- 자원회복계획실시와 동반하여 어업소득감소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수산물위생관리대책과 브랜드대책 우선 실시로 수산물의 부가가치향상을 지원한다.

## iii. 사업실시주체 : 국가, 도도부현, 시정촌 등

## iv. 보조율 : 1/2등

## v. 사업실시기간 : 2003년~



⑦ 풍요로운 바다와 삼림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대책

~임야청사업과 수산청사업의 연대강화~

i. 취지

- 최근 임업채산성악화 등으로 관리가 충분치 않은 삼림이 증가 중에 있어 삼림의 수자원함양, 수질보전, 국토보전, 생활환경보전 등 다면적인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한편 연안부에서는 조장·간석의 감소, 하천으로부터의 생활배수, 토사유입 등으로 인한 수질악화가 현저하여 수산자원의 생식환경보전·창조도모가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삼림·임업관계자와 어업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삼림정비와 어장환경개선과 관련된 시책의 일원화 혹은 종합적인 실시 및 간벌재 등의 어초와 어장정비 등으로의 활용을 추진하는 「공공사업 그린화」를 도모함으로 상류수원지역에서 하류연안지역에 이르는 자연·생태계 등의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사업내용

- 2-1 대상지역

산지가 연안부와 인접해있는 등 해당사업실시로 적절한 효과가 예상되는 지역

- 2-2 사업내용

a. 협의회의 설치

- 삼림소유자 등의 임업관계자, 어업자 등의 수산업관계자, 행정기관담당자 등으로 이루어진 「풍요로운 바다와 삼림을 육성하는 협의회」(가칭)를 설치하고 특정지역관계자(상하류, 낙도지역 등)가 일원화된 삼림 및 연안지역 환경정비·보전을 진행시킴으로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간벌재 등의 이용촉진도모를 위한 구체적인 대처방법 등을 검토한다.

b. 시책내용

- 다음의 시책 중 필요한 사업은 연대를 도모하며 일원화되고 종합적인 실시도모

가. 삼림의 정비·보전(임야청 사업으로 실시)

- ▷ 간벌 등의 적절한 실시, 하천상류부의 복층림화, 광엽수림 조성, 황폐삼림복구정리, 어류생식과 밀접히 관련된 논둑삼림정비, 어도정비 등을 추진

나. 연안어장환경 등의 정비(수산기반정비사업으로 실시)

- ▷ 어촌 등의 생활배수정화를 위한 취락배수시설정비, 하구부의 거머리말조장 조성, 어항의 수역환경보전대책, 증식기능(조장)이 있는 방파제나 해

수교류기능이 있는 방파제등의 정비, 연안지역의 조장조성, 복사 등의 실시로 어장환경정비추진. 이때 삼림정비 등과 연대하여 상류하천정비 상황 등에 따라 효율적인 어장정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다.

- ▶ 또한 2005년에 창설된 어촌재생교부금의 지역제안형정비로 어류가 있는 보안림(保安林) 등의 정비(식물재배 등)도 가능하다.

다. 수산기반정비사업 등에서의 목재이용추진

- ▶ 간벌재 등을 활용한 어초 등의 정비, 어항환경정비와 관련된 정자나 보드워크, 어업취락배수처리장 등의 건축물, 기타 수산관련시설 등으로의 목재이용추진

iii. 사업실시주체

- 지방공공단체 등

iv. 사업실시기간

- 2004년~

⑧ 어항교류광장정비사업

i. 취지

- 국민의 바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어항어촌은 수산물공급과 자연환경의 만남의 장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아직 방문객을 받아들이기 위한 시설이 미비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수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며 수산물과 어항어촌의 주변환경과의 접촉을 통해 지역주민들과의 교류를 높이기 위해 친수시설과 수산물직매시설 등을 갖는 양호한 워터프론트 정비를 시행함으로써 어업관계자와 일반인들과의 어항이용 상의 트러블을 방지하여 도시주민과의 원활한 교류를 도모하고자 한다.

ii. 사업내용

- 도시주민과의 교류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수산기반정비사업(지역수산물공급기반정비사업, 광역어항정비사업, 어항어장기능고도화사업, 어항환경정비사업), 어촌재생교부금등을 합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을 실시한다.

a. 지역수산물공급기반정비사업, 광역어항정비사업 및 어항어장기능고도화사업

- 녹지, 친수기능을 갖기 위해 필요한 구조, 폭이 있는 외곽시설
- 유어선 등의 이용도 고려한 일시계류시설
- 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물직판사업시행을 위한 용지정비

b. 어항환경정비사업

- 기존시설에 녹지, 친수기능을 정비
- 일반방문객 이용도 고려한 규모의 어항환경시설
- 취사가 가능 한 휴게소정비

c. 어촌재생교부금

- i 부터 ii 의 내용에 따른다.

iii. 사업실시주체

- 국가, 도도부현, 시정촌

iv. 사업채택요건

- 일반국민의 이용이 많으므로 어업생산활동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혹은 그 우려가 큰 것
- 도시주민과의 교류 등으로 인한 지역 활성화에 대한 의욕이 높다고 인정되는 것
- 해당어항을 이용하는 일반 방문객의 연간총합계가 5,000명이상일 것
- 낚시 잔교 등의 친수시설이 정비되었거나 수산업협동조합이 연간 100일 이상의 수산물 직판사업을 시행하거나 혹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있는 어항
- 만남의장으로서의 어항어촌정비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어항
  - 사업주체는 새로운 사업계획을 책정하여(시정촌은 도도부현을 경유) 수산청 장관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

v. 사업실시기간

- 1994년~

## ⑨ 어촌공간정비사업 - 자연과 풍토의 고향과 어촌 만들기 -

## i. 취지

- 지금까지의 경제성장과 도시화속에서 생활공간의 여유를 잃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의 역사, 문화를 이야기하는 농어촌의 풍경도 무너져 오랜 세월 에 걸쳐 지역에 보존, 전승되어 온 전통문화도 생활과의 관련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와 같이 어촌을 단순히 생산을 지탱하는 생활의 장으로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어촌이 갖는 다면적인 기능을 재평가하여 풍요로운 자연과 전통 문화 등 지역의 특색과 도시주민의 휴식의 공간을 고려한 어촌 만들기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해변의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어촌경관, 전통적인 어업관련시설의 보전, 복원 등의 정비를 각종 수산관련사업과 연대하여 종합적으로 시행하여 어촌의 활성화에 이바지한다.

## ii. 사업내용

- a. 바다 등의 자연환경, 아름다운 어촌경관, 전통적인 어업관련시설 등의 복원
  - 정비(어촌공간의 정비)
  - 모래사장, 간석, 해변 등의 친수시설의 보전·정비
  - 경관보전정비로 인한 역사적 시설 등의 정비(아름다운 어촌경관 등의 복원)
  - 어항정비로 인한 외곽시설, 계류시설 등의 전통적어항시설의 복원·정비
  - 전통적인 수산가공, 어업체험시설 등의 정비
  - 취락도로 등의 정비(산책로(풋 패스), 연결로 등의 정비)
- b. 교류시설정비
  - 어촌공간의 정보안내를 위한 종합교류시설 등의 정비
  - 생산·생활과의 트러블방지를 위한 주차장정비
- c. 어촌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공공시설 등의 정비에 필요한 용지정비
  - 어항과의 일체화된 정비로 용지창출, 취락지내의 용지정비, 용지로의 연결 도로(항 인접도로, 취락도로), 용지 내 환경시설(녹지 등)정비.

## iii. 사업실시주체 : 국가, 도도부현, 시정촌 등

## iv. 사업채택요건

- 어항 및 그 배후 취락지를 중심으로 매력 있는 어촌 공간 만들기를 위해 일체화된 시설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일 것
- 이 사업실시에 해당구역내의 어업관계자, 지역주민 및 시정촌의 의욕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일 것
- 해당지역을 이용하는 일반 방문객의 연간합계가 5,000명 이상일 것
- 해당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그 시설의 주된 목적이 저해되지 않을 것
- 시정촌장은 새로 사업계획을 책정하고 도도부현을 경유한 후 수산청장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 v. 사업실시기간 : 2000년~

⑩ 재해에 강한 어업지역 만들기 사업(재편·확충)

i. 취지

- 지금까지의 「재해에 강한 어항어촌 만들기 사업」과 「방재거점어항정비사업」을 「재해에 강한 어업지역 만들기 사업」으로 재편·확충하여 하드·소프트가 일체화된 사고아래 재해 시의 수산물유통기능확보와 어항 방문객 등의 안전성확보, 어촌의 종합적인 방재대책을 도모한다.

ii. 사업내용

a. 공공사업

수산물유통기반정비관계사업 : 안벽의 내진화, 인공지반, 가동식 방파제, 방파제증축, 헬리콥터의 이착륙장소로 전용이 가능한 용지정비, 피난광장, 피난로 등

- 추가메뉴 : 표류방지시설

어항해안사업 : 호안증축, 수문 등의 원거리 조작화 등

b. 비공공사업

강한 수산업 만들기 교부금 중 어촌지역의 활성화 : 방재안전시설, 비축창고 등

- 추가메뉴 : 처리시설 등의 내진강화, 비상용전원확보를 위한 시설 등 강한 수산업 만들기 교부금 중 경영구조개선

- 추가메뉴 : 처리시설 등의 내진강화, 비상용전원확보를 위한 시설 등(생산 규모 혹은 능력 확대를 동반하는 것)

c. 기타 사업(지방이 시행하는 사업 등)

- 개별지역에서의 방재진단 등 조사, 방재 재해와 관련된 정보수집과 정보제공시스템구축, 재해로 인한 피해를 가정한 어업자의 이용조정협의와 방재와 관련된 활동 등의 소프트시책 등

-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의 관점에서 방재강화대책을 도모한다.

가. 재해 시 수산물 유통기능 확보

수산물 유통기능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주로 지진재해를 염두에 두고 수산물의 유통거점이 되는 어항에서 안벽과 처리시설의 내진화 등 재해시의 수산물유통기능확보를 도모한다.

나. 어항 노동자와 방문객의 해일피난대책 등의 안전성확보

- ▶ 어항 노동자와 어항 방문객의 해일피난대책 등에 관한 안전성확보의 관점에서 피난로와 피난장소확보, 방재활동추진 등 안전대책을 도모한다.

다. 어촌의 종합적인 방재대책

- ▶ 어촌의 종합적인 방재대책의 관점에서 지진·해일·고조 등의 재해를

염두에 두고 재해 발생 지역의 지원기지로서의 어항이용 등 어촌에서의 종합적인 방재대책강화를 도모한다.

iii. 사업실시주체

- 공공사업 국가, 도도부현, 시정촌(각 사업마다 규정)
- 비공공사업, 지방공공단체, 어업협동조합 등(각 사업마다 규정)

iv. 사업실시기간

- 2006년~

v. 보조율

- 1/2등 (각 사업의 보조율에 따른다.)

⑪ 아름다운 어촌 가꾸기 실시에 관하여

i. 취지

- 개성 있고 매력적인 농어촌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하여 「바다와 삼림의 『미의 고향』 플랜21(2003년 9월 농림수산성)」은 농어촌의 경관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수치를 목표로 들어 대처방안을 추진하고 지역에서의 경관점검 실시 등으로 국민의 공통된 재산으로서의 개성 있는 농어촌을 차세대로 계승함으로 도시와 농어촌의 공생 · 대류의 관계를 한층 더 돈독히 할 것을 목표로 한다.
- 어촌에서도 지역주민 등이 참가하는 아름다움 확보 · 유지 · 창출 등의 대처방안을 지원함으로 각각 어촌의 매력 재인식, 수산업 · 어촌에 대한 이행촉진, 더욱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해나갈 필요로 경관과 전통문화 등에 드러나는 아름다움의 관점에서의 어촌의 진흥에 대해 지원한다.

ii. 사업내용

- 지역주민 등으로 인한 지역의 매력을 살린 어촌 만들기로 그 효과가 예상되는 어촌에서 그 실시방침이 되는 경관형성방침을 책정하고, 그 방침에 따라 「어촌 커뮤니티 기반정비」 외에 지방단독사업 등의 소프트사업, 수산관련사업 등을 활용함으로 아름다움 유지 · 발휘로의 대처활동 실시, 시설정비 등으로 소프트 · 하드가 일체화된 전개를 추진해 나간다.

a. 어촌 커뮤니티기반정비(아름다운 어촌 가꾸기 형)

기존의 생활기반, 정보기반 및 교류기반시설정비에 따라

가. 자연공원지역 이외의 지구에서 주변의 경관 등을 고려한 시설정비

나. 기존 공공시설에 대해 주변의 경관 등을 고려한 시설의 개수

다. 문화전승시설 정비

iii. 사업요건 등

(사업비) 도도부현 15,000천엔 이상, 기타 5,000천엔 이상

iv. 사업실시주체

- 도도부현, 시정촌, 수산업협동조합 등

v. 사업실시기간 : 2005년~ 2009년(5년간)

vi. 2006년 개산 결정액 : 11, 823, 420천엔 이내

vii. 교부율 : 정액(1/2 이내 등)

⑫ 어촌 리프레시운동

◦ 어촌의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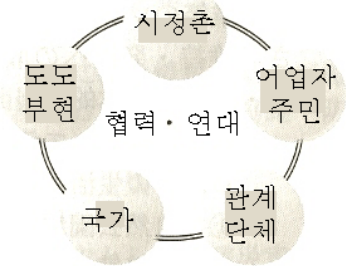
- 좁은 토지에 입지해 있어 도시와 비교해 하수도나 공장 등의 생활환경정비가 낙후 되어 있다.
- 가옥 등이 밀집된 취락지가 많아 해일 · 화재 등의 재해에 취약하다.
- 지역의 일손부족, 고령화 등에 따라 지역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



◦ 어촌 리프레시 운동전개

- 개요

어촌의 생활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산청, 도도부현, 시정촌, 전어련 등 관련단체, 어업관련자들이 일치 협력하여 「어촌 리프레시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촌의 건강진단**  
생활환경현상을 조사하고 문제와 과제를 정리

**어촌 리프레쉬 행동계획**  
각 도도부현은 10년후의 목표를 설정하고 생활환경 정비계획을 책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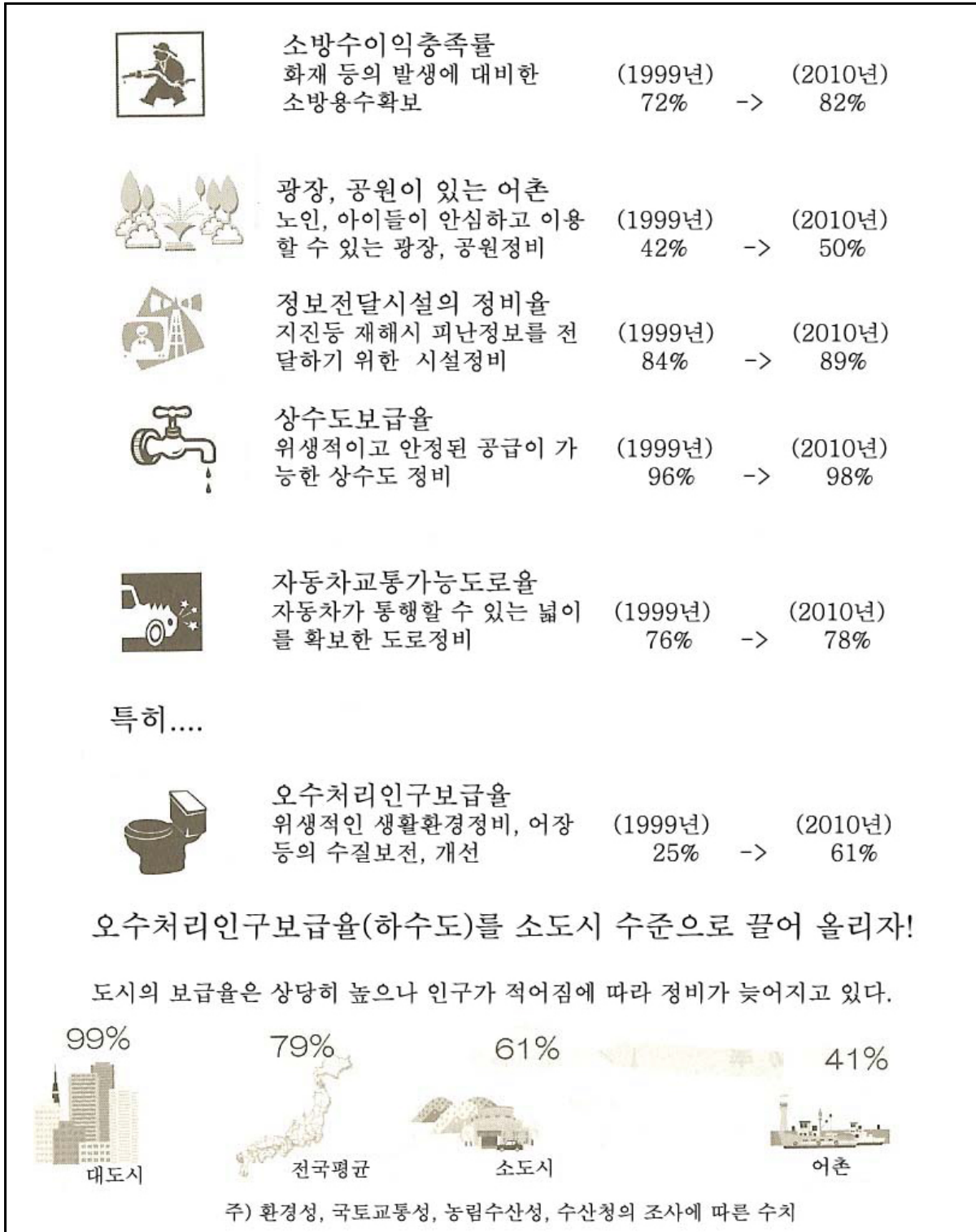
**보급계몽활동 전개**  
어촌의 생활환경정비에 대한 공통된 인식형성

**어촌생활환경정비의 착실한 추진을!!**



◦ 어촌 리프레시 행동계획

- 각 도도부현이 10년 후 (2010년도) 정비목표를 설정
- 정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시계획 책정



## ⑬ 순환형 사회에 대응하는 어촌 가꾸기 사업

## i. 취지

- 어촌은 자연혜택으로 누릴 수 있는 바이오매스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철강슬라브 등의 리사이클재를 적극적으로 이활용함으로써 순환형 사회에 대응하는 어촌 가꾸기를 추진하여 어촌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 ii. 사업내용

- 사업실시주체는 바이오매스자원, 리사이클재 등을 활용하고 순환형 사회에 대응하는 어촌 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작성하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성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한다.

## a. 공공사업

- 가. 어장환경보전창조사업
- 나. 어업취락환경정비사업
- 다. 어촌 가꾸기 종합정비사업

## b. 비공공사업

- 강한 수산업 만들기 교부금중 수산업 경영구조 개선대책, 어촌지역 활성화정비대책

## iii. 확충내용(해당사업만을 확충한다.)

## a. 공공사업(나 및 다)

- 수산 부산물 등으로 한정되는 지역자원 이활용기반시설(퇴비화시설)의 수입자원을 어촌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매스자원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 바이오매스자원이란 재생 가능한 생물에서 유래된 유기성자원으로 화석자원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바이오매스·일본종합전략))

## b. 비공공사업

- 수산청 소관사업으로 정비된 소각시설로 「다이옥신류 대책특별조치법」에 따라 배출가스 등의 규제에 대응하지 않고 휴지(休止)·유휴화 된 시설에 대해 새로이 보조대상시설을 정비한 경우에 한하여 철거비를 보조대상으로 한다.

## iv. 사업실시주체

- a. 공공사업   도도부현, 시정촌
- b. 비공공사업   지방공공단체, 어업협동조합 등

- v. 보조율 : 1/2등 (각종 사업의 보조율에 따른다.)
- vi. 2006년 당초 예산액
  - a. 공공사업 : 8,770,000천엔 이내
  - b. 비공공사업 : 11,823,420천엔 이내
- vii. 사업실시기간 : 2005년~



제14회 어항어장어촌사진 콩쿠르 입상작품  
「망」(静岡県·深沢真氏)  
시즈오카현 이시베 어항

## 8. 수산기반정비관계의 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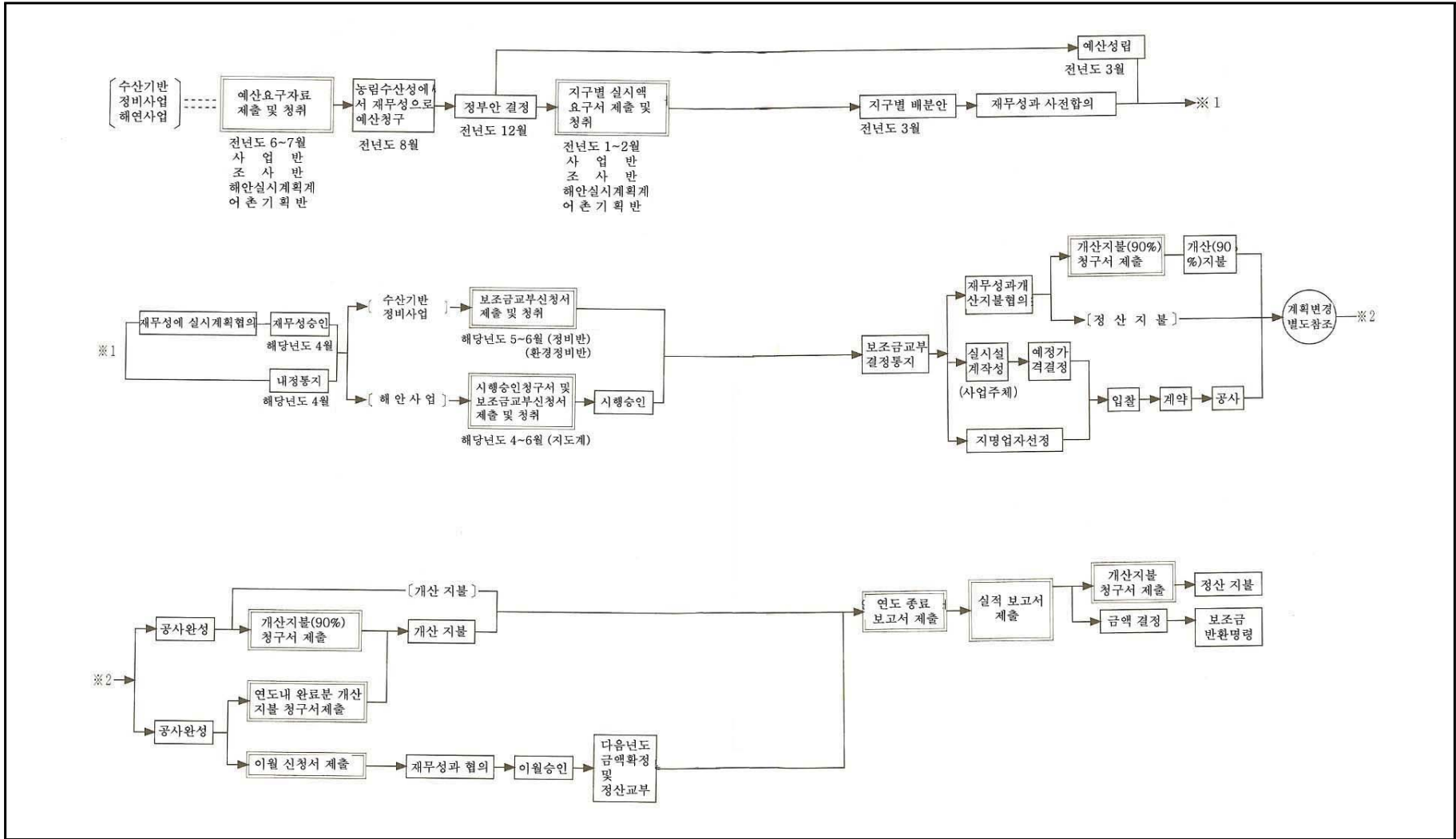
사항		이미 인정된 특별조치	2006년도 세제개정결과
종합보양지역 정비법에 따른 특정시설 (유어선 등의 이용시설)	국세	폐지	-
	지방세	· 특별토지보유세 중점 정비지구에서 기본구상에 동의한 날로부터 16년간은 동의기본구상에 따라 설치된 일정한 리조트시설용으로 제공되는 토지와 관련된 특별토지보유세는 비과세된다. · 사업소세 기본구상에 동의한 날로부터 16년간은 일정한 리조트시설에 대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사업소세 중에서 자산비율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 바닥면적이 5년간 1/3로 된다.	-폐지
어항시설	국세	· 지가세 : 어항시설용으로 제공되는 토지 등은 비과세	-
	지방세	· 특별 토지보유세 : 어항시설용으로 제공되는 토지 등은 비과세	-
낙도진흥대책 실시지역에서의 특정시설 (공업용기계 등)	국세	· 소득세·법인세 낙도진흥대책실시지역 내에서 개인 혹은 법인이 제조 등에 동반되는 설비(취득가격 2,500만엔 초과)를 신설 혹은 증설한 경우의 기계·장치 및 건물·부속설비와 관련된 특별상각제도 기계·장치 10/100 건물·부속설비 6/100	-
	지방세	· 특별토지보유세 낙도진흥대책실시지역 내에서 제조사업 등으로 제공되는 시설 등과 관련된 비과세조치(취득가격 2,900만엔 초과)	-
반도진흥대책 실시지역에서의 특정시설 (공업용기계 등)	국세	· 소득세·법인세 반도진흥대책실시지역 내에서 개인 혹은 법인이 제조 등에 제공되는 시설(취득가격 2,500만엔 초과)을 신설 혹은 증설한 경우의 기계·장치 및 건물·부속설비와 관계된 특별상각제도 기계·장치 10/100 건물·부속설비 6/100	-
	지방세	· 특별토지보유세 반도진흥대책실시지역 내에서 제조사업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 등과 관련된 비과세조치(취득가격 2,700만엔 초과)	-

※ 법인세 검토 중 민활특별상각제도는 폐지되었으나, 한편으로는 법인세, 지가세 등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인정되고 있다.

- ① 보통법인의 법인세율 인하(37.5% → 34.5%)
- ② 건물의 감가상각은 내용연수를 약 10~20%정도 단축
- ③ 보통법인의 법인사업세율 인하(연 700만엔 초과 소득 및 정산소득 12% → 연 800만엔 초과 11%)
- ④ 당분간 지가세적용은 정지

### 9. 수산기반정비관계사업 사무절차

#### (1) 일반보조사업



10. 수산관계사업 실시 수

(1) 수산기반정비사업 실시 수(2000년 이전)

i. 어항어촌정비사업

사업	소관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수출사업	보통										197	193	193	199	198	195	220	233	234	233	247	249	249	253	248	262	272	271	270	267	263	259	268	269	268	269	267	254	259	258	258	253	239	228
	훙카이도										64	60	62	71	72	67	73	81	80	80	86	87	87	82	70	77	85	88	87	82	74	86	92	94	92	92	88	86	92	94	94	89	84	79
	노년										101	100	94	96	96	92	92	95	95	95	100	101	101	88	86	100	101	103	104	104	101	107	109	109	108	108	104	108	109	110	110	109	110	105
	어귀나와										-	-	-	-	-	-	10	10	10	10	9	9	9	9	8	9	10	10	10	10	9	10	13	13	13	13	13	13	13	13	13	12	11	10
	아마미										-	-	-	-	-	-	-	-	-	-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3	4	4	4	4	4	4	4
	계		418	433	449	435	403	290	332	362	364	362	353	349	366	366	354	395	419	419	418	446	450	450	436	416	452	472	476	475	467	451	466	486	489	485	486	475	465	477	479	479	467	448
개수사업	보통										176	188	224	250	293	291	296	346	364	364	401	452	458	459	439	453	512	534	535	523	481	502	563	572	577	565	529	421	441	441	427	368	312	282
	(지역개선)										-	-	-	-	(15)	(20)	(18)	(18)	(18)	(17)	(19)	(19)	(17)	(13)	(13)	(15)	(16)	(16)	(16)	(15)	(13)	(13)	(10)	(10)	(9)	(6)	-	-	-	-	-	-	-	-
	훙카이도										35	40	45	49	52	43	50	69	73	68	74	85	84	73	59	68	83	89	83	77	68	67	85	85	80	74	69	64	68	68	67	51	47	40
	노년										131	146	164	175	181	174	183	205	211	205	216	238	237	207	189	175	196	203	204	199	188	188	205	209	209	196	182	156	163	165	162	149	126	113

사업	소관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개수사업	오кина와											-	-	-	-	-	12	12	12	11	14	18	17	14	11	13	17	19	19	17	16	13	20	22	21	20	19	16	18	20	19	18	16	14	
	아마미											-	-	-	-	-	-	4	4	4	3	4	4	4	4	6	6	6	4	3	4	6	9	11	11	10	10	12	12	12	12	11	11	9	
	계	-	-	-	-	-	195	236	268	304	342	374	433	474	526	508	541	636	664	552	708	797	797	757	702	715	814	851	845	819	757	776	882	899	898	865	809	669	702	706	687	597	512	458	
국부개량사업	본토											211	222	229	233	259	878	331	375	366	391	376	391	444	473	449	472	454	415	412	418	396	358	364	355	358	333	314	304	305	290	236	194	166	161
	훗카이도											22	22	19	20	21	27	33	35	38	42	34	34	37	43	56	45	31	34	35	34	38	38	36	31	28	29	24	19	21	19	17	18	17	16
	낙도											67	65	65	68	78	85	85	94	108	110	106	114	116	108	116	112	93	93	97	94	91	70	71	74	73	63	53	55	56	61	43	39	31	27
	오кина와											-	-	-	-	-	8	11	11	11	13	16	15	14	18	19	18	16	16	16	17	15	20	20	19	16	17	14	13	13	12	10	9	11	10
	아마미											-	-	-	-	-	-	4	8	8	8	8	9	11	13	14	12	12	12	15	18	22	19	17	15	13	14	15	10	9	7	3	5	2	1
	계	114	163	189	206	283	253	264	258	261	300	309	313	321	358	398	460	519	531	564	540	563	622	655	654	659	606	570	575	581	562	532	508	494	488	456	420	401	404	389	309	265	277	215	
어항관련도로정비사업	본토										-	71	64	68	68	68	66	58	54	47	63	58	54	56	53	58	53	50	47	43	44	41	46	52	58	48	50	42	39	41	33	34	27	21	
	훗카이도										-	5	4	4	6	7	6	6	4	4	5	6	5	4	6	5	3	4	3	5	6	7	6	7	6	6	6	6	4	4	4	5	5	5	5
	낙도										-	11	12	13	13	11	1	12	12	14	14	15	14	12	12	13	8	10	14	14	16	18	13	12	13	13	14	16	15	16	14	12	9	7	

사업	소관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어항관련토목정비사업	오키나와										-	-	-	-	-	6	5	4	4	3	3	2	2	3	1	2	2	2	2	4	3	2	3	3	4	5	3	3	3	3	3	3	3	3	
	아마미										-	-	-	-	-	-	-	-	-	-	-	-	-	-	-	-	-	-	-	-	-	-	2	2	2	3	2	2	1	1	2	1	1	1	1
	계	-	-	-	-	-	-	-	35	74	93	87	90	85	87	92	93	80	74	68	85	81	75	75	72	78	66	66	66	66	69	68	70	76	83	75	75	69	62	65	56	55	45	37	
어업취락환경정비사업		-	-	-	-	-	-	-	-	-	-	-	-	-	-	-	-	-	-	-	-	10	23	36	43	46	47	49	51	52	52	57	60	64	82	98	111	132	166	188	212	204	196	187	
어항어촌종합정비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55	57	60	60	59	6	
어항환경정비사업		-	-	-	-	-	-	-	-	-	-	-	-	-	-	-	-	-	-	-	-	-	-	34	49	40	40	28	25	22	30	55	65	70	79	101	105	106	131	148	146	125	107	41	
어항공해방지대책사업		-	-	-	-	-	-	-	-	-	-	-	-	-	-	-	-	-	-	-	-	-	-	34	49	40	40	28	25	22	30	55	65	70	79	101	105	106	131	148	146	125	167	41	
어항이용정비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	1	1	1	2	2	1	1	1	1	1	1	1	1

국부개량사업은 1996년도까지 어항이용정비사업을 포함한다.



ii. 연안어장정비개발사업

사업	소관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어초 설치 사업	본토	297	418	480	463	487	504	452	456	459	465	465	502	556	565	571	579	583	574	556	322	326	296	282	273	248
	홋카이도	57	67	80	88	98	101	102	95	95	98	98	109	89	90	91	94	87	82	70	61	57	56	52	52	46
	오кина와	4	9	17	20	18	19	19	19	19	19	22	20	22	21	19	19	19	19	21	12	11	12	11	11	11
	계	358	494	577	571	603	624	573	570	570	573	585	583	633	666	674	681	692	689	675	647	395	394	364	345	336
증식장조성 사업	본토	18	34	49	55	63	64	76	81	84	81	79	84	88	87	93	102	102	113	111	124	133	142	136	134	127
	홋카이도	4	7	12	17	22	24	24	28	31	31	36	37	39	41	49	54	55	54	601	58	59	56	51	48	38
	오кина와	-	1	2	1	2	3	3	3	3	2	2	3	1	2	3	3	3	1	1	2	1	1	1	1	-
	계	22	42	63	73	87	91	103	112	118	114	117	124	128	130	145	159	160	168	72	184	193	199	188	183	165
양식장조성 사업	본토	18	18	21	26	29	31	28	25	20	18	14	9	10	11	10	7	11	12	11	11	9	7	4	4	6
	홋카이도	2	3	2	2	1	2	2	1	1	2	2	2	1	1	1	2	2	2	3	3	5	7	7	7	6
	오кина와	-	-	-	1	2	2	2	1	1	1	1	1	3	3	2	2	2	1	2	3	4	3	2	2	2
	계	20	21	23	29	32	35	32	27	22	21	17	12	14	15	13	11	15	15	16	17	18	17	13	13	14
해역 고도 이용 시스템도입 등의 사업	본토	-	-	-	-	-	-	-	-	-	-	-	-	17	22	23	21	22	22	22	22	18	12	11	6	5
	홋카이도	-	-	-	-	-	-	-	-	-	-	-	-	3	3	2	-	-	-	-	-	-	-	-	-	-
	오кина와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20	25	25	21	22	22	22	18	12	11	6	5

사업	소관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연안 어장정 이용 촉진 사업	본토	-	-	-	-	-	-	-	-	-	-	-	-	3	5	3	5	4	4	3	2	4	5	4	1	3
	훗카 이도	-	-	-	-	-	-	-	-	-	-	-	-	4	1	1	2	2	3	2	1	4	2	1	2	3
	오키 나와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7	6	4	7	6	7	5	3	8	7	5	3	6
연안 어장 보전 사업	본토	18	23	27	36	29	32	31	31	31	31	31	29	31	33	31	36	38	45	48	55	61	58	56	53	52
	훗카 이도	-	-	-	2	10	2	1	1	1	1	2	1	2	2	3	2	3	2	2	2	4	5	5	1	1
	오키 나와	-	-	-	-	-	-	-	-	-	-	-	-	-	-	-	-	-	-	1	1	1	1	1	1	2
	계	18	23	27	38	39	34	32	32	32	32	33	30	33	35	34	38	41	47	51	58	66	64	62	55	55
계	418	580	690	711	761	784	740	741	745	752	750	799	868	885	902	928	933	934	913	679	697	663	624	596	550	

(2) 수산기반정비사업 실시 개소(2001년 이후)

사업	소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축사업	본토	228	234	-	-	-	-	-
	훗카이도	79	67	-	-	-	-	-
	낙도	105	103	-	-	-	-	-
	오키나와	10	12	-	-	-	-	-
	아마미	4	4	-	-	-	-	-
	계	426	420	-	-	-	-	-
직할특정어항어장 정비사업	훗카이도	-	-	33	33	33	33	33
지역수산물 공급기반 정비사업	본토	-	221	292	302	298	281	232
	훗카이도	-	75	77	75	72	71	66
	낙도	-	95	106	106	106	102	91
	오키나와	-	12	19	18	19	20	13
	아마미	-	5	6	6	5	5	4
	계	-	408	500	507	500	479	406
광역어항정비사업	본토	-	57	196	197	195	197	192
	훗카이도	-	5	14	16	17	17	17
	낙도	-	11	65	65	65	64	62
	오키나와	-	32	8	9	9	9	8
	아마미	-	0	2	2	2	2	2
	계	-	105	285	289	288	289	281
광역어장정비사업	본토	-	71	73	69	69	69	66
	훗카이도	-	14	14	14	14	14	14
	낙도	-	13	10	9	8	8	6
	오키나와	-	3	3	3	3	3	3
	아마미	-	1	1	1	0	0	1
	계	-	102	101	96	94	94	90
어항어장기능고도 화사업	본토	-	82	70	58	49	-	-
	훗카이도	-	30	24	17	10	-	-
	낙도	-	18	13	9	8	-	-
	오키나와	-	2	2	2	1	-	-
	아마미	-	0	1	0	1	-	-
	계	-	132	110	86	69	-	-
어장환경보전창조 사업	본토	-	53	48	44	41	47	40
	훗카이도	-	1	1	5	5	3	2
	낙도	-	1	2	10	9	5	6
	오키나와	-	2	2	2	1	1	0
	아마미	-	0	0	1	0	0	0
	계	-	57	53	62	56	56	48
어항수역환경보전 대책사업	본토	-	4	5	6	5	4	3
	훗카이도	-	0	0	0	0	0	0
	낙도	-	0	0	0	0	0	0
	오키나와	-	0	0	0	0	0	0
	아마미	-	0	0	0	0	0	0
	계	-	4	5	6	5	4	3

사업	소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어항관련도로 정비사업	본토	21	19	17	16	13	9	8
	훗카이도	5	2	1	2	1	1	1
	낙도	7	7	4	2	1	1	1
	오키나와	3	3	3	3	1	0	0
	아마미	1	1	0	0	0	0	0
	계	37	32	25	23	16	11	10
어항환경정비사업		41	46	43	41	39	-	-
어업취락환경정비사업		187	188	167	156	150	138	113
어촌만들기 종합정비사업		69	3	2	1	-	-	-
어항이용조정사업		13	11	13	12	11	-	-
어항공해방지대책사업		1	-	-	-	-	-	-

- 주) 1. 2001년부터 어항어장사업과 연안어장정비개발사업은 수산기반정비사업에 재편 통합.  
 2. 2001년으로 수축사업은 종료되었으며 2002년부터 특정 어항어장정비사업이 시작.  
 3. 직할특정 어항어장정비사업 이외의 특정 어항어장정비사업은 지역수산물 공급기반정비사업·광역어장정비사업·어장환경보전창조사업의 수.  
 4. 어촌 만들기 종합정비사업은 2002년까지의 어항어촌 종합 정비사업이며 2004년부터 도도부현 분을 포함하여 통합보조금화 된다.  
 5. 어항어장기능고도화사업 및 어항환경 정비 사업은 2005년부터 도도부현 분을 포함하여 통합보조금화 된다.  
 6. 어항이용조정사업은 2005년부터 어항어장기능고도화 통합 사업에 통합.

## 제 2 장 해안정비

### 1. 해안법의 개요

항목	조항	설명
연혁	1956년 법률 제101호	해안 관련기본법 정비시도는 1950년에 시작되어 1953년 2월 의원의 제안(참의원)으로 국회에 제출되며, 심의 등을 거쳐 1956년 3월 27일 중의원에 의해 정부에 제안되어 4월 10일 중의원 본회에서 가결, 4월 25일 참의원 가결로 5월 12일 공포되어 같은 해 11월 10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최근에는 1999년 5월 28일 공포된 「해안법 일부 개정법률」 및 1999년 7월 16일 공포된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관련 법률정비 등과 관련된 법률」로 개정되어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목적	제1조	해일, 고도, 파랑 기타 해수 혹은 지반변동에 따른 피해로부터 해안을 방호함과 동시에 해안환경정비와 보전 및 공중해안의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토보전에 이바지한다.
공공해안	제2조 제2항	국공유해안토지 및 저조선(低潮線)까지의 수면(다른 법령으로 관리되는 국유지는 제외되며 공유지 및 수면은 지사가 지정하고 공시한 것)
해안보전구역	제3조	방호해야 할 해안의 일정한 구역에서 지사가 지정하고 공표하여 주무대신에게 보고한 것
일반 공공해안구역	제2조 제2항	해안보전구역 이외의 공공해안
해안보전구역 등	제2종 제2항	해안보전구역 및 일반 공공해안구역
해안보전시설	제2조 제1항	해안보전구역에 있는 방제, 돌제, 호안, 흥벽, 이안제, 모래사장(방호기능이 있으며 설계, 지정된 것) 기타 해수침수 및 해수로 인한 침식방지시설
해안보전기본방침	제2조의 2	주무대신이 정한 해안보전관련기본방침
해안보전기본계획	제2조의 3	해안보전기본방침으로 연안마다 지사가 정한 해안보전관련기본방침

항목	조	설명		
주무대신 (소관구분) 해안관리자	제40조			
	제5조	해안관리자와 주무대신은 다음과 같다.		
	해안보전구역 등의 형태	해안관리자 기타	주무대신	
	해안보전구역 항만구역 및 항만인접지역과 중복 혹은 인접하는 구역	항만관리자의 장(제5조 제3항 및 제4항)	국토교통대신(항만국)(제40조 제1항 제1호)	
	공고수역과 중복되는 구역	지사 (제5조 제1항)		
	어항구역과 중복 혹은 인접하는 구역	어항관리자의 장(제5조 제3항 및 제5조 제4항)	농수대신(수산청)(제40조 제1항 제2호)	
	토지개량법에 따라 관리되는 해안보전시설이 있는 지역 및 토지개량 사업계획이 결정된 지역과 관련된 구역		농수대신(농진국) (제40조 제1항 제3호)	
농지보전을 위한 해안보전시설로 토지개량법과 상관없이 관리되는 지역과 관련된 구역	지사(제5조 제1항)혹은 시정촌장(제5 조 제2항)	농수대신과 국토교통대신(제40조 제1항 제4호)협의로 결정된다.		

항목	조	설명		
해안보전구역 등의 점용	제7조 및 제37조의 4	해안보전구역 등의 형태	해안관리자 기타	주무대신
		상기 이외	지사(제5조 제1항)혹은 시정촌의 장(제5조 제2항)	국토교통대신(하천국)(제40조 제1항 제6호)
		시정촌 구역에 있는 구역	시정촌의 장(해안관리자가 아님) (제5조 제6항)	국토교통대신(하천국)(제40조 제1항 제6호)
		국토보전상 상당히 중요하나 지사의 관리가 곤란하거나 혹은 부적당한 해안의 구역	주무대신 (제37조의 2)	
		일반 공공해안 구역, 해안보전 구역, 어항구역, 항만구역에 인접한 구역	인접한 구역의 관리자(제37조의 3 제2항)	인접한 구역의 주무대신(제40조 제1항 제5조)
		시정촌 구역에 있는 구역	시정촌의 장(제37조의 3 제3항)	국토교통대신(하천국)(제40조 제1항 제6호)
		상기 이외	지사(제37조의 3 제1항)	국토교통대신(하천국)(제40조 제1항 제6호)
		해안보전구역 등(수면 및 사유지 등은 제외)의 안에 해안보전시설 이외의 공작물(기타 시설 등)을 설치하여 점용하는 경우 해안관리자의 허가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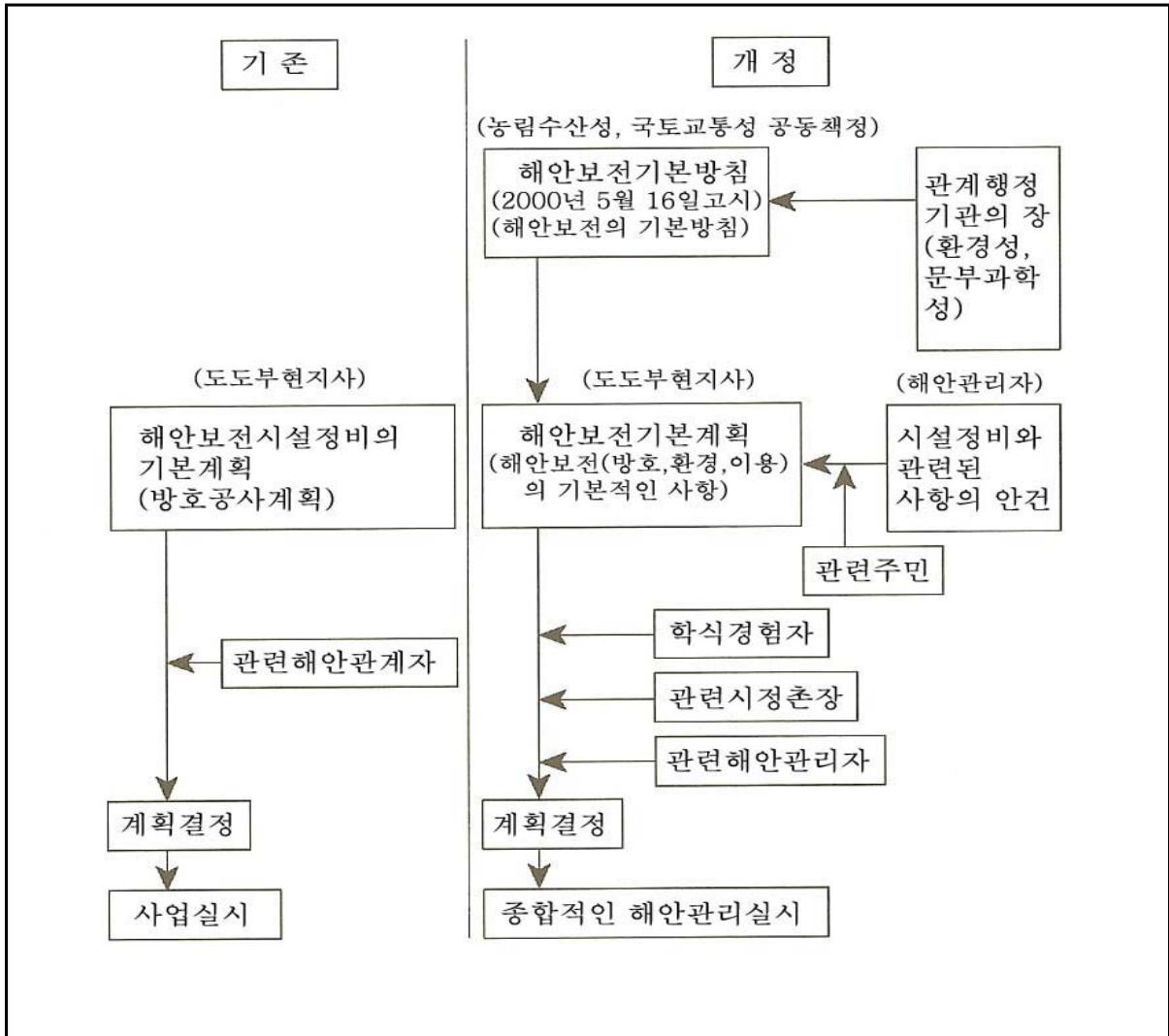
항목	조	설명
해안보전구역 등에서의 행위제한	제8조 및 제 37조의 5	토석채취, 사유지 등에 다른 시설물 등의 신설· 개축, 토지굴착, 성토 등을 시행하는 경우 해안관 리자의 허가가 필요(단, 정령2조에서 정한 행위는 허가 불필요)
해안보전구역 등에서의 행위금지	제8조의 2 및 제37조의 6	어떤 사람도 공공해안 내 해안관리자가 정한 구역 안에서 함부로 해안을 오염시키거나 기타 일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감독처분	제12조	점용허가, 행위제한 및 금지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감독처분 할 수 있다. 감독처분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처리를 명할 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이라도 조치를 스스로 취할 수 있으며, 제거한 시설 등을 매각·폐기, 매각대금보관 등을 시행할 수 있다.
해안보전시설의 기술상의 기준	제14조	해안보전시설구조의 통일된 기준이 규정되어 있어 주요 해안보전시설의 기술적인 기준은 성령이 정 한 바에 따른다. 이 성령은 2004년 3월 23일부로 농림수산성·국토교통성령 제1호로 제정되며 세부 사항은 해안성령 공동으로 2004년 4월 12일부로 통지한다.
원인제공자시행 및 원인제공자부담	제16조 및 제31조	해안보전시설 등의 공사 혹은 해안유지 등을 필요 하게 만드는 행위의 원인제공자에게 필요한 공사 등을 시행시키거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해안보전구역 등의 대장	제24조(제37 조의 8에서 의 준용도 포 함)	해안관리자는 해안보전구역 등의 대장을 작성, 보 관하여야 한다.
해안보전시설의 신설· 개량공사에서의 국가 비용부담(직할) (보조)	제26조 제27조	3-(15) 보조율 참조



■ (참고) 개정 해안법에 의한 새로운 계획제도

「해안법 일부개정법률」 (1999년 5월 28일 공포, 2000년 4월 1일 시행)

「지방분권추진을 위한 관계 법률정비 등과 관련된 법률」 (1999년 7월 16일 공포, 2000년 4월 1일 시행)



## 2. 해안보전기본방침의 개요 (2000년 5월 16일 농림수산성, 운송성, 건설성 고시 제3호)

### (1) 해안보전과 관련된 기본지침

#### ① 해안보전과 관련된 기본이념

국민공유 재산으로 「아름답고 안전하고 생기 넘치는 해안」을 차세대에 계승

#### ② 해안보전과 관련된 기본사항

◦ 적절한 방호수준을 확보하면서 해안환경정비와 보전 및 해안의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드 및 소프트적인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방호」 「환경」 「이용」이 조화된 해안보전추진)한다.

#### i. 해안방호와 관련된 기본사항

- 각각의 해안에서 자연조건이나 과거의 재해발생상황, 배후지의 인구·자산의 집적상황과 토지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안전을 적절히 확보할 수 있는 방호수준을 설정한다.
- 해일·고도대책은 위기관리 시점에서 하드·소프트적인 대책을 종합하여 추진 한다.
- 침식대책은 광역적인 시점에서 현재의 정선(汀線)보전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이다.

#### ii. 해안환경정비 및 보전과 관련된 기본사항

- 해안환경에 지장을 초래할 행위회피, 상실된 자연복원과 경관보전 등을 포함하는 자연과 공생하는 해안환경보전, 정비
- 해안보전시설 등의 정비는 해안환경보전을 충분히 고려해 나감과 동시에 양호한 해안환경을 창출한다.
- 해안환경과 관련된 정보수집·정리·분석 및 그 결과의 제공·공개로 보전해야 할 해안환경과 관련된 인식의 공유화

#### iii. 해안에서의 공중의 적정이용과 관련된 기본사항

- 공중의 적정한 해안이용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해안이용증진기여시설정비 등의 추진 및 경관과 편리성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오염파손, 방치선 등에 대한 적절한 대처
- 바다와의 만남의 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에 유의하면서 공중에 의한 해변으로의 액세스 확보
- 해안이용자의 매너향상을 위한 계몽활동추진

#### iv. 해안보전시설정비와 관련된 기본사항

- a. 안전한 해안정비
  - 선적방호(線的防護)방식에서 면적방호(面的防護)방식으로의 전환추진
  - 해일이나 고도에 의한 심각하고 광역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정비 추진 및 시설의 복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추진
  - 구조물에 의지하지 않는 대책도 포함한 적절한 토사관리에 의한 침식대책 추진
  - 지반이 연약한 지역이나 제로미터지대(지반이 침하된 지역)등에서의 시설의 내진성 강화추진
  - 기존시설의 유지보수 및 노후화된 시설 갱신 시 환경과 이용에 대한 고려
- b. 자연이 풍요로운 해안정비
  - 각각의 해안이 갖는 자연적인 특성에 따른 시설정비추진
  - 모래사장 보전과 회복을 중심으로 한 정비추진
  - 해안경관, 생물의 생식환경 등 자연환경보전을 고려한 시설정비추진
  - 이안제나 잠제, 인공리프 등 다양한 생물의 생식 · 생육의 장이 될 시설정비추진
- c. 친근감 넘치는 해안정비
  - 해변으로의 액세스 고려와 시설의 배리어프리(barrier-free)화
  - 환경과 이용을 고려한 기존시설갱신추진
- v. 해안보전과 관련된 기타 중요사항
  - a. 광역적이고 종합적인 시점에서의 대처추진
    - 방재대책은 관계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연대 하에 광역적이고 종합적인 시점에서 대처를 추진
    - 해안이용은 해안 및 그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시책과의 강한 연대로 추진
  - b. 지역과의 연대촉진 및 해안애호에 대한 계몽
    - 지역주민의 방재의식향상 및 방재지식보급, 해안미화활동, 해안이용규칙만들기 등과 관련한 지역과의 연대촉진
    - 해안애호사상 보급과 인재육성촉진
  - c. 조사 · 연구추진
    - 기초정보수집, 방재대책, 해안침식, 자연환경 등과 관련된 조사연구나 실험 등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등 추진

- 민간과의 정보공유화, 기술연대추진 및 국제적인 기술교류 등 추진
-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검토추진

(2) (1)에서 해안보전기본계획을 작성할 해안구분(별표)

(3) 해안보전기본계획 작성과 관련된 기본사항

- 도도부현에서는 본 해안보전기본방침에 따라 지역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제2장에서 정한 해안마다 논리적인 해안보전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종합적인 해안보전을 실시한다.
- 또한 해안이 복수의 도부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련된 도부현이 공동으로 계획책정체제를 정비하여 1에서의 해안보전기본계획을 작성한다.

■ 별 표 ■

도도부현 명	연안 명	구역		적요
		기점	종점	
홋카이도	키타미	소우야	시레토코 갑(岬)	소우야갑(岬)은 소우야항 향만구역의 서쪽 가장자리이다.
홋카이도	네무로	시레토코 갑	노삿부 갑	
홋카이도	토카치 쿠시로	노삿부 갑		
홋카이도	히다카 이부리		치큐 갑	
홋카이도	오시마 히가시	치큐 갑	예산 갑	
홋카이도	오시마 미나미	예산 갑	시라가키 갑	
홋카이도	시리베시 히야마	시라가키 갑	샤코탄 갑	
홋카이도	이시카리 만	샤코탄 갑	유우토 갑	
홋카이도	테시오	유우토 갑	소우야 갑	소우야 갑은 소우야항 향만구역의 서쪽 가장 자리이다.
아오모리	시모기타 하치노에	이와테 현 경계	홋카이 갑	
아오모리	무츠 만	홋카이 갑	네기시	네기시는 히라칸어항구역의 남쪽가장자리이다.
아오모리	츠가루 만	네기시	아키타현 경계	네기시는 히라칸어항구역의 남쪽가장자리이다.
아키타	아키타	아오모리현 경계	야마가타현 경계	
야마가타	야마가타	아키타현 경계	니이가타현 경계	
이와테	산리쿠 키타	아오모리현 경계	쿠마노사키	

-표계속

도도부현 명	연안 명	구역		적요
		기점	종점	
이와테 미야기	산리쿠 미나미	쿠마노사키	쿠로사키	
미야기 후쿠시마	센다이 만	쿠로자키	차야케 갑	
후쿠시마	후쿠시마	차야케 갑	이바라기현 경계	
이바라기	이바라기	후쿠시마현경계	치바현 경계	
치바	치바 히가시	아바라기현경계	스사키	
치바, 도쿄,카나가와	도쿄 만	스사키	츠루기사키	
도쿄	이즈 오가사와라	-	-	
카나가와	사가미나다	츠루기사키	시즈오카현경계	
니이가타	니이가타 키타	야마가타현경계	토리케쿠비 갑	
니이가타	사도	-	-	
니이가타 토야마	토야마 만	토리케쿠비 갑	이시카와현경계	
이시카와	노토 반도	토야마현 경계	코우간 갑	
이시카와 후쿠이	카에츠	코우간 갑	에치젠 갑	
시즈오카	이즈 반도	카나가와현경계	오오세미사키	
시즈오카	스루가 만	오오제미사키	오마에사키	
시즈오카 아이치	엔슈나다	오마에 갑	이라고 갑	
아이치 미에	미카와만 · 이세만	이라고 갑	신젠 갑	
미에 와카야마	쿠마노나다	신젠 갑	시오노 갑	
후쿠이	와카사 만	에치젠 갑	교토부 경계	
교토	탄고	후쿠이현 경계	효고현 경계	
효고	타지마	교토부 경계	돗토리현 경계	
와카야마	키슈나다	시오노 갑	오오사카부경계	
효고 오오사카	오오사카만	와카야마현경계	아카시히가시경계	
효고	마하리	아카시히가시경계	오카야마현경계	
효고	아와지	-	-	
돗토리	돗토리	효고현 경계	시마네현 경계	
시마네	시마네	돗토리현 경계	야마구치현경계	
시마네	오키	-	-	
야마구치	야마구치 키타	시마네현 경계	시모노세키시키타경계	
야마구치	야마구치 미나미	시모노세키키타경계	히로시마현경계	
히로시마	히로시마	야마구치현경계	오카야마현경계	
오카야마	오카야마	히로시마현경계	효고현 경계	
도쿠키마 카가와		미사키	손사키(나루토)	
도쿠시마	키이스이도우니시	손사키(나루토)	가모우타 갑	
도쿠시마 고우치	카이부나다	가모우타 갑	무로토 갑	
고우치	토사만	무로코 갑		

-표계속

도도부현 명	연안명	구역		적요
		기점	종점	
고우치 에히메	분고스이도우 히가시		사다미 갑	
에히메	이요나다	사다미 갑		
에히메 카가와	츠루나다		미사키	
후쿠오카	켄카이나다	사가현 경계	키타큐슈시니시 경계	
오쿠오카 오오이 타	토요마에 토요 아토	키타큐슈시니시 경계	칸자키	
오오이타	토요아토스이 도우니시	칸자키	미야자키현 경 계	
미야자키	니코우나다	오오이타현 경계	카고시마현 경 계	
카고시마	오오스미	미야자키현 경계	사타미 갑	
카고시마	카고시마만	사타미 갑	나가사키하나	
카고시마	류마	나가사키하나	오오사키(나가 시마)	쿠로세토는 쿠로에세토 오오하시를 경계로 한 다.
카고시마	류미나미 서도	-	-	류유코토리시마는 제외
카고시마 쿠마모토	야츠시로해	오오사키(나가시 마)	코마츠사키(아 마쿠사시모시 마)	훈토세토는 세토오오하 시를 경계로 한다. 아마 쿠사마츠시마지역은 아 마쿠사2호다리에서 아 마쿠사4호다리 및 카이 에치항 항만구역서쪽가 장자리를 경계로 한다. 산카쿠항부근은 산카쿠 항 항만구역북쪽가장자 리를 경계로 한다.
쿠마모토 사가 후쿠오카 나가사키	아리아케해	나가사키하나(아 마쿠사시모시 마)	세츠미사키	훈토세토는 세토오오하 시를 경계로한다. 아마 쿠사마츠시마지역은 아마쿠사2호다리에서 아마쿠사4호다리 및 카 이에치항 항만구역서쪽 가장자리를 경계로 한 다. 산카쿠부근은 산카 쿠항 항만구역북쪽가장 자리를 경계로 한다.
쿠마모토	아마쿠사니시	코마츠사키(아마 쿠사시모시마)	나가사키하나 (아마쿠사시모 시마)	

-표계속

도도부현 명	연안명	구역		적요
		기점	종점	
나가사키		세츠미사키		
나가사키				
나가사키	오오무라만			
나가사키 사 가	마츠우라		후쿠오카현 경계	
나가사키	고토우, 츠시 마	-	-	
오키나와	치큐 서도	-	-	류코우토리 포함 시마도



제14회 어항어장어촌 사진 공모전 수상작품  
 「九王의 사자」 (愛媛県・川井章代氏)  
 愛媛県大西町

## 3. 해안의 종류

구분(통칭)	어항해안	항만해안	농지해안	공관(共管)	건설해안
해안 양태	어항구역 내의 해안	항만구역, 항만인접지역, 공고구역내의 해안	토지개발사업으로 완성, 관리되는 해안시설 및 시설계획중인 해안	농지보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지방공공단체가 관리하는 해안시설	왼쪽 이외의 해안
해안관리자	어항관리자인 지방공공단체의 장(도도부현지사 혹은 시정촌의장)	항만관리자의 장(도도부현지사 혹은 시정촌의장)	도도부현지사	도도부현지사(예외적으로 시정촌의장)	도도부현지사
도도부현 창구(대표 예)	어항과	항만과	경지과	경지과 하천과	하천과
국가 창구	농림수산성 수산청 방재어촌과	국토교통성 항만국 해안·방재과	농림수산성 농촌진흥국 방재과	농림수산성과 국토교통성 공동관리	국토교통성 하천국 사방부보전과 해안실
주무대신	농림수산대신	국토교통대신	농림수산대신		국토교통대신



4. 해안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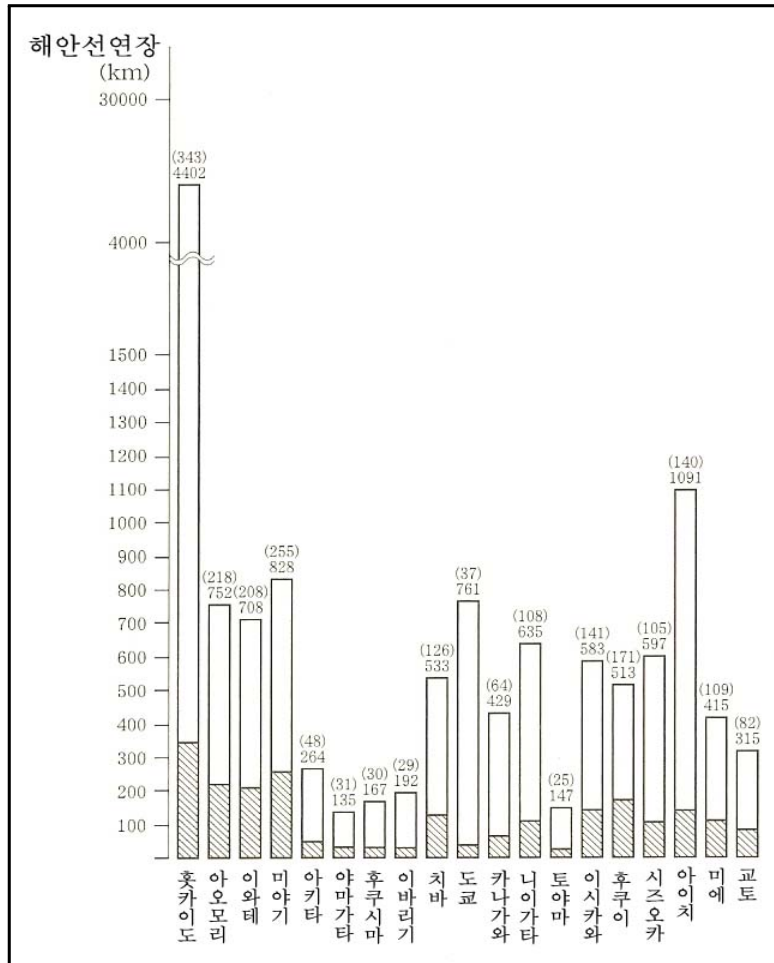
(1) 지정해안선연장

○ 전국해안의 개황 2005년 3월 31일 현재(단위 : 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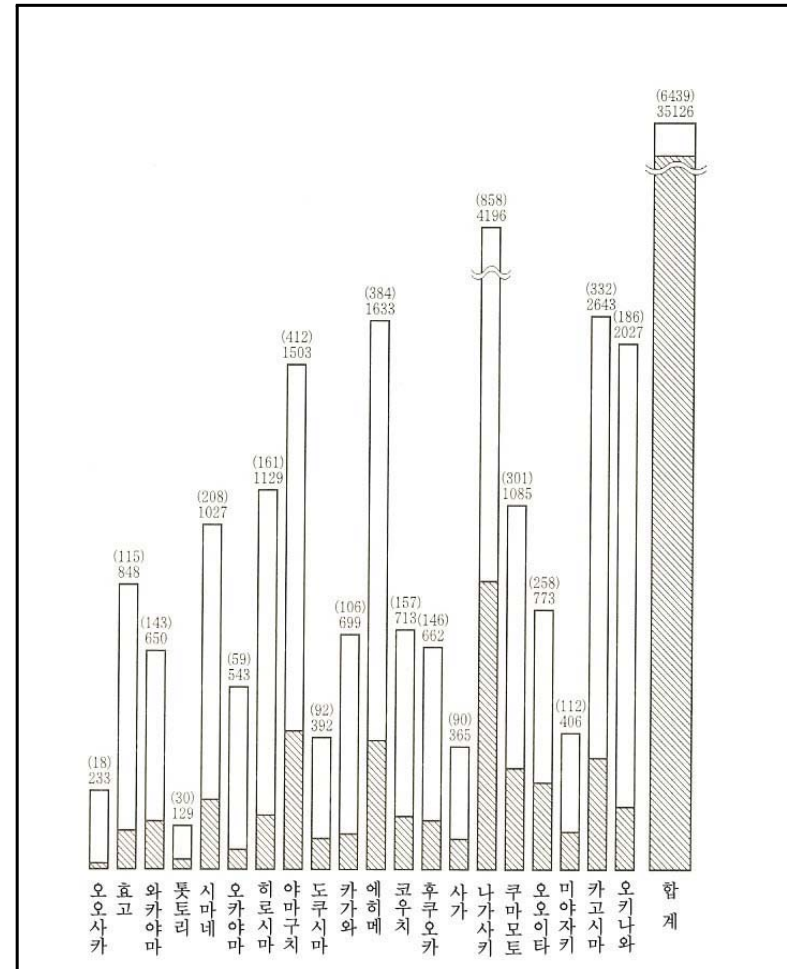
구분	전국의 해안선 총연장 35,126km									
	해안선연장*		보전필요구역연장							
	연장	구성비 (%)	지정 완료	지정 필요	계	구성비 (%)	시설이 있는 구역(A)	방호 (防護) 미완(B)	계 (A)+(B)	(A) (A)+(B) (%)
농림수산성	8,161	24,2	4,850	304	5,154	33,7	3,074	2,080	5,154	59,6
농림진흥국	1,722	5,1	1,689	67	1,756	11,5	1,199	557	1,756	68,3
수산청	6,439	19,1	3,161	237	3,398	22,2	1,875	1,523	3,398	55,2
국토교통성	25,362	75,1	8,993	902	9,895	64,7	6,383	3,512	9,895	64,5
항만국	8,785	26,0	3,957	415	4,372	28,6	3,137	1,235	4,372	71,7
하천국	16,578	49,1	5,036	488	5,523	36,1	3,246	2,277	5,523	58,8
농촌진흥국·하천국	233	0,7	234	-	241	1,6	145	97	241	59,9
합계	33,757	100,0	14,077	1,214	15,291	100,0	9,601	5,689	15,291	62,8

- 주) 1. \*는 총연장에서 북쪽영토, 센카쿠열도분 1,369km는 제외.  
 2. 농림수산성은 농촌진흥국(농지해안)과 수산청(어항해안)의 합계.  
 3. 국토교통성은 항만국(항만해안)과 하천국(건설해안)의 합계.  
 4. 사사오입에 따라 합은 일치하지 않는다.

(2) 도도부현 별 해안선연장(2005년 3월 31일 현재)



주 : 상단 ( )는 수산청 소관 해안선연장의 내수이다.



5. 해안사업과 관련된 장기계획

(1) 해안사업 5개년계획의 경위

구분	제1차 5개년계획	제2차 5개년계획	제3차 5개년계획	제4차 5개년계획	제5차 5개년계획	제6차 5개년계획	
계획기간(연 도)	1970~197 4	1976~198 0	1981~198 5	1986~199 0	1991~199 5	1996~200 2	
계획 사업 비	해안사업 비	3,200	5,100	8,200	7,600	10,400	13,400
	수산청	533	857	1,386	1,290	1,767	2,277
	재해관련 · 지방단독 사업비	300	400	600	500	900	1,300
	조정비	-	-	500	1,900	1,700	3,000
	예비비	200	300	-	-	-	-
	합계	3,700	5,800	9,300	10,000	13,000	17,700
	해안 정비 율	계획전년도 말 17.3%	21.8%	27.7%	34.9%	43.6%	
	목표 31.2	30.9	36.8	42.9	53.6		
	실적 27.1	29.0	34.9	43.8	54.8		
시설 정비 율	계획전년도 말					41.3%	
	목표					47.6	
	실적					48.9	
계획 진척 율	수산청	72.5%	106.1%	80.7%	105.7%	109.8%	121.3%
	4성청합계	81.4	110.1	82.2	108.3	110.7	119.3
각의 승인	1970.3.6	1976.2.27	1981.2.13	1986.2.25	1991.2.8	1996.2.20	
각의 결정	1971.3.30	1977.2.18	1981.11.2 7	1986.11.2 8	1991.11.2 9	1996.12.1 3	
기사(記事)	1973년(수 산 청 은 1974년)부 터 해안환 경 정비 사 업 개시	1975년 해 역 정 화 대 책사업 개 시(건설성, 농 수 성 구 조 개 선 국)1979년 부터 보수 사업개시		1976년(운 송 · 건 설), 1986 년(구조개 선국, 수산 청)부터 공 유 지 조 성 호안 등의 정 비 사 업 개시		해 안 사 업 5개년계획 의 7개년 계 획 으 로 의 개정 (1998.1.3 0 각 의 결 정)	

주) · 계획 진척율은 해안사업비만의 명목진도를 나타낸다.

## (2) 제6차 해안사업 7개년계획의 진척상황

(금액단위: 백만 엔)

소속 성칭	전체계획 (1996~2002) 사업비	1996년도 (수정 후) 사업비	1997년도 (수정 후) 사업비	1998년도 (3차 수정 후) 사업비	1999년도 (2차 수정 후) 사업비
수산청	227,700	40,407	37,258	47,990	41,992
전체	1,340,000	233,859	218,190	276,521	238,065

(금액단위 : 백만 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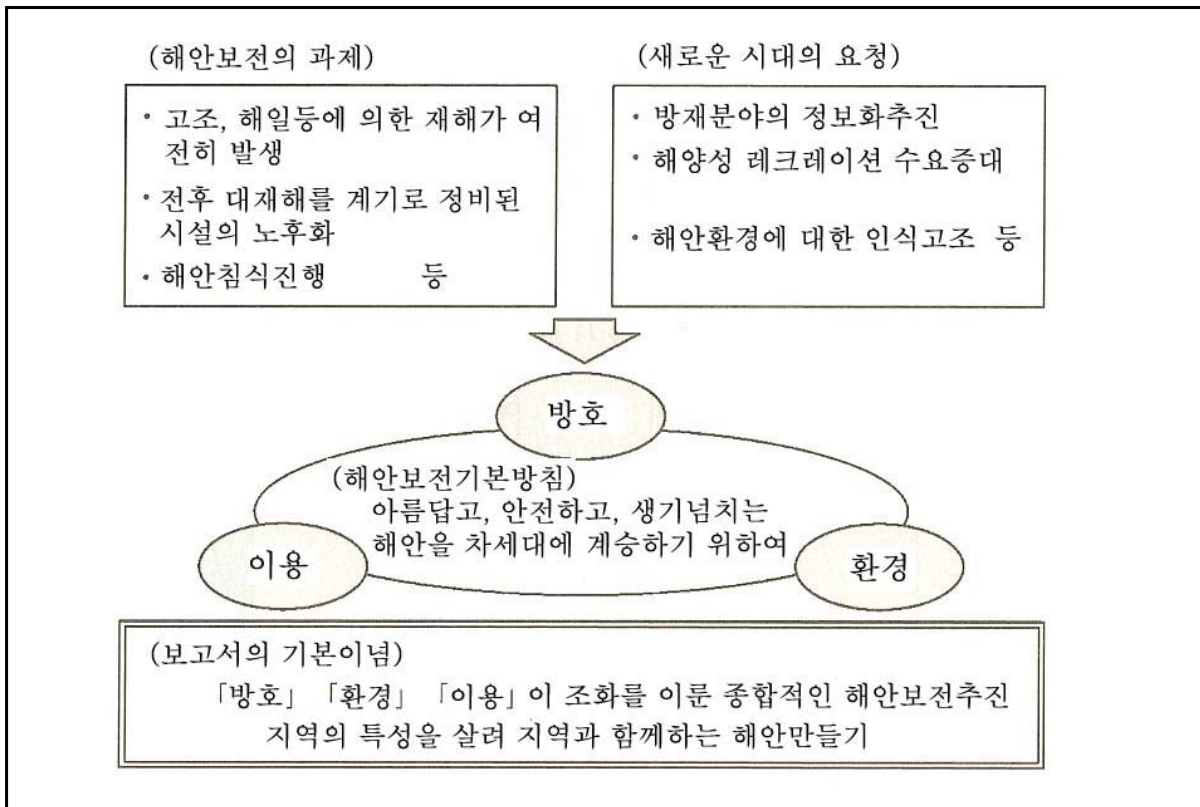
소속 성칭	2000년도 (1차 수정 후) 사업비	2001년도 (2차 수정 후) 사업비	2002년도 (1차 수정 후) 사업비	진척율 (%)
수산청	41,488	36,631	30,431	121.30
전체	233,517	216,630	181,298	119.26

주) 제6차 해안사업 7개년계획의 총투자규모는 1조 7,700억엔

(해안사업비 13,400억엔, 조정비 3,000억엔, 재관(災關)·지단(地單) 1,300억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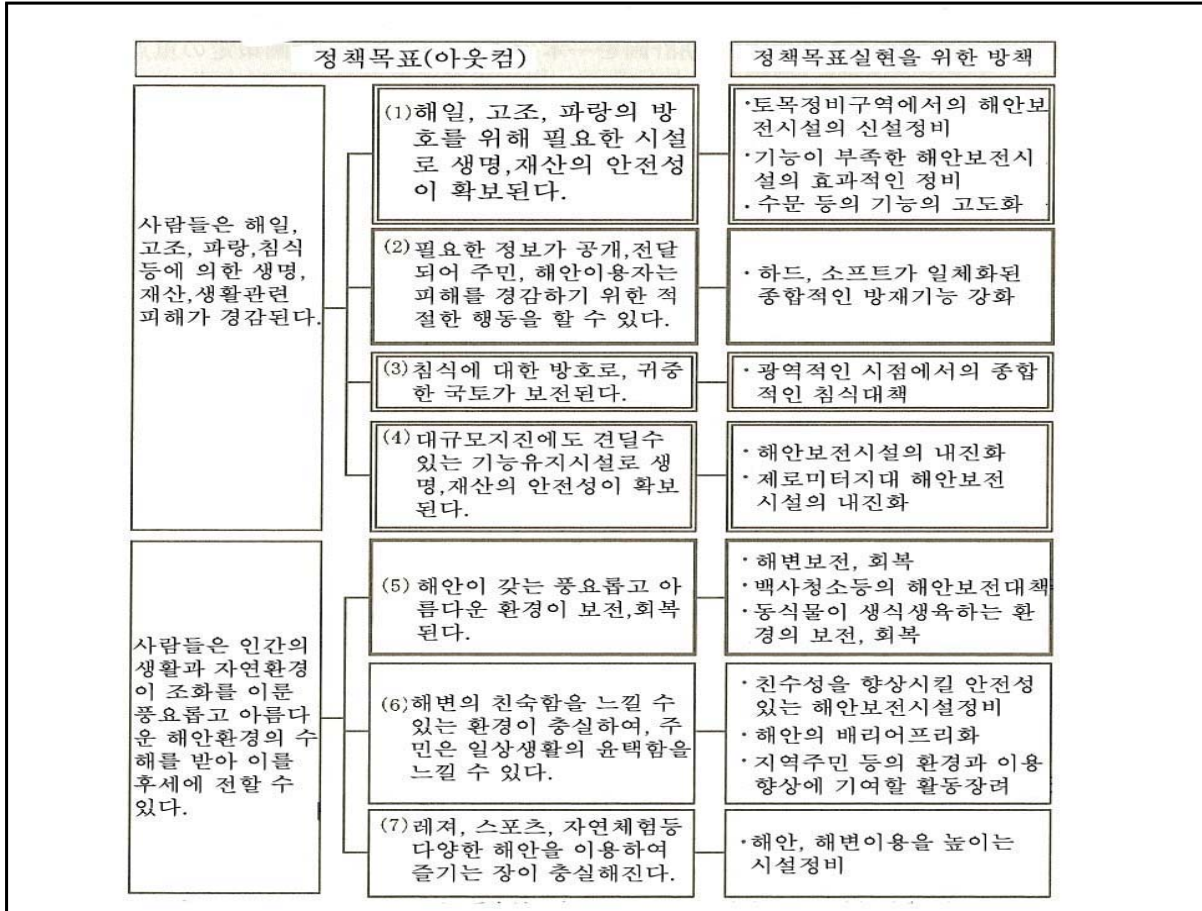
(3) 사회자본정비 중점계획

- ① 「중기적 전망에서 본 새로운 해안보전의 진행방식 검토회」의 제언에 관하여
  - 학자 등으로 이루어진 「중기적 전망에서 본 새로운 해안보전의 진행방식 검토회」(의장: 成田頼明요코하마 국립대학 명예교수)는 해안법에 따라 2000년 책정된 해안보전기본방침을 기본으로 중기적인 전망에서 본 새로운 해안보전시설의 진행방식에 대한 구조와 방향성에 대하여 2002년 3월부터 총 4번의 토의를 거쳐 2003년 2월 13일 해안성청에 그 검토결과를 제언하였다.
  - [제언(중기적인 전망에서 본 새로운 해안보전의 진행방식) 포인트]
    - i. 기본이념
      - 해안보전의 기본방침인 『아름답고 안전하고 생동감 넘치는 해안』을 기본이념으로 재해로부터의 해안방호, 해안환경정비와 보전 및 해안의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며 이들이 조화를 이루도록 종합적인 해안보전을 시행한다.



ii. 해안보전과 관련된 정책목표

- 해안보전의 과제와 새로운 시대의 요청에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의 적절한 역할분담아래 지역주민, NPO 등과 연대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목표를 가능한 아웃컴 지표로 표현하여 주요 시책을 실시한다.



※ 「소요안전이 확보」 되는 것은 각 지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실측치나 근방 임지 등에서의 기상 및 해상의 여러 조건이 유사한 곳의 실측치 혹은 기상자료 등에 의한 추산치 등으로 적절하게 상정, 추산한 계획력에 대하여 안전이 확보되는 것을 말한다.



: 정책목표 실현에 국가가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것



: 정책목표 실현에 국가와 지방이 하나가 되어 대처하는 것



: 정책목표실현에 지방이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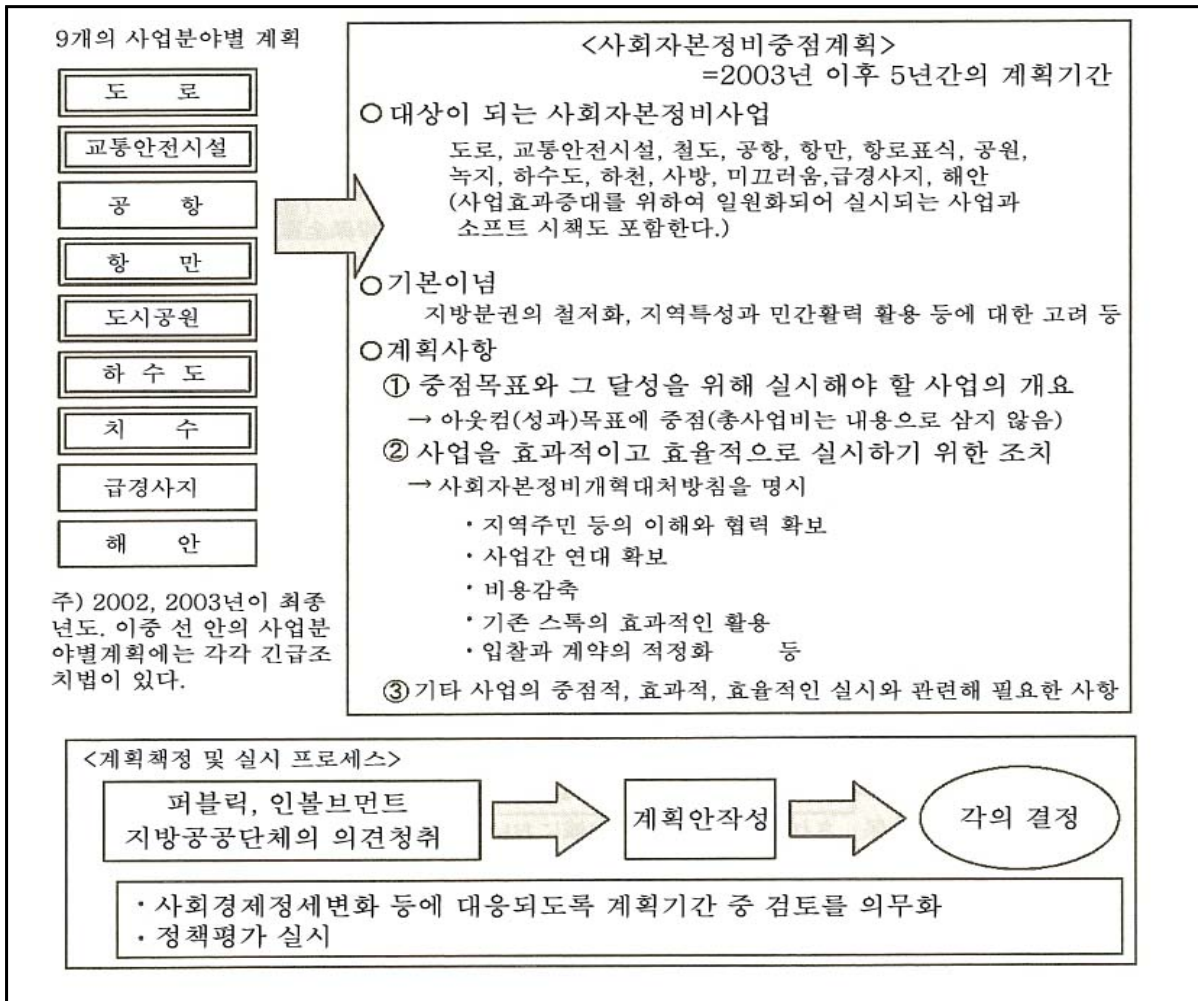
② 사회자본정비 중점계획책정에 대하여

- 사회자본정비는 지역주민 등의 이해와 협력확보 및 저비용으로 질 높은 정비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대의 요청에 따라 횡단적인 대처와 사업 간의 연대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업분야 별로 책정한 해안사업을 포함하는 9개의 장기계획을 일체화시킴과 동시에 계획책정의 중점을 기존 「사업량」에서 「달성될 성과(아웃컴 지표)」로 변경하는 등 사회자본정비의 중점화 · 효율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이 2003년 4월 1일에 시행되었다.

■ (별도)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 (2003년 3월 31일 법20)의 개요 ■

사회자본정비사업을 중점적, 효과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책정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경찰청,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공동관리)

<2003년 3월 28일 : 성립 3월 31일: 공포 4월 1일 : 시행>



## ③ 해안사업과 관련된 장기계획

- 해안사업의 장기계획은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에 따라 2003년도를 시작연도로 5년간의 계획기간을 갖는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이다.
- 사회자본정비는 국제경쟁력과 매력 있는 도시로의 재생, 개성과 재치 넘치는 지역사회실현, 순환형 사회구축, 지구환경문제로의 대응,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대응 등과 같은 중심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활」, 「안전」, 「환경」, 「활력」이라는 4개의 분야로 나누어 중점목표를 설정하여 사업간 연대강화와 비용감축 등의 실현을 위하여 중점목표에 따르는 아웃컴 지표를 책정한 후 그 달성을 위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추진한다.
- 해안사업과 관련된 아웃컴 지표는 「중기적 전망에서 바라본 새로운 해안보전의 진행방법 검토회」의 제언에 따라 검토하며 국민 및 도도부현으로부터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책정한다.

## ④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의 개요

- i. 중점목표는 2002년도 말부터 2007년도말까지 「생활」, 「안전」, 「환경」, 「활력」이라는 4개 분야별로 모두 15개의 목표가 책정되어 있다. 이중 해안사업과 관련된 지표는 다음 3개이다.

## &lt;안전-방재의 고도화추진 등&gt;

- 중점목표 : 수해 등(토사재해, 해일·고조 등) 재해에 강한 국가 만들기  
지표 : 해일·고조로 인한 재해로부터 일정한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지역의 면적 [약 15만 ha (2002년) -> 약 10만 ha(2007년)]
- 중점목표 : 대규모지진, 화재에 강한 국토 만들기 등  
지표 : 지진 시 방호시설붕괴로 수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해소한다. [약 13,000ha(2002년) -> 약 10,000ha(2007년)] (치수사업과의 횡단지표)

## &lt;환경 - 주변생활환경보전·창조 등&g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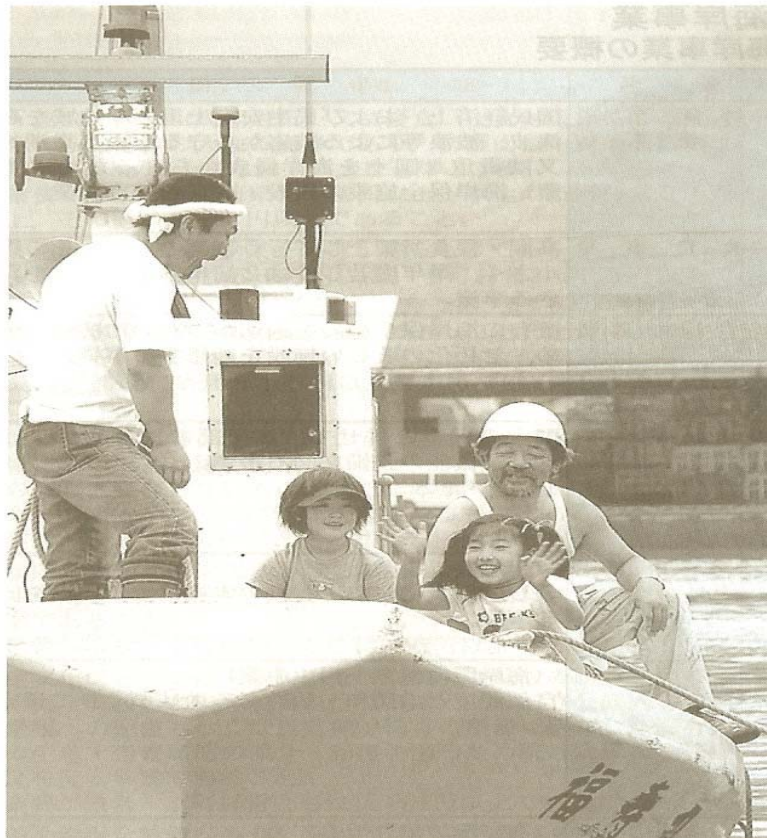
- 중점목표 : 양호한 자연환경보전·재생·창출  
지표 : 잃어버린 자연수변 중에서 회복 가능한 자연수변 중 재생된 수변의 비율 [2007년까지 약 20%재생](치수사업과의 횡단지표)

- ii. 또한, 사업의 횡단적인 대처를 사업 분야별로 재정리하였으며, 해안사업은 다음과 같다.

- a. 해일, 고조, 파랑, 해안침식이 국민의 생명·재산에 미치는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 해일 · 고조로 인한 재해로부터 일정한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지역의 면적 [약 15만 ha(2002년) -> 약 10만 ha(2007년)]
  - 침식해안에서 현재의 정선(汀線)방호가 완료되지 않은 비율 [24% (2002년) -> 18% (2007년)]
  - 내진화가 불충분한 시설에 방호되는 면적 [약 40,000ha(2002년) -> 약 36,000ha(2007년)]
- b. 인간생활과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어 후세에 전할 풍요롭고 아름다운 해안 환경의 보전과 회복을 위하여
- 복원 · 창출된 모래사장의 면적 [약 2,200ha(2002년) -> 약 2,800ha(2007년)]
  - 사람들이 해안에서 친숙함을 느낄 수 있는 해안연장 [약 6,700km(2002년) -> 약 6,800km(2007년)]



제 14회 어항어장어촌 사진 공모전 입상작품  
「승선 체험」(静岡県 · 大石陽子氏)  
静岡県用宗漁港

## 6. 해안사업

### (1) 해안사업의 개요

사업 명	사업 개요	채택기준	사업개시년도
고조대책사업 침식대책사업	국민경제, 민생안정상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지역을 고조, 해일, 파랑 등의 피해로부터 지키기 위하여(고조대책) 혹은 귀중한 국토를 해안침식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침식대책) 해안보전시설을 신설하거나 개량하는 사업	고조·파랑·해일(고조대책)혹은 침식(침식대책)으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해안으로 방호면적·방호인구가 1km당 5ha이상 혹은 50명이상인 곳을 기준으로 삼는다. 총사업비가 본사의 도도부현 운영 1억 엔 이상, 본토의 시정촌 운영 9천만 엔 이상, 기타 5천만 엔 이상인 곳	1956년도
국부개량사업	고조·침식대책이 세워진 사업 중, 그 규모가 작아 1년 혹은 2년간의 시공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	단년도 시행으로 사업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곳. 총사업비가 도도부현 운영 5천만 엔 이상, 시정촌 운영 2.5천만 엔 이상인 곳	1956년도
보수통합 보조사업	기존해안보전시설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후화가 현저한 시설을 보수하는 사업	해안관리자가 관리하는 해안보전시설로 노후화 등으로 현저하게 기능이 저하된 곳 총사업비가 도도부현 운영 5천만 엔 이상, 시정촌 운영 2.5천만 엔 이상인 곳	1979년도
해안환경 정비사업	국토보전과 함께 해안부의 종합적인 레크레이션 기능을 정비하는 사업	주변에 공영공원 등 레크레이션 시설이 있는 구역 혹은 계획 중인 구역으로 보다 종합적인 레크레이션 기능을 발휘하며 민간시설과 경쟁하지 않는 곳. 또한 본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등은 지방공공단체가 일원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는 곳. 총사업비가 현 운영·시정촌 운영 모두 10천만 엔 이상인 곳	1973년도 (어항해안은 1974년도부터)
	(긴급해변보호사업) 눈에 띄는 침식에 대해 해변보호사업 실시로 이전 해변으로의 회복을 도모하는 사업	침식경향이 뚜렷하며 해안보전시설만으로는 이전 해변으로의 회복, 환경유지가 곤란한 해안, 혹은 해안시설설치로 환경상의 제약이 있는 해안 총사업비가 현 운영·시정촌 운영 모두 10천만 엔 이상인 곳	1988년도

사업 명	사업 개요	채택기준	사업개시년도
해안환경 정비사업	(해변환경보전·재생사업) 자연환경과의 조화 · 개성 있는 지 역 만들기에 기여하는 사업	국가 지정 문화재 등인 사적, 경승암(景勝岩) 및 교류촉진시설 방 호를 위해 해안보전시설을 신설 혹은 개량하는 해안 혹은 국립공 원 내 등의 이용· 경관을 고려, 희귀어종 등 특수 환경에 의존하는 고유생물의 생식·생육환경의 보전·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해 안보전시설의 개량을 실시하는 사업일 것. 총사업비가 현 운영 · 시정촌 운영 모두 10천만 엔 이상인 곳	2003년도
	(해안환경국부개량공사) 계단공(階段工)과 일체화 된 유보도 (遊歩道) 혹은 식물재배를 단년도 혹은 2년간의 시공으로 정비하여 효 과를 발휘하는 사업. 해안이용자의 안정성확보를 위하여 안전정보전달시설을 정비하는 사업	이미 해안보전시설이 있으며 해수욕 등의 이용도가 높은 해안. 총 사업비가 현 운영 · 시정촌 운영 모두 1천만 엔 이상인 곳	1990년도
해일·고조위 기관리대책 긴급사업	기존 해안보전시설의 시급한 방재기 능 확보 및 피난대책을 촉진함으로 해일·고조발생시 인명의 우선적인 방호를 추진하는 사업	①대규모 지진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는 해안. ②삭망(朔望)평균만조수위 이하의 방호구역을 가지며 고조 재해가 커 시급한 대책을 요하는 해안. ③ 일련의 해안 마다 일정한 계획에 따라 사업에 착수하여 5년 이 내에 정비목표달성이 예상되는 곳 ④ 소프트 대책은 총사업비의 약 20%이내	2005년도 (2006년도부 터 확충)

## (2) 보조율

구분	일반해안				
	본사	훗카이도	낙도	오키나와	아마미
고조대책	1/2 2/3(※) 2/5(◎)	11/20	11/20	9/10	2/3
침식대책	1/2 2/3(※)	11/20	11/20	9/10	2/3
국부개량	1/3	1/3 1/2(☆)	1/2	1/3	1/2
보수통합보조	1/3	1/3	1/3	1/3	1/3
해일·고조위기관리대책긴급사업	1/2	1/2	1/2	1/2	1/2
환경정비	1/3	1/3	1/3	1/3	1/3

- 주) 1. (※)는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주무대신이 지정.  
 2. (☆)는 낙도진흥법을 적용한 곳으로 낙도와 동을  
 3. (◎)는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것(도시해안고도화사업)

## (3) 해안사업에서의 지방재정조치

## ① 일반 공공사업채의 대상사업 및 기채 총당율 (당초분)

(2006년 4월 현재)

사업구분		대상사업	기채 총당율	교부세 산입율
통상분	보조	·해안보전시설정비사업 (고조대상사업) (침식대책사업)<오키나와, 아마미는 제외> (국부개량사업)<오키나와, 아마미는 제외> ·해일·고조위기관리대책긴급사업 ·해안환경정비사업	약 90% ·이중, 통상채분 30% ·이중, 재원대책 채분 60%	·통상채분 후년도 50%(침식대책사업은 후년도57%) ·재원대책채분 후년도 50%

- 주) 1. 보수사업은 일반 공공사업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해일·고조위기 관리대책 긴급사업에서 해일재해예측도(hazard map)작성 지원은 제외.  
 3. 침식대책사업의 교부세 산입율 57%는 재해복구사업채(지반침하 등의 대책 사업채)의 산입율에 따른다.

② 해안사업을 실시할 경우의 건설재원 사례(당초분)

i. 고조대책사업, 해일·고조위기관리대책긴급사업(본토 보조율 1/2의 사업)

국비 50%	일반 공공사업채(통상분)		일반재원5%
	통상채분 (100-50)X0.30=15.0%	재원대책채분 (100-50)X0.60=30.0%	
	이중, 50%후년도 교부세 조치	이중, 50%후년도 교부세 조치	

ii. 침식대책사업(본토 보조율 1/2 사업)

국비 50%	일반 공공사업채(통상분)		일반재원5%
	통상채분 (100-50)X0.30=15.0%	재원대책채분 (100-50)X0.60=30.0%	
	이중, 50%후년도 교부세 조치	이중, 50%후년도 교부세 조치	

iii. 국부개량사업(본토, 오키나와), 해안환경정비사업

국비 1/3	일반 공공사업채(통상분)		일반재원6.07 %
	통상채분 (1-1/3)X 100 X0.30=20.0%	재원대책채분 (1-1/3)X 100 X 0.60=40.0%	
	이중, 50%후년도 교부세 조치	이중, 50%후년도 교부세 조치	

iv. 보수통합보조사업(도도부현 사업)

국비 1/3	일반단독사업채 (1-1/3)X 100 X 0.70 = 46.67%	일반재원20%
	후년도 교부세 조치 없음	

v. 보수통합보조사업(시정촌 사업)

국비 1/3	일반단독사업채 (1-1/3) X 100 X 0.75 = 50.0%	일반재원16.67 %
	후년도 교부세 조치 없음	

## (4) 다양한 요청에 대응한 해안정비

## ① 산뜻한 어촌해안정비 (해안기능고도화사업) (1990년~ )

## i. 사업의 목적

- 노후화 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해안보전시설 혹은 어업취락지의 환경향상에 기여하는 해안보전시설정비 시 이안제, 호안, 식물재배, 모래사장 등을 종합화한 면적방호방식으로 안전하고 윤택한 해안공간창출을 도모한다.

## ii. 사업내용

- 이안제, 호안시설과 개량, 물보라방지효과가 있는 식물재배, 소파(小波)효과, 견고한 모래사장 및 해변 등을 갖춘다.

## iii. 채택요건

- 고조·침식대책사업의 채택기준을 만족시킬 것
- 시설의 노후화 등이 현저하거나 혹은 넘치는 파도 혹은 물보라로 인한 피해가 현저하거나 배후의 어업취락환경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면적방호방식에 의한 시설 신설 및 개량 실시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곳.

## iv. 사업주체

- 지방공공단체

## v. 보조율

- 고조대책·침식대책사업의 보조율

## vi. 실시지구

현명	어항해안명	해안관리자	승인연도	현명	어항해안명	해안관리자	승인연도
토야마	뉴우젠	뉴우젠초	1990년	홋카이도	오사츠베	현(미나미보우부정)	1996년
카고시마	테우치	현(시모케촌)	1990년	아오모리	이와사키	현(이와자키촌)	1997년
이와테	쿠키	현(쿠시시)	1991년	시즈오카	시즈우라	현(누마에치시)	1998년
니이가타	우라모토	현(이토사카가와시)	1991년	카가와	나마리	타쿠마정	2000년
후쿠이	하야세	현(비하마정)	1992년	미에	카라스	카라스정	2001년
야마구치	센자키	현(나루토시)	1992년	미에	류시	마츠사카시	2001년
토야마	야부다	효켄시	1993년	쿠마모토	시키	료키나정	2001년
에히메	카메오카	키쿠마정	1993년	야마구치	아츠키	류이시	2001년
야마구치	모리노	토우와정	1994년	효고	스이	타케노정	2002년
야마구치	아츠키	류이시	1994년	오кина와	칸보우	센노자촌	2003년
나가사키	치지와	치치이시정	1995년	오кина와	기마	쿠미시마정	2005년
아오모리	히라칸	현(히라칸촌)	1996년	미에	이소지	시니치시시	2005년
돗토리	토마리	현(하수무라)	1996년	이바라키	이소자키	현(히타치나카정)	2005년
에히메	하모토	유미케리정	1996년	아오모리	히라칸	도(게카하마정)	2006년

② 에코 · 코스트 사업(1996년~ )

i. 취지

- 최근 연안부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감소로 자연해변, 조장 · 간석, 생태계 등의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양호한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보전, 회복할 필요가 있는 해안에서 필요에 따라 지역 주민 등의 참가로 세밀한 대응과 사업효과의 플로업 등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시행하여 생태계와 자연경관 등의 주변자연환경을 고려한 자연과 공생하는 해안 만들기를 추진한다.

ii. 사업내용

- 해안보전시설배치와 구조 등을 고려하여 생태계, 자연경관 등 주변자연환경을 고려한 해안정비와 지역주민, NPO 등의 의견청취, 파일럿 공구에서의 주민단체 등의 참가로 인한 모니터링실시 및 그 결과 등에 따라 시설을 정비한다.
- 또한 이미 해안보전시설이 정비되어 방호기능이 확보된 해안보전시설의 개량(이안제의 잠제화 등)을 실시한다.(해안환경 정비사업에 한정한다.)

iii. 채택요건

- 생태계나 자연경관 등 자연환경을 고려해야할 필요성이 높은 해안
- 에코 · 코스트지정으로 자연환경보전 · 회복효과가 기대되는 곳
- 주민 참가형 에코 · 코스트 추진협의회가 설치되는 곳 등

iv. 사업주체

- 지방공공단체

v. 보조율

- 해안보전시설정비사업, 해안환경정비사업의 보조율

vi. 실시지구

현명	어항해안 명	해안관리자	승인연도
오카야마	요코에	카사오카시	1996년
쿠마모토	히아리	현(마츠시마정)	1997년
코우치	이리노	오오가타정	1998년
후쿠시마	나코소	현(이와키시)	1999년
이바라기	히라가타	현(키타이바라기시)	1999년
오카야마	시라이시지마	현(카사오카시)	1999년
후쿠시마	토요마	현(이와키시)	2000년
이시가와	우시	슈주시	2000년
이시가와	하시다테	현(카가시)	2000년
이와테	무츠가우라	현(리쿠마에타가타시)	2000년

③ 바다와 육지연안의 네트워크 사업(1996년~ )

i. 취지

- 지역의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보전함으로 야생생물이 생식 가능한 공간(비오톱(biotope))보전·회복을 목적으로 삼림, 호소(호수와 늪)등을 중심으로 자연환경정비가 실시되고 있다.
- 국토보전상 경계에 있는 해안은 바다와 육지 생태계의 접점이다. 따라서 해안사업에서도 야생생물이 생식 가능한 공간보전·회복은 원래부터 생물의 이동 혹은 교류의 장으로 기능하는 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육지에서 해안지역까지의 비오톱이 이어지는 일체화된 네트워크형성을 도모한다.

ii. 사업내용

-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등의 자연환경보전사업(비오톱 사업 등)과의 연대를 도모하며 해안사업에서의 방조림, 식물재배 및 이와 관련된 도로관리 등의 정비를 실시한다.

iii. 채택 요건

- 배후지에서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이 실시되거나 혹은 예정된 해안에서 방조림 등이 계획되는 지구

iv. 사업주체

- 지방공공단체

v. 보조율

- 해안보전시설정비사업, 해안환경정비사업의 보조율



④ 바다와 연안의 건강지역 -건강해안- (1996년~ )

i. 취지

- 사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일본은 옛날부터 해수욕과 낚시 등 활발한 해안이용이 있어 왔다. 바다가 갖는 건강·보양효과로 인해 옛날부터 요양원(sanatorium) 등이 연안부에 입지되어왔으나 최근에는 해수욕·해양요법을 위한 건강증진시설 등에 착안한 정비가 진행되는 등 점점 주목이 집중되고 있다.
- 따라서 바다가 갖는 건강자원으로서의 활용을 도모하며 국민에게 건강증진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건강증진·보양시설과 고령자나 장애인도 이용하기 쉬운 해안보전시설, 공원 등의 사회자본정비를 함께 추진한다.

ii. 사업내용

- 해수욕으로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후생노동성의 건강문화도시지정과 연대하여 「건강한 해안」을 지정하고 배후의 복지시설과 해수욕·해양요법을 위한 건강증진시설 등과 모래사장보전·복원, 고령자나 신체장애인으로 해안이용이 쉽도록 하는 완경사제, 계단공(階段工)등의 해안보전시설정비, 공원 등의 사회자본정비를 일원화하여 진행시킴으로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해안지역을 창출한다.

iii. 채택요건

- 「건강한 해안」으로 지정되어 건강·보양·요양시설 등이 정비 혹은 정비될 예정인 해안

iv. 사업주체

- 지방공공단체

v. 보조율

- 해안보전시설정비사업, 해안환경정비사업의 보조율

vi. 실시지구

현명	어항해안 명	해안관리자	승인연도
홋카이도	토유라	도(토유라 정)	1997년
아이치	오오노	토코나메	2000년

⑤ 「해변 생성」 추진(1997년~ )

i. 취지

- 지금까지 해안사업과 수산기반정비사업 등에서는 사업비용 삭감을 도모하며 해안의 침식대책기여의 관점에서 잉여경향이 있는 곳의 발생토사(어항 등의 기능증진을 위한 준설토사 등)를 활용하여 토사가 부족한 곳(침식해안 등)에 해변보호사업 등을 시행해 왔으나, 최근에는 진행되는 토사수지불균형으로 인한 해안침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하천유역도 염두에 두어 보다 광역적인 시점에 입각한 종합적인 토사관리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 따라서 관계기관과의 연대 하에 해안부 및 하천유역이 일원화 된 종합적인 토사관리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해안침식대책에 이바지 한다.

ii. 사업내용

- 침식이 진행되고 있는 해안에서 수산기반, 항만, 하천, 사방, 댐 사업 등과 연대하여 어항·항만주변과 하천, 사방시설, 댐 등에 남는 퇴적된 토사를 해안의 침식된 곳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아름다운 모래사장을 복원함과 동시에 광역적이고 효과적인 침식대책을 추진한다.

iii. 채택요건

- 해안침식이 현저하여 토사가 부족한 곳 및 해당 연안지역 등에서 남는 토사를 가져올 수 있는 곳
- 「해변 생성」 추진으로 관련 사업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것

iv. 사업주체 - 지방공공단체

v. 보조율

- 해안, 수산기반, 어항, 하천, 사방, 댐의 각종 사업 보조율

vi. 실시지구

현명	해안보호사업 해안명	준설 장소명	승인 연도	현 명	해안보호 사업해안명	준설 장소명	승인 연도
후쿠시마	마츠카와우라 어항해안	마츠우라 어항	1997년	코우치	나카오하마 어항해안	시모가와구치 어항	2000년
이시카와	이오리 건설해안	히가시하마 어항	1997년	카나가와	오다하라 어항해안	메시센토우스 부근	2001년
이시카와	이시카와 건설해안	미가와 어항	1997년	토야마	뉴우젠 어항해안	스이하시 어항	2002년
토야마	사카이 건설해안	미야자키 어항	1997년	시즈오카	후쿠다 어항해안	후쿠다 어항	2002년
훗카이도	효에치 어항해안	효에치 어항	2000년				

주) 수산기반정비사업지역은 어항해안사업과 관련된 지구만을 기재하였다.

⑥ 활발한 바다어린이 해안 만들기 (2004년~ )

i. 취지

- 해안은 청소년에게 있어서 자연환경의 가치와 웅대함에 대한 이해를 높여 풍요로운 정서를 형성하는 장으로서의 귀중한 공간이므로 1997년부터의 문부과학성의 야외교육 등의 시책과 연대하여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자연 · 사회 교육활동의 장으로서 이용하기 쉬운 해안 만들기를 시행해 오고 있다. 한편, 최근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추진관련시책 등과의 연대강화가 필요해짐과 동시에 동해지진 등의 대규모재해에 대비한 안전정보전달시설설치, 방재교육 등의 안전대책 강화가 필요시 되고 있다.
- 따라서 문부과학성과 연대하여 하드 · 소프트시설을 일원적으로 계획 · 추진함으로써 청소년이 보다 안전하게 자연 · 사회 · 스포츠 활동을 실현할 수 있는 해안을 형성하여 해안에서의 자연· 사회· 교육활동 및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를 한층 더하고자 한다.

ii. 사업내용

- 해안사업에서는 해안보전과 함께 완경사장 설치 등 이용 및 피난하기 쉬운 해안 만들기를 위한 시설정비나 인공해변설치 등으로 양호한 자연 · 경관을 갖는 평온한 해역형성 등 자연체험의 장을 만들기 위한 시설을 정비한다.
- 문부과학성에서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해안의 적극적인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풍요로운 체험활동추진사업, 청소년 장기자연체험 활동추진사업, 어린이 주말활동지원사업 등의 소프트사업을 추진한다.

iii. 채택요건

- 주민 등의 협력을 얻을 수 있는 지역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
- 해변의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야외교육, 환경교육활동 및 스포츠 활동 등을 실시하기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소년자연의 집이나 학교 등 교육 관련시설이 해안 근처에 있어 청소년의 적극적인 해안이용이 예상되는 지역.

iv. 사업주체 - 지방공공단체

v. 보조율 - 해안보전시설정비사업, 해안환경정비사업의 보조율

vi. 실시지구

현명	어항해안 명	해안관리자	승인연도
후쿠이	오하마	현(오하마시)	2004년도 구 활발한 모임 1997년도
아이치	우지에	오쿠비 정	2004년도 구 활발한 모임 1997년도
아오모리	시케우라	현(히라나이 정)	구 활발한 모임 2003년도

⑦ 도시해안 고도화사업(1997년~ )

i. 취지

- 배후지에 상업지역, 업무시설 혹은 주택지가 집약된 해안으로 배후지에 집약된 자산·인구를 지킴과 동시에 해안보전시설의 내진성을 고려하는 등의 안전한 해안지역형성과 함께 배후지의 높은 토지이용과의 정합성을 확보한 도시의 풍요로운 해안 만들기를 진행하도록 해안보전시설정비사업을 실시한다.

ii. 사업내용

- 배후지가 상업·업무지 등 시민의 이용이 높은 해안에서 해안보전기능의 내진성을 고려하거나 혹은 배후의 높은 토지이용과의 정합성을 확보한 도시의 풍요로운 해안 만들기를 시행하는 해안보전시설정비사업을 실시한다.

iii. 채택요건

- 해안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는 고조대책사업으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며 특히 정비를 필요로 하는 곳
- 해안보전시설의 신설 혹은 개량과 관련된 공사로 대규모적인 것 중 주로 시가지를 방호하는데 특히 중요한 해안.
- 배후지에 상업시설, 업무시설 혹은 주택이 집약된 해안으로 배후의 토지이용과 해안정비가 유기적으로 연대되는 곳
- 내진성 등 해안보전시설의 보전기능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편리성향상을 도모하여 해안에서의 시민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시설을 정비하는 곳. 특히 배리어프리를 고려하는 곳.

iv. 사업주체

- 지방공공단체

v. 보조율

- 시가지고조 : 보조율 2/5

vi. 실시지구

현명	어항해안 명	해안관리자	승인연도
아오모리	아오모리	아오모리현	1997년

⑧ 「어류육성해안 만들기」 추진(1999년 ~ )

i. 취지

- 국가연합해양법조약 추진 등 신 해양질서로의 이행 등 수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국민의 요구에 적합한 대응으로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안어장의 고도이용촉진은 중요시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해일, 침식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 등을 감안해서는 해안지역에서의 방재기능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 따라서 수산기반정비사업과 해안사업의 연대로 투자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사업의 효과를 조기에 실현시켜 연안어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수산물공급증대, 해안방호로 인한 국토보전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ii. 사업 내용

- 아래의 사업을 연대하여 조장 · 간석 등 조성, 증양식장 정비, 해안방호 등을 시행한다.
- 수산청 소관의 수산기반정비사업 중 수산물공급기반정비사업
- 농림수산성(농촌진흥국, 수산청), 국토교통성(하천국, 항만국)소관의 해안사업

iii. 채택요건

- 두 사업이 일원적으로 실시됨으로 비용감축 등 효율적인 사업실시가 도모될 것
- 본 사업이 어업자, 지역주민의 의향을 충분히 반영한 것일 것
- 어업권이 설정된 수역 혹은 어업권 설정에 지장을 미치지 않는 수역
- 토사퇴적 등으로 증 양식장 기능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iv. 사업주체

- 지방공공단체

v. 보조율

- 수산기반정비사업, 해안사업의 보조율

vi. 실시지구

현명	어항해안명	해안관리자	승인연도
아오모리	히가와	현(센다이 정)	1999년도
홋카이도	센포우시	도(리시리 정)	2001년도

⑨ 「자연이 풍요로운 바다와 삼림정비대책사업(백사청송 창출)」 추진(2000년)

i. 취지

- 해안에 하얀 모래와 푸른 소나무가 펼쳐지는 「백사청송」은 일본의 역사와 풍토로 다듬어져온 아름다운 국토를 대표하는 것으로 차세대로 계승해야 할 국민 모두의 귀중한 재산이다.
- 1999년 5월 일부 개정된 해안법은 종래의 목적인 「해안방호」에 「해안환경정비와 보전」 및 「공공해안의 적절한 이용」을 새로이 추가하여 백사청송으로 대표되는 풍성한 자연과 이용이 편리한 해안 만들기를 추진하는 관점에서 2000년부터 해안사업과 치산사업이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시켜 해당사업을 추진한다.

ii. 사업내용

- 해안침식 등으로 백사청송이 줄어들고 있는 해안에서 다음사업을 연대하여 실시함으로 비용감축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시설계획, 구역변경 및 시설전용 등 합리적인 조정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을 실시하여 풍성한 자연과 이용하기 쉬운 해안환경을 창출한다.
- 농림수산성(농촌진흥국, 수산청), 국토교통성(하천국, 항만국)소관의 해안사업
- 환경사호안, 인공리프, 해변보호사업 등에 의한 환경, 이용을 고려한 해안보전시설 등의 정비
- 임야청 소관 치산사업
- 비사(飛砂), 조풍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삼림조성·정비·환경사호안 등에 의한 환경, 이용을 고려한 치산시설정비

iii. 사업주체 - 지방공공단체

iv. 보조율 - 해안보전시설정비사업, 해안환경정비사업의 보조율

v. 실시지구

현명	어항해안 명	해안관리자	승인연도
이시카와	야스타쿠	코마츠시	2000년도 (구 백사청송 1995년)
효고	누마시마	현(미나미단정)	2000년도 (구 백사청송 1995년)
후쿠오카	와키다	키타규슈시	2000년도 (구 백사청송 1996년)
아키다	가네우라	현(카네우라시)	2000년도
니이가타	아라하마	하쿠자티시	2000년도
시즈오카	후쿠다	현(아사비정)	2000년도
돗토리	토마리	현(토마리무라)	2000년도

⑩ 「어촌에서의 IT화」 추진(2002년~ )

i. 취지

- 어항어촌의 대부분은 낙도와 벽지 등 조건이 불리한 지역과 시가지로부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는 입지조건 때문에 이들의 지리적인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고도화된 정보화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 따라서 어항고도이용촉진대책사업, 신 어촌 커뮤니티기반 정비 사업에 의한 CATV등 정보통신시설정비와 해일 · 고조방재 스테이션과의 연대를 도모함으로써 IT를 활용한 안전한 어촌 만들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효과적인 해안정보를 제공한다.

ii. 사업내용

- 다음 사업을 연대하여 정보전달시설 등의 정비를 시행한다.
- 어항고도이용촉진대책사업, 신 어촌 커뮤니티 기반정비사업 중 정보기반시설 등의 정비
- 해안보전시설정비사업 중 해일 · 고조방재시스템 정비
- ※ 일련의 정보관계시설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어업취락환경정비사업, 어촌 가꾸기 종합정비사업에 의한 어업취락배수시설의 원거리조작시설정비와의 연대도 도모한다.

iii. 사업주체

- 지방공공단체

iv. 보조율

- 어항고도이용촉진대책사업, 신 어촌 커뮤니티 기반정비사업, 해안보전시설정비사업의 보조율

## ⑪ 종합적인 해일·고조재해대책강화사업(2004년도~)

## i. 취지

- 해일·고조대책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실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의 대책 사업을 통합함과 동시에 하드·소프트가 일원화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해안배후에서 생활하는 주민 등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ii. 사업내용

## a. 제방·호안(護岸)등의 정비추진

- 제방·호안 등의 정비(둑 증축공사, 내진화, 액상화대책 등)
- 피난용 통로를 겸하는 관리용 통로정비(긴급 시 사용되는 관리용 통로정비도 포함)

## b. 수문, 육갑(陸閘)등의 정비추진

- 게이트의 전동화, 해일, 고조 방재스테이션정비(수문·육갑(陸閘)등의 원거리 조작화, 조위계(潮位計) 등의 관측기기설치)

## c. 안전정보전달시설정비

## iii. 채택요건

- 해안보전시설을 신설하거나 개량사업을 실시하는 지역
- 지역의 방재계획과 일관성이 유지되는 지역
- 재해예측도(hazard map)등 소프트시책과의 연대 및 일관성이 유지되는 지역
- 대규모 해일, 고조재해가 기록되었거나 혹은 예상되는 지역

## iv. 사업주체

- 지방공공단체

## v. 보조율

- 해안보전시설정비사업, 해안환경정비사업의 보조율

## vi. 실시지구

- 구 해안보전시설 긴급방재기능고도화사업

현명	어항해안명	해안관리자	승인연도
훗카이도	세이보우	도(오쿠시리 정)	1996년
이와테	※야마타	현(야마타 정)	1996년
니이가타	※아라하마	카시와자키 시	1996년
야마구치	센자키	현(나가토 시)	1996년
오오이타	※카스미가우라	사이키 시	1997년
이와테	소우노하마	현(카마이시 시)	1997년
미야기	이사토마에	현(카에치 정)	2001년



- 구 해안위기관리기능고도화사업

현명	어항해안명	해안관리자	승인연도
미에	※카라스	카라스 정	2002년
미에	※아소우라	현(미나미시마 정)	2002년
오오이타	※카스미가우라	사이키 시	2002년
아이치	※우에노마	미하마 정	2003년
에히메	※야나기하라	호우죠 시	2003년

- 구 해안위기관리기능고도화사업

현명	어항해안명	해안관리자	승인연도
홋카이도	비와쵸	현(하마쵸 정)	1997년
홋카이도	훈보로코	현(하마쵸 정)	1997년
시즈오카	치토우가타	사가라 정	2001년
시즈오카	※야이즈	현(야이즈 시)	2001년
이와테	※오오후나토	현(오오후나토 시)	2001년

- 종합적인 해일·고조재해대책강화사업

현명	어항해안명	해안관리자	승인연도
아이치	토요하마	현(미나미치타 정)	2004년
아이치	시자키	현(미나미치타 정)	2004년

주) ※ 는 2004년도 사업통합에 따라 「종합적인 해일·고조재해대책강화사업」으로 이행

## ⑫ 도시 농어촌의 교류촉진과 관광 진흥에 이바지 할 해안조성사업(2003년도~ )

## i. 취지

- 도시 농어촌의 교류 및 관광 진흥을 추진해야 할 지역에서 지역의 개성과 문화를 육성해온 사적, 경승암 등의 지역의 문화자원과 도시 농어촌 교류에 이바지할 시설 보호, 양호한 경관을 해치거나 해안이용을 방해하는 해안보전시설을 경관과 이용을 고려하여 개량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를 촉진하고 관광 진흥을 지원하여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한다.

## ii. 사업내용

- 문화자원과 교류시설보호를 위한 해안보전시설정비
- 이미 해안보전시설이 정비되어 방호기능이 확보된 해안에서의 경관과 이용을 고려한 이안제의 잠제화, 인공리프화 등 해안보전시설개량

## iii. 채택요건

## a. 사적·경승암(景勝岩) 및 교류촉진시설 보호

- 다음에서 열거하는 도시·농어촌교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일 것
- 국가·도도부현 지정문화재 및 국립공원·국정공원·도도부현립공원 내의 중요 사적·경승암
- 공영 숙박·교류시설 등 교류인구 증가에 기여하는 시설

## b. 경관·이용을 고려한 기존시설 개량(해안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

- 국립공원·국정공원 및 도도부현립공원 내에서 경관·이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안보전시설 중 1987년도 이전에 사업이 착수되어 기존의 방호기능이 확보됨과 동시에 기존시설의 재이용 등이 도모되는 것

## iv. 사업주체

- 지방공공단체

## v. 보조율

- 해안보전시설정비사업, 해안환경정비사업의 보조율

⑬ 재해약자 대책사업(2004년~ )

i. 취지

- 일본의 연안지역은 해일·고조 등 해안재해에 취약한 특성을 갖고 있는 한편 양호한 자연환경 등으로 인해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신체장애자 재활원호시설, 정신박약자원호시설, 의료제공시설, 유치원, 생활보호법에 따른 구호·후생시설, 의료보호시설, 학교교육법에 따른 맹아학교·양호시설 등(이하 「재해약자관련시설」이라고 부른다.)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등의 재해약자이용시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 최근에는 동해지진, 동 남해·남해지진 등 대규모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안전대책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재해약자에 대한 안전 확보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 따라서 해일·고조 등의 해안재해로부터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등의 재해약자를 방호함과 동시에 해안이용촉진과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기반 확보를 위해 하드·소프트 양면에서의 종합적인 해안방재대책이 추진된다.

ii. 사업내용

- 재해약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완경사제 정비와 기존시설의 배리어프리화
- 안전한 정보전달시설정비
- 피난용 통로를 겸한 관리자통로 정비

iii. 채택요건

- a. 해일·고조 등의 재해의 위험성이 높아 방호구역 내에 재해약자관련시설을 갖는 해안 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해안을 대상으로 한다.
  - 지역의 방재계획과 일관성을 가질 것
  - 재해예측도(hazard map) 등의 소프트시책과 연대가 도모되어질 것
- b. 고조대책, 침식대책은 재해약자관련시설 이용자중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보내는 이용자를 거주인구에 더함으로 방호인구를 산정할 수 있다.

iv. 사업주체 - 지방공공단체

v. 보조율 - 해안보전시설정비사업, 해안환경정비사업의 보조율

vi. 실시지구

현명	어항해안명	해안관리자	승인연도
아오모리	민마야	현(민마야 촌)	2004년

## 7. 해안사업실시개소 경과표

사항	구분	제6차 7개년 계획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고조대책 사업	본토	123	107	96	95	90	94	91	79	70
	훗카이도	8	9	8	6	6	4	5	5	5
	낙도	33	28	23	17	15	13	14	12	12
	오кина와	7	7	7	5	3	6	6	4	3
	아마미	2	2	1	1	1	1	1	1	2
	계	173	153	135	124	115	118	117	101	92
침식대책 사업	본토	51	44	42	38	34	31	30	27	26
	훗카이도	9	7	5	4	4	4	3	2	1
	낙도	3	2	-	-	-	1	3	3	3
	오кина와	-	-	-	-	-	-	-	1	1
	아마미	-	-	-	-	-	-	-	-	-
	계	63	53	47	42	38	36	36	33	31
해안환경 정비사업	본토	88(3)	81(3)	77(3)	72(1)	62(2)	51(2)	39(0)	36(1)	27(3)
	훗카이도	6	8(1)	8(1)	7	7	6	6	6	6
	낙도	18	14	12(1)	11	10	6	5	3	2
	오кина와	1	1	1	1	1	-	-	-	-
	아마미	2	1	2	2	2	1	-	-	-
	계	115(3)	105(4)	100(5)	93(1)	82(2)	64(2)	50(0)	45(1)	35(3)
공유지조 성호안 등 정비종합 보조사업	본토	2	2	2	2	1	1	1	1	-
	훗카이도	1	1	1	1	-	-	-	-	-
	낙도	-	-	-	-	-	-	-	-	-
	오кина와	1	1	1	1	1	-	-	-	-
	아마미	-	-	-	-	-	-	-	-	-
	계	4	4	4	4	2	1	1	1	-
국부개량 사업		26	36	40	28	19	19	21	19	14
보수통합 보조사업		10	8	11	10	6	7	8	4	3
해일·고조 위 기관리대 책 긴급사업		-	-	-	-	-	-	-	19	22
계		391	359	337	301	262	245	233	222	197

주) 1. ( )안은 환경국 개정에 의한 수

2. 보수사업은 2001년부터 보수통합 보조사업으로 개정

3. 공유지조성호안 등의 정비사업은 2002년부터 공유지조성호안 등의 정비통합 보조사업으로 개정, 2006년부터 사업폐지.

4. 해일위기 관리대책 긴급사업은 2006년부터 해일·고조위기관리대책긴급사업으로 개정

5. 보수통합보조사업, 해일·고조위기 관리대책 긴급사업은 지방공공단체 수

## 제 3 장 어항·해안의 재해복구

### 1. 재해복구의 법제도

#### (1) 부담법 관계

<b>근거법규</b>	공공토목시설 재해복구사업비 국고 부담법(1951년 3월 31일 법률 제 97호)
<b>목적</b>	공공토목시설 재해복구사업비는 지방공공단체의 재정력에 적응하도록 국가의 부담을 정하여 재해의 신속한 복구를 도모하여 공공의 복지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b>정의</b>	「재해」는 폭풍, 홍수, 고조, 지진 기타 이상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며 「재해복구사업」은 재해로 인해 필요가 발생하는 사업으로 재해관련시설을 원형으로 복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b>대상시설</b>	◎ 어항 기본시설 외곽시설 : 방파제, 방사제, 방조제, 도류제, 수문, 갑문, 호안, 제방, 돌제 및 흥벽 계류시설 : 안벽, 물양장, 계선부표, 계선말뚝, 잔교, 부잔교 및 선양장 수역시설 : 항로 및 박지 기능시설 운송시설 : 철도, 도로, 주차장, 다리, 운하 및 헬리콥터 ◎ 해안 : 국토보전을 위하여 방호가 필요한 해안 혹은 이에 설치되는 방제, 호안, 돌제 등 해안을 방호하기 위한 시설
<b>국고 부담율</b>	재해복구사업비 및 해당 지방공공단체의 해당연도 표준세 수입에 따라 다르지만 기준은 2/3(홋카이도, 낙도, 아마미, 오키나와는 4/5)
<b>근거법규</b>	공공토목시설 재해복구사업비 국고부담법

<p style="text-align: center;"><b>채택범위 (채택될 수 없는 요인)</b></p>	<p>1) 최대풍속 15m 미만의 바람으로 발생한 재해.</p> <p>2) 폭풍 혹은 그 여파로 인한 이상 고조 또는 파랑(파도를 포함). 또는 해일에 의한 재해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것</p> <p>3) 최대 24시간 강수량 80mm 미만의 강우로 발생한 재해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한다.</p> <p>① 시간당 강수량과 연속 강수량이 특히 많은 경우</p> <p>② 하천연안 어항시설은 경계수위(경계수위의 규정이 없는 경우는 하안고(河岸高:저수위에서 천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의 50%정도의 수위)이상의 출수(出水)인 경우</p> <p>③ 하상저하(河床低下) 등 하천형태의 변동으로 경계수위 규정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해당 경계수위 이하의 출수.</p> <p>④ 비교적 장시간에 걸친 융설 출수(融雪出水).</p>
<p style="text-align: center;"><b>적용제외</b></p>	<p>1) 한군데 공사비용이 도도부현 혹은 지정도시와 관련되어 120만 엔, 시정촌과 관련된 것은 60만 엔에 미치지 않는 것</p> <p>2) 공사비용에 비해 그 효과가 현저하게 작은 것</p> <p>3) 유지공사로 간주해야 하는 것</p> <p>4) 명확한 설계의 불충분함이나 혹은 공사시행의 소홀함으로 발생되었다고 인정되는 재해와 관련된 것</p> <p>5) 유지관리의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인정되는 재해와 관련된 것</p> <p>6) 하천, 항만 및 어항의 매몰과 관련된 것. 단, 유지상 혹은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p> <p>7) 천연 하천연안 및 해안의 흥괴(欠壞)와 관련된 것. 단, 유지상 혹은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p> <p>8) 재해복구사업 이외의 사업 공사시행 중 발생한 재해와 관련된 것</p> <p>9) 높이 1m미만의 소제, 폭 2m미만의 도로, 기타 주무대신이 정한 소규모시설과 관련된 것</p>

(2) 잠정법 관계

근거법규	농림수산업시설 재해복구사업비국고보조의 잠정조치와 관련된 법률 (1950년 5월 10일 법률 제169호)
목적	농지,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 어업용 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이하 「농지 등」이라고 한다.)의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여 농림수산업유지를 도모함과 동시에 그 경영의 안정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재해」는 폭풍, 홍수, 고조, 지진 기타 이상 기상현상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하며 「재해복구사업」은 재해로 필요가 발생하는 사업으로 재해와 관련된 농지 등을 원형으로 복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를 말한다.
대상시설	<p>◎ 어업용 시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안어장정비개발시설(1984년 5월 11일 법률 제 28호로 추가) 소파제, 이안제, 잠제, 호안, 제방, 돌제, 도류제, 수로(항만에 의한 것은 제외) 혹은 착정기질</li> <li>어항시설 어업의 근거지가 되는 수역 및 육지에 있거나 수산업협동조합의 유지 관리에 속하는 방파제, 방사제, 방조제, 도류제, 수문, 갑문, 호안, 제방, 돌제, 흥벽, 안벽, 물양장, 계선부표, 계선말뚝, 부잔교, 선양장, 항로 혹은 박지</li> </ol> <p>◎ 수산업공동이용시설(1955년 8월 17일 법률 제164호로 추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산업협동조합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소유와 관련된 것 수산물창고, 수산업생산 자재창고, 수산물처리가공시설, 수산업용 생산 자재 제조시설, 공동작업장, 산지시장(수양)시설, 치어생산시설, 양식 시설, 수산업용 기구(어선을 포함)수리시설, 통신시설, 전기 공급 시설, 제빙냉동냉장시설, 급수시설, 급유시설, 공해방지시설</li> <li>지방공공단체 소유와 관련된 것 치어생산시설, 공해방지시설</li> </ol>
국고 보조율	어업용 시설과 관련된 것 해당재해복구사업 사업비의 10분의 6.5 공동이용시설과 관련된 것 해당재해복구사업 사업비의 10분의 2
채택범위 (채택할 수 없는 요인)	부담법과 동일
적용제외	1) 한곳의 공사비용이 40만 엔에 미치지 않는 것 2) 다른 것은 부담법과 동일

## (3) 재해관련사업관계(예산보조사업)

## ① 재해관련사업

<b>사업내용</b>	부담법에 의해 재해복구사업으로 채택된 것 혹은 이것을 포함한 일련의 시설 재발 재해방지나 구조물강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해복구사업과 함께 시행하는 공사
<b>대상시설</b>	부담법이 적용되는 전 시설이 대상
<b>국고 보조율</b>	기준은 5/10(연안에 대해서는 훗카이도·낙도 5.5/10, 오키나와 6/10, 아마미 2/3)
<b>채택기준</b>	<p>재해관련사업은 원칙적으로 다른 개량계획이 없는 것으로 다음에서 것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월파(越波) 혹은 월수(越水)로 국부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곳 및 이와 이어지는 미 재해발생구역에서 흉벽공, 피복공 혹은 소파공을 신설하는 공사.</li> <li>2) 붕괴된 방파제, 호제, 안벽 등과 이어지는 취약한 잔존시설을 개축 혹은 보강하는 공사.</li> <li>3) 방파제, 돌제 등으로 피복된 어항시설 혹은 해안시설이 월파 혹은 월수로 재해발생이 분명한 경우에 월파 혹은 월수를 막아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파제, 돌제 등에 흉벽공 등을 신설하여 시행하는 공사.</li> <li>4) 매몰된 항로, 박지 등의 준설공사에 따라 그 원인을 제거할 것을 목적으로 도류제, 방사제 등의 독 증축공사를 시행하는 공사 혹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도류제, 방사제등을 신설하는 공사</li> <li>5) 재해발생구역과 접촉되는 미 재해발생구역도 포함한 해당재해발생지역의 제방 높이 혹은 단면에 맞춘 독 증축공사나 혹은 확대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증축부분 혹은 확대부분 공사 혹은 흉벽을 신설하는 공사</li> <li>6) 재해가 발생한 곳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토사의 퇴적을 도모함과 동시에 파도의 힘을 감소시키거나 혹은 견고함을 유지하기 위한 돌제, 이안제, 방사제 등을 신설하는 공사</li> <li>7) 재해의 정도가 극심하여 재해복구공사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일정한 계획으로 개량하여 재발방지를 시행하는 공사</li> <li>8) 주변상황으로부터 재해시설 재발방지를 위하여 미재해구역도 포함한 법선(法線)을 변경하는 공사</li> <li>9) 부잔교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가동교의 인양장치를 신설하는 공사</li> <li>10) 재해가 발생한 목조시설의 피해부분을 영구구조물로 재해복구 공사를 시행함과 동시에 나머지부분을 방치하는 것이 복구효과유지상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영구구조물에 준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로 개축하는 공사</li> </ol>
<b>채택한도</b>	원칙적으로 1건당 공사비는 도도부현 및 지정도시는 800만 엔 이상 시정촌은 600만 엔 이상으로 하며 재해복구공사비에 비해 100%를 넘지 않는 범위내의 금액으로 한다.



② 재해관련 어업취락환경시설복구사업

<b>사업내용</b>	폭풍, 홍수, 고조, 지진 기타 이상 기상현상으로 재해가 발생된 시설의 재해복구(부담법 혹은 잠정법에 의한 재해복구)와 관련하여 동일어항구역 내에서 동일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업취락환경시설을 원형으로 복구하는 공사
<b>대상시설</b>	어업취락배수시설, 수산음료잡용수시설, 녹지 · 광장시설(식물재배는 제외), 방재안전시설
<b>국고 보조율</b>	5/10
<b>채택요건</b>	다음에 열거한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것 1) 본 사업과 관련된 수익호수가 2호 이상일 것 2) 본 사업과 관련된 공사비가 200만 엔 이상일 것 3) 본 사업이 다음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일 것 ① 유지공사로 간주되는 것 ② 분명한 설계의 불완전함과 공사시행의 소홀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재해와 관련된 것 ③ 유지관리 의무를 태만히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재해와 관련된 것 ④ 본 사업이외의 사업공사시행 중 발생한 재해와 관련된 것

③ 재해관련긴급 대규모 표착유수 등의 처리대책사업

<b>사업내용</b>	홍수, 태풍 등으로 해안에 표착된 대규모 유수 등이 해안보전시설의 기능을 저해하는 경우 서둘러 유수 등의 처리(집적, 선별, 적입, 운반 및 소각 등)를 실시한다
<b>대상시설</b>	해안보전구역과 시설(제방, 돌제, 호안, 흙벽, 이안제, 모래사장 등)기능을 저해하는 유수 등
<b>국고 보조율</b>	1/2 (보조대상이 되는 처리량은 표착량의 70%가 된다.)
<b>채택기준</b>	유수가 해안보전구역 내에 표착되어 해안보전시설구역 및 이들 시설로부터 1km이내의 구역에 표착되는 경우로 표착량이 1,000m <sup>3</sup> 이상 공사비가 200만엔 이상인 것.

## 2. 재해 발생상황

## (1) 부담법 관계

## ① 재해시설별 결정공사비(어항시설 및 해안)

(금액단위 : 천 엔)

시설별 / 연재		2003년		2004년		2005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어항 시설	외곽시설	136	9,445,319	538	29,273,271	117	3,439,875
	계류시설	150	3,045,017	107	1,423,684	128	3,430,589
	수역시설	7	156,147	25	367,878	15	343,005
	운송시설	15	385,207	21	203,223	11	65,276
	계	308	13,031,690	691	31,268,056	271	7,278,745
해안		57	1,143,161	294	5,382,216	48	1,038,697
합계		365	14,174,851	985	36,650,272	319	8,317,442

주) 금액은 결정공사비로 내미성액 및 내전속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 ② 재해원인별 결정공사비(어항시설 및 해안)

(금액단위 : 천 엔)

원인별/연재		2003년		2004년		2005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동기풍랑		50	4,470,268	35	2,997,790	33	978,726
풍랑		1	228,347	31	2,233,886	9	318,179
호우		0	0	0	0	1	23,025
태풍		159	5,094,281	900	30,524,291	151	3,533,317
지진		155	4,381,955	19	894,305	125	3,464,195
기타		0	0	0	0	0	0
합계		365	14,174,851	985	36,650,272	319	8,317,442

주) 금액은 결정공사비에서 내미성액 및 내전속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기타」는 미끄러짐 혹은 융설을 원인으로 한다.

## (2) 잠정법 계획

## ① 재해시설별경정공사비

(금액단위 : 천 엔)

시설별 / 연재		2003년		2004년		2005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어업용 시설	연정(沿整)	11	236,336	17	3,421,621	4	284,871
	어항	2	8,950	10	42,090	1	8,732
공동이용시설		1	11,614	49	204,996	2	15,935
합계		14	256,900	76	3,668,707	7	309,538

### 3. 재해복구관계데이터

(1) 연간재해별 금액이 큰 것

(단위 : 억 엔)

순위	금액(결정공사비)	연간 재해	주요 재해원인	어항 가격수정인자(deflator) 환산금액
1	82.8	1961년	제2실호태풍	504
2	53.6	1959년	이세만태풍	410
3	366.5	2004년	태풍18호	367
4	367.3	1991년	태풍19호	334

(2) 연간재해별 건수가 많은 것

순위	건수	연간 재해	주요 재해원인
1	2,434	1959년	이세만 태풍
2	2,046	1961년	제2실호 태풍
3	1,668	1970년	태풍10호

(3) 1건당 공사비가 큰 것 (1975년~2005년)

(단위 : 천 엔)

순위	어항 · 지구 명(현명)	금액 (결정공사비)	연간 재해	재해 원인	어항 가격수정인자 (deflator) 환산금액
1	신나가사키(나가사키)	12,422,891	1987년	태풍12호	12,149,587
2	신나가사키(나가사키)	5,356,702	1991년	태풍19호	4,869,242
3	오오하타케(아오모리)	3,545,717	1990년	10/22~27호파도	3,382,614
4	세이보우(훗카이도)	2,780,201	1993년	훗카이도 남서근해지진	2,410,434
5	하부시(도쿄)	2,176,090	2002년	태풍21호	2,173,914
6	유키(미에)	2,279,575	1994년	태풍26호	1,994,628
7	시마노우라(미야자키)	1,980,040	2004년	태풍16호	1,980,040

(4) 지진재해 금액이 큰 것 (1968년 ~ 2005년)

(금액단위 : 천 엔)

순위	지진 명	건수	금액 (결정공사비)	연간 재해	어항 가격수정인자 (deflator) 환산금액
1	훗카이도 남서부 근해지진	111	15,287,922	1993년	13,254,628
2	한신·아카지 대진재	94	9,242,579	1995년	8,050,286
3	훗카이도 동부 근해지진	103	5,892,374	1994년	5,155,827
4	토카치 근해지진	59	3,575,337	2003년	3,578,912
5	후쿠오카 서부 근해지진	83	3,284,963	2005년	3,284,963
6	미야기 근해 지진	130	1,521,005	1978년	2,022,937
7	일본해 중부 지진	151	1,963,442	1983년	1,959,515

주) 가격수정인자(deflator) 환산금액은 2004년 가격으로 환산한 경우의 수치임

## 제 2 편 항세 · 현황 데이터

제1장 어항·어촌의 현황



# 제 1 장 어항 · 어촌의 현황

## 1. 어항항세의 추이

### (1) 등록어선척수 · 총톤수

연차	등록어선척수(단위 : 척)			등록어선총톤수(단위 : 톤)		
	총수	동력어선	무동력선	총수	동력어선	무동력선
1965년	281,322	159,581	121,741	1,084,327	986,226	98,101
1970년	277,300	204,199	73,101	1,254,143	1,201,677	52,466
1975년	297,803	259,369	38,434	1,437,539	1,406,091	31,448
1980년	322,097	302,565	19,532	1,592,524	1,574,782	17,742
1981년	320,175	303,426	16,749	1,582,942	1,567,016	15,926
1982년	319,489	304,178	15,311	1,565,298	1,550,122	15,176
1983년	318,196	304,626	13,570	1,550,648	1,536,607	14,041
1984년	317,072	304,928	12,144	1,524,027	1,510,757	13,270
1985년	315,954	305,016	10,938	1,497,083	1,484,938	12,145
1986년	313,168	303,102	10,066	1,471,909	1,460,684	11,225
1987년	309,727	300,193	9,534	1,449,188	1,438,611	10,577
1988년	308,161	299,554	8,607	1,455,052	1,445,064	9,988
1989년	306,437	298,563	7,874	1,455,490	1,446,095	9,395
1990년	303,265	295,976	7,289	1,423,036	1,414,007	9,029
1991년	298,615	291,852	6,763	1,370,694	1,362,109	8,583
1992년	294,474	288,171	6,303	1,330,043	1,321,775	8,268
1993년	289,195	283,301	5,894	1,248,953	1,241,002	7,951
1994년	285,945	280,637	5,308	1,210,421	1,203,264	7,157
1995년	281,699	276,744	4,955	1,170,888	1,164,104	6,784
1996년	276,447	271,914	4,533	1,138,083	1,131,565	6,518
1997년	272,932	268,498	4,434	1,115,118	1,108,734	6,384
1998년	268,102	264,032	4,070	1,093,577	1,087,716	5,861
1999년	263,239	259,493	3,791	1,046,785	1,041,353	5,432
2000년	258,178	254,659	3,519	1,010,655	1,005,787	4,867
2001년	254,768	251,349	3,419	992,701	987,835	4,866
2002년	249,878	246,641	3,237	964,163	959,535	4,628
2003년	245,109	242,108	3,001	945,493	941,025	4,468
2004년	240,124	237,261	2,863	914,508	910,216	4,292

자료 : 수산청 「어항의 항세집」

## (2) 이용어선 실 척수

(단위 : 척)

연차	어선총수	동력어선	무동력어선	어선이외의 선박
1965년	424,336	310,108	114,228	59,947
1970년	449,139	377,085	72,054	43,123
1975년	493,356	456,883	36,473	44,627
1980년	530,393	510,205	20,188	46,279
1981년	524,113	506,018	18,095	46,886
1982년	521,336	504,919	16,417	47,982
1983년	512,376	498,167	14,209	48,299
1984년	503,166	490,556	12,610	49,058
1985년	500,719	489,246	11,473	51,169
1986년	495,929	485,353	10,576	56,934
1987년	490,396	480,955	9,441	61,108
1988년	487,956	479,272	8,684	63,058
1989년	482,078	473,987	8,091	62,769
1990년	477,416	469,860	7,556	65,951
1991년	472,377	465,438	6,939	69,113
1992년	463,886	457,472	6,414	71,265
1993년	457,182	451,215	5,967	71,552
1994년	447,521	442,063	5,458	71,692
1995년	439,578	434,644	4,934	72,828
1996년	428,252	423,723	4,529	74,071
1997년	413,368	409,018	4,350	73,216
1998년	402,460	398,410	4,050	73,892
1999년	386,896	383,295	3,601	73,505
2000년	373,500	370,187	3,313	72,871
2001년	363,161	359,968	3,193	72,656
2002년	352,783	349,796	2,987	72,333
2003년	344,203	341,345	2,858	75,777
2004년	334,014	331,306	2,708	41,423

자료 : 수산청 「어항의 항세집」

## (3) 항 종류별 등록동력어선척수 · 총톤수

(단위 : 척수....척 톤수.....톤)

항 종류/ 연차		1985년	1998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총수	척수	305,016	264,032	254,659	251,349	246,641	242,108	237,261
	톤수	1,484,938	1,087,716	1,005,787	987,835	959,535	941,025	910,216
해면계	척수	302,950	262,433	253,118	249,842	245,153	240,656	235,817
	톤수	1,480,273	1,084,587	1,002,828	984,933	956,674	938,215	907,445
내수면 계	척수	2,066	1,599	1,541	1,507	1,488	1,452	1,444
	톤수	4,665	3,129	2,958	2,902	2,861	2,810	2,771
제1종 어항	척수	158,445	139,560	134,476	132,935	130,454	128,006	125,612
	톤수	370,049	312,511	300,789	295,894	288,674	285,666	280,409
해면	척수	156,379	137,961	132,935	131,428	128,966	126,554	124,168
	톤수	365,384	309,382	297,831	292,992	285,813	282,856	277,638
내수면	척수	2,066	1,599	1,511	1,507	1,488	1,452	1,444
	톤수	4,665	3,129	2,958	2,902	2,861	2,810	2,771
제2종 어항	척수	99,835	85,859	82,855	81,552	79,748	77,824	76,313
	톤수	378,600	291,371	276,611	274,576	265,458	262,312	257,079
제3종 어항	척수	26,289	21,309	20,503	20,182	20,019	20,287	19,676
	톤수	272,141	187,607	168,038	164,686	162,001	156,688	147,354
특정 제3종 어항	척수	5,559	4,099	3,708	3,776	3,686	3,677	3,624
	톤수	385,754	239,666	204,318	198,461	191,691	186,113	177,086
제4종 어항	척수	14,888	13,205	13,117	12,904	12,734	12,314	12,036
	톤수	78,862	56,561	56,030	54,218	51,711	50,246	48,288

자료 : 수산청 「어항의 항세집」



(4) 항 종류별 이용 동력어선 실 척수 · 실총톤수

(단위 : 척수....척 톤수.....톤)

항 종류/ 연차		1985년	1998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총수	척수	489,246	398,410	370,187	359,968	349,796	341,345	331,306
	톤수	4,400,474	2,846,410	2,643,911	2,406,739	2,313,584	2,223,730	2,123,688
해면계	척수	487,057	396,776	368,611	358,430	348,279	339,864	329,830
	톤수	4,395,497	2,843,201	2,640,870	2,403,769	2,310,659	2,220,859	2,120,868
내수면계	척수	2,180	1,634	1,576	1,538	1,517	1,481	1,467
	톤수	4,977	3,209	3,041	2,970	2,925	2,871	2,820
제1종 어항	척수	223,701	188,246	173,092	168,564	164,509	160,620	156,147
	톤수	682,489	516,396	477,364	460,370	443,807	430,132	416,315
해면	척수	221,512	188,612	171,516	167,026	162,992	159,139	154,680
	톤수	677,512	513,187	474,323	457,400	440,882	427,261	413,495
내수면	척수	2,180	1,634	1,576	1,538	1,517	1,481	1,467
	톤수	4,977	3,209	3,041	2,970	2,925	2,871	2,820
제2종 어항	척수	151,448	122,134	116,266	113,593	109,529	105,856	103,385
	톤수	930,138	606,857	551,784	526,509	509,078	476,153	468,201
제3종 어항	척수	55,813	44,476	40,884	40,396	39,464	39,204	37,440
	톤수	987,650	564,064	501,816	477,954	451,337	409,236	386,151
특정 제3종 어항	척수	20,117	13,790	12,958	11,524	11,096	11,623	11,048
	톤수	1,407,269	922,134	902,364	740,939	719,968	718,324	675,963
제4종 어항	척수	38,167	29,764	26,987	25,801	25,198	24,042	23,286
	톤수	392,919	236,959	210,586	200,947	189,394	189,885	177,058

자료 : 수산청 「어항의 항세집」

## (5) 항 종류별 속지 양륙량

(단위 : 톤)

항 종류/ 연차	1985년	1998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총수	7,883,629	4,897,939	4,674,747	4,568,395	4,423,593	4,543,113	4,325,594
해면 계	7,869,113	4,887,194	4,667,112	4,561,154	4,415,803	4,536,470	4,320,201
내수면계	14,516	10,745	7,635	7,241	7,790	6,643	5,393
제1종 어항	1,331,143	1,143,942	1,074,338	1,090,400	1,083,906	1,115,474	1,079,088
해면	1,316,627	1,133,197	1,066,703	1,083,159	1,076,116	1,108,831	1,073,695
내수면	14,516	10,745	7,635	7,241	7,790	6,643	5,393
제2종 어항	1,604,815	1,198,360	1,154,876	1,111,312	1,098,690	1,127,987	1,057,907
제3종 어항	1,513,017	831,667	777,875	778,498	742,000	794,501	757,582
특정 제3종 어항	3,118,066	1,529,196	1,459,357	1,398,466	1,293,741	1,287,750	1,206,943
제4종 어항	316,558	194,774	208,301	189,719	205,256	217,401	224,074
전국 총생산량	12,171,270	6,684,257	6,384,925	6,125,736	5,879,791	6,083,357	5,775,823
어항분 쉐어(%)	64.8	73.3	73.2	74.6	75.2	74.7	74.9
전국해면 생산량	11,965,063	6,541,642	6,253,218	6,008,533	5,766,904	5,973,301	5,670,050
어항분 쉐어(%)	65.8	74.7	74.6	75.9	76.6	75.9	76.2

자료: 수산청 「어항의 항세집」 및 농림수산청 「어업·양식업생산통계연보」

주) 전국총생산량 및 전국해면생산량에 관한 포경업 분은 제외

(6) 항 종류별 속지 양륙금액

(단위 : 백만 엔)

항 종류/연차	1985년	1998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총수	1,796,921	1,399,051	1,281,697	1,233,341	1,205,682	1,129,697	1,105,898
해면 계	1,790,650	1,394,644	1,278,414	1,229,971	1,202,721	1,126,827	1,103,216
내수면계	6,271	4,407	3,283	3,370	2,961	2,870	2,682
제1종 어항	462,969	382,208	350,933	339,240	325,379	310,085	310,843
해면	456,698	377,801	347,650	335,870	322,418	307,215	308,161
내수면	6,271	4,407	3,283	3,370	2,961	2,870	2,682
제2종 어항	447,355	405,720	380,182	371,359	352,559	331,325	310,570
제3종 어항	300,437	240,077	211,572	203,057	210,085	198,200	187,461
특정제3종 어항	504,710	311,327	282,934	265,827	258,895	235,512	240,206
제4종 어항	81,450	59,719	56,076	53,858	58,764	54,575	56,818

자료 : 수산청 「어항의 항세집」

(7) 한 어항 당 평균등록동력어선척수

(단위 : 척)

항 종류/ 연차	1985년	1998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총수	105	90	87	86	84	83	81
해면 계	105	90	87	86	85	83	82
내수면계	54	42	41	40	39	38	38
제1종 어항	72	63	61	60	59	58	57
해면	72	63	61	60	59	58	57
내수면	54	42	41	40	39	38	38
제2종 어항	192	168	162	164	161	157	154
제3종 어항	274	213	205	202	198	201	195
특정 제3종 어항	428	315	285	290	284	283	279
제4종 어항	160	131	130	128	126	122	119

자료 : 수산청 「어항의 항세집」

주) 지정어항수에 의한 단순평균이다.

## (8) 한 어항 당 평균이용 동력어선 실 척수

(단위 : 척)

어항종류/ 연차	1985년	1998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총수	168	135	126	123	119	117	113
해면 계	169	137	127	124	120	118	114
내수면계	58	43	41	40	40	39	39
제1종 어항	102	85	78	76	74	72	70
해면	103	86	79	77	75	73	71
내수면	58	43	41	40	40	39	39
제2종 어항	292	239	227	229	221	214	209
제3종 어항	581	445	409	404	391	388	371
특정 제3종 어항	1,547	1,061	997	886	854	894	850
제4종 어항	410	295	267	256	249	238	231

자료 : 수산청 「어항의 항세집」

주) 지정어항수로 인한 단순평균이다.

## (9) 한 어항 당 평균 속지 양륙량

(단위 : 톤)

어항종류/ 연차	1985년	1998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총수	2,703	1,664	1,595	1,559	1,510	1,552	1,478
해면 계	2,733	1,682	1,613	1,577	1,527	1,570	1,495
내수면계	382	283	201	191	205	175	142
제1종 어항	606	516	487	491	488	503	487
해면	610	520	492	496	493	509	493
내수면	382	283	201	191	205	175	142
제2종 어항	3,092	2,349	2,256	2,236	2,220	22,79	2,137
제3종 어항	15,761	8,317	7,779	7,785	7,347	7,866	7,501
특정 제3종 어항	239,851	117,630	112,258	107,574	99,519	99,058	92,842
제4종 어항	3,404	1,928	2,062	1,878	2,032	2,152	2,219

자료 : 수산청 「어항의 항세집」

주) 지정어항수로 인한 단순평균이다.

(10) 도도부현 별 등록어선세력

도도부현 명	등록어선척수(척)							등록어선총톤수(톤)						
	1985년	1998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1985년	1998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전국	315,954	268,102	258,178	254,768	249,878	245,109	240,124	1,497,083	1,093,577	1,010,655	992,701	964,163	945,493	914,508
홋카이도	41,514	32,087	30,750	30,068	29,452	28,864	27,895	138,042	92,288	87,491	84,365	80,920	79,278	75,255
아오모리	13,795	11,773	11,334	11,193	10,943	10,885	10,781	103,625	60,891	58,617	55,838	51,512	48,729	48,009
이와테	19,179	16,616	16,103	15,844	15,663	15,457	14,997	41,412	29,804	27,163	26,939	26,184	25,976	25,335
미야기	15,181	14,447	13,613	13,445	13,375	12,925	12,991	149,484	118,855	104,580	102,530	100,123	102,269	99,343
아키타	2,139	1,829	1,801	1,825	1,813	1,801	1,626	7,006	4,635	4,339	4,360	4,569	4,621	3,919
야마가타	911	770	715	699	680	673	673	2,366	1,401	1,288	1,382	1,316	1,292	1,292
후쿠시마	1,502	1,348	1,270	1,238	1,232	1,202	1,182	7,863	5,520	5,330	5,278	5,316	5,233	5,179
이바라키	2,184	1,675	1,609	1,542	1,545	1,488	1,473	28,988	16,341	16,662	16,374	16,416	16,356	15,534
치바	9,908	7,901	7,608	7,479	7,348	7,158	7,056	34,892	23,454	22,813	22,008	22,016	21,318	20,379
도쿄	1,018	969	942	922	893	868	858	3,921	4,306	4,333	4,208	4,102	4,041	3,988
카나가와	3,226	2,914	2,832	2,766	2,757	2,704	2,772	46,914	32,161	28,980	27,234	27,367	26,358	25,984
니이가타	6,280	5,809	5,550	5,521	5,420	5,275	5,169	10,924	9,412	9,101	9,038	8,973	8,806	8,592
토야마	1,587	1,280	1,176	1,129	1,115	1,078	1,035	11,724	11,298	9,960	10,643	9,128	8,742	8,027
이시가와	5,128	4,757	4,581	4,523	4,435	4,358	4,223	16,820	12,303	11,768	11,420	11,010	10,609	10,032
후쿠이	3,834	3,245	3,146	3,053	3,014	2,969	2,857	13,057	9,667	9,537	9,323	9,201	9,003	8,783
시즈오카	5,207	4,831	4,735	4,746	4,691	4,591	4,462	47,791	39,447	37,782	36,318	36,297	35,482	34,010
아이치	6,711	5,726	5,392	5,294	5,188	5,110	4,955	20,800	18,424	17,462	16,554	16,179	16,057	15,644
미에	14,109	12,820	12,591	12,395	12,197	11,986	11,706	58,643	40,906	38,785	38,325	38,188	37,734	36,390
시가	1,202	702	657	650	621	612	604	3,105	1,669	1,536	1,506	1,451	1,428	1,398
교토	2,599	2,092	2,025	1,982	1,942	1,909	1,859	5,707	4,693	4,608	4,578	3,897	3,797	3,730
오오사카	1,058	1,078	1,102	1,106	1,083	1,005	1,050	4,853	5,607	5,950	6,048	5,993	5,282	5,894
효고	5,092	5,022	4,863	4,829	4,759	4,784	4,679	21,654	20,707	20,042	19,949	19,723	19,987	19,620
와가야마	6,421	5,670	5,374	5,353	5,238	5,121	5,086	34,400	28,302	23,472	23,263	22,862	20,471	19,932
돗토리	1,739	1,371	1,283	1,458	1,357	1,307	1,302	15,318	12,358	9,898	11,240	9,176	9,213	9,474
시마네	6,763	5,623	5,497	5,421	5,295	5,051	5,042	27,824	19,173	18,383	18,171	16,901	14,925	15,049
오카야마	3,133	2,723	2,561	2,595	2,568	2,523	2,590	8,587	7,615	7,253	7,289	7,395	7,259	7,6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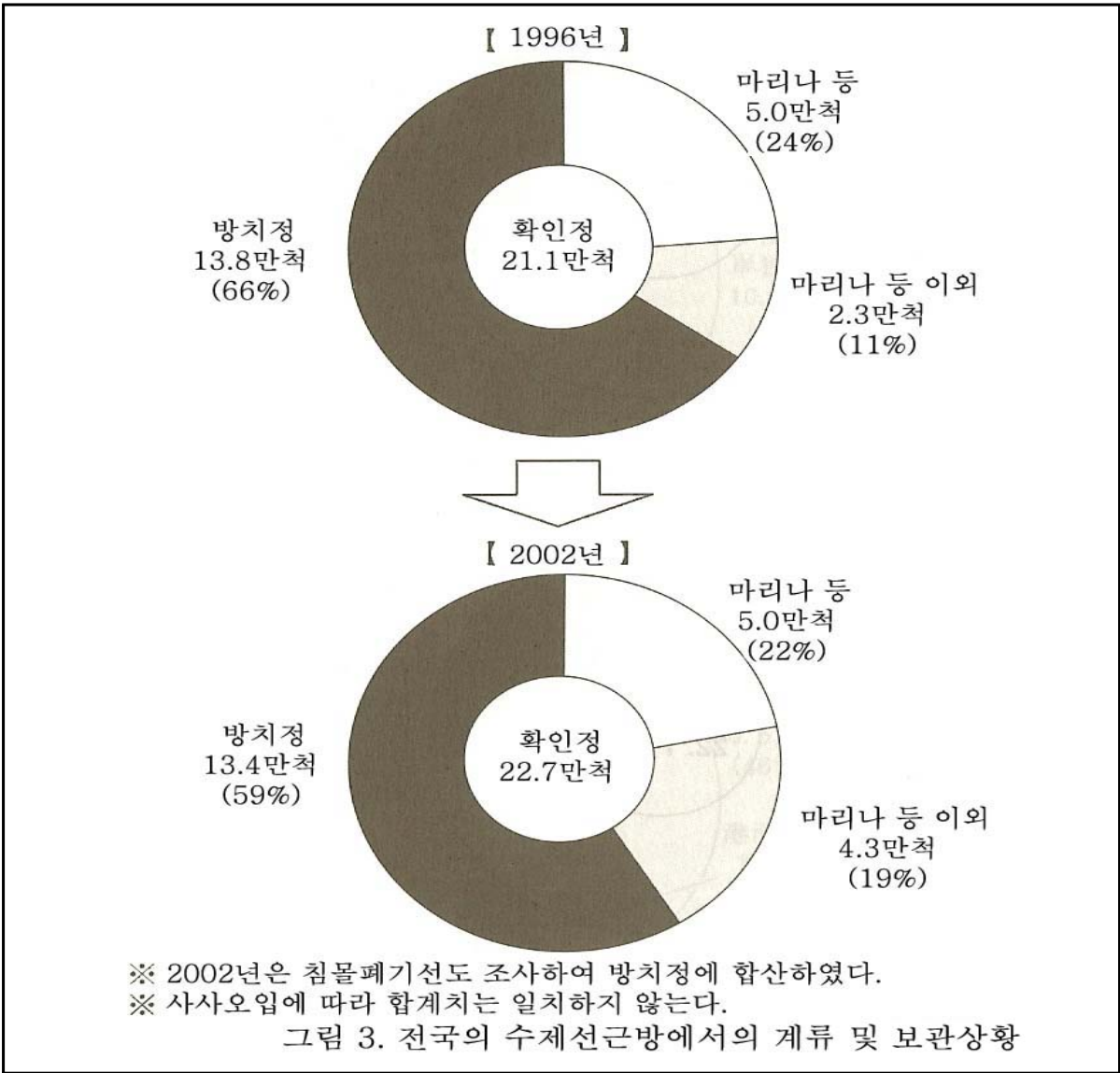
도도부현명	등록어선척수(척)							등록어선총톤수(톤)						
	1985년	1998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1985년	1998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히로시마	5,241	3,830	3,787	3,771	3,732	3,695	3,615	18,174	13,882	13,625	13,602	13,426	13,233	12,992
야마구치	14,879	11,936	11,337	10,970	10,654	10,471	10,131	100,330	45,604	42,307	40,546	40,116	39,621	34,637
도쿠시마	4,427	4,110	3,904	3,940	3,820	3,781	3,696	11,181	9,884	9,481	9,576	9,382	9,440	9,481
카가와	6,289	4,698	4,613	4,558	4,540	4,439	4,471	16,088	13,493	13,119	13,149	13,172	12,791	12,892
에히메	16,491	14,579	13,780	13,659	12,944	12,951	12,843	53,920	48,337	45,056	45,743	43,034	43,607	43,126
코우치	9,591	7,490	7,036	7,076	6,992	6,929	6,793	51,938	34,247	27,623	27,847	28,948	27,870	27,915
후쿠오카	7,678	6,868	6,705	6,492	6,366	6,288	6,339	50,664	32,428	31,150	30,509	29,808	28,908	28,903
사가	7,343	6,039	5,599	5,594	5,518	5,373	5,289	24,059	17,141	15,676	15,359	15,072	14,419	14,008
나가사키	25,379	21,237	21,365	21,119	20,587	20,000	19,545	149,520	107,055	90,838	89,163	82,646	80,319	79,230
쿠마모토	11,623	9,112	8,683	8,477	8,460	8,252	8,076	30,980	24,571	23,419	21,762	22,588	22,152	21,502
오오이타	8,578	7,221	6,744	6,813	6,678	6,536	6,403	30,736	25,274	24,375	24,273	23,705	22,494	21,295
미야기	3,073	2,498	2,404	2,370	2,331	2,290	2,245	20,815	18,659	19,325	19,472	19,084	18,794	17,772
카고시마	8,717	8,122	7,700	7,476	7,393	7,236	6,899	57,622	57,550	52,885	52,764	52,653	53,189	49,124
오кина와	5,228	5,284	5,287	5,377	5,239	5,164	4,856	15,336	14,218	14,424	14,755	14,314	14,390	13,179

자료: 수산청 「어항의 항세집」

(11) 레저 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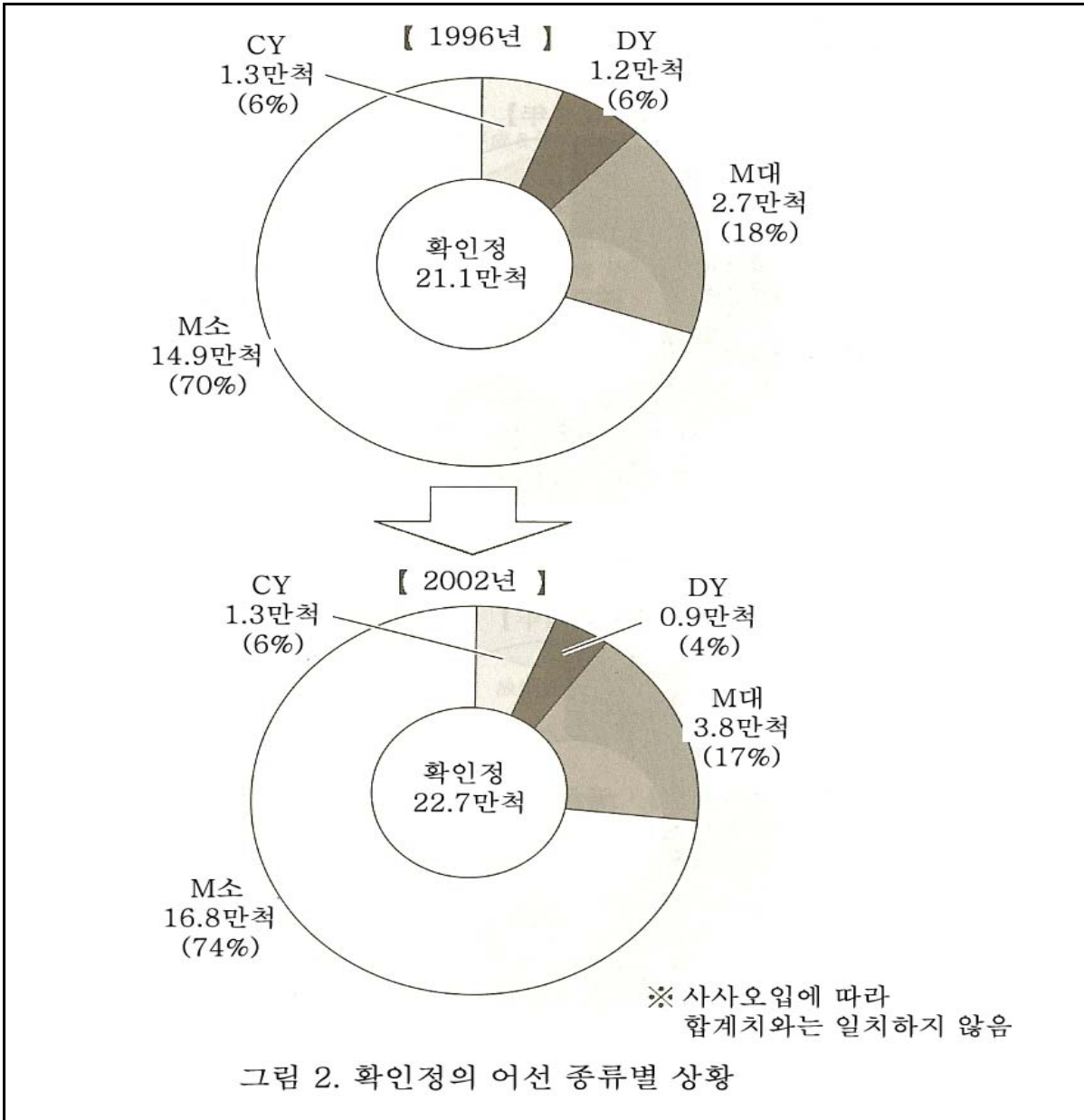
① 확인정의 수역별 상황

- 세 곳의 수역에서 확인된 레저보트 확인정은 약 22.7만 척으로 1996년과 비교하여 약 1.6만 척 증가
- 확인정 약 21.1만 척(1996년) -> 약 22.7만 척(2002년)
- 레저보트는 1996년과 마찬가지로 향만단독구역에서 가장 많이 존재
- 또한 하천단독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확인정 증가



② 확인정의 종별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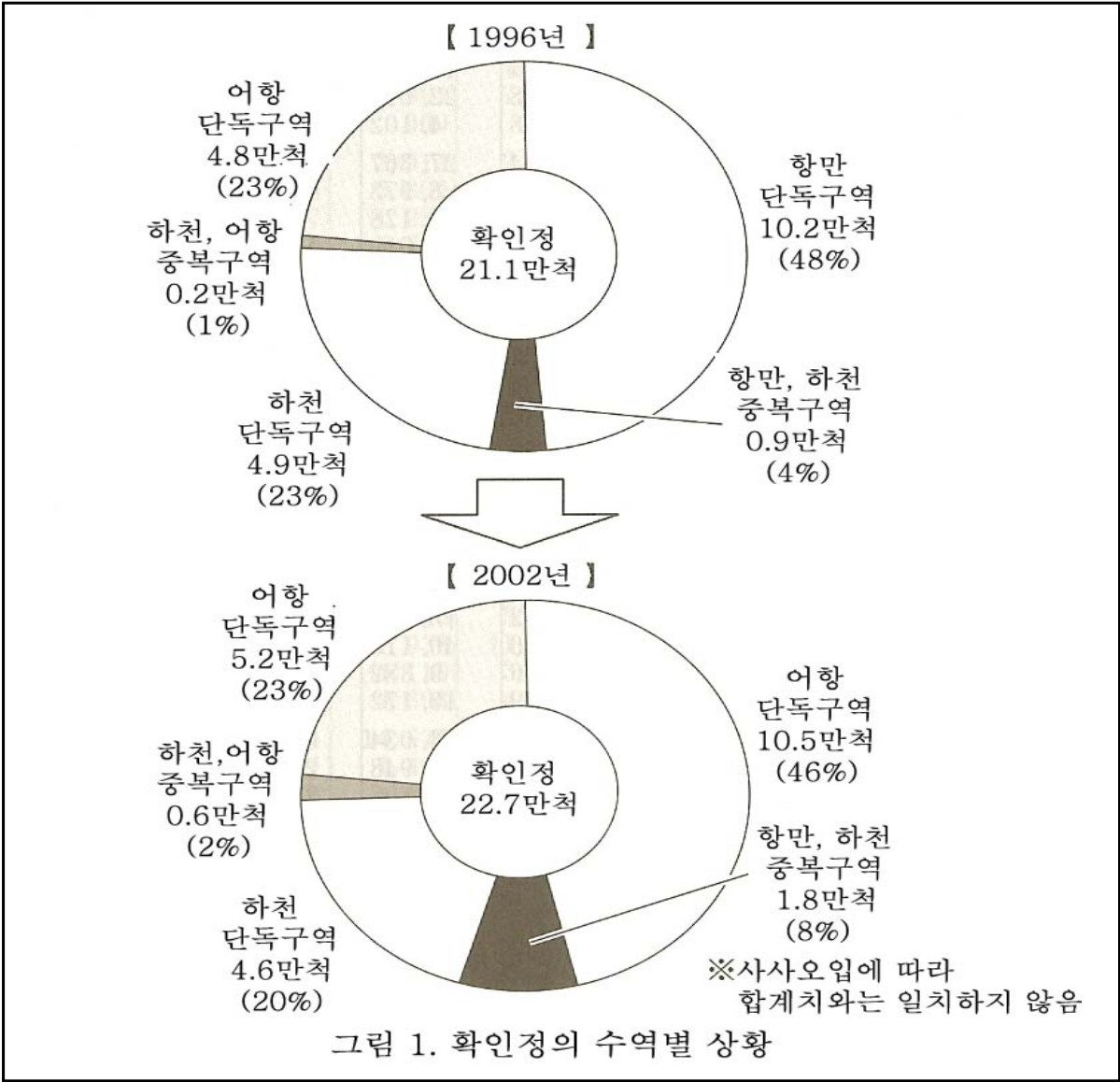
- 소형 모터보트가 가장 많은 전체 약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6년 조사와 비교하여 약 1.9만 척 증가
- 대형 모터보트, 크루저(cruiser)요트 척수는 거의 변함이 없으나 덩기(dinghy) 요트는 약 0.3만 척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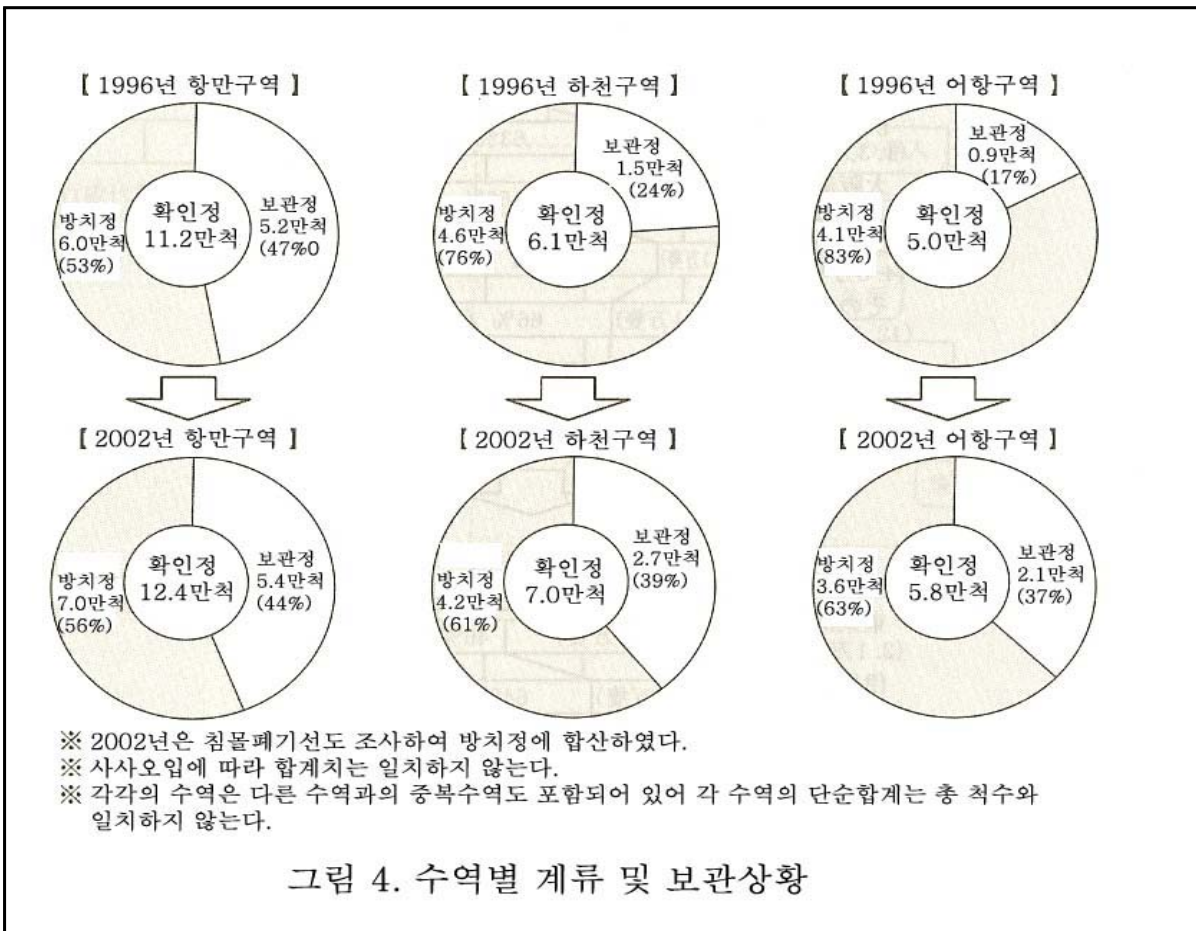
③ 전국의 수제선(水際線) 근방에서의 계류 · 보관상황

- 확인정은 증가하나 방치정은 약 0.4만 척 감소
- 방치선 약 13.8만 척(1996년) -> 약 13.4만 척(2002년)
- 「마리나 등」 시설에 계류 · 보관된 선박은 1996년과 동일한 약 5만 척
- 「마리나 이외」 시설에 계류 · 보관된 선박은 약 4.3만 척으로 1996년과 비교하여 약 2.0만 척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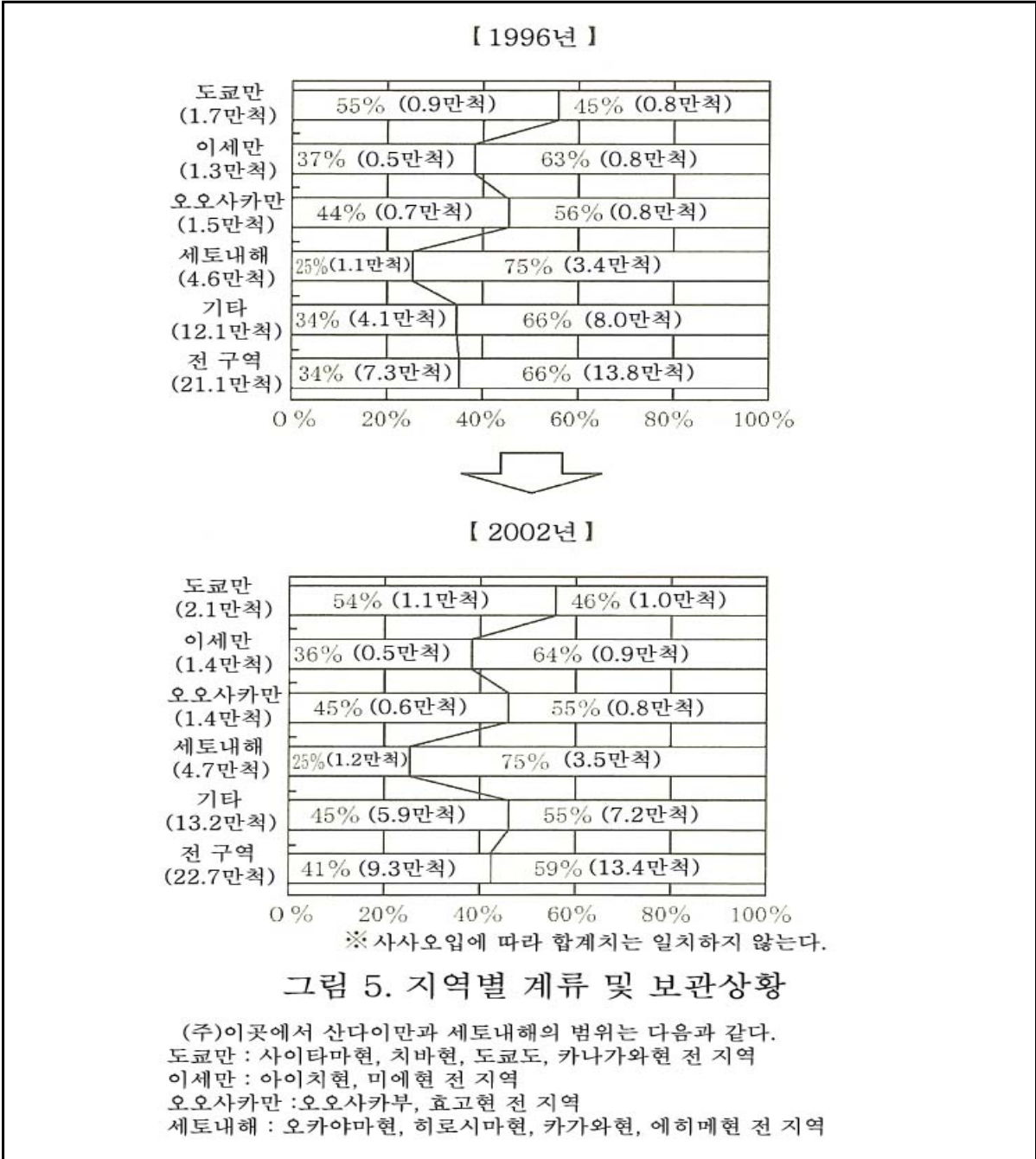
④ 수역별 계류 · 보관상황

- 레저보트의 확인정은 항만, 하천, 어항의 모든 수역에서 증가
- 방치정은 하천, 어항구역에서 감소하나 항만구역에서는 증가
- 1996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확인정에 비해 방치정이 차지하는 비율(=방치정 비율)은 높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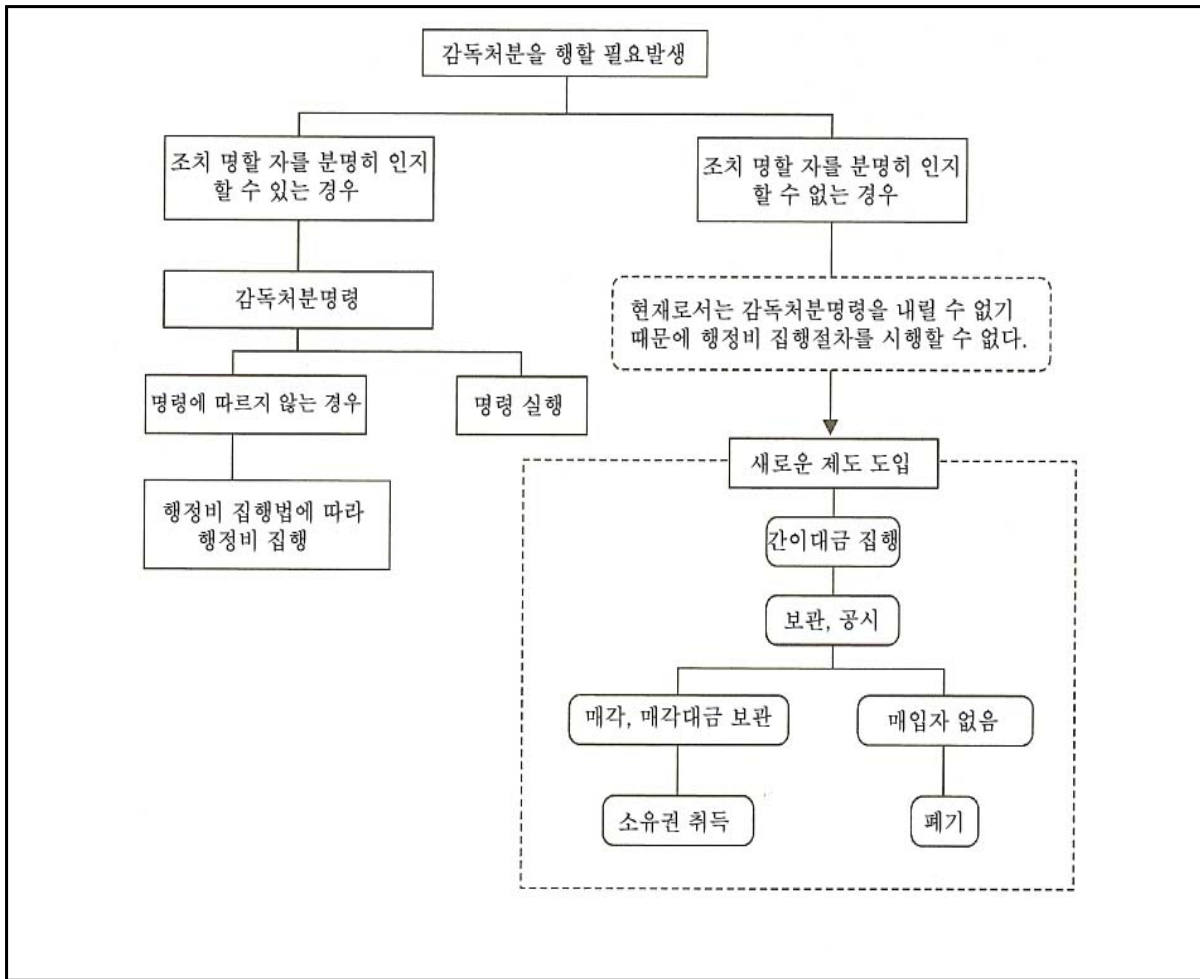


⑤ 지역별 계류 · 보관상황

- 『「산다이만(灣)과 세토내해(內海)」 이외의 「기타」』 지역에서 방치정은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산다이만과 세토내해」에서의 방치정은 증가 혹은 담보 상태이다.
- 「세토내해」에서는 약 4.7만 척의 레저보트가 확인되며 그중 약 75%가 방치정이다.



■ 간이(簡易)대금 집행 등의 새로운 제도 ■



## 2. 어항항세(2004년)

### (1) 어항종류별 등록어선척수

항 종류	항 수	총 수	동력어선	무동력어선	유어겸업어선
총수	2,927	240,124	237,261	2,863	13,692
해면어업항	2,889	238,585	235,817	2,768	13,692
내수면어업항	38	1,539	1,444	95	0
제1종 어항	2,217	126,904	125,612	1,292	6,875
해면어업항	2,179	125,365	124,168	1,197	6,875
내수면어업항	38	1,539	1,444	95	0
제2종 어항	495	76,865	76,313	552	4,577
제3종 어항	101	19,919	19,676	243	1,227
특정 제3종 어항	13	3,626	3,624	2	214
제4종 어항	101	12,810	12,036	774	799
전어선(참고)		330,807	322,533	8,274	
어항분 쉐어(%)		72.6	73.6	34.6	

### (2) 어항종류별 등록어선총톤수

항 종류	항 수	총 수	동력어선	무동력어선	유어겸업어선
총수	2,927	914,508	910,216	4,292	55,478
해면어업항	2,889	911,665	907,445	4,220	55,478
내수면어업항	38	2,843	2,771	72	0
제1종 어항	2,217	282,156	280,409	1,747	24,638
해면어업항	2,179	279,313	277,638	1,675	24,638
내수면어업항	38	2,843	2,771	72	0
제2종 어항	495	258,386	257,079	1,307	18,954
제3종 어항	101	148,084	147,354	730	6,779
특정 제3종 어항	13	177,098	177,086	12	1,242
제4종 어항	101	48,784	48,288	496	3,865
전어선(참고)		1,321,187	1,321,842	8,345	
어항분 쉐어(%)		69.9	68.9	51.4	

(1) (2)자료 : 수산청 「어항의 항세집」 및 수산청 「어선통계표」

어항분 쉐어 = 어항등록어선 ÷ 전체 어선

## (3) 어항종류별, 동력구분별, 이용어선척수 및 총톤수

(단위 척수 : 척 총톤수 : 톤)

어항종류	지방 외부 별	총수		동력어선		무동력어선	
		척수	총톤수	척수	총톤수	척수	총톤수
총수	총수	334,014	2,127,804	331,306	2,123,688	2,708	4,116
	지방	229,855	806,355	227,214	802,585	2,641	3,770
	외부	104,159	1,321,449	104,092	1,321,103	67	346
해면어업항	총수	332,442	2,124,906	329,839	2,120,868	2,603	4,038
	지방	228,311	803,516	225,775	799,824	2,536	3,692
	외부	104,131	1,321,390	104,064	1,321,044	67	346
내수면어업항	총수	1,572	2,898	1,467	2,820	105	78
	지방	1,544	2,839	1,439	2,761	105	78
	외부	28	59	28	59	0	0
제1종 어항	총수	157,514	418,225	156,147	416,315	1,367	1,910
	지방	119,772	254,064	118,459	252,437	1,313	1,627
	외부	37,742	164,161	37,688	163,878	54	283
해면어업항	총수	155,942	415,327	154,680	413,495	1,262	1,832
	지방	118,228	251,225	117,020	249,676	1,208	1,549
	외부	37,714	164,102	37,660	163,819	54	283
내수면어업항	총수	1,572	2,898	1,467	2,820	105	78
	지방	1,544	2,839	1,439	2,761	105	78
	외부	28	59	28	59	0	0
제2종 어항	총수	103,940	469,515	103,385	468,201	555	1,314
	지방	75,083	241,343	74,537	240,066	546	1,277
	외부	28,857	228,172	28,848	228,135	9	37
제3종 어항	총수	37,583	386,636	37,440	386,151	143	485
	지방	19,681	120,997	19,541	120,533	140	464
	외부	17,902	265,639	17,899	265,618	3	21
특정 제3종 어항	총수	11,050	675,977	11,048	675,963	2	14
	지방	3,506	147,473	3,505	147,464	1	9
	외부	7,544	528,504	7,543	528,499	1	5
제4종 어항	총수	23,927	177,451	23,286	177,058	641	393
	지방	11,813	42,478	11,172	42,085	641	393
	외부	12,114	134,973	12,114	134,973	0	0

자료 : 수산청 「어항의 항세집」

(4) 어항종류별, 어선 이외의 이용선박척수 및 총톤수

단위 (척수 : 척 총톤수 : 톤)

항 종류	총수		화물·연락·관광형선등		유어선(遊漁船)		레저보트(유어)		레저보트(기타)		기타	
	척수	총톤수	척수	총톤수	척수	총톤수	척수	총톤수	척수	총톤수	척수	총톤수
총수	71,012	3,098,933	7,788	2,841,770	6,612	18,782	25,608	45,923	29,078	78,710	1,926	113,748
해면어업 항	70,909	3,098,747	7,767	2,841,659	6,572	18,770	25,608	45,923	29,040	78,655	1,922	113,740
내수면어업 항	103	186	21	111	40	12	0	0	38	55	4	8
제1종 어항	29,847	341,738	2,303	284,392	2,998	6,904	12,956	15,567	10,977	22,173	613	12,702
해면어업 항	29,744	341,552	2,282	284,281	2,958	6,892	12,956	15,567	10,939	22,118	609	12,694
내수면어업 항	103	186	21	111	40	12	0	0	38	55	4	8
제2종 어항	23,117	1,528,059	2,929	1,445,922	1,737	5,713	7,663	19,673	9,918	25,872	870	30,879
제3종 어항	8,406	764,379	1,221	700,892	1,081	2,125	2,352	4,035	3,486	11,671	266	45,656
특정 제3종 어항	5,364	214,074	583	178,193	151	961	820	1,887	3,699	15,636	111	17,397
제4종 어항	4,278	250,683	752	232,371	645	3,079	1,817	4,761	998	3,358	66	7,114

(5) 어항종류별어획량, 양륙양 및 양륙금액

단위 (어획량, 양륙양 : 톤 양륙금액 : 백만 엔)

항 종류	어획량(속인)	양륙량(소속지)				양륙금액(소속지)			
		총수	어업	양식업	운반선반입량	총수	어업	양식업	운반선반입량
총수	4,164,262	4,325,594	3,222,137	968,000	135,457	1,105,898	758,336	309,091	38,471
해면어업항	4,159,069	4,320,201	3,216,744	968,000	135,457	1,103,216	755,654	309,091	38,471
내수면어업항	5,193	5,393	5,393	0	0	2,682	2,682	0	0
제1종 어항	1,361,341	1,079,088	563,856	498,947	16,285	310,843	169,618	138,545	2,680
해면어업항	1,356,148	1,073,695	558,463	498,947	16,285	308,161	166,936	138,545	2,680
내수면어업항	5,193	5,393	5,393	0	0	2,682	2,682	0	0
제2종 어항	1,374,551	1,057,907	675,062	371,419	11,426	310,570	186,527	120,237	3,806
제3종 어항	695,834	757,582	655,160	66,053	36,369	187,461	143,024	29,147	15,290
특정 제3종 어항	491,477	1,206,943	1,119,499	16,067	71,377	240,206	210,101	13,410	16,695
제4종 어항	241,059	224,074	208,560	15,514	0	56,818	49,066	7,752	0

(4)(5)자료 : 수산청 「어항의 항세집」

(6) 어항지구인구, 어업경영체수, 어업협동조합원수 등

(단위 : 사람, 경영체)

항 종류	어항지구인구		어업경영체수		어항지구 내 어업협동조합원수		
	인구	1항 평균	경영체수	1항 평균	총수	정 조합원	준조합원
총수	5,551,109	1,896.5	136,470	46.6	316,623	191,607	125,016
해면어업항	5,494,195	1,901.8	135,387	46.9	313,810	189,425	124,385
내수면어업항	56,914	1,497.7	1,083	28.5	2,813	2,182	631
제1종 어항	2,619,293	1,181.5	72,121	32.5	162,888	100,683	62,205
해면어업항	2,562,379	1,175.9	71,038	32.6	160,075	98,501	61,574
내수면어업항	56,914	1,497.7	1,083	28.5	2,813	2,182	631
제2종 어항	1,555,718	3,142.9	42,874	86.6	95,550	58,996	36,554
제3종 어항	587,527	5,817.1	12,699	125.7	34,376	19,427	14,949
특정 제3종 어항	611,339	47,026.1	1,455	111.9	5,728	2,293	3,435
제4종 어항	177,232	1,754.8	7,321	72.5	18,081	10,208	7,873

(7) 어항관련시설

항 종류	하역소		제빙(製氷)시설		냉동시설		냉장시설		저빙(貯氷)시설		급유시설	
	시설 수	규모(㎡)	시설 수	능력(톤/일)	시설 수	능력(톤/일)	시설 수	능력(톤/일)	시설 수	능력(톤/일)	시설 수	능력(톤/일)
총수	1,939	1,333,699	864	14,441	1,227	72,674	2,846	1,747,579	1,364	187,298	2,772	584,791
해면어업항	1,921	1,331,020	859	14,436	1,216	72,386	2,837	1,747,407	1,356	187,159	2,754	584,633
내수면어업항	18	2,679	5	5	11	288	9	172	8	139	18	158
제1종 어항	933	220,718	296	1,214	383	10,541	538	27,873	485	12,388	891	127,068
해면어업항	915	218,039	291	1,209	372	10,253	529	27,701	477	12,249	873	126,910
내수면어업항	18	2,679	5	5	11	288	9	172	8	139	18	158
제2종 어항	607	325,013	294	3,266	289	28,494	1,496	162,374	431	29,291	963	47,479
제3종 어항	236	357,591	141	4,085	167	14,036	271	257,131	182	68,968	375	81,241
특정 제3종 어항	44	361,644	70	5,049	332	18,409	438	1,283,046	160	65,217	373	309,149
제4종 어항	119	68,733	63	827	56	1,194	103	17,155	106	11,434	170	19,854



(8) 도도부현 별 속지 양륙량

(단위 양륙양 : 톤)

도도부현 명	합계	해면 양륙량						내수면 양륙량		
		해면 계	원양	근해	연안	양식업	운반선반입량	내수면 계	어업	양식업
전국	4,325,594	4,320,201	436,016	1,503,442	1,277,287	967,999	135,457	5,393	5,393	0
홋카이도	858,777	857,761	0	240,272	477,630	139,859	0	1,016	1,016	0
아오모리	287,249	287,249	71,272	78,902	43,026	94,049	0	-	-	-
이와테	173,860	173,860	0	23,115	89,309	61,436	0	-	-	-
미야기	418,015	418,015	31,372	191,585	73,557	121,501	0	-	-	-
아키타	8,543	8,513	0	1,171	7,314	28	0	30	30	0
야마가타	2,377	2,377	0	657	1,720	0	0	-	-	-
후쿠시마	24,236	24,236	0	7,355	15,504	1,377	0	-	-	-
이바라키	91,626	89,575	813	78,526	10,236	0	0	2,051	2,051	0
치바	387,922	387,922	0	338,248	32,967	16,707	0	-	-	-
도쿄	2,338	2,338	0	500	1,838	0	0	-	-	-
카나가와	50,548	50,548	13,036	12,283	12,114	13,115	0	-	-	-
니이가타	16,868	16,868	0	947	14,214	1,707	0	-	-	-
토야마	19,042	19,042	0	836	18,184	22	0	-	-	-
이시카와	30,601	30,601	0	5,743	22,878	1,980	0	-	-	-
후쿠이	16,148	16,148	0	599	15,066	483	0	-	-	-
시즈오카	251,680	251,680	192,098	32,539	18,342	2,013	6,688	-	-	-
아이치	75,521	75,521	0	34,774	21,189	19,558	0	-	-	-
미에	98,956	98,956	0	45,655	26,609	26,609	83	-	-	-
시가	1,763	0	0	0	0	0	0	1,763	1,763	0
교토	21,089	21,089	0	6,764	13,966	359	0	-	-	-
오오사카	17,616	17,616	0	11,735	5,768	113	0	-	-	-
효고	70,342	70,342	0	9,453	22,973	32,628	5,288	-	-	-
와가야마	51,481	51,481	4,416	21,834	11,087	5,046	9,098	-	-	-
돗토리	114,381	114,381	0	101,737	12,621	23	0	-	-	-
시마네	44,135	43,757	0	31,601	11,525	631	0	378	378	0

도도부현 명	합계	해면 양륙량						내수면 양륙량		
		해면 계	원양	근해	연안	양식업	운반선반입량	내수면 계	어업	양식업
오카야마	34,709	34,554	0	0	7,583	24,573	2,398	155	155	0
히로시마	87,384	87,384	0	1,606	6,875	74,776	4,127	-	-	-
야마구치	56,002	56,002	0	10,107	40,718	5,062	115	-	-	-
도쿠시마	22,476	22,476	69	155	9,102	12,437	713	-	-	-
카가와	35,392	35,392	0	1,602	12,092	21,379	319	-	-	-
에히메	101,911	101,911	0	23,522	31,555	46,697	137	-	-	-
고우치	43,688	43,688	0	5,371	25,475	12,842	0	-	-	-
후쿠오카	123,573	123,573	28,311	12,335	23,898	48,369	10,660	-	-	-
사가	78,340	78,340	0	27	10,910	67,403	0	-	-	-
나가사키	160,700	160,700	30,243	62,916	49,577	15,525	2,439	-	-	-
쿠마모토	97,397	97,397	0	15,309	15,530	46,488	20,070	-	-	-
오오이타	40,904	40,904	0	10,522	19,348	10,886	148	-	-	-
미야자키	53,997	53,997	8	38,317	10,436	5,236	0	-	-	-
카고시마	220,132	220,132	64,283	39,006	22,665	21,004	73,174	-	-	-
오кина와	33,875	33,875	95	5,816	11,886	16,078	0	-	-	-

자료: 수산청 「어항의 항세집」

(9) 도도부현 별 속지 양륙금액

(단위 양륙금액 : 백만 엔)

도도부현 명	합계	해면 양륙금액						내수면 양륙금액		
		해면 계	원양	근해	연안	양식업	운반선반입량	내수면 계	어업	양식업
전국	1,105,898	1,103,216	82,292	233,733	439,629	309,091	38,471	2,682	2,682	0
홋카이도	163,695	163,036	0	30,004	108,074	24,958	0	659	659	0
아오모리	60,877	60,877	13,140	18,024	17,667	12,046	0	-	-	-
이와테	30,874	30,874	0	2,544	16,222	12,108	0	-	-	-
미야기	79,632	79,632	4,890	38,143	14,813	21,786	0	-	-	-
아키타	3,588	3,574	0	424	3,136	14	0	14	14	0
야마가타	1,136	1,136	0	230	906	0	0	-	-	-
후쿠시마	7,312	7,312	0	2,833	4,240	239	0	-	-	-
이바라키	5,803	5,045	309	2,189	2,547	0	0	758-	758-	0
치바	48,772	48,772	0	30,201	13,390	5,181	0	-	-	-
도쿄	1,778	1,778	0	383	1,395	0	0	-	-	-
카나가와	27,016	27,016	7,261	1,501	6,338	11,916	0	-	-	-
니이가타	8,405	8,405	0	688	7,413	304	0	-	-	-
토야마	7,055	7,055	0	547	6,504	4	0	-	-	-
이시카와	12,143	12,143	0	2,139	9,418	586	0	-	-	-
후쿠이	8,805	8,805	0	437	7,652	716	0	-	-	-
시즈오카	56,089	56,089	34,896	2,514	11,318	1,137	6,224	-	-	-
아이치	21,261	21,261	0	6,589	9,242	5,430	0	-	-	-
미에	27,385	27,385	0	3,800	11,310	12,257	18	-	-	-
시가	1,041	0	0	0	0	0	0	1,041	1,041	0
교토	5,435	5,435	0	2,000	3,217	218	0	-	-	-
오오사카	3,889	3,889	0	671	3,183	35	0	-	-	-
효고	27,295	27,295	0	4,865	10,512	8,228	3,690	-	-	-
와가야마	29,361	29,361	2,603	8,892	6,324	3,099	8,443	-	-	-
돗토리	20,090	20,090	0	14,436	5,636	18	0	-	-	-
시마네	15,044	14,874	0	8,448	5,895	531	0	170	170	0

도도부현 명	합계	해면 양륙금액						내수면 양륙금액		
		해면 계	원양	근해	연안	양식업	운반선반입량	내수면 계	어업	양식업
오카야마	10,235	10,195	0	0	4,077	4,480	1,638	40	40	0
히로시마	29,613	29,613	0	493	4,530	21,683	2,907	-	-	-
야마구치	30,537	30,537	0	5,148	23,741	1,578	70	-	-	-
도쿠시마	6,938	6,938	450	139	4,328	1,903	523	-	-	-
카가와	13,587	13,587	0	842	5,209	7,294	242	-	-	-
에히메	56,118	56,118	0	5,198	16,132	34,688	100	-	-	-
고우치	17,659	17,659	0	1,294	7,147	9,218	0	-	-	-
후쿠오카	42,149	42,149	6,361	4,207	12,360	14,594	4,627	-	-	-
사가	26,509	26,509	0	15	4,866	21,628	0	-	-	-
나가사키	69,318	69,318	5,826	15,668	29,646	17,033	1,145	-	-	-
쿠마모토	30,708	30,708	0	1,414	6,238	21,707	1,349	-	-	-
오오이타	24,833	24,833	0	1,723	12,733	10,232	145	-	-	-
미야자키	14,523	14,523	4	6,251	4,185	4,083	0	-	-	-
카고시마	45,508	45,508	6,851	5,319	10,507	15,481	7,350	-	-	-
오키나와	13,882	13,882	106	3,520	7,578	2,678	0	-	-	-

자료 : 수산청 「어항의 항세집」

(10) 도도부현 별 주요어업종류별 양륙양

도도부현명	어업종류(1위)	수량(톤)	어업종류(2위)	수량(톤)	어업종류(3위)	수량(톤)	어업종류(4위)	수량(톤)	어업종류(5위)	수량(톤)
전국 계	어패류양식업	397,146	기타 대중형 선망	392,130	소형기선 저인망	339,923	가다랑어, 참치선망	321,771	김 양식업	271,262
홋카이도	소형기선저인망	227,030	연어 정치망	150,714	조개류 양식업	122,651	기타 자망, 유망	92,844	해초 채취업	54,992
아오모리	오징어잡이	94,615	조개류 양식업	93,649	근해 저인망	29,457	기타 대중형 선망	25,012	소형 정치망	10,340
이와테	기타 해초류양식업	37,502	대형 정치망	36,908	유인망	20,084	공치 봉수망	19,957	조개류 양식업	18,137
미야기	어패류 양식업	64,296	공치 봉수망	51,448	가다랑어, 참치 선망	37,620	대형 정치망	29,774	근해 저인망	27,962
아키다	소형 정치망	3,008	소형기선 저인망	1,331	근해 저인망	1,171	기타 자망, 유망	838	연어 정치망	539
야마가타	소형기선 저인망	770	오징어잡이	471	연어 정치망	415	조개 채취업	215	기타 연승	145
후쿠시마	유인망	8,187	근해 저인망	5,778	기타 자망, 유망	2,225	바구니어업	2,059	둘러치기 망	1,651
이바라키	가다랑어, 참치선망	62,758	기타 선망	10,365	유인망	7,487	기타 대중형 선망	4,079	소형기선 저인망	2,716
치바	기타 대중형 선망	162,385	기타 선망	75,541	건착망	37,398	공치 봉수망	22,660	김 양식업	15,371
도쿄	기타 잡이	1,349	기타 자망, 유망	264	기타 깔망	218	기타 어업	162	기타 선망	139
카나가와	대형 정치망	11,311	원양참치연승	9,219	방어류 양식	9,208	기타 어업	7,662	고등어잡이	2,852
니이가타	대형 정치망	3,755	소형기선 저인망	3,517	기타 자망, 유망	2,203	조개류 양식업	1,597	오징어잡이	1,190
토야마	대형 정치망	13,780	소형 정치망	1,840	기타 자망, 유망	777	바구니 어업	731	소형기선 저인망	618
이시카와	대형 정치망	13,760	소형기선 저인망	3,326	기타 자망, 유망	2,312	기타 대중형 선망	2,180	소형 정치망	1,876

도도부현명	어업종류(1위)	수량(톤)	어업종류(2위)	수량(톤)	어업종류(3위)	수량(톤)	어업종류(4위)	수량(톤)	어업종류(5위)	수량(톤)
후쿠이	대형 정치망	7,055	소형기선 저인망	2,653	소형 정치망	2,321	기타 자망, 유망	829	오징어잡이	606
시즈오카	가다랑어 참치선망	132,130	원양 가다랑어 일채잡이	67,624	원양참치연승	13,120	기타 낚망	9,997	기타 선망	4,066
아이치	김 양식업	19,304	소형기선 저인망	16,022	둘러치기 망	15,110	유인망	13,448	조개 채취업	3,561
미에	기타 선망	18,241	둘러치기 망	14,040	김 양식업	11,834	기타 대중형 선망	7,716	소형기선 저인망	6,851
시가	소형기선 저인망	711	기타 자망, 유망	427	소형 정치망	362	기타 어업	131	기타 어업	104
교토	대형 정치망	11,323	기타 선망	4,634	오징어잡이	1,289	소형 정치망	903	바구니어업	807
오오사카	건축망	11,734	둘러치기 망	3,885	소형기선 저인망	997	기타 자망, 유망	411	소형기선 저인망	403
효고	김 양식업	28,978	유인망	10,373	근해 저인망	6,506	소형기선 저인망	5,452	근해 저인망	2,824
와가야마	건축망	10,624	근해참치연승	5,646	원양참치연승	4,416	참돔 양식	4,261	대형 정치망	3,864
돗토리	기타 대중형 선망	85,628	기타 어업	8,758	바구니어업	8,754	오징어잡이	4,058	소형 정치망	3,887
시마네	기타 대중형 선망	11,073	건축망	8,807	근해 저인망	4,708	오징어잡이	4,550	소형기선 저인망	3,618
오카야마	조개류 양식업	16,793	김 양식업	7,703	소형기선 저인망	2,875	조개 채취업	1,913	기타 어업	892
히로시마	조개류 양식업	63,371	진주양식	5,090	김 양식업	4,189	둘러치기 망	3,978	소형기선 저인망	1,675
야마구치	근해 저인망	8,743	소형기선 저인망	7,683	유인망	4,964	기타 낚망	4,952	기타 어업	3,366
도쿠시마	기타 해초류양식업	8,739	김 양식업	2,520	소형 정치망	1,654	둘러치기 망	1,580	소형기선 저인망	1,280

도도부현명	어업종류(1위)	수량(톤)	어업종류(2위)	수량(톤)	어업종류(3위)	수량(톤)	어업종류(4위)	수량(톤)	어업종류(5위)	수량(톤)
카가와	김 양식업	16,276	둘러치기 망	5,548	소형기선 저인망	4,019	방어류 양식	1,615	참돔 양식	1,552
에히메	참돔 양식	28,813	소형기선 저인망	10,315	방어류 양식	9,974	가다랑어, 참치 선망	8,279	기타 선망	5,961
고우치	대형 정치망	8,303	연안 가다랑어 일체잡이	6,943	참돔 양식	6,832	방어류 양식	4,615	건착망	4,456
후쿠오카	김 양식업	47,868	기타 대중형 선망	28,309	기타 선망	6,829	유인망	4,782	건착망	4,679
사가	김 양식업	64,445	소형기선 저인망	3,478	참돔 양식	1,844	유인망	1,210	기타 어업	1,083
나가사키	건착망	50,772	가다랑어, 참치선망	12,332	소형 정치망	9,410	기타 잡이	9,348	기타 대중형 선망	9,092
쿠마모토	김 양식업	30,033	건착망	8,819	참돔 양식	7,271	방어류 양식	5,360	조개채취업	3,473
오오이타	방어류 양식	8,133	기타 대중형 선망	6,175	건착망	4,992	기타 잡이	3,955	소형기선 저인망	3,001
미야자키	기타 선망	18,492	건착망	12,805	근해 가다랑어 일체잡이	6,429	방어류 양식	4,271	연안 참치연승	3,082
카고시마	가다랑어 참치선망	59,852	방어류 양식	19,677	기타 대중형 선망	17,012	건착망	11,473	기타 선망	6,890
오кина와	기타 해초류 양식업	15,668	기타 잡이	5,807	연안 참치연승	3,740	오징어잡이	2,053	기타 어업	1,794

주)1. 어업종류 분류는 「항세조사표」에 의한다.

2. 운반선반입량은 포함하지 않는다.

(11) 도도부현 별 주요 어종별 양륙양

도도부현 별	어종(1위)	수량(톤)	어종(2위)	수량(톤)	어종(3위)	수량(톤)	어종(4위)	수량(톤)	어종(5위)	수량(톤)
전국 계	정어리	519,579	가리비	453,544	가다랑어	349,398	김류	269,732	오징어류	267,305
홋카이도	가리비	337,273	연어류	157,614	명태	90,908	다시마류	71,932	오징어류	39,508
아오모리현	오징어	130,383	가리비	94,742	연어류	8,662	고등어류	7,763	정어리	5,905
이와테현	연어	26,882	고등어류	25,345	미역류	24,575	기타 수산동물	20,095	꽂치	19,947
미야기현	꽂치	56,445	굴	50,872	가다랑어	49,475	고등어류	33,394	대구	28,997
아키타현	도루묵	2,792	연어류	563	전갱이류	501	가자미류	490	문어류	446
야마가타현	오징어	496	도루묵	322	연어류	226	도미류	187	방어류	148
후쿠시마현	까나리	8,448	문어류	3,376	가자미류	2,575	기타 어류	1,811	대구	1,194
이바라키현	정어리	75,761	고등어류	5,710	기타 수산동물	2,746	까나리	868	꽂치	785
치바현	정어리	230,783	고등어류	43,345	꽂치	24,020	참치	20,134	김류	15,380
도쿄도	가다랑어	642	날치류	277	전갱이류	222	도미류	205	금눈돔	182
카나가와현	고등어류	11,352	참치	9,533	방어류	9,388	정어리	5,678	도미류	2,855
니이가타현	방어류	2,108	오징어류	1,776	굴	1,705	기타 어류	1,253	전갱이류	1,223
토야마현	오징어류	3,899	전갱어류	3,488	기타 어류	2,266	정어리	1,678	물치다랑어류	1,495
이시가와현	전갱이류	6,456	오징어류	3,110	방어류	3,072	정어리	2,545	기타 어류	2,487
후쿠이현	방어류	3,661	전갱이류	2,165	오징어류	1,389	기타 어류	1,241	삼치류	1,056
시즈오카현	가다랑어	135,472	참치	63,077	고등어류	31,485	정어리	3,614	전갱이류	3,464
아이치현	김류	19,304	까나리	14,180	정어리	10,952	바지락류	9,777	기타 어류	3,144
미에현	정어리	24,874	고등어류	10,807	김류	10,582	기타 어패류	7,610	까나리	6,954
시가현	은어	715	빙어	349	기타 어류	286	새우류	182	가막조개	138
교토부	전갱이류	8,091	방어류	2,964	정어리	2,262	오징어류	1,689	삼치류	974
오오사카부	정어리	5,988	전어	4,854	치어	2,332	까나리	1,553	농어류	454
효고현	김류	28,978	까나리	6,567	치어	5,335	오징어류	4,456	방어류	3,672
와가야마현	방어류	9,588	참치	9,386	전갱이류	7,562	도미류	4,560	고등어류	3,784
돗토리현	전갱이류	51,662	정어리	14,252	방어류	12,170	게	9,947	상어류	9,845
시마네현	전갱이류	13,960	오징어류	6,688	방어류	3,913	기타 어류	3,103	고등어류	2,791
오카야마현	굴	13,967	김류	8,483		2,055	기타 어패류	1,906	방어류	1,884
히로시마현	굴	68,508	김류	4,247	정어리	4,239	도미류	1,457	방어류	1,385
야마구치현	정어리	7,119	오징어류	5,621	기타 어류	4,446	전갱이류	4,322	도미류	3,818



도도부현 별	어종(1위)	수량(톤)	어종(2위)	수량(톤)	어종(3위)	수량(톤)	어종(4위)	수량(톤)	어종(5위)	수량(톤)
토쿠시마현	미역류	8,714	김류	2,520	방어류	2,066	정어리	1,790	치어	1,110
카가와현	김류	16,266	정어리	5,534	도미류	1,886	기타 어류	1,710	방어류	1,621
에히메현	도미류	30,672	방어류	10,396	전갱이류	9,079	정어리	8,245	고등어류	6,441
고우치현	도미류	7,132	물치다랑어	6,502	방어류	5,869	정어리	4,533	전갱이류	3,722
후쿠오카현	김류	45,790	전갱이류	15,911	고등어류	12,998	삼치류	7,554	기타 어류	6,046
사가현	김류	64,445		3,230	도미류	2,169	정어리	1,217	오징어류	1,075
나가사키현	정어리	32,814	고등어류	19,666	전갱이류	19,485	오징어류	15,433	기타 어류	14,276
쿠마모토현	김류	30,033	고등어류	15,119	도미류	8,064	정어리	6,657	방어류	5,674
오오이타현	방어류	9,292	전갱이류	7,945	기타 어류	4,585	정어리	4,064	고등어류	2,863
미야기현	정어리	17,638	전갱이류	11,371	가다랑어	5,362	참치	3,953	방어류	3,582
카고시마현	가다랑어	122,611	참치	20,993	방어류	20,930	전갱이류	18,178	고등어류	16,435
오키나와현	큰실말	15,404	참치	7,063	기타 어류	3,068	오징어류	2,669	청새치류	828

주) 1. 어종분류는 「항세조사표」에 따른 것이다.  
2. 운반선 반입량 포함.

(12) 소속지 양륙량 · 소속지 양륙금액이 많은 어항

(단위=총량: 톤, 금액 : 백만엔, 비율: %)

양륙량(소속지)						양륙금액(소속지)					
순위	항명	현명	2004년	2003년	전년대비	순위	항명	현명	2004년	2003년	전년대비
1①	아이즈	시즈오카	232,263	245,472	94.6	1①	아이즈	시즈오카	43,938	49,919	88.0
2②	초우시	치바	201,045	219,725	91.5	2②	하치노에	아오모리	28,382	24,637	115.2
3③	하치노에	아오모리	142,332	148,132	96.1	3③	나가사키	나가사키	21,910	22,345	98.1
4⑤	마쿠라자키	카고시마	120,856	114,032	106.0	4④	미사키	카나가와	21,438	21,872	98.0
5④	이시노마키	미야기	115,956	126,648	91.6	5⑤	케센누마	미야기	20,674	21,754	95.0
6⑥	사카이	돗토리	108,763	112,621	96.6	6⑥	초우시	치바	20,432	17,864	114.4
7⑦	케센누마	미야기	92,130	111,261	82.8	7⑦	사카이	돗토리	17,214	16,846	102.2
8□	이이오카	치바	69,999	51,037	137.2	8⑧	이시노마키	미야기	17,107	14,421	118.6
9□	하사키	이바라키	67,815	59,191	114.6	9⑨	하카타	후쿠오카	12,897	14,150	91.1
10⑧	나가사키	나가사키	64,626	66,644	97.0	10□	마쿠라자키	카고시마	12,359	10,922	113.2
11⑨	오나가와	미야기	57,636	64,489	89.4	11□	시모노세키	야마구치	11,142	8,568	130.0
12□	도코로	홋카이도	51,370	49,918	102.9	12□	라우스	홋카이도	9,025	5,868	153.8
13□	야마가와	카고시마	47,425	42,230	112.3	13□	토가리	사가	8,505	6,041	140.8
14□	하카타	후쿠오카	46,702	47,609	98.1	14□	후카우라	에히메	7,947	8,834	90.0
15□	오오후나토	이와테	44,346	47,964	92.5	15□	카츠우라	치바	7,895	5,113	154.4
16□	라우스	홋카이도	41,359	32,600	126.9	16□	시오가마	미야기	7,209	6,300	114.4
17□	유우베츠	홋카이도	34,563	38,116	90.7	17□	와카우라	와가야마	7,124	7,680	92.8
18□	오세누마	홋카이도	31,497	39,299	80.1	18□	오나가와	미야기	7,031	8,615	81.6
19□	카타카이	치바	30,785	21,361	144.1	19□	카츠우라	와가야마	6,792	7,123	95.4
20□	미사키	카나가와	30,238	30,699	98.5	20□	카이가타	카고시마	6,102	7,899	77.3
21□	앗케시	홋카이도	27,823	35,297	78.8	21□	우스이	카고시마	6,045	7,446	81.2
22□	토가리	사가	26,640	17,328	153.7	22□	앗케시	홋카이도	5,727	5,376	106.5
23□	치라이베츠	홋카이도	25,251	26,239	96.2	23□	야와타하마	에히메	5,705	5,438	104.9
24□	후카우라	에히메	24,327	24,194	100.5	24□	야마가와	카고시마	5,627	5,494	102.4

양륙량(소속지)						양륙금액(소속지)					
순위	항명	현명	2004년	2003년	전년대비	순위	항명	현명	2004년	2003년	전년대비
25□	하마다	시마네	24,274	34,230	70.9	25□	우시부카	쿠마모토	5,610	6,089	92.1
26□	나야우라	미에	23,593	35,520	66.4	26□	오세누마	훗카이도	5,531	5,713	96.8
27□	카츠우라	치바	22,662	17,309	130.9	27□	하마다	시마네	5,504	5,914	93.1
28□	우토로	훗카이도	22,465	25,118	89.4	28□	이리츠	오오이타	5,227	5,786	90.3
29□	우시부카	쿠마모토	21,785	20,597	105.8	29□	나카지마	후쿠오카	5,123	3,306	155.0
30□	키타우라	미야기	21,354	26,774	79.8	30□	오오후나토	이와테	4,877	4,940	98.7

자료: 「어항의 항세집」

주) 순위란의 ○안의 수는 전년도 순위이다.

(13) 도도부현 별 등록어선척수 · 총톤수

도도부현 명	항 수	등록어선척수 · 총톤수					
		총수		동력어선		무동력어선	
		척수	총톤수	척수	총톤수	척수	총톤수
전국	2,927	240,124	914,508	237,261	910,216	2,863	4,292
홋카이도	285	27,895	75,255	27,772	75,039	123	216
아오모리	92	10,781	48,009	9,629	47,306	1,152	703
이와테	111	14,997	25,335	14,933	25,126	64	209
미야기	143	12,991	99,343	12,990	99,341	1	2
아키타	22	1,626	3,919	1,626	3,919	0	0
야마가타	15	673	1,292	673	1,292	0	0
후쿠시마	10	1,182	5,179	1,182	5,179	0	0
이바라기	24	1,473	15,534	1,460	15,528	13	6
치바	69	7,056	20,379	7,039	20,303	17	76
도쿄	23	858	3,988	858	3,988	0	0
카나가와	25	2,772	25,984	2,751	25,898	21	86
니이가타	64	5,169	8,592	5,019	8,285	150	307
토야마	16	1,035	8,027	953	7,625	82	402
이시카와	69	4,223	10,032	4,185	9,617	38	415
후쿠이	45	2,857	8,783	2,813	8,747	44	36
시즈오카	50	4,462	34,010	4,427	33,900	35	110
아이치	34	4,955	15,644	4,955	15,644	0	0
미에	73	11,706	36,390	11,660	36,063	46	327
시가	20	604	1,398	518	1,331	86	67
교토	34	1,859	3,730	1,825	3,621	34	109
오오사카	12	1,050	5,894	1,050	5,894	0	0
효고	55	4,679	19,620	4,679	19,620	0	0
와가야마	96	5,086	19,932	5,005	19,764	81	168
돗토리	18	1,302	9,474	1,297	9,465	5	9
시마네	85	5,042	15,049	5,030	14,993	12	56
오카야마	27	2,590	7,660	2,587	7,649	3	11
히로시마	46	3,615	12,992	3,615	12,992	0	0
야마구치	97	10,131	34,637	9,950	34,565	181	72
토쿠시마	29	3,696	9,481	3,661	9,443	35	38
카가와	92	4,471	12,892	4,468	12,889	3	3
에히메	195	12,843	43,126	12,838	43,114	5	12
고우치	90	6,793	27,915	6,756	27,781	37	134
후쿠오카	65	6,339	28,903	6,295	28,817	44	86
사가	47	5,289	14,008	5,185	13,920	104	88
나가사키	286	19,545	79,230	19,415	79,100	130	130
쿠마모토	104	8,076	21,502	7,924	21,445	152	57
오오이타	110	6,403	21,295	6,387	21,257	16	38
미야기	23	2,245	17,772	2,233	17,727	12	45
카고시마	138	6,899	49,124	6,795	48,865	104	259
오키나와	88	4,856	13,179	4,823	13,164	33	15

자료 : 수산청 「어항의 항세집」

(14) 등록동력어선척수 · 총톤수가 많은 어항

척수				총톤수			
순위	어항명	도도부현명	척수	순위	어항명	도도부현명	총톤수
1	훗시	치바	1,138	1	케센누마	미야기	44,717
2	보우제	효고	918	2	쿠시키노	카고시마	23,897
3	토가리	사가	881	3	하치노에	아오모리	22,558
4	카네다	치바	875	4	미사키	카나가와	19,218
5	후카야	미에	839	5	야이치	시즈오카	16,972
6	나카지마	후쿠오카	838	6	시오가마	미야기	15,017
7	앗케시	훗카이도	831	7	나가사키	나가사키	12,488
8	후나코시	이와테	818	8	이시노마키	미야기	11,876
9	오키노하타	후쿠오카	709	9	시모노세키	야마구치	9,632
10	와타노하	미야기	669	10	하카다	후쿠오카	8,837
11	마이사카	시즈오카	667	11	메이츠	미야기	7,659
12	타로우	이와테	645	12	타치우라	나가사키	6,814
13	우사	고우치	596	13	하사키	이바라키	6,785
14	마츠카와우 라	후쿠시마	592	14	사카이	돗토리	6,655
15	나가사키	나가사키	590	15	헤타	시즈오카	4,926
16	미사키	카나가와	566	16	하마쿠시	나가사키	4,890
17	코도마리	아오모리	559	17	미키우라	미에	4,729
18	아소우라	미에	558	18	보우제	효고	4,662
19	유키	토쿠시마	553	19	쿠시마	에히메	4,592
20	히마카	아이치	541	20	카마이시	이와테	4,551

## (15) 이용 동력어선 실 척수 · 속인어획량이 많은 어항

이용 동력어선 실 척수				속인어획량			
순위	어항 명	도도부현 명	척수	순위	어항 명	도도부현 명	총톤수
1	오키노시마	후쿠오카	2,011	1	하치노에	아오모리	112,788
2	하카다	후쿠오카	1,674	2	하사키	이바라키	86,090
3	하쿠이	카고시마	1,361	3	이이오카	치바	81,472
4	하치노에	아오모리	1,354	4	아이치	시즈오카	73,278
5	시자키	아이치	1,337	5	헤타	시즈오카	70,571
6	미사키	카나가와	1,260	6	오오에치	이바라키	60,822
7	케센누마	미야기	1,254	7	토코로	홋카이도	58,679
8	나가사키	나가사키	1,210	8	사카이	돗토리	48,529
9	보우제	효고	1,152	9	츠히시	치바	48,230
10	훗시	치바	1,138	10	간우라	나가사키	47,554
11	아오우기우라	나가사키	1,039	11	시오가마	미야기	44,802
12	앗케시	홋카이도	996	12	하마쿠시	나가사키	38,854
13	오오후나토	이와테	991	13	나가사키	나가사키	36,134
14	우시부카	쿠마모토	981	14	케센누마	미야기	35,735
15	시에치가와	미야기	948	15	유우베츠	홋카이도	33,969
16	오오시마	고우치	920	16	슈쿠다소우	미에	32,373
17	다이츠치	이와테	915	17	우라교	시마네	32,221
18	키요미즈	고우치	894	18	가미자키	나가사키	29,548
19	야와타하마	에히메	891	19	토가리	사가	26,640
20	토가리	사가	881	20	키타우라	미야기	26,313

자료 : 수산청 「어항의 항세집」

## (16) 어항수가 많은 시정촌

(2006년 4월 1일 현재)

순위	시정촌명(현명)	항수
1	츠시마 시(나가사키 현)	53
2	우와지마 시(에히메 현)	52
3	고토우 시(나가사키 현)	45
4	이시마키 시(미야기 현)	44
5	아마쿠사 시(쿠마모토 현)	43
6	사이키 시(오오이타 현)	37
7	샤도 시(니이가타 현)	34
8	히라도 시(나가사키 현)	33
9	신카미고토우 정(나가사키 현)	31
10	케센누마 시(미야기 현)	29

(17) 도도부현 별 어항밀도

(연장단위 : m)

도도부현 명	해안선연장(A)	항 수(B)	(A)/(B)
홋카이도	①4,401,737	②284	15,499
아오모리	752,300	92	8,177
이와테	708,490	111	②6,383
미야기	828,246	④142	①5,833
아키다	264,220	21	12,582
야마가타	135,421	15	9,028
후쿠시마	166,550	10	16,655
이바라기	192,450	10	19,245
치바	533,381	69	7,730
도쿄	761,254	23	33,098
카나가와	428,618	25	17,145
니이가타	634,594	64	9,916
토야마	147,115	16	9,195
이시카와	583,476	69	8,456
후쿠이	414,763	45	9,217
시즈오카	512,904	49	10,467
아이치	597,199	34	17,565
미에	1,091,474	73	14,952
교토	315,235	33	9,553
오오사카	233,384	13	17,953
효고	847,720	53	15,995
와가야마	650,463	95	③6,847
돗토리	129,334	18	⑤7,185
시마네	1,026,786	84	12,224
오카야마	542,752	26	20,875
히로시마	1,129,208	46	24,548
야마구치	1,503,182	97	15,497
토쿠시마	392,348	29	13,529
카가와	699,300	92	7,601
에히메	⑤1,633,141	③195	8,375
고우치	713,162	88	8,104
후쿠오카	661,587	65	10,178
사가	364,918	47	7,764
나가사키	②4,196,104	①286	14,672
쿠마모토	1,084,596	104	10,429
오오이타	772,874	110	④7,026
미야기	405,955	23	17,650
카고시마	③2,643,000	⑤138	19,152
오кина와	④2,026,852	88	23,032
합계	35,126,093	2,882	12,188

- 주) 1. ○표는 순위(상위5위까지)를 나타낸다. (A)/(B)는 밀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2. 해안선연장은 2005년도 판 해안통계로 각성 중복구간분량을 정리한 것  
 3. 항수는 해면 어업항(2005년 4월 1일 현재)  
 4. 북방영토, 센카쿠열도 포함.

## 3. 낙도 어항

## (1) 일본의 낙도

구분	섬 수	면적(km <sup>2</sup> )	인구 (천명단위)	비고
법대상 유인낙도	315	7,569	736	
일반 · 홋카이도낙도	262	5,253	472	「낙도진흥법」 낙도진흥대책실시지역 내 낙도(1953.7.22 쫓72)
오가사와라 제도	4	69	3	「오가사와라제도 진흥개발특별조치법」(1969.12.8 법79)
아마미 군도	8	1,231	132	「아마미군도 진흥개발특별조치법」(1954.6.21 법89)
오키나와 낙도	41	1,016	129	「오키나와진흥개발특별조치법」(1971. 12.31 법131)
전국	6,852	377,873	126,926	본사(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큐슈, 오키나와 본섬) 포함.

(출전) 1) 「해상보안현황」(1988.9 해상보안청)

2) 「2000년 전국 도도부현 시구정촌별 면적조사」(국토 지리원)

3) 「2000년도 국세조사 전국 도도부현 시구정촌 별 인구 및 세대수(확정수)」(총무성 통계국)

주) 법 대상 유인낙도는 비교에서 열거한 각종 법률에 따라 진흥대책이 시행되는 유인낙도를 가리킨다. (2004년 4월 1일 현재. 단, 인구는 2000년 10월 1일 현재의 국세조사수치(확정치)이다.)

## (2) 낙도의 항세

## ① 지정 항수

(2006년 4월 1일 현재)

항 종류/항목	전국		낙도		(B)/(A) %
	(A)	구성비 %	(B)	구성비%	
제1종 어항	2,210	75.7	372	75.3	16.8
제2종 어항	495	16.9	76	15.4	15.4
제3종 어항	114	3.9	7	1.4	6.1
제4종 어항	101	3.5	39	7.9	38.6
합계	2,920	100	494	100	16.9

출전 : 수산청계획과

## ② 낙도의 수산업

구분	등록동력어선		소속지 양륙량	
	척수	톤수	톤수	금액(백만엔)
낙도(1)	42,346	132,650	206,978	91,155
전국(2)	242,108	941,025	4,543,113	1,129,697

출전 : (1) 2005 「낙도통계연보」 (2)2003년 「어항의 항세집」



③ 낙도어항에서의 등록어선추이

구분	무동력선	동력선		동력선평균톤수	동력선구성비
		척수	톤수		
1970년	14,392척	39,630척	162,924톤	4.1톤/척	73.4%
1980년	3,666척	57,662척	223,647톤	3.9톤/척	94.0%
1993년	807척	48,659척	163,346톤	3.4톤/척	98.4%
2003년	420척	42,346척	132,650톤	3.1톤/척	99.0%

출전 : 「낙도통계연보」

주) 낙도진흥대책실시지역과 관련된 분량은 계상

## 4. 어촌의 현황

## (1) 어항배후취락지의 개요

## ① 세대수별 취락수

	총수	0~19 세대	20~49 세대	50~99 세대	100~199 세대	200~499 세대	500~999 세대	1,000 세대이상
취락 수	4,698	372	817	1,072	1,086	941	288	122
비율(%)	100.0	7.9	17.4	22.8	23.1	20.0	6.1	2.6

## ② 어가(漁家)세대수별 취락수

	0~9세대	10~19 세대	20~49 세대	50~99 세대	100~199 세대	200~499 세대	500~999 세대	1,000 세대이상
취락 수	1,131	1,121	1,531	649	200	60	6	0
비율(%)	24.1	23.9	32.6	13.8	4.3	1.3	0.1	0.0

## ③ 어가비율

	25%미만	25~50%미만	50~75%미만	75%이상
취락 수	2,533	1,113	598	424
비율(%)	53.9	24.3	12.7	9.0

## ④ 시가지로부터의 거리

	5km미만	5~10km미만	10~30km미만	30km이상
취락 수	747	677	1,830	1,444
비율(%)	15.9	14.4	39.0	30.7

## ⑤ 취락 형태

	분산 거주	밀집 거주	밀집열거거주	밀집군집거주
취락 수	512	1,365	1,843	978
비율(%)	10.9	29.1	39.2	20.8

## ⑥ 취락 지역지정

	취락법제도상의 지역지정							
	도시계획	농업 진흥	과소	산촌	낙도	아마미	벽지	반도
취락 수	1,744	2,267	2,516	817	841	44	1,449	1,486
비율(%)	37.1	48.3	53.6	17.4	17.9	0.9	30.8	31.6

⑦ 지형별 취락수

	취락 배후지형		취락 입지	
	평지	절벽, 산에 인접	평지	급경사지
취락수	2,184	2,514	3,499	1,199
비율(%)	46.5	53.5	74.5	25.5

(2) 오수처리시설의 역할분담

	인구(인수)	비율(%)
취락인구	2,498,710	-
어업취락배수인구	152,473	14.9
공공하수도인구	554,071	54.2
농업취락배수인구	72,360	7.1
기타 집합처리인구	3,587	0.4
개별처리인구	240,102	23.5
배수처리인구(계)	1,022,593	40.9

(3) 각 시설의 정비 상황

	어업취락비율(%)	소도시비율(%)
상수도 보급율	96.8	95.2
하수도 보급율	40.9	62.9
자동차교통 가능도로비율	76.3	82.8
쓰레기처리 실시율	99.5	100.0
공원이 있는 취락지 비율	44.8	-
분뇨처리수세화율	52.7	-
소방수 이충족율	77.5	-
안전정보전달시설 정비율	86.1	-

※ 소도시 : 총무성 공공시설상황조사(2003년 3월말 현재)

자 료 : 어항배후취락 기초데이터(수산청어항어장정비부 방재어촌과 조사)

## (4) 어업취락지내 공공시설정비의 도시와의 비교

(단위 : %)

항목	도시부(중소도시)	어촌
상수도 보급율	95	97
하수도 등 보급율	67	41
자동차교통가능도로비율	83	76

자료 : 어항배후취락기초데이터(2001년 말 현재)  
총무성 「2001년도 공공시설현황조사」

## (5) 도도부현 별 하수도 등의 보급률

(%) (2005년 3월말 현재)

도도부 현	어항배후 취락지	도도부현 이하 전체	도도부현	어항배후 취락지	도도부현 이하 전체
홋카이도	47.7	90.7	시가	91.7	94.3
아오모리	19.5	60.0	교토	38.1	90.4
이와테	36.3	62.3	오오사카	63.1	91.9
미야기	41.9	81.4	효고	78.5	96.1
아키타	74.6	67.1	나라		77.8
야마가타	27.4	76.2	와가야마	23.2	38.1
후쿠시마	35.1	62.1	돗토리	70.3	79.5
이바라기	43.8	69.6	시마네	48.7	58.8
토치기		68.4	오카야마	58.5	67.5
군마		62.3	히로시마	38.7	76.0
사이타마		82.0	야마구치	47.7	70.4
치바	24.8	76.4	토쿠시마	12.5	36.6
도쿄	35.3	98.7	카가와	33.8	56.9
카나가와	52.7	95.8	에히메	31.9	59.5
니이가타	51.8	68.9	고우치	20.8	54.7
토야마	78.5	84.0	후쿠오카	51.0	80.0
이시가와	49.1	79.9	사가	30.7	58.2
후쿠이	86.6	78.0	나가사키	19.3	67.1
야마나시		66.2	쿠마모토	42.0	68.1
나가노		87.7	오오이타	38.0	58.6
기후		77.1	미야기	57.4	65.8
시즈오카	39.7	62.8	카고시마	35.8	58.6
아이치	35.9	75.4	오키나와	43.0	71.4
미에	43.7	65.3	전국	40.9	79.4

주1) 어항배후취락수치는 수산청 어항어장정비부 방재어촌과 조사(2002년도조사)에 따른다.

주2) 도도부현 이하 전체 수치는 2002년도 말 우수처리인구 보급률 상황(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환경성)에 따른다.

(6) 각 도도부현의 제방증축공사 보조율 등

(%)

도도부현명	어업취락 배수시설	농업취락 배수시설	공공 하수도	적요(특 증축공사 이외의 조성)
홋카이도	1)0.0	1)0.0	2)0.0	1)다음년도 기채상환기금에 대해 최대 15%조성. 2)대행공사
아오모리	15.0	0.0	0.0	농집배 : 기채 상환비에 대해 8.5~7.5%조성. 하수도 : 현 대행공사를 시행하는 것 외 기채 상환비에 대해 2.5%조성
이와테	0.0	0.0	0.0	감채기금에 어초15%, 농집10%, 공하2.5~3.0%를 조성
미야기	1)0.0	1)0.0	0.0	1)사업완료 후 교부금액정기준경비의 15%이내의 금액을 5년으로 제한 금액을 교부한다.
아키타	15.0	45.0	1),2)10.0	1)간선관거 · 종말처리장이 대상(3정촌) 2)1)외에 대행공사를 실시(5정촌)
야마가타	0.0	0.0	0.0	종합교부금제도 있음
후쿠시마	12.0	1)12.0~37.5	2)0.0~3.0	1)일반형12%, 수질 보전형 15%, 부영양방지형 37.5% 2) 재정력 지수로 0~2.5%로 변동. 처리장 미공용인 경우 0.5% 가산
이바라기	20.0	1)15.0	2)0.0	1)카스미가우라 유역은 20% 2) 처리장에 대한 보조 있음 (과거3개월 평균 재정력 지수, 전전년도 보급률에 의함)
치바	15.0	1)20.0 2004년 신규 10.0	0.0	1)단, 치바시는 1%
도쿄	25.0	25.0	1)0.0	1)수익자부담금의 1/2이내를 교부(사업비의 3%에 해당)
카나가와	미실시	10.0	1)3.3~33.3	1)기채 비대상 사업비에 대한 조성
니이가타	1)15~20	2)0.0	0.0	1)본사15%, 낙도 20%, 2)기채 상환비에 대해 12%를 조성
토야마	0.0	0.0	0.0	다음연도에 사업비의 5%를 교부
이시가와	0.0	0.0	0.0	사업실시의 다음연도 이후, 처리증가인구에 대해 일인당 49,000엔의 보조를 8년간 분할한다.
후쿠이	20.0	10.0	1)0.0	1)처리장에 드는 수익자부담금의 1/2이내를 교부(사업비의 3%에 해당)단, 교부금총액의 범위가 있으며 실적은 0.9%정도
시즈오카	20.0	20.0	0.0	재정력 지수가 현보다 위인 경우 17.0%
아이치	1)21.0	2)14.0	0.0	1)낙도의 수치 2) 산촌지역은 21.0%
미에	0.0	0.0	0.0	다음연도 기채상환분비에 대해 8.25%이내를 조성
시가	미실시	10.0	1)0.0	1)교부금 있음 (재정력 지수 등에 의한 산출)
교토	0.0	0.0	0.0	사업실시 다음연도 이후, 5년간 총사업비의 3%씩(계 15%)를 기채상환비로 조성

도도부현명	어업취락 배수시설	농업취락 배수시설	공공 하수도	적요(독 증축공사 이외의 조성)
오오사카	15.0	15.0~20.0	0.0	농집배 : 지속사업20.0% 신규사업:15.0%
효고	0.0	0.0	0.0	처리율이 80%미만인 시정에 대해 총사업비의 어집 1.67%, 농집 1.67% 공하1.0% 특환1.33%등을 일반회계로 이월조성
와가야마	1)0.0	2)0.0	0.0	1)다음연도에 사업비의 10%를 교부 2)다음연도의 관거 사업비의 3%를 교부(상한선 1천만 엔)
토토리	0.0	0.0	0.0	농집9% 공하0~7%를 다음연도에 교부
시마네	0.0	0.0	0.0	실 부담액 X 조치율을 다음연도 교부 실 부담액 : 사업비-국비-기채의 교부세 조치액 조치율:30%, 40%, 50% (재정력 지수, 보급률에 따라 다름)
오카야마	15.0	15.0	1)0.0	1)지방 단독분 기채액의 5/95이내를 교부
히로시마	1)1.0	1)1.0	2)0.0	1)어업취락배수시설(오수)사업비의 9%이내의 금액을 조성 2) 대항공사
야마구치	15.0	15.0	0.0	
토쿠시마	10.0	10.0	1)0.0	1)감채기금에 대해 최대 관& 2.5%, 처리장2.25%를 조성
카가와	22.5	중점30.0 일반15.0	0.0	공공하수도( )시정촌 사업 중점 증가사업비X0.2(사업비의 4%+증가사업비 X0.40375) 일반 증가사업비X0.1(사업비의 4%+증가사업비 X0.2375)
에히메	15.0	15.0	0.0	
고우치	1)0.0	1)0.0	0.0	1)해당연도에 사업비의 11%를 교부
후쿠오카	7.5	7.5	1)9.0 18.0	1)공하는 국고보조사업 및 단독사업비에 대해 전전년도말의 처리인구 보급율이 70%미만 및 재정력 지수가 후쿠오카현의 전전연도의 동지수 미만의 시정촌에 교부(상한선 1천만 엔) 교부액:(사업비-국비-기채)X9혹은 18%
사가	0.0	0.0	0.0	국고보조대상사업비에 대한 어초7.5%(낙도10%)농집7.5% 공하는 단독사업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 대해 각 시정촌마다 산정한 비율로 교부
나가사키	1)0.0	1)0.0	2)0.0	1)10%를 교부 2)관거, 처리장, 지역지정에 따라 다른 비율로 교부
쿠마모토	0.0	0.0	0.0	후년도 6.5%를 교부(어초,농집)
오오이타	0.0	0.0	0.0	기채 상환비는 재정력에 따라 최대 10%를 교부
미야기	1)0.0	2)0.0	3)0.0	1)사업비의 10%를 교부 2)사업비의 7.5%를 교부 (과소지역은 10%) 3)사업비의 0~3.3%를 교부 (비율계산에 따라)
카고시마	1)0.0	1)0.0	2)0.0	1)본토10% 낙도 12.5%, 아미미14.125%를 교부 2)처리시설 3%, 관로 1.5%를 교부
오키나와	1)22.5	2)12.5	3)0.0	1)낙도 27.5% 2)낙도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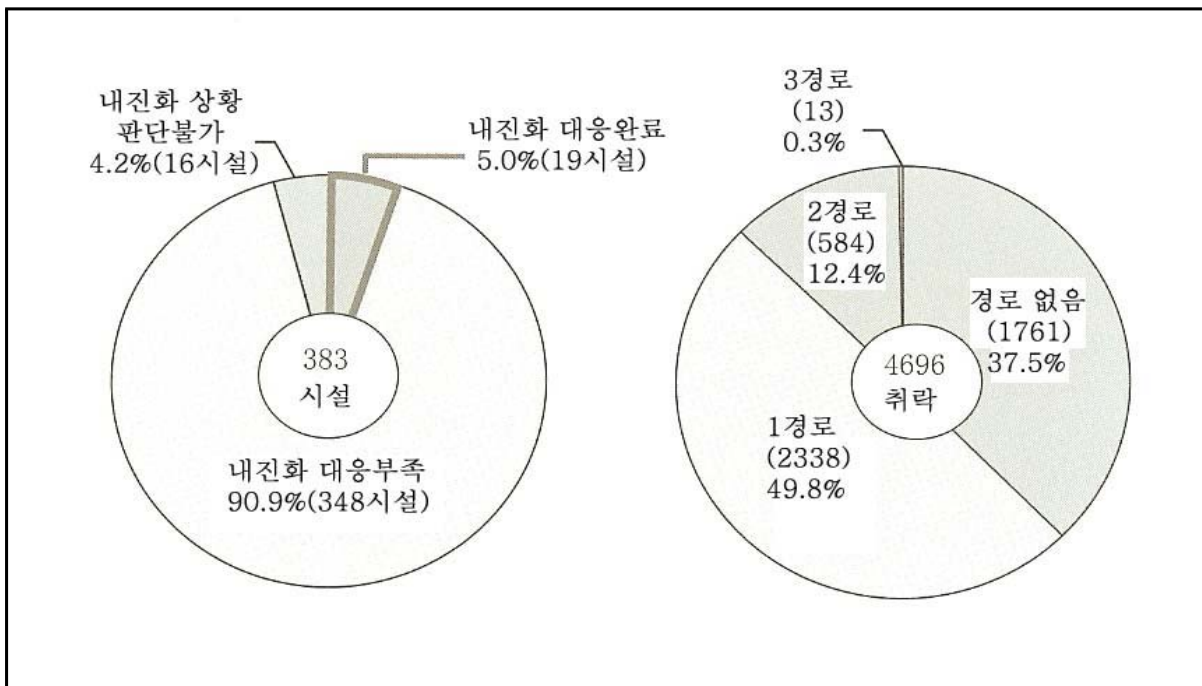
주1) 각 도도부현의 청취에 따른다.(2006년도)

2) 보조율은 국고보조대상사업비에 대한 비율이다.

3) 오키나와의 국고 보조율은 어집(漁集)55%, 농집(農集)75%, 공하(公下)60%(처리장은 2/3)이다.

(7) 어항의 내진화, 어업취락지의 고립

- 생산유통거점어항(양륙량 1,000톤 이상)의 내진화 대응완료시설은 겨우 5%이다.
- 또한 지진, 해일, 토석유입, 토사붕괴 등이 함께 발생할 경우 육·해·공 세 가지의 루트가 모두 차단되어 물리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있는 어항 배후 취락지는 전체 4,696취락 중 약 38%(1,761취락)이다.
- 더욱이 하나의 루트밖에 확보할 수 없는 어항배후취락지를 포함하면 약 87%(4,099취락지)나 된다.



## 제 3 편 관련자료

제1장 관련시책·데이터

제2장 조직·기타

제3장 참고자료

제4장 일본의 어항역사

제5장 일본 어항어장 정비법





# 제 1 장 관련시책 · 데이터

## 1. 관련시책

### (1) 수산기본법 및 관련법 개요

#### ① 수산기본법의 골자

##### ◦ 제1 기본이념

##### i.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확보

- a. 건전한 식생활 등의 기초로 중요한 수산물을 앞으로 안정적으로 공급
- b. 생태계의 구성요소이며, 한정된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보존관리와 증양식 추진
- c. 국민에 대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은 일본의 어업생산증대 도모를 기본으로 수입을 적절하게 가미한다.

##### ii.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

- a.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여 수요에 따르는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어업경영육성, 어업·수산가공업·수산유통업의 연대확보, 어항, 어장 등의 기반정비로 수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킨다.
- b.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어촌을 생활환경정비 등으로 진흥시킨다.

##### ◦ 제2 수산기본계획

- 정부는 수산과 관련된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책정
- 기본계획으로는 시책의 기본적인 방침, 수산물의 자급율 목표, 정부가 강구해야할 시책 등이다.
- 약 5년마다 정세의 변화 및 시책을 평가하여 변경한다.

- 제3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확보와 관련된 시책
  - a. 식재료인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확보
  - b. 배타적경제수역 등에서의 수산자원의 적절한 보존과 관리
  - c. 배타적경제수역 등의 이외의 수역에서의 수산자원의 적절한 보존과 관리
  - d. 수산자원관련 조사 및 연구
  - e. 수산동식물의 증식 및 양식추진
  - f. 수산동식물의 생육환경보전 및 개선
  - g. 배타적 경제수역 등의 이외의 수역에서의 어장유지 및 개발
  - h. 수산물의 수출입과 관련된 조치
  - i. 국제협력추진
  
- 제4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관련된 시책
  - a.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어업경영육성
  - b. 어장이용의 합리화촉진
  - c. 인재육성 및 확보
  - d. 어업재해로 인한 손실의 보상 등
  - e. 수산가공업 및 수산유통업의 건전한 발전
  - f. 수산업기반 정비
  - g. 기술개발 및 보급
  - h. 여성의 참가촉진
  - i. 고령자활동촉진
  - j. 어촌의 종합적인 진흥
  - k. 도시와 어촌의 교류 등
  - l. 다면적 기능과 관련된 시책에 충실
  
- 제5 기타
  - 국가, 지방공공단체, 수산관계자, 유어자 및 소비자의 책무
  - 연차보고
  - 수산정책 심의회설치
  - 행정기관 및 단체

② 수산기본법의 목표 이념의 명확화와 기본정책의 방향성

	연안어업 등의 진흥법 (1963년)	수산기본법
<b>정책목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안어업 등의 생산성 향상</li> <li>● 종사자생활수준 타산성과의 균형</li> </ul>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안어업 등의 진흥</li> <li>● 종사자의 지위향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확보</li> <li>●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li> </ul>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에 대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li> </ul>
<b>시책대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안어업, 중소어업을 한정적으로 대상으로 삼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업부문에 가공, 유통도 포함하여 수산업전체를 포괄적으로 대상으로 삼음</li> </ul>
	<b>포인트</b>	<b>포인트</b>
		자급율목표설정 기본계획에서 어업생산량의 목표를 명시화
<b>수산자원</b>	수산자원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에 있는 것을 전제로 생산의 효율화, 어획량의 증대에 중점을 둠	수산자원이 적절히 관리됨으로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자원이라는 특성을 살려 수산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지속적인 이용을 기본으로 시책전개. 유어이용도 관리대상으로 삼으며 수역환경과 생태계보전도 고려
<b>담당 어업경영</b>	영세하여 비효율적인 어업경영이 다수 존재하여 생산구조개선이 시급하다고 여겨져 과잉취업해소, 경영의 근대화, 효율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중점을 둠	산업의 효율성 향상과 근대화도모 뿐 아니라 경영지속과 발전시점도 중시하여 어업외부로부터의 신규참여를 촉진하며 담당자를 광범위하게 육성하기 위한 조건을 정비해나가는 방향으로 시책전개
<b>유통가공소비</b>	&성한 수산물수요를 전제로 수산물의 선도유지와 효율적인 공급체제정비를 추진하는데 중점을 둠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요구하는 소비자요구에 대응하는 등 소비자시점을 중시하여 시책전개
<b>어촌</b>	어업자의 소득수준 뿐 아니라 생활환경정비도 포함하는 생활수준전체에 관한 도시와의 격차시정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둠	도시에 비해 낙후된 생활환경정비와 어촌전체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시점으로 시책전개
<b>수산기반</b>	어항 및 어장시설의 부족분해결을 위해 개별적인 양 확보에 중점을 둠	수산기반에 관하여 생산에서 유통까지 일관된 정비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시책전개

(2) 수산기본계획의 포인트

- 날짜 : 3월26일 (화) 각의결정 · 국회보고 3월29일 (금) 공표  
( 수산기본계획은 작년6월에 제정된 수산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향후 10년 정도를 예상하고 규정한 시책추진의 중기적인 지침 )

**제1 수산과 관련된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확보」 및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수산기본법에 나열된 2가지의 이념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책발전의 기본적인 방침을 기재.

**제2 수산물의 자급율 목표 (별표참조)**

- 어업 생산면 및 수산물소비 면에서 관계자가 대처해야할 구체적인 과제를 명확히 한 후, 이들 과제가 해결된 경우 실현가능한 어업생산량 및 소비자의 수준을 각각 「지속적인 생산목표」와 「바람직한 수산물소비의 모습」으로 명시.
- 이에 따라 10년 후 2012년의 「수산물의 자급율 목표」를 설정

**제3 수산과 관련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강구해야할 시책**

- 시책에 관한 기본방침에 따라 수산물의 자급율 목표달성을 위하여 각각의 시책을 전개
- (1)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확보에 관한 시책
- 수산물의 안정성확보 및 품질개선, 수산자원의 적절한 보전관리, 수산동식물의 증양식추진, 수산동식물의 생육환경 보전개선, 해외어장유지개발 등
- (2)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관련된 시책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어업경영육성, 어장이용의 합리화촉진, 수산가공·유통업의 건전한 발전, 수산업기반정비, 어촌의 종합적인 진흥, 도시어촌교류, 다면적 기능관련시책에 충실 등
- (3) 단체의 재편정비와 관련된 시책
- 어업협동조합합병으로 재편정비 추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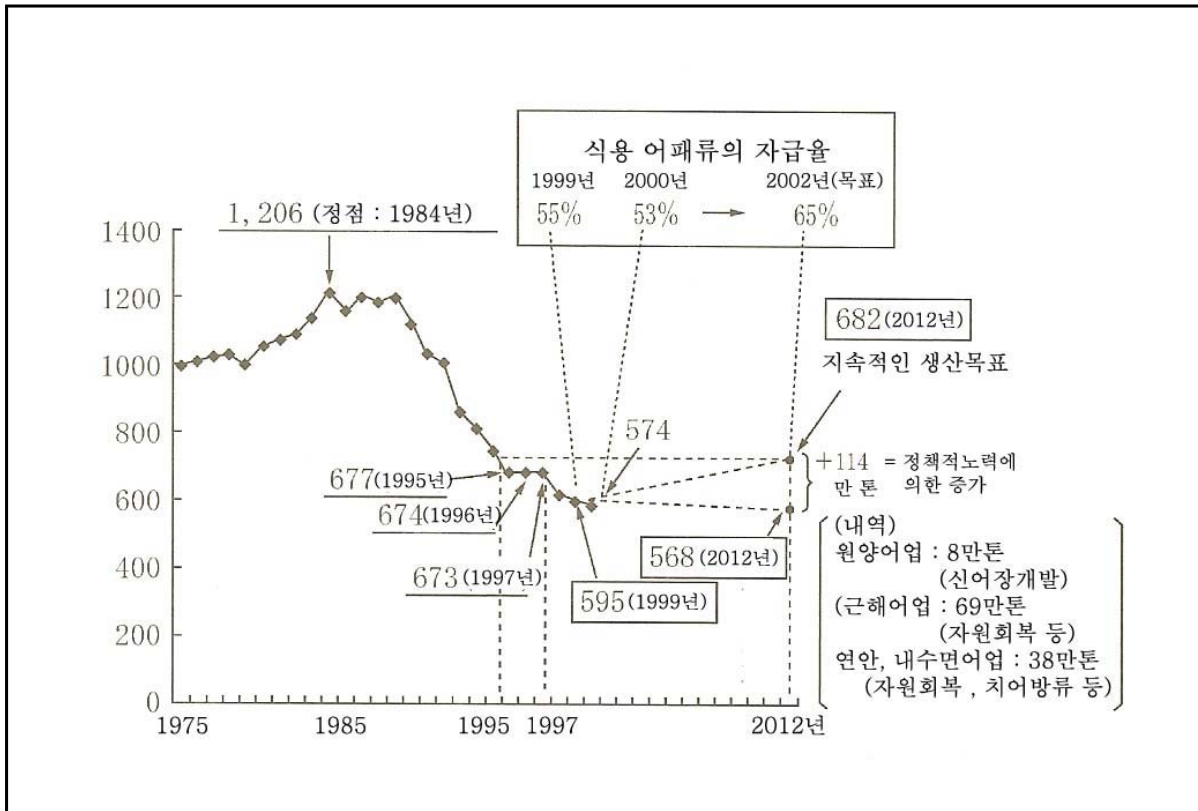
**제4 수산과 관련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이 계획은 수산을 둘러싼 정세의 변화 및 시책의 효과와 관련된 평가에 따라 약 5년마다 검토 등

■ (별표) 수산물의 자급율 목표 ■

	1999년	(참고)2000년	2012년(목표)
어패류(전체)	56%	53%	66%
이중에서 식용	55%	53%	65%
해조류	61%	63%	70%

■ (참고) 어패류의 생산량과 자급율 ■



참고

○ 연안어업 생산구조의 전망

- 수산물의 자급율 목표설정으로 미래 일본의 어업생산량 전망이 드러남과 함께 연안어업에 관한 앞으로의 경영체수, 어업취업자수 등의 생산구조 모습을 전망함으로 경영방침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연안어업의 생산량 : 1999년 286만 톤 -> 2012년 목표치 315만 톤)
- 「추세치」는 현재의 감소경향이 그대로 지속되는 경우를 상정한 모습
- 「전망치」는 추세치에 따라 정책노력을 가미한 목표생산구조 모습

① 경영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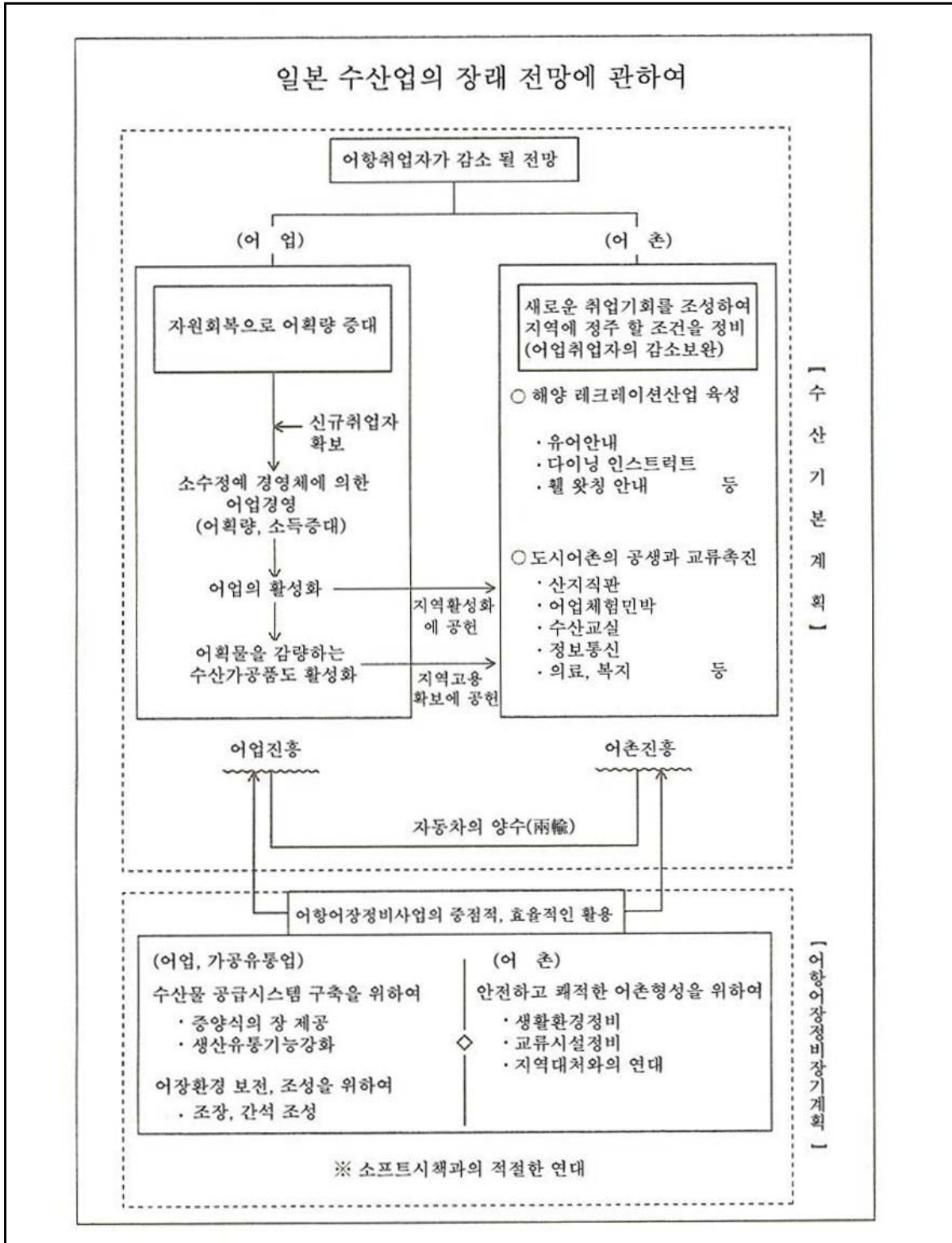
	2000년	2012년	
		추세	전망
연안어업 전체 (내역)	14만	6.5만	7만
어선어업	11.2	5.2	5.6
어패류양식업	1.6	0.8	0.9
해초류양식업	1.1	0.5	0.5
이중 주업 어가 (내역)	6만 (43%)	3만 (46%)	3.5만 (50%)
어선어업	4.3	2.2	2.6
어패류양식업	1.0	0.5	0.6
해초류양식업	0.7	0.3	0.4

주1) ( )안은 전체경영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주2) 주업 어가는 전업 및 제1종 겸업 어가 중에서 기간적 어업종사자(경영체 중에서 해상작업 종사일수가 가장 많은 것)가 65세미만의 어가

② 취업자 수

	2000년	2012년	
		추세	전망
연안어업 전체	22.1만 명	10.7만 명	11.5만 명
이중에서 65세미만	14.5만 명	7.7만 명	8.5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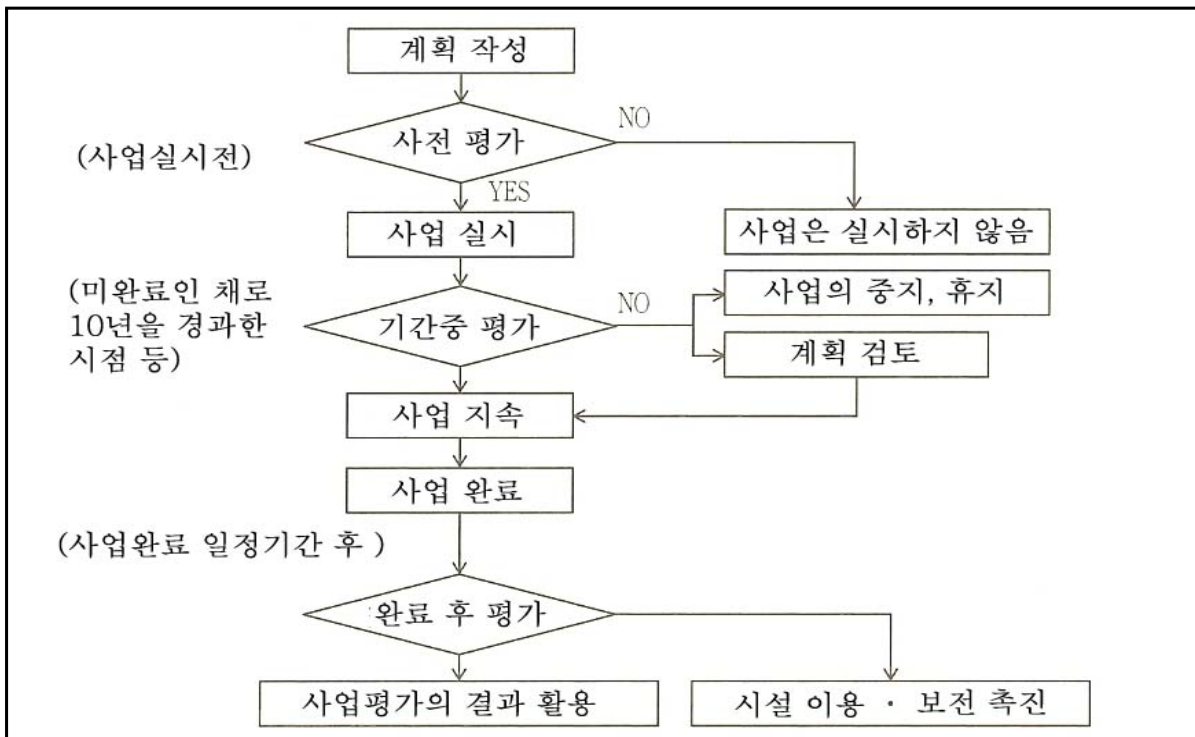


(3) 수산관계공공사업의 사업평가제도의 개요

① 사업평가제도 도입

수산관계공공사업은 사업채택 이전부터 사업종료 후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실시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산관계공공사업의 사업평가실시요강(1999년 8월 13일부, 수산청 장관통지)」을 책정한 사업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② 사업평가의 흐름



③ 사업평가의 주된 내용

i. 사업평가

- 2000년도부터 도입
- 「지역지표」 「시책별 지표」 「경제효과지표」로 사업의 필요성, 효율성, 유효성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지역지표」 : 지역의 사업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지표
- 「시책별 지표」 : 정책적인 의의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지표
- 「경제효과지표」: 공공사업관련 6성청의 공통적인 운용방침(시행안)에 따라 비용 대비 효과분석에 관한 지표

## ii. 기간 중의 평가

- 1998년도부터 도입
- 사업의 진척상황, 어업정세, 사회경제정세 등에 관하여 점검하고 종합평가를 시행한 후 사업의 지속, 계획변경, 휴지, 중지 등의 대응을 검토한다.

## ■ 기간 중 평가결과 ■

	2004년					2005년				
	대상 지구 수	중지	휴지	검토	계	대상 지구 수	중지	휴지	검토	계
수산기반정비	24	1	0	11	12	336	3	2	13	18
어항해안	3	0	0	0	0	20	0	0	0	0
합계	27	0	0	11	12	356	3	2	13	18

## iii. 완료 후의 평가

- 직할사업은 2000년도부터, 보조사업은 200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
- 사업완료 후 사업의 효과를 파악하여 시설의 이용·보전촉진 등을 도모한다.

(4) 전국종합개발계획

평가명칭 (약칭 명)	책정기간 (각의결 정)	지역개발과제	개발방식·전략
전국종합개발계획 (1전종)	1962년 10월5일	산업기반정비	거점개발방식
신전국 종합개발계획 (신전종)	1969년 5월30일	성장의 안정적인 유지	대규모 프로젝트방식
제3차 전국종합개발계획 (3전종)	1977년 11월4일	인간과 국토와의 바람직한 관계실현	정주구상
제4차 전국종합개발계획 (4전종)	1987년 6월30일	다극 분산형 국토형성 ○정주와의 교류로 지역 의 활성화 ○세계도시기능의 재편성 ○안전하고 질 높은 국토 환경정비	교류네트워크 구상 ○교류무대정비 · 지역환경정비 · 산업진흥기반정비 ○교류수단강화 · 고속교통체계정비 (전국1일 교통권) · 고속정보· 통신체계정비 ○ 교류기회의 창조 · 이벤트컨벤션
제5차 전국종합개발계획 (21세기 국토의 그랜드디자인지역 의 자립촉진과 아름다운 국토창조1)	1998년 3월 31일	○자립촉진과 긍지를 가 질 수 있는 지역창조 ○국토의 안전과 생활의 안전성 확보 ○ 풍요로운 자연 혜택과 계승 ○활력 넘치는 경제사회 구축 ○세계로 열려진 국토형 성	○다자연 거주지역 창조 ○대도시의 리노베이션 ○지역연대축 전망 ○광역국제교류권 형성

## (5) 환경기본계획

## ① 취지

환경보전과 관련된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책정된 계획이다.

2006년 4월에 책정된 새로운 계획에서는 일본 및 세계의 미래를 장기간에 걸쳐 전망하며, 2025년경까지 실현해야 할 사회를 예상하면서 당연한 환경정책방향과 대처범위를 명확히 한다.

## ② 책정시기

환경기본법(1993년 법률 제91호) 제15조 규정에 따라 최초의 환경기본계획을 1994년 12월 16일에, 제2차 계획을 2000년 12월 22일에 각의결정. 그 후 앞으로의 환경정책 전개방향으로 환경, 경제, 사회의 통합향상 등을 천명한 제3차 계획을 2006년4월 7일에 각의 결정한다.

## ③ 장기계획

환경정책의 장기적인 목표는 「환경」 「공생」 「참가」 및 「국제적인 대처」라는 4가지 항목이다.

- 환경…사회경제활동의 모든 단계를 통하여 자원과 에너지 면에서 보다 높은 효율화를 도모하여 재생가능한 자원이용촉진, 폐기물 등의 발생억제와 순환 자원의 순환적인 이용 및 적정처분을 도모하는 등 물질순환을 확보함으로써 환경으로의 부하를 가능한 적게 하여 순환을 기조로 한 사회경제시스템을 실현한다.
- 공생…환경의 특성에 따라 자연보전, 2차적 자연환경유지관리, 자연환경의 회복 및 야생생물의 보호관리 등 사회경제활동을 자연환경에 조화시키며 또한 다양한 자연과의 만남의 장과 기회확보를 도모하는 등 자연과 인간 사이에 풍부한 교류를 유지함으로써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 회복하여 자연과 인간과의 공생을 확보한다.
- 참가…모든 주체가 환경에 대한 부하저감과 환경의 특성에 따른 현명한 이용 등 자주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환경보전과 관련된 행동에 주체적으로 참가하는 사회를 실현한다.
- 국제적 대처…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일본의 대처 성과와 심각한 공해문제 극복을 위한 노력의 결과 얻어진 경험과 기술 등을 활용하여 지구환경을 공유하려는 각국과의 국제협조 하에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차

지하는 지위에 어울리는 국제적 이니셔티브를 발휘하여 국제적 대처를 추진한다.

이상으로 건전하고 풍요로운 환경이 전 지구적 규모에서 근린지역에 이르기까지 보전됨과 동시에 이들을 통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을 실감할 수 있는 생활의 혜택을 받아 앞으로의 세대에게도 계승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한다.

④ 시설전개

수산기반정비사업에 관한 시책은 다음과 같이

- 환경…물 이용의 각 단계에서 부하저감 및 폐쇄성수역에서의 물 순환의 보전도모를 위한 하수도 등의 생활배수처리시설정비촉진, 배수규제 및 수역 내에서의 해수교환촉진 등을 실시한다.
- 공생…공동시설정비라는 사업의 실시에 있어 생물생식·생육공간, 공원, 녹지, 해변 등의 자연적 환경을 정비하고 지역의 자연특성을 고려하면서 자연적환경 회복 및 양적확보를 도모한다.
- 참가…국가와 지방공공단체는 공공사업 시 환경영향평가를 적절하게 실시함과 동시에 어항, 해안정비에서의 생태계중시와 태양광 이용 등 환경보전을 고려한 사업을 진행시킨다. 또한 리사이클과 환경부하가 적은 원재료 사용을 진행시킴과 동시에 환경에 대한 부하가 적은 신기술개발을 추진한다.

⑤ 기타

- 매년 중앙환경 심의회는 본 계획의 착실한 실행확보를 위하여 시책진척상황 등을 점검한다.
- 내외의 사회경제변화와 시책의 진척상황에 유연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여 환경기본계획검토를 시행하며,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계획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에 따라 계획을 변경한다.

## (6) 비용감축과 관련된 시책

- 수산관계공공사업의 비용감축은 지금까지 정부 전체로써 대처하는 「공공 공사비용 감축대책과 관련된 행동지침」에 따라 1997년 4월에 책정된 「수산관계공공사업의 비용감축계획」을 기본으로 구체적인 시책이 실시되어 수치목표를 거의 달성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열악한 재정상황하에서 계속해서 수산관계공공사업의 착실한 추진이 요청되므로 2000년 9월 1일 공공 공사비용 감축대책관계각료회의에서 책정된 「공공 공사비용 감축대책과 관련한 신행동지침」에 따라 새로이 「수산관계공공공사의 신비용감축계획」을 책정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고 있다.
- 그러나 열악한 재정사정 하에 계속해서 수산관계공공사업을 착실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대처와 함께 a. 효율성향상 b.설계 등의 최적화 c. 조달의 최적화 d. 지역특성 중시 e. 투명성향상이라는 5개의 시점에서 사업계획단계에서 관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예외 없이 검토하는 「수산관계 공공사업비용구조개혁프로그램」을 책정하여 「비용구조개혁」에 전념하고 있다.

## ① 수산관계공공사업의 신비용감축계획의 개요

## i. 기간

- 2000년도부터 2008년까지

## ii. 비용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

- 기존의 공사비용 감축과 함께 공사의 시간적비용, 라이프사이클비용, 공사에서의 사회적 비용 및 공사의 효율성향상에 의한 장기적인 비용저감과 관련된 시책실시로 수산관계공공공사와 관련되는 종합적인 비용감축을 목표로 한다.

## a. 공사비용 저감

## b. 공사의 시간적비용 저감

## c. 라이프 사이클 비용 저감

## d. 공사에서 사회적비용의 저감

## e. 공사의 효율성향상으로 인한 장기적비용의 저감

## iii. 지방공공단체로의 협력요청

- 수산관계공공사업은 홋카이도 개발국이 실시하는 어항어촌정비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으로 공사의 비용을 감축하며, 수산관계공공사업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수산청은 원래부터 지방공공단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감축계획을 참고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비용감축시

책에 몰두하도록 요청해 나간다.

iv. 플로어 업

- 감축계획의 실시상황은 적절하게 플로어업 한다.

② 비용구조개혁프로그램의 개요

i. 목표수치

- a. 목표기간: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5년간
- b. 삭감율의 목표치 : 2007년도말까지의 종합적인 비용을 2002년도와 비교하여 15%삭감할 것을 목표로 한다.

ii. 구체적인 시책

a. 효율성 향상

- 가. 사업의 중점화·집중화(채택요건의 엄격화 등)
  - 나. 효과의 조기발현(협의·절차의 개선)
  - 다. 자원순환촉진(수산계 부산물 등의 재생이용)
- b. 설계 등의 최적화
- 가. 계획·설계 등 검토(어항과 어장의 일체화된 정비추진 등)
  - 나. 신기술 활용(라이프 사이클 비용을 감축하는 기술개발추진 등)
  - 다. 관리의 효율화와 관리정밀도 향상(IT를 활용한 시설관리 등의 추진 등)

c. 조달의 최적화

- 가. 입찰·계약방식의 검토(민간자금·능력을 활용한 정비방법도입 등)
- 나. 적산검토(시장단가방식의 확대 등)

d. 지역특성중시

- 가. 지역실정을 고려한 어항·어장·어촌 가꾸기의 추진(주민 참가형 지역 만들기 등)

e. 투명성 향상

- 가. 사업프로세스의 철저한 공개(사업계획의 사전공표 등)

iii. 플로어 업

프로그램 실시상황은 비용구조개혁의 착실한 추진을 도모하는 시점에서 적절히 플로어 업 한다.

③ 2004년도 종합비용 감축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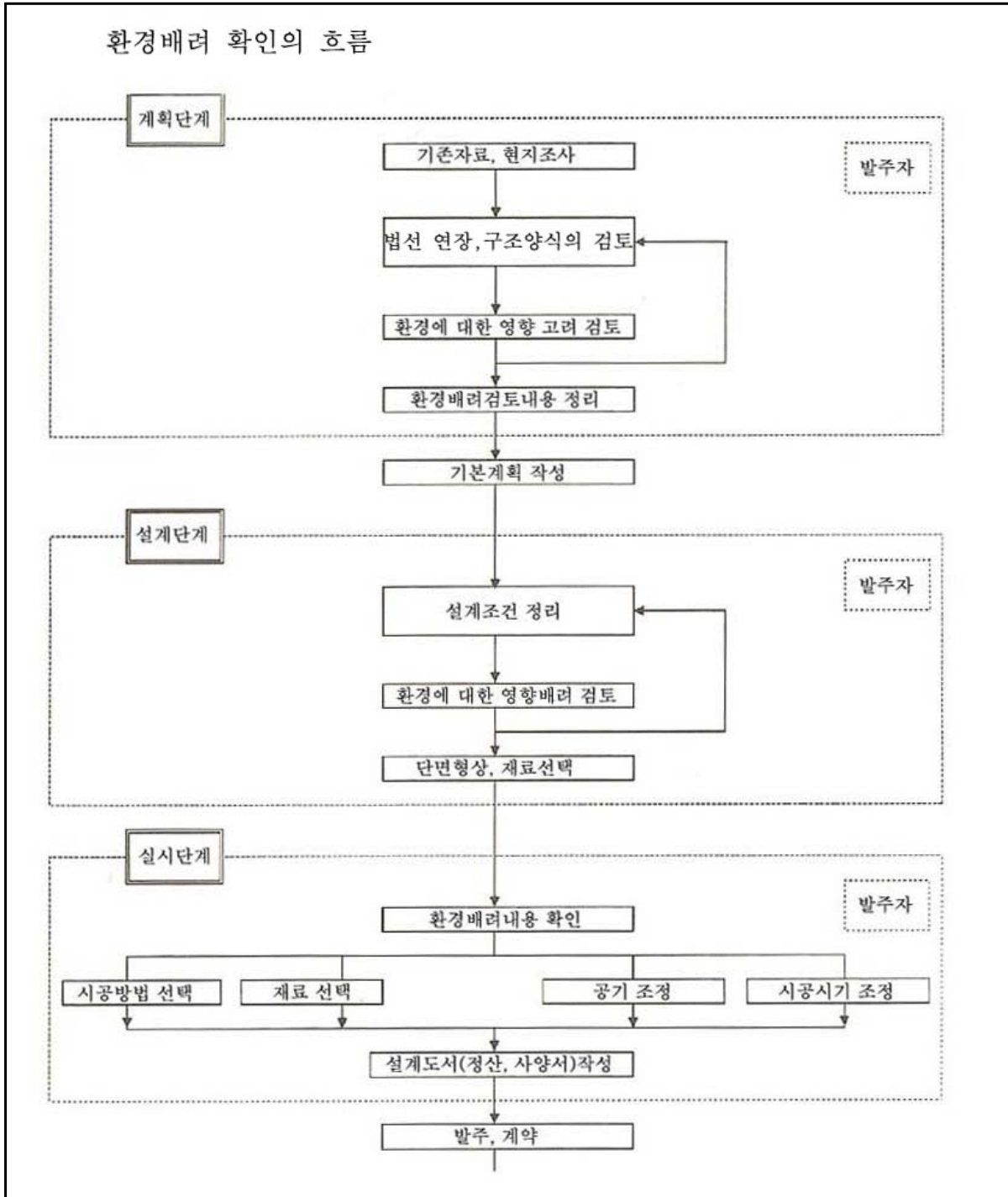
수산관계공공사업(보조)의 2004년도 실적(기준년 : 2002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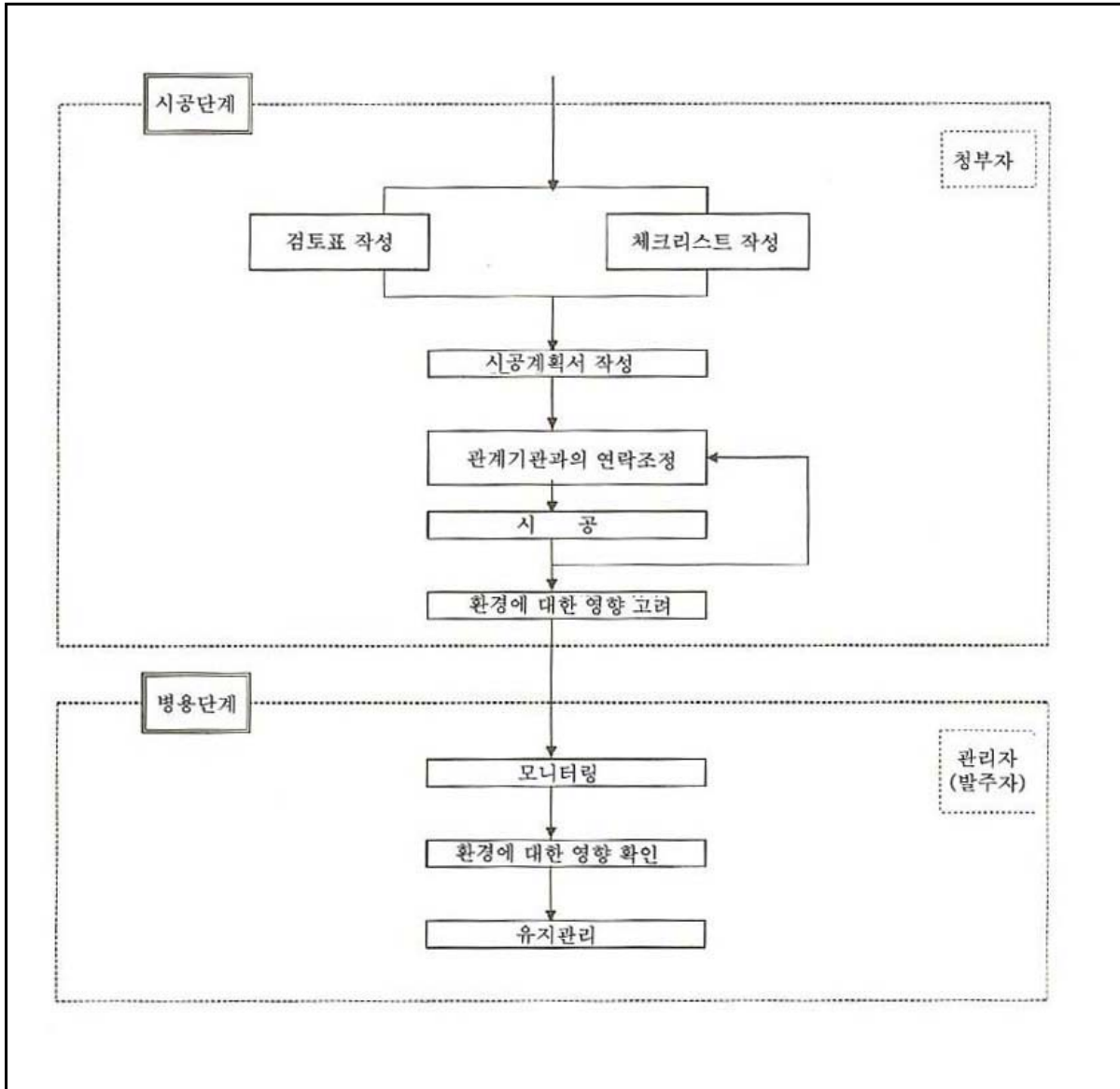
종합비용감축율 5.1% 감축액 86억엔
-----------------------

## (7) 환경을 고려한 사업실시

- 어항주변에는 풍요로운 자연환경과 양호한 생물의 생육환경이 형성되는 일이 많으며, 이러한 연안지역에 어항과 어장을 정비함에 있어서는 자연환경에 대한 고려를 철저히 해야 한다. 시책의 구상책정과 설계단계에서는 물론 공사실시에서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계에서 환경보전·창조에 대한 식견을 갖는 사람을 배치하는 일이 중요하다.
- 따라서 어항어장정비에 있어서 「물고기와 수생생물에 유익한 공사」를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상황에서 중요한 수산토목기술개발 및 기술자육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이들 기술자에 의한 정확한 공사실시 등에 중점적으로 전념하는 것이 중요하여 2003년 2월 12일부로 수산청장관으로부터 「어항어장정비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환경과의 조화에 대한 고려의 철저화에 관하여」를 관계사업주체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어항어장공사 등 시공환경감시자 배치요강」을 정하고 있다.
- 이 배치요강에는 시공환경관리자의 업무로 「주변해역 자연환경에 대한 검토」 「주변해역의 수생생물의 생식환경에 대한 검토」 「관계기관과의 연락조정」을 들고 있어 시공환경관리자는 자질과 자격이 필요하며, 기술사와 기술사보조 중 수산부문의 자격을 갖는 자, 수산공학기사, 기타 이들과 동등이상의 능력·경험을 갖는 자로 정하고 있다.
- 시공 환경매뉴얼  
 이와 같은 점에서 시공환경관리자의 보급 확대 및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적절한 사업집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공환경관리자가 대처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나타내는 「시공환경매뉴얼」을 작성하여 환경을 고려한 사업을 실시한다.







2. 관계법령

명칭		관련내용
어업법	1949.12.1 5 법267	어업권, 지정어업, 어업조정 등의 어업 생산 관련 기본 제도에 관한 규정
연안어장 정비개발법	1974.5.17 법49	수산동물인 치어의 생산·방류·육성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규정
수산자원보호법	1951.12.1 7 법313	수산자원의 보호배양을 도모하며 그 효과를 미래에 걸쳐 추진하기 위하여 보호수면의 지정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규정
해안수산자원 개발촉진	1971.5.17 법60	연안지역에서의 수산동식물의 증식 및 양식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 등에 관한 규정
어선법	1950.5.13 법178	어선의 등록, 조사제도 등에 관한 규정
어선손해 등의 보상법	1952.3.31 법28	레저보트에 의한 어선의 충돌피해 등의 증가에 따라 어선보호단체에 의한 새로운 보험사업실시 등에 관한 규정
훗카이도 개발법	1950.5.1 법126	훗카이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르는 사업의 실시 등에 관한 규정
낙도진흥법	1953.7.22 법72	낙도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보조율을 인상하는 조치에 관한 규정
아마미군도 진흥개발특 별조치법	1954.6.21 법189	아아미군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보조율을 인상하는 조치에 관한 규정
노가사원(小笠) 제도진흥개발특 별 조치법	1969.12.8 법79	오가사원제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보조율을 인상하는 조치에 관한 규정
오키나와진 흥특별조치법	2002.3.31 법14	오키나와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보조율을 인상하는 조치에 관한 규정
과소지역 자립촉진특별조 치법	2000.3.31 법15	과소지역에서 어항정비를 위한 지방채 및 기간적인 어항관련도로정비를 위한 조치에 관한 규정
산촌진흥법	1965.5.11 법64	진흥산촌에서의 기간적인 어항관련도로정비를 위한 조치에 관한 규정
낙도진흥법	1985.6.14 법63	반도지역에서의 농림수산업진흥계획에 관한 규정
후진지역개발과 관련한 공공사업에 관한 국가의 부담비율 특례에 관한 법률	1961.6.2 법112	후진지역에서의 적용단체(도도부현)가 실시하는 어항·연안 및 어항관련도로정비와 관련된 보조특례조치에 관한 규정

명칭		관련내용
공유수면매립법	1921.4.9 법57	해면 등을 매립하는 경우의 근거법으로 어항구역에서의 농림수산대신의 인가 등에 관한 규정
보조금 등과 관계된 예산집행의 적정화와 관련된 법률	1955.8.27 법179	보조사업과 관련한 보조금 등의 교부신청, 교부조건, 결정통지, 금액확정, 반환 등에 관한 규정
국유재산법	1948.6.30 법73	물품, 해변 등의 지불 등의 국유재산관리 및 처분등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규정
재해대책기본법	1961.11.1 5 법223	종합적인 방재행정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방재계획제작, 재해복구 및 방재와 관련된 재정조치 등에 관한 규정
공공토목시설 재해복구사업 비국고부담법	1951.3.31 법97	재해의 신속한 복구를 도모하기 위해 공공토목시설의 재해복구사업비에 관한 국가의 부담을 규정
농림수산업시설 재해복구사업 비국고보조의 잠정조치와 관련된 법률	1950.5.10 법169	농지,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 어업용 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국가의 보조에 관한 규정
극심한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재정원조 등에 관한 법률	1962.9.6 법150	극심한 재해와 관련된 공공토목시설재해복구사업을 실시하는 특정지방공공단체의 부담금 경감 등의 조치에 관한 규정
급경사지의 붕괴로 인한 재해방지에 관한 법률	1969.7.1 법57	급경사지 붕괴위험구역에서의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의 현지사의 허가의 특례에 관한 규정
대규모지진대책 특별조치법	1978.6.15 법73	지진방재강화계획에 따라 긴급히 정비해야할 시설정비와 관련된 보조 등의 조치에 관한 규정
항측법	1948.7.15 법174	특정어항에서의 공사에 대한 항장의 허가 및 그 준용 등에 관한 규정
항만법	1950.5.31 법218	항만정비와 관련된 기본법으로 어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법 제3조) 등에 관한 규정

명칭		관련내용
공해방지사업과 관련된 국가의 재정상의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	1971.5.26 법70	공해방지대책사업에 관한 경비에 대한 국가의 부담 혹은 보조비율 등에 관한 규정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방지에 관한 법률	1970.12.25 법136	선박, 해양시설 등에서 유해물질 등이 해양에 유입되는 등을 규제하고, 해양의 오염, 해상재해를 방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종합보양지역정비법(리조트 정비법)	1987.6.9 법71	양호한 자연조건을 갖는 토지를 포함한 상당한 규모의 지역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국민이 여가 등을 이용하여 체재하며 행하는 스포츠 등의 다양한 활동에 기여하기 위해 종합적인 기능정비를 민간사업자의 능력 활용에 중점을 두고 촉진하는 조치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의 주식의 매도수입 활용에 의한 사회자본정비촉진과 관련한 특별조치법(사회자본정비특별조치법)	1987.9.4 법86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의 주식의 매도수입에 의한 국채정비기금의 자금 일부를 운용하여 사회자본정비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의 무이자융자와 관련된 특별조치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의 주식 매도수입의 활용에 의한 사회자본정비촉진과 관련한 특별조치법실시를 위한 관계법률정비에 관한 법률	1987.9.4 법87	위의 법률에서 정한 조치를 실시하기 위한 관계법률(어항법, 해안법 등) 등의 정비를 시행하기 위한 규정
환경기본법	1993.11.19 법91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을 추진·실시할 것 등을 규정
농어촌 체재형 여가활동을 위한 기반정비촉진과 관련된 법률	1994.6.29 법46	도시주민과 농어촌의 교류를 촉진하고 여유 있는 국민 생활 확보와 농어촌지역의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촌체재형 여가활동에 이바지하기 위한 기능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 등 및 농림어업체험민박업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규정

명칭		관련내용
지진방재대책특별조치법	1995.6.16 법111	지진에 의한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진방재긴급5개년계획 작성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과 관련한 국가의 특별조치에 관한 조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1996.7.20 법74	국제연합 해양법조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200해리, 상대국과의 사이에서는 중간선 혹은 합의선)을 설정함과 동시에 대륙붕(원칙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에 관해 규정한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행사 등에 관한 법률	1996.7.20 법76	국제연합 해양법조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기로 하며, 외국인은 농림수산대신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어업 등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 등이다.
해양생물자원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96.7.20 법77	국제연합 해양법조약 상의 연안국이 행해야 할 조치의 일환으로서 일본주변해역을 대상으로 어종별 어획 가능량(TAC)을 정함과 동시에 이에 따르는 TAC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강구한다.
환경영향평가법	1997.6.13 법81	대규모적인 개발사업 실시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이들의 결과에 따라 사업의 인허가 등을 시행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적정한 고려가 이루어질 것을 확보한다.
지방분권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1999.7.16 법87	지방분권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항법에 대해서는 지방공공단체의 사무를 자치사무에 재구성,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인가, 허가 등의 국가의 관여감축과 관련된 개정.
중앙성청 등 개혁을 위한 국가의 행정조직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1999.7.16 법102	중앙성청 등 개혁에 대한 심의회의 정리합리화로 어항심의회의 폐지에 따라 어항법은 동 심의회의 조직관계 규정을 삭제한다.
민간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PEI법)	1999.7.30 법117	민간자금, 경영능력 및 기술적인 능력을 활용한 공공시설건설, 유지관리 및 운영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
중앙 성청 등 개혁관계법시행법	1999.12.2 2 법160	어항법에 대하여는 폐지되는 어항심의회의 기능의 연안어업 등 진흥심의회의 이관에 관한 개정

명칭		관련내용
원자력발전시설 등 입지지역의 진흥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0.12.8 법148	원자력발전시설 등의 입지지역 지원조치의 하나로 주민생활의 안전성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긴급히 정비할 것이 필요한 사업에 관해서 보조율 인상의 특례조치를 강구한다.
수산기본법	2001.6.29 법89	수산에 관한 시책에 관하여 기본이념 및 그 실현을 도모하는데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거나, 혹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채무 등을 명확히 함으로 수산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로 한다. 어항법에 관해서는 연안어업 등 진흥심의회를 수산정책심의회로 고친다.
동남해·서해지진과 관련된 지진방재대책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2.7.26 법92	엔슈나다 서부에서 쿠마노나다 및 이세반도의 남측해역을 거쳐 토사만까지의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서의 대규모적인 지진(동 남해·서해지진)과 관계된 지진방재대책추진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리아케해 및 하키다이카이해를 재생시키기 위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	2002.11.29 법120	아리아케해 및 하키다이카이해역의 환경보전 및 개선, 수산자원의 회복 등에 의한 어업진흥에 관련하여 실시해야 할 시책에 관한 계획을 책정하고, 풍요로운 바다로 재생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강구한다.
자연재생추진법	2002.12.11 법148	자연재생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생물의 다양성확보를 통해 자연과 공생하는 사회실현을 도모하여 지역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조개혁 특별 구역법	2002.12.18 법189	구조개혁특별구역을 설정하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 규제의 특례조치를 적용하여 지방공공단체가 특정사업을 실시하는 등 경제사회의 구조개혁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따라서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어항어장정비법에서 특례조치(2004.5.28 법60)는 민간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어항관리자가 선정한 사업자가 수산물과 관계된 위생관리방법개선 등 어항시설기능고도화를 도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행정재산인 어항시설 대여를 가능하게 한다.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	2003.3.31 법20	항만, 해안, 하천 등의 사회자본정비사업을 중점적이고 효과적 혹은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자본정비 중점계획책정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명칭		관련내용
특정도시하천침수피해대책법	2003.6.11 법77	특정도시하천 및 특정도시하천유역에 관하여 침수피해 대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역수해대책계획책정 등의 조치를 규정함으로 침수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일본해구, 센시마해구 주변해구형지진과 관련한 지진방재대책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4.4.2 법110	&&반도 동쪽근해에서 산리쿠 해안 동쪽근해를 거쳐 사쿠타쿠시마 동쪽근해까지의 일본해구 및 센시마해구 주변지역의 대규모 지진(일본해구, 센시마해구주변해구형지진)과 관련해 지진방재대책을 추진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관법	2004.6.18 법110	도시, 농어촌 등에서의 양호한 경관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관계획책정 기타 종합적인 시책강구로 아름답고 품격 있는 국토형성, 운택하고 풍요로운 생활환경조성 및 개성적이고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실현을 도모하여 국민생활향상과 국민경제 및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어항어장정비법 특례는 경관계획으로 정해진 경관중요공공시설로서의 어항을 법 제39조의 허가로 경관계획에서 정한 허가기준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는 등 양호한 경관형성 상 필요한 조건을 더할 수 있다.



### 3. 수산관계 데이터

#### (1) 국가별 200해리경제수역면적

세계 각국의 200해리수역면적			육지면적	육해합계 면적	200해리수역면적과 육지면적과의 비율
순위	국가 명	면적			
		만 km <sup>2</sup>	만 km <sup>2</sup>	만 km <sup>2</sup>	
1	미국	762	936	1,698	0.8
2	오스트레일리아	701	769	1,470	0.9
3	인도네시아	541	190	731	2.9
4	뉴질랜드	483	27	510	17.9
5	캐나다	470	998	1,468	0.5
6	일본	451	38	489	11.9
7	(구)소련	449	2,200	2,689	0.2
8	브라질	317	851	1,168	0.4
9	멕시코	285	197	482	1.5
10	칠레	229	76	305	3.0

자료: 해양산업연구회작성자료

주) 일본 영해법에 따른 영해면적은 31만 km<sup>2</sup>

#### ■ 참고

국제연합 해양법조약 체결국의 추이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5년
41	44	50	52	59	69	82	109	122	129	131	134	137	141	145	148

국제연합사무국자료에 따른다.

주) 1. 각 연도 12월 31일 현재의 수치이다.(2005년은 1월 31일 현재)

2. 1994년 11월 16일 조약발효

3. 일본은 1996년 6월 20일 비준, 94번째 체결국이다.

## (2) 주요 국가별 어업 · 양식업생산량

(단위 : 천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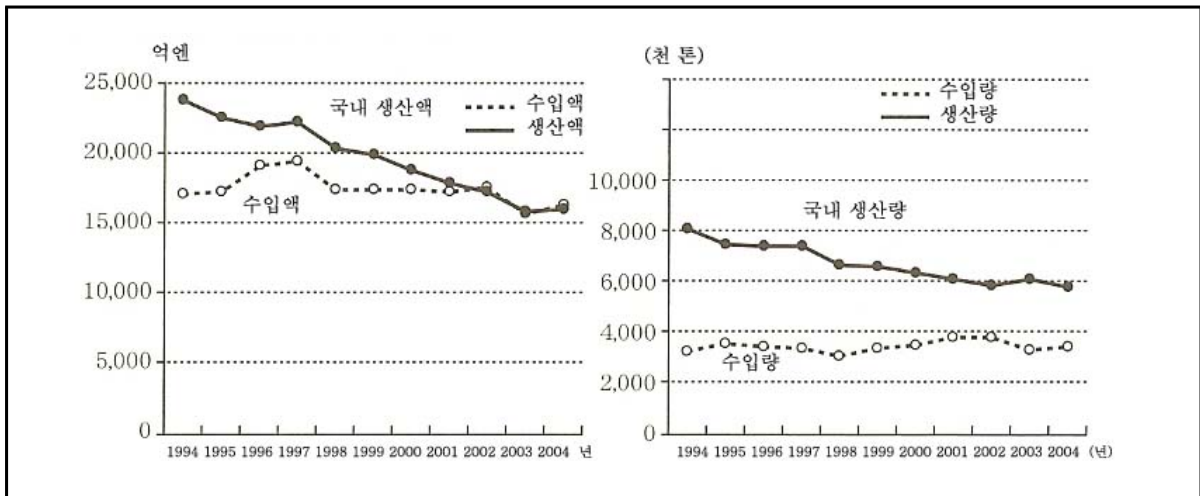
국가 명	1994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증감율(% ) 04/03
세계 합계	121,026	137,857	142,507	142,869	146,508	146,987	155,848	6.0
어업	93,251	94,857	96,849	94,314	94,536	91,804	96,439	5.0
양식업	27,775	43,000	45,658	48,555	51,972	55,183	59,408	7.7
중국	28,116	47,500	49,636	51,006	53,427	55,740	58,601	5.1
어업	11,018	17,456	17,192	16,796	16,850	17,052	17,271	1.3
양식업	17,098	30,044	32,444	34,210	36,576	38,688	41,330	6.8
페루	12,005	8,437	10,665	7,996	8,783	6,108	9,643	57.9
어업	11,999	8,429	10,659	7,989	8,771	6,094	9,621	57.9
양식업	6	9	7	8	12	14	22	57.1
인도네시아	4,143	4,893	5,119	5,353	5,516	5,920	6,350	7.3
어업	3,440	4,010	4,126	4,277	4,378	4,692	4,882	4.0
양식업	704	883	994	1,077	1,137	1,229	1,469	19.5
인도	4,867	5,687	5,669	5,937	5,924	6,025	6,088	1.0
어업	3,348	3,552	3,726	3,817	3,737	3,712	3,616	△2.6
양식업	1,520	2,135	1,942	2,120	2,187	2,313	2,472	6.9
칠레	8,021	5,587	4,973	4,663	5,134	4,525	6,021	33.1
어업	7,838	5,282	4,548	4,032	4,516	3,922	5,326	35.8
양식업	184	305	425	632	617	603	695	15.3
일본	6,384	6,626	6,384	6,126	5,880	6,083	5,776	△5.0
어업	5,092	5,311	5,092	4,815	4,495	4,782	4,515	△5.6
양식업	1,291	1,315	1,292	1,311	1,385	1,301	1,261	△3.1
미국	6,043	5,308	5,216	5,461	5,482	5,533	5,602	1.2
어업	5,652	4,829	4,760	4,982	4,984	4,988	4,995	0.1
양식업	391	479	456	479	497	544	607	11.6
태국	3,525	3,646	3,736	3,648	3,797	3,914	4,018	2.7
어업	3,015	2,952	2,997	2,834	2,843	2,850	2,845	△0.2
양식업	510	694	738	814	955	1,064	1,173	10.2
필리핀	2,715	2,922	2,998	3,170	3,370	3,615	3,929	8.7
어업	1,864	1,873	1,897	1,950	2,031	2,167	2,212	2.4
양식업	869	1,049	1,101	1,220	1,338	1,449	1,717	18.5
노르웨이	2,770	3,282	3,383	3,373	3,473	3,285	3,309	0.7
어업	2,551	2,806	2,892	2,862	2,923	2,702	2,671	△1.1
양식업	218	476	491	511	550	583	638	9.4

자료: FAO 「Fishat(at(Capture production 1950-2004),(Aquaculture production 1950-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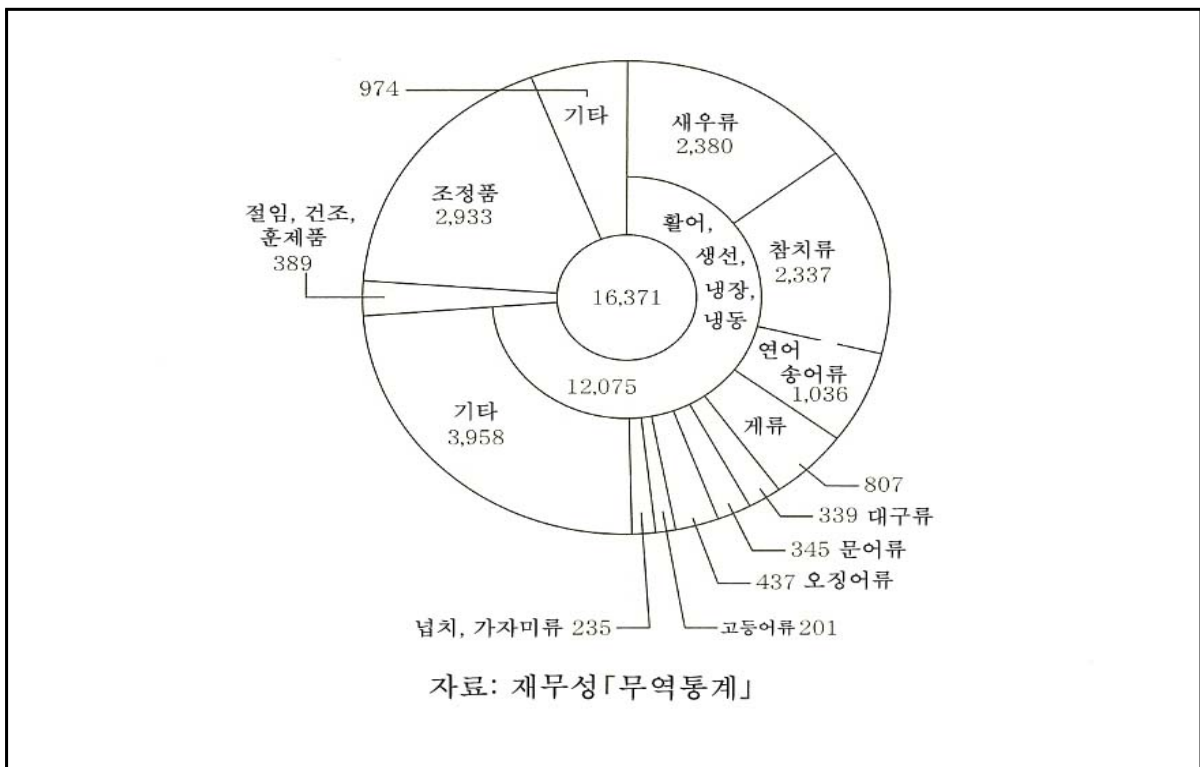
및 농림수산성 「어업 · 양식업생산통계연보」에서 작성

주: 생산량은 어패류와 해조류의 합계이다.

(3) 수산물 무역 추이



(4) 수산물 수입 실적 추이(2004년)



## (5) 어항 · 항만 등록 해수어선 추이

연도별	해수어선 총 수		동력어선		무동력어선	
	척수	총톤수	척수	총톤수	척수	총톤수
1979년말	423,820	2,775,048,46	395,418	2,749,797,71	28,402	25,250,75
1980년말	428,854	2,815,193,99	401,350	2,791,041,07	27,504	24,152,92
1981년말	424,207	2,787,954,89	398,440	2,764,768,88	25,767	23,186,01
1982년말	424,582	2,796,868,73	400,439	2,774,872,93	24,143	21,995,80
1983년말	422,996	2,855,201,51	401,120	2,834,743,45	21,876	20,458,06
1984년말	420,829	2,855,807,36	401,546	2,837,265,72	19,283	18,541,64
1985년말	417,540	2,762,046,88	400,071	2,744,478,72	17,469	17,568,16
1986년말	415,193	2,731,076,38	397,417	2,713,879,69	17,776	17,196,69
1987년말	410,671	2,703,323,44	393,737	2,687,062,98	16,934	16,260,46
1988년말	407,951	2,592,638,23	391,878	2,577,138,26	16,073	15,499,97
1989년말	404,888	2,470,668,48	389,674	2,456,135,85	15,214	14,532,63
1990년말	398,634	2,371,055,21	384,330	2,356,950,17	14,304	14,105,04
1991년말	393,632	2,135,506,76	380,026	2,122,222,92	13,606	13,283,84
1992년말	386,433	1,979,002,00	375,326	1,967,203,41	11,107	11,798,59
1993년말	379,803	1,821,575,31	368,756	1,810,428,33	11,047	11,146,98
1994년말	375,769	1,739,068,26	365,184	1,727,902,43	10,585	11,165,83
1995년말	371,416	1,671,338,70	361,950	1,661,048,04	9,466	10,290,66
1996년말	364,054	1,619,947,77	354,689	1,609,926,50	9,365	10,021,27
1997년말	358,233	1,571,795,49	349,957	1,562,642,52	8,276	9,152,97
1998년말	352,594	1,548,071,35	344,994	1,539,193,65	7,600	8,878,20
1999년말	347,621	1,490,733,77	340,100	1,482,344,33	7,521	8,389,44
2000년말	344,715	1,456,083,87	337,600	1,447,959,93	7,115	8,123,94
2001년말	337,967	1,414,356,34	331,571	1,406,882,33	6,396	7,474,01
2002년말	331,312	1,384,345,38	325,229	1,377,129,55	6,083	7,215,83
2003년말	325,410	1,349,216,14	320,010	1,342,120,30	5,400	7,095,84
2004년말	319,054	1,311,179,52	313,870	1,304,143,15	5,184	7,036,37

자료: 수산청 「어선통계표」

(6) 어업부문별 생산량 · 생산액

① 생산량

(단위 : 천 톤)

연차	총생산량	해면						양식업	내수면어업 양식업
		해면 계	어업						
			소계	원양	근해	연안			
1993년	8,707	8,530	7,256	1,139	4,256	1,861	1,274	177	
1994년	8,103	7,934	6,590	1,063	3,720	1,807	1,344	169	
1995년	7,489	7,322	6,007	917	3,260	1,831	1,315	167	
1996년	7,417	7,250	5,974	817	3,256	1,901	1,276	167	
1997년	7,411	7,258	5,985	863	3,343	1,779	1,273	153	
1998년	6,684	6,542	5,315	809	2,924	1,582	1,227	143	
1999년	6,626	6,492	5,239	834	2,800	1,605	1,253	134	
2000년	6,384	6,252	5,022	855	2,591	1,576	1,231	132	
2001년	6,126	6,009	4,753	749	2,459	1,545	1,256	117	
2002년	5,880	5,767	4,434	686	2,258	1,489	1,333	113	
2003년	6,083	5,973	4,722	602	2,543	1,577	1,251	110	
2004년	5,776	5,670	4,455	535	2,406	1,514	1,215	106	

② 생산액

(단위 : 억 엔)

연차	총생산량	해면						양식업	내수면어업 ·양식업
		해면 계	어업						
			소계	원양	근해	연안			
1993년	24,888	23,232	17,163	4,142	5,657	7,364	6,069	1,649	
1994년	23,685	22,089	15,819	3,471	5,504	6,844	6,270	1,590	
1995년	22,496	20,851	15,112	2,770	5,559	6,783	5,739	1,637	
1996년	21,953	20,281	14,628	2,619	5,300	6,708	5,654	1,665	
1997년	22,226	20,663	14,674	2,633	5,377	6,664	5,989	1,556	
1998년	20,292	18,843	13,379	2,396	4,910	6,074	5,464	1,442	
1999년	19,868	18,568	13,162	2,479	4,792	5,892	5,406	1,292	
2000년	18,753	17,612	12,340	2,120	4,456	5,765	5,272	1,133	
2001년	17,803	16,680	11,651	2,009	4,206	5,435	5,029	1,116	
2002년	17,188	16,144	11,359	1,813	4,130	5,416	4,785	1,039	
2003년	15,908	14,843	10,368	1,666	3,692	5,009	4,476	1,060	
2004년	16,036	14,998	10,655	1,691	3,960	5,004	4,343	1,034	

## (7) 어항 · 항만의 항별 상장 수양량 순위 (어류·수산동물류 계)

(단위=수량 : 톤, 금액: 엔/kg, 전년대비:%)

2005 년 순위	2004 년 순위	항 명	2005년 수양		2004년 수양		전년대비	
			상장수량 량	가격	상장수량 량	가격	상장수량 량	가격
1	(1)	아이지(시즈오카)	228,665	169	225,629	167	101	101
2	(2)	초우시(치바)	214,975	85	200,928	102	107	83
3	(5)	이시마키(미야기)	157,574	109	117,708	151	134	72
4	(4)	하치노에(아오모리)	148,855	160	141,914	199	105	80
5	(3)	쿠시로(홋카이도)	118,938	111	157,375	97	76	114
6	(8)	케센누마(미야기)	116,428	168	86,011	211	135	80
7	(7)	마츠우라(마가사키)	93,524	134	96,244	144	97	93
8	(6)	사카이(돗토리)	92,505	177	109,610	148	84	120
9	(12)	하사키(이바라기)	89,869	29	66,893	23	134	126
10	(10)	마쿠라자키(카고시 마)	83,394	92	68,600	102	122	90
11	(9)	왓카나이(홋카이도)	70,956	70	81,314	49	87	143
12	(13)	네무로(홋카이도)	70,312	148	62,837	200	112	74
13	(14)	나가사키(나가사키)	69,096	230	60,208	267	115	86
14	(15)	오나가와(미야기)	62,455	85	57,411	109	109	78
15	(11)		58,077	85	67,138	74	87	115
16	(18)	오오후나토(이와테)	49,569	90	44,794	105	111	86
17	(16)	라우스(홋카이도)	47,439	254	50,562	235	94	108
18	(17)	미야코(이와테)	47,194	124	49,831	125	95	99
19	(22)	사세보(나가사키)	38,781	215	37,183	241	104	89
20	(19)	모우슈(홋카이도)	35,532	192	41,565	168	85	114
21	(23)	토우지(사가)	35,001	157	37,113	168	94	93
22	(21)	누마츠(시즈오카)	33,008	96	37,330	112	88	86
23	(27)	야마가와(카고시마)	30,696	109	24,902	98	123	111
24	(29)	나야우라(미에)	30,364	74	23,429	82	130	90
25	(20)	후쿠오카(후쿠오카)	29,737	311	38,027	276	78	113
26	(30)	앗케시(홋카이도)	26,337	127	22,965	177	115	72
27	(24)	몬베츠(홋카이도)	25,330	105	35,081	89	72	118
28	(26)	하마타(시마네)	24,275	217	25,047	232	97	94
29	(31)	키타우라(미야자키)	22,628	174	20,496	170	110	102
30	(34)	오메이하마(후쿠시마)	20,362	104	17,636	138	115	75
31	(28)	카츠우라(치바)	18,517	301	23,827	338	78	89
32	(33)	미사키(카나가와)	17,624	551	18,257	550	97	100
33	(37)	카마이시(이와테)	17,397	150	15,943	163	109	92
34	(36)		16,698	287	16,326	319	102	90
35	(61)	츠루미(오오이타)	16,495	103	8,334	174	198	59
36	(35)	우시부카(쿠마모토)	16,254	97	17,566	108	93	90
37	(40)	토초(카고시마)	15,824	634	15,382	713	103	89
38	(53)	에다사와(홋카이도)	14,194	197	11,174	231	127	85
39	(45)	카나자와(이시카와)	13,902	455	12,879	510	108	89
40	(44)	토요하마(아이치)	13,694	110	13,103	113	105	97

(농림수산성이 정리한 「산지수산물유통통계」로 작성)

(8) 도도부현 별 어업 · 양식업 생산량(2004년)

(단위 : 톤)

도도부현	생산량				
	합계	해면		내수면	
		어업	양식업	어업	양식업
전국	5,775,823	4,455,064	1,214,986	60,113	45,660
홋카이도	1,493,455	1,356,864	121,037	15,132	422
아오모리	287,991	177,380	104,816	5,691	104
이와테	221,245	147,814	69,204	3,532	695
미야기	401,065	258,437	141,449	818	361
아키타	11,504	10,744	43	478	239
야마가타	8,518	6,961	-	1,179	378
후쿠시마	106,984	102,620	1,634	884	1,846
이바라기	202,622	196,051	7	6,531	33
토치기	2,953	-	-	1,690	1,263
군마	1,527	-	-	238	1,289
사이타마	818	-	-	724	94
치바	243,826	221,779	21,326	546	175
도쿄	83,880	83,297	2	509	72
카나가와	57,860	55,013	1,903	852	92
니이가타	43,805	38,933	3,279	766	827
토야마	42,662	42,017	58	211	376
이시카와	84,978	82,136	2,800	-	42
후쿠이	16,789	16,116	533	116	24
야마나시	1,292	-	-	102	1,190
나가노	3,171	-	-	672	2,499
기후	2,253	-	-	1,077	1,176
시즈오카	215,538	206,915	3,718	308	4,597
아이치	90,245	59,762	22,462	288	7,733
미에	187,143	150,353	36,038	429	323
시가	3,327	-	-	2,601	726
도쿄	16,371	15,365	698	280	28
오오사카	22,731	22,458	249	24	-
효고	56,759	56,437	x	251	71
나라	200	-	-	170	30
와카야마	40,022	32,791	5,462	349	1,420

(단위 : 톤)

도도부현	생산량				
	합계	해면		내수면	
		어업	양식업	어업	양식업
툰토리	60,535	60,409	x	51	75
시마네	130,198	121,194	679	8,290	35
오카야마	34,263	6,804	26,747	590	122
히로시마	140,513	18,059	121,988	388	78
야마구치	54,543	49,281	5,183	-	79
토쿠시마	36,979	20,211	14,031	558	2,179
카가와	66,350	20,214	46,090	-	46
에히메	169,934	89,731	79,696	408	99
고우치	110,166	93,599	15,573	359	635
후쿠오카	95,451	47,367	47,014	822	248
사가	87,796	15,956	71,727	113	x
나가사키	311,808	287,202	24,592	-	14
쿠마모토	86,487	25,318	59,085	1,387	697
오오이타	62,770	42,790	18,957	511	512
미야자키	115,791	101,501	9,559	190	4,541
카고시마	163,169	96,830	58,212	1	8,126
오кина와	35,787	18,355	17,432	-	x

자료: 농림수산성 「어업·양식업생산통계연보」

주) 1. 어업경영체 소재 지역에 계상된 속인통계

2. 포경업은 제외

3. -은 사실이 없는 것

4. x는 통계수치를 공표하지 않는 것



(9) 어업경영체수의 추이

(단위 : 경영체)

	1994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증감율(%) 2004/2003
계	167,367	145,945	141,509	136,465	132,417	129,877	-1.9
연안어업 경영체	158,948	138,708	134,491	129,241	125,434	122,883	-2.0
어선 미사용	5,051	4,710	4,574	4,375	3,883	4,077	5.0
무동력선	286	113	92	94	198	89	-55.1
동력선	122,202	108,450	105,334	101,710	99,692	96,927	-2.8
정치·지인망	7,056	6,146	6,061	5,840	5,577	5,847	4.8
해면양식	32,772	26,526	25,448	24,446	23,067	22,937	-0.6
중소어업 경영체	8,257	7,114	6,894	7,096	6,872	6,878	0.1
대규모어업경영체	162	123	124	128	111	116	4.5

자료 : 농림수산성 「어업동태통계연보」(2001년까지), 「어업 · 양식업생산통계연보」(2002년 2004년) 및 「어업센서스」(2003년)

주 : 1) 연안어업경영체라는 것은 어선미사용, 무동력선, 사용동력선 합계가 총 톤수 10톤 미만, 정치망, 지인망 및 해면양식을 하는 경영체를 말하며, 중소어업경영체라는 것은 사용동력선 합계가 총 톤수 10톤 이상 1,000톤 미만의 경영체를 말한다. 대규모어업경영체라는 것은 사용동력선 합계가 총 톤수 1,000톤 이상의 경영체를 말한다.

주 : 2) 어업센서스의 전수조사, 어업동태통계연보, 어업·양식업생산통계연보는 추계치이므로 수치는 연속되지 않는다.

(10) 어업협동조합수

구분	1980년말	1985년말	2000년말	2001년말	2002년말	2003년말	2004년말	2005년말
계	3,398	3,355	2,828	2,767	2,656	2,539	2,498	2,360
지구어업 연안	2,174	2,159	1,768	1,716	1,607	1,510	1,476	1,349
협동조합 내수면	918	915	891	877	877	869	869	865
어종별 어업 협동조합	306	281	169	174	172	160	153	146

자료 : 수산청 「수산업협동조합연차연보」

주) 조합수는 지사인가 조합수로 비출자 조합을 포함한다.

## (11) 어업취업자수 추이

(단위 : 천 명)

구분	1985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계	431.9	277.0	270.0	260.2	252.3	243.3	238.4	231.0
연안어업	336.6	237.5	229.4	221.0	214.5	208.0	209.5	201.9
근해·원양어업	95.3	39.5	40.6	39.6	37.8	35.3	28.9	29.1

자료 : 농림수산성 「어업센서스」, 「어업동태통계연보」(2001년까지) 및 「어업취업동향통계연보」(2002년)

## (12) 유어(遊漁)자수 등의 추이

구분	1983년 (7차 센서스)	1998년 (8차 센서스)	1993년 (9차 센서스)	1998년 (10차 센서스)	2003년 (11차 센서스)
	만명	만명	만명	만명	만명
1. 연간총어업유어자수	3,093	3,536	3,729	3,868	1,196
2. 유어안내업자수	33,857	28,049	24,404	22,325	16,877
어협	157	125	148	203	134
어업자	29,551	24,499	20,987	19,379	14,713
선숙(船宿)	2,175	2,312	2,121	1,834	1,453
기타	1,974	1,113	1,148	909	577
3. 유어안내사용선박	36,429	31,358	26,535	23,825	18,367

## (13) 어업경영상황의 추이

(단위 : 천 엔)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해면어업을 경영하는 개인 경영체	해면 어업어가	어선어가	1,950.5 (5,492.5)	2,297.2 (5,639.3)	2,341.7 (5,708.2)	2,251 (5,594)	2,206 (5,364)
		소형 정치망어가	2,241.0 (6,211.0)	1,753.8 (5,599.4)	1,959.1 (5,370.9)	1,327 (4,792)	2,134 (5,209)
	해면 양식어가	김	8,013.1 (13,472.9)	8,887.8 (12,749.1)	7,653.8 (10,972.6)	6,918 (11,085)	7,625 (11,095)
		굴	9,751.3 (11,924.1)	8,321.1 (10,883.4)	7,744.5 (10,909.1)	7,690 (10,753)	5,657 (10,846)
		양식어가					
	중소어업 경영체		△2,965	△6,075	△13,982	△16,929	△16,871

상단은 어업소득, 하단( )은 어가소득

자료 : 농림수산성 「어업경제조사보고」, 「어업경제조사(기업체 부문)」 및 「어업경영조사보고」

주 1) 어선어가라는 것은 해면어업을 경영하는 개인경영체중 사용하는 동력어선의 합계 톤수가 10톤 미만인 것.

2001년 이후 주로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어선어업을 경영하는 경영체중 사용하는 동력어선의 합계 톤수가 20톤 미만인 것.

2) 중소 어업경영체라는 것은 해면어업경영체중 동력어선의 합계 톤수가 10톤 이상인 어선어업 및 대형·정치망어업을 경영하는 자본금 일억엔 미만의 경영체

2001년 이후 회사경영체로 어선어업을 경영하거나 사용하는 동력어선의 합계 톤수가 10톤 이상인 것.

(14) 수산물수급표(어패류)

(단위 : 천 톤)

구분	1994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개수)	증감율(%)		
							2003 /2002	2004 /2003	
공급	총 공급량	12,960	11,619	12,219	11,942	11,241	11,190	△5.9	△0.5
	국내생산	7,325	5,736	5,492	5,194	5,494	5,135	5.8	△6.5
	식용	5,232	4,515	4,688	4,545	4,708	4,424	3.6	△6.0
	비식용	2,093	1,221	804	649	786	711	21.1	△9.5
	수입	5,635	5,883	6,727	6,748	5,747	6,055	△14.8	5.4
	식용	3,776	4,249	4,409	4,419	3,868	4,103	△12.5	6.1
	비식용	1,859	1,634	2,318	2,329	1,879	1,952	△19.3	3.9
수요	총 수요량	12,648	11,076	11,744	11,587	11,433	11,108	△1.3	△2.8
	국내생산	12,323	10,812	11,387	11,147	10,900	10,481	△2.2	△3.8
	식용	8,874	8,529	8,806	8,592	8,202	8,005	△4.5	△2.4
	비식용	3,449	2,283	2,581	2,555	2,698	2,476	5.6	△8.2
	수출	325	264	357	440	533	627	21.1	17.6
	식용	286	253	346	353	428	536	21.2	25.2
	비식용	39	11	11	87	105	91	20.7	△13.1
재고 증감	312	543	475	355	△192	82			

자료: 농림수산성 「식료수급표」로 작성

주: 1) 수치는 원어(原魚)환산한 것으로 고래류 및 해조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식용은 어패류에서 비식용(사료,비료)을 제외한 것이다.

## (15) 국민 1인당 공급단백질량

(단위 : 그램)

구분		1985년	1994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합계		82.1	88.0	86.8	87.8	86.1	84.5	83.7
동물성	계	41.2	48.1	47.8	49.0	47.7	46.4	45.7
	어패류	18.6	20.5	19.4	21.3	19.6	18.5	18.0
	육류	11.3	13.9	14.4	14.0	14.3	14.1	13.9
	계란	4.9	5.8	5.7	5.7	5.7	5.6	5.6
	우유·유제품	6.2	7.9	8.3	8.2	8.1	8.1	8.2
식물성	계	40.9	39.9	39.0	38.8	38.4	38.2	38.0
	감각류	22.4	21.4	20.9	20.6	20.4	20.5	20.4
	콩류	7.4	7.5	7.5	7.7	7.7	7.8	7.8
	기타	11.1	11.0	10.6	10.5	10.3	9.9	9.8

자료: 농림수산성 「식료수급표」로 작성

주 : 1) 육류에는 고래고기도 포함

2) 어패류에 해조는 포함되지 않는다.

## (16) 1인당 연간 식료지출액

(단위 : 엔)

구분	1985년	1994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세대인수(명)	3.71	3.47	3.24	3.22	3.19	3.21	3.19
소비지출총액(엔)	883,389	1,154,492	1,174,568	1,150,403	1,151,583	1,131,300	1,144,337
식료지출총액(엔)	258,094	304,630	300,131	292,954	294,683	287,631	288,392
동상전년대비	1.3%	0.5%	1.5%	2.4%	0.6%	2.4%	0.3%
어패류지출액(엔)	35,067	36,945	33,996	32,951	32,646	30,678	29,721
동상전년대비	1.8%	6.1%	2.5%	3.1%	0.9%	6.0%	3.2%
어패류지출비율	13.6%	12.1%	11.3%	11.2%	11.1%	10.7%	10.4%
육류지출액(엔)	26,084	25,605	24,931	23,252	23,439	23,211	23,365
동상전년대비	0.2%	4.4%	2.3%	6.7%	0.8%	1.0%	0.7%

자료: 총무성 「가계조사연보」

(17) 일본경제에서 수산업의 지위

	1994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b>I 생산</b>						
국내총생산(명목)(A)(10억엔)	490,005	511,462	505,847	497,897	497,485	496,051
이중 농림수산업(B)(10억엔)	10,233	7,110	6,781	6,691	6,485	8,469
(B/A) (%)	2.1	1.4	1.3	1.3	1.3	1.7
농업생산액(억엔)	113,103	91,295	88,813	88,565	88,565	87,863
임업생산액(억엔)	8,248	5,311	4,884	4,502	4,502	4,374
어업생산액(억엔)	23,685	18,753	17,803	15,908	15,908	16,036
<b>II 생산지수</b>						
광공업(12년=100)		100.0	93.2	95.0	95.0	100.2
농업(12년=100)	111.1	100.0	98.3	92.4	92.4	94.0
수산업(12년=100)	114.2	100.	97.7	96.1	96.1	91.5
<b>III 취업자수(연평균)</b>						
전체산업(A)(만명)	6,453	6,446	6,412	6,316	6,316	6,329
제조업(만명)	1,496	1,321	1,284	1,178	1,178	1,150
농업(만명)	335	290	279	260	260	258
임업(만명)	11	7	7	6	6	6
어업(B)(만명)	31	26	25	24	24	23
(B/A) (%)	0.5	0.4	0.4	0.4	0.4	0.4
<b>IV 무역</b>						
총 수출액(A)(억엔)	404,976	516,542	489,792	521,090	545,484	611,700
농산물(억엔)	1,637	1,685	3,020	2,064	1,959	2,038
임산물(억엔)	93	79	70	80	90	88
수산물(B)(억엔)	1,232	1,384	1,352	1,365	1,354	1,482
(B/A)(%)	0.3	0.3	0.3	0.3	0.2	0.2
총 수입액(A)(억엔)	281,043	409,384	424,155	422,275	443,620	492,166
농산물(억엔)	39,168	39,714	42,992	43,011	43,681	45,739
임산물(억엔)	14,779	12,087	11,891	11,452	11,403	12,446
수산물(B)(억엔)	17,091	17,340	17,237	17,622	15,692	16,370
(B/A)(%)	6.1	4.2	4.1	4.2	3.5	3.3
<b>V 소비(1세대)</b>						
연간소비지출(A)(천엔)	4,006	3,806	3,704	3,674	3,631	3,650
연간식료비(B)(천엔)	1,057	972	943	940	923	920
이중에서 어패류(C)(천엔)	128	110	106	104	98	95
(C/B)(%)	12.1	11.3	11.2	11.1	10.6	10.3
(C/A)(%)	3.2	2.9	2.9	2.8	2.7	2.6

자료: I. 내각부 「국민경제계산연보」(2004년 검토), 농림수산업성 「생산농업소득통계」, 「생산임업소득통계보고서」, 「어업 · 양식업생산통계연보」

II. 경제수산업성 「광공업지수연보」, 농림수산업성 「농림수산업생산지수」

III. 총무성 「노동력조사연보」, 농림수산업성 「어업센서스」, 「어업동태통계연보」

IV. 재무성 「무역통계」로 작성

V. 총무성 「가계조사연보」

2004년 농업생산액 수치는 속보치이다.

(18) 국내주요경제지표

	1994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b>I. 국민경제계산</b>						
국내총생산(명목)(GDP)(10억엔)	490,005	511,462	505,847	497,897	497,485	496,051
1인당 국내총생산(천엔)	3,916	4,033	3,979	3,910	3,899	3,885
국민총소득(명목)(GNI)(10억엔)	493,818	517,884	514,168	506,090	506,009	505,670
1인당 국민총소득(천엔)	3,947	4,084	4,045	3,974	3,966	3,960
국민소득(NI)(10억엔)	371,476	376,382	368,739	363,806	364,294	357,972
1인당 국민소득(천엔)	2,969	2,968	2,901	2,857	2,856	2,804
국민가처분소득(10억엔)	404,314	413,938	406,731	401,021	400,124	394,935
국내총지출(명목)(10억엔)	490,005	511,462	505,847	497,897	497,485	496,051
민간최종소비지출(10억엔)	272,646	285,750	285,966	284,154	282,702	284,922
음식비(10억엔)	51,702	49,541	49,412	48,972	47,892	50,610
국내총고정자본형성(10억엔)	138,676	134,739	130,311	120,465	119,108	113,369
민간기업설비(10억엔)	72,939	79,852	78,638	71,691	74,014	69,828
<b>II. 국제수지</b>						
경상수지(억엔)	133,425	128,755	106,523	141,397	157,668	186,184
무역수지(억엔)	147,322	125,634	85,270	117,333	122,596	139,023
외화준비고(백만 미 달러)	122,845	361,638	401,959	469,728	673,529	844,548
<b>III. 소비수준지수</b>						
노동자세대소비수준지수 (12년=100)	103.1	100.0	99.4	99.2	97.9	99.2
농촌소비수준지수(7년=100)	99.0	-	-	-	-	-
<b>IV. 물가지수</b>						
국내기업물가지수(12년=100)	104.9	100.0	97.7	95.7	94.9	96.1
소비자물가지수(12년=100)	98.6	100.0	99.3	98.4	98.1	98.1
<b>V. 인구</b>						
총 인구(1)(천명)	125,034	126,926	127,291	127,435	127,619	127,687
노동력 인구(2)(천명)	6,645	6,766	6,752	6,689	6,666	6,642
어가 인구(3)(천명)	853	685	662	635	603	583
농가 인구(4)(천명)	12,790	10,467	10,169	9,898	9,647	9,400

자료 : I 내각부 「국민경제계산연보」(2005년판)

II 일본은행 「경제통계연보」 및 「금융경제통계월보」

III 총무성 「가계조사연보」, 농림수산성 「농촌물가통계」

IV 일본은행 「물가지수연보」, 총무성 「소비자물가지수연보」

V (1) 총무성 「인구추계연보」, 2000년 총인구는 총무성 「국세조사보고」

(2) 총무성 「노동력조사연보」

(3) 농림수산성 「어업센서스」 및 「어업동태통계연보」

(4) 농림수산성 「농업센서스」 및 「농업구조동태조사보고서」, 수치는 판매 농가인구

#### 4. 사업실시관계데이터

##### (1) 방파제 설치위치(수심)

현 명	어항 명	시설 명	설치수심	완성연도	비고
나가사키현	미츠시마	남 방파제	-46.0m	-	시공 중
시마네현	하마다	우마지마 방파제	-41.0	-	시공 중
에히메현	모노우라	오키 방파제	-41.0	1986년	
에히메현	모노우라	A 방파제	-33.4	-	시공 중
에히메현	모토누와	서 방파제	-30.4	1985년	
에히메현	야와타하마	나가하야 방파제	-29.0	1981년	
미야기현	오나가와	남 방파제	-28.5	1965년	
이와테현	카마이시	동 제2 방파제	-28.0	1979년	
니이가타현	히메즈	남 방파제	-28.0	1993년	

##### (2) 방파제의 천단고

현 명	어항 명	시설 명	천단고	완성연도	비고
고우치현	아키	동 방파제	+16.0m	1983년	
도쿄도	미우라	(1) 방파제	+15.5	2001년	
고우치현	우로토미사키	A 방파제	+15.0	1967년	
고우치현	우로토미사키	B 방파제	+15.0	1973년	
고우치현	우로토미사키	방파제	+14.3	2005년	
나가사키현	나가사키	방파제	+14.3	-	시공 중
고우치현	하네	동 방파제	+13.0	1980년	
고우치현	나바에	방파제	+13.0	1980년	
고우치현	타카오카	A 방파제	+13.0	1982년	

##### (3) 안벽수심

현 명	어항 명	안벽수심	완성연도	비고
나가사키현	나가사키	-10.0m	1981년	
카나가와현	미사키	-10.0m	1999년	
아오모리현	하치노에	-9.0	1995년	
아오모리현	하치노에	-8.0	1999년	
카고시마현	마쿠라사키	-8.0	1999년	
카고시마현	야마가와	-8.0	1999년	
나가사키현	나가사키	-7.5	1981년	
카고시마현	코니야	-7.5	1972년	
카고시마현	마쿠라사키	-7.5	1978년	
카고시마현	치나, 소우마치	-7.5	1979년 1978년	
미에현	야토다소우	-7.5	1983년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	-7.5	2001년	
치바현	츠히시	-7.5	1998년	

## (4) 조위차가 큰 어항

현 명	어항 명	조위차	비고
사가현	후쿠쇼에	6.07m	
사가현	타라	6.00	
사가현	히로에	5.96	
후쿠오카현	오키노하타	5.20	

## (5) 강관식(鋼管式) 방파제

제원	현 명	어항 명	시설 명	직경	항장(杭長) )	완성연도	비고
항경(杭徑)이 큰 것	야마구치현	오오즈시마	근해 방파제	1500mm	30.0m	2002년	
	나가사키현	이나	서 방파제	1400	38.0	1984년	
	이와테현	오오후나토	동제1방파제	1400	45.0	1986년	
	아오모리현	모우라	제2서 방파제	1400	22.5	1996년	
	이와테현	오오후나토	서 제1방파제	1320	40.3	1983년	
	이와테현	카마이시	동 제1방파제	1300	51.5	1979년	
항장(杭長)이 긴 것	시마네현	사이고우	근해 방파제	1200	67.0	2001년	
	야마구치현	오오즈시마	근해 방파제	900	57.0	1999년	
	히로시마현	오오지조우	근해 방파제	900	55.5	2000년	
	이와테현	카마이시	동 제2방파제	1300	51.5	1979년	
	시마네현	사이고우	시오쿠치 안벽	700	51.0	1983년	
	쿠마모토현	아카세	동 방파제	800	48.0	1993년	

## (6) 케이슨(caisson) 형상

현 명	어항 명	시설 명	형상(가로폭×길이×높이 )	중량	완성연도	비고
도쿄	미우라	B방파제	39.6×30.0×13.5m	9,070.0t	1993년	
시마네	하마다	우마섬 방파제	26.5×25.0×22.0	8,220.2	-	시공중
도쿄	카미나토	(1)방파제	32.9×30.0×14.5	6,310.0	-	시공중
카고시마	소우쵸우	서방파제	33.0×25.0×17.5	6,105.0	1987년	
홋카이도	우도로	섬방파제	25.8(28.8)×20.0×18.5	5,467.2	-	시공중
카고시마	치나	방파제(A)	36.5×20.0×15.0	5,258.0	1999년	
오키나와	야다	근해방파제	26.3×22.0×15.7	4,589.0	1999년	
홋카이도	쿠도오	섬방파제	24.0(29.0)×20.0×16.5	4,392.8	-	시공중
니이가타	이나쿠지라	서방파제	32.0×20.0×11.5	3,987.0	1988년	
토토리	아지로	제4방파제	25.3×20.0×14.0	3,967.8	2004년	
카고시마	소우쵸우	동방파제	27.5×20.0×14.5	3,645.0	1983년	
시마네	이소타케	근해방파제	23.0×20.0×13.5	2,951.6	-	시공중
고우치	오키노시마 (하하지마)	근해방파제	24.1×14.9×17.0	2,919.0	2003년	
고우치	노네	근해방파제	22.2×20.0×12.0	2,722.0	1989년	



(7) 폰툰(pontoon) 형상

현 명	어항 명	길이	폭	깊이	용적	완성연도	비고
시마네	우라고우	50m	9.0m	2.7m	1,800m <sup>3</sup>	1987년	
나가사키현	나라오	40	15.0	3.0	1,800	1989년	
에히메현	무나가타	25	20.0	3.4	1,700	1982년	
에히메현	이와기	25	20.0	3.4	1,700	1978년	
에히메현	사지마	25	20.0	3.4	1,700	1988년	
에히메현	사카리	25	20.0	3.4	1,700	1987년	
에히메현	카미유게	25	20.0	2.8	1,400	2002년	
에히메현	키로	40	10.0	2.6	1,040	2002년	

(8) 부채식계선안(동요제어형) 형상

현 명	어항 명	형식	재질	길이×폭×깊이	용적	완성연도
사가	나고야	육지쪽으로 평행	PC하이브리드	110×15.0×3.0m	4,820.0m <sup>3</sup>	1995년
효고	보우제	돌제식	PC하이브리드	130×10.0×2.8	3,640	2001년
나가사키	나가사키	돌제식	PC하이브리드	50×17.0×2.35	1,997.5	2004년
홋카이도	오오즈	돌제식	PC하이브리드	50×12.0×2.3	1,382	2002년
나가사키	나가사키	돌제식	PC하이브리드	65×10.0×2.05	1,332.0	2001년
카고시마	마쿠라자키	돌제식	PC하이브리드	50×12.0×2.2	1,320.0	1995년
야마구치	후쿠가와	육지쪽으로 평행	PC하이브리드	165×3.0×2.45	1,216.4	2002년
나가사키	히라	돌제식	PC하이브리드	40×15.0×1.9	1,140.0	1992년
나가사키	아라가와	돌제식	PC하이브리드	54×10.0×2.0	1,080	2002년
오кина와	니카도리	돌제식	PC하이브리드	50×10.0×2.3m	1,035	2000년

(9) 부방파제의 형상

현 명	어항 명	재질	수심	길이×폭×깊이	용적	비고
에히메	슈츠키	PC하이브리드	-15.0	75×15.5×4.7m	5,464m <sup>3</sup>	
오오이타	호토지마	PC하이브리드	-60.0	60×17.5×5.2m	5,460	2기
효고	보우제	PC하이브리드	-18.0	70×16.0×4.8	5,376	
에히메	슈츠키	PC하이브리드	-15.0	75×15.0×4.76	5,287	
토야마	쿠로베	철강	-34.0	30×15.0×8.3	3,735	
야마구치	오오즈	철강	-26.0	50×9.0×7.0	3,150	
나가사키	오사키	PC하이브리드	-40.0	66×15.0×3.0	2,970	3기
시즈오카	시즈우라	철강	-40.0	50×8.5×5.8	2,465	

## (10) 터널 연장

현 명	어항 명	연장	완성연도	비고
나가사키현	나가사키	2,046.3m	1986년	임시 항 도로
나가사키현	나가사키	487.0	1975년	임시 항 도로
토쿠시마현	유키	474.0	1996년	임시 항 도로
시마네현	쿠미	455.0	2000년	관련 도로
와카야마현	오오이	438.2	1966년	관련 도로
이와테현	라가	394.0	1975년	관련 도로
와카야마현	토츠이	383.0	1999년	관련 도로
와카야마현	사이카자키	316.0	1983년	관련 도로
이와테현	하코자키	307.0	1999년	임시 항구 도로
나가사키현	나가사키	307.0	1998년	임시 항구 도로

## (11) 관련도로 연장

현 명	어항 명	연장	완성연도	비고
고우치현	스즈	6,801m	1972년	
이와테현	카모노에	6,793	1976년	
미야자키현	미나미우라	6,000	1970년	
고우치현	나카노시마	5,729	1981년	
이와테현	오오우라	5,510	1974년	

## (12) 도로 폭원

현 명	어항 명	연장	완성연도	비고
미야기현	이시마키	50.0m	1977년	
나가사키현	나가사키	40.0	1987년	
훗카이도	노토로	36.0	1980년	
카고시마현	아쿠네	35.0	1976년	

(13) 교량 형상

현 명	어항 명	명칭	연장	폭		완성연도	비고
아오모리현	하치노에	하치노에 대교	1323.7m	20.50m	30.0m	1977년	임시항도로
아이치현	카타하라	카아하라어항대교	695.0	10.50	18.3	2002년	임시항도로
쿠마모토현	우시부카	우시부카 하이어 대교	883.0	13.60	20.4	1997년	임시항도로
시마네현	하마다	마린대교	615.0	9.75	20.0	1999년	임시항도로
카나가와현	미사키	쇼가시마대교	575.0	11.00	21.0	1960년	임시항도로
후쿠시마현	마츠가와우라	마츠가와우라대교	520.3	9.75	16.0	1995년	임시항도로
아오모리현	코도마리	라이온베이브리지	520.0	10.75	6.27	2003년	임시항도로
나가사키현	나가사키	타이로대교	405.0	10.95	34.0	1998년	임시항도로
아키타현	미치가와	이와기아일랜드플립	356.0	9.75	5.3	1998년	임시항도로
홋카이도	사카에우라	사카에대교	286.8	9.90	6.0	1992년	임시항도로
토야마현	시미나토	나고노우라대교	275.0	13.30	6.0	1992년	임시항도로
아이치현	잇시키	잇시키대교	265.5	9.25	10.0	1987년	임시항도로

주) 하치노에 대교 전체 연장길이 중 어항구역 내 연장은 479.1m

(14) 호안의 천단고

현 명	해안 명	호안 천단고	완성연도
카고시마현	마쿠라자키	+13.0m	1978년
후쿠이현	에치젠	13.0	1993년
오오이타현	타카하마	11.0	1983년
도쿄	아코	10.0	1982년
와카야마현	키리메	10.0	1957년
홋카이도	오시라베츠(어항시설)	10.0	1994년
고우치현	우사	10.0	1994년

(15) 제방의 천단고

현 명	해안 명	제방 천단고	완성연도
이와테현	오모토	+14.0m	1983년
미에현	아소우라	13.0	1964년
이와테현	타네이치	12.7	1994년
이와테현	쿠키	12.7	2003년
이와테현	코지라하마	12.5	1990년
홋카이도	아오나에	11.8	1999년

## 5. 어항관계 디플레이터(deflator)

	어항	해안		어항	해안
1955년	8.484		1981년	1.034	1.104
1956년	8.535		1982년	1.022	1.103
1957년	7.655		1983년	1.018	1.109
1958년	7.916		1984년	1.007	1.096
1959년	7.799		1985년	0.993	1.150
1960년	7.323	5.020	1986년	0.985	1.144
1961년	6.211	4.493	1987년	0.997	1.123
1962년	5.575	4.335	1988년	0.981	1.098
1963년	5.201	4.205	1989년	0.984	1.050
1964년	4.953	4.016	1990년	0.973	1.011
1965년	4.557	3.920	1991년	0.927	0.982
1966년	4.525	3.618	1992년	0.899	0.968
1967년	4.195	3.358	1993년	0.885	0.965
1968년	3.987	3.269	1994년	0.892	0.950
1969년	3.658	3.056	1995년	0.888	0.947
1970년	3.407	2.886	1996년	0.914	0.949
1971년	3.151	2.811	1997년	0.913	0.942
1972년	2.868	2.638	1998년	0.922	0.957
1973년	2.625	2.072	1999년	0.947	0.970
1974년	2.035	1.714	2000년	0.996	0.984
1975년	1.712	1.697	2001년	0.999	1.003
1976년	1.599	1.600	2002년	1.019	1.014
1977년	1.487	1.482	2003년(잠정)	1.021	1.018
1978년	1.356	1.342	2004년(잠정)	1.020	1.000
1979년	1.222	1.225	2005년	1.000	(미정)
1980년	1.218	1.111			

주) 해안분은 4성청 통일 디플레이터이다.

또한 2005년은 2006년 3월에 결정될 예정이다.

## 6. 어항·어장·어촌정비의 효과사례

### (1) 「지역HACCP」와 연대한 위생관리형 어장 만들기(훗카이도 시베츠 어장)

#### ○ 과제

- O-157식중독사건의 과장된 피해로 지방의 주요수산가공품인 절인 생선류 판매량과 가격이 저조

=> 주요 품목인 연어, 가리비 등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대처강화 도모

#### ○ 사업·대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식재료 공급 기지를 목적으로 하드, 소프트 양면에서의 위생관리시스템구축

- 지역 HACCP의 대처(소프트 대책)

- 시베츠 지역의 수산업계(생산, 육양, 가공, 유통)가 일원화되어 「지역 HACCP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위생관리실시

- 시베츠지구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하드지원)(2002년~2007년)

- (위생관리형계류시설, 청정해수도입시설, 배수처리시설, 도로 등 정비)

#### ○ 사업효과

- 취급수산물의 선도유지

- 어획에서 육양·유통에 이르기까지 8℃이하의 어체온도 실현

- 국내시장에서 천연 가을연어 침투

- 많은 양판점이 시베츠 어항의 가을연어 수량시찰

- 국내양판점 등이 국내천연물을 많이 다루는 계기가 됨.

- 위생관리(HACCP대응)로 인한 산지가격향상

- 소비지시장의 거래가격이 감소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위생관리대책으로 시베츠의 가을 연어 산지거래가격이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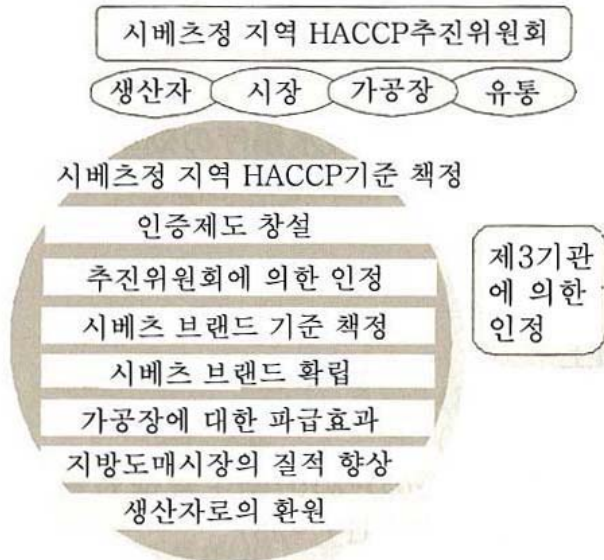
↳ ☆ 중국으로 가을연어 수출(선도가 좋아 품질을 높게 평가)

(중국으로의 수출량 28만 톤(2004년) -> 70만 톤(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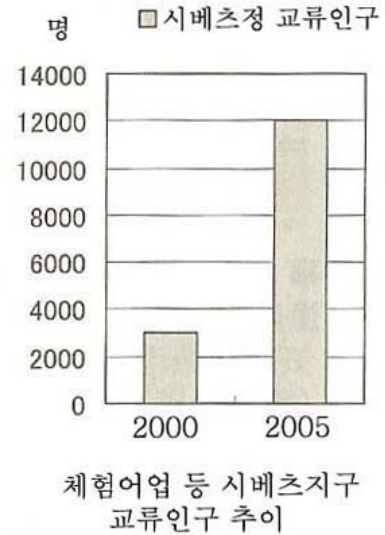
☆ 어업체험 등 도시어촌교류의 활성화

위생관리대처를 계기로 지역의 가을연어 등을 이용해 소비자와 어업관계자의 교류가 활발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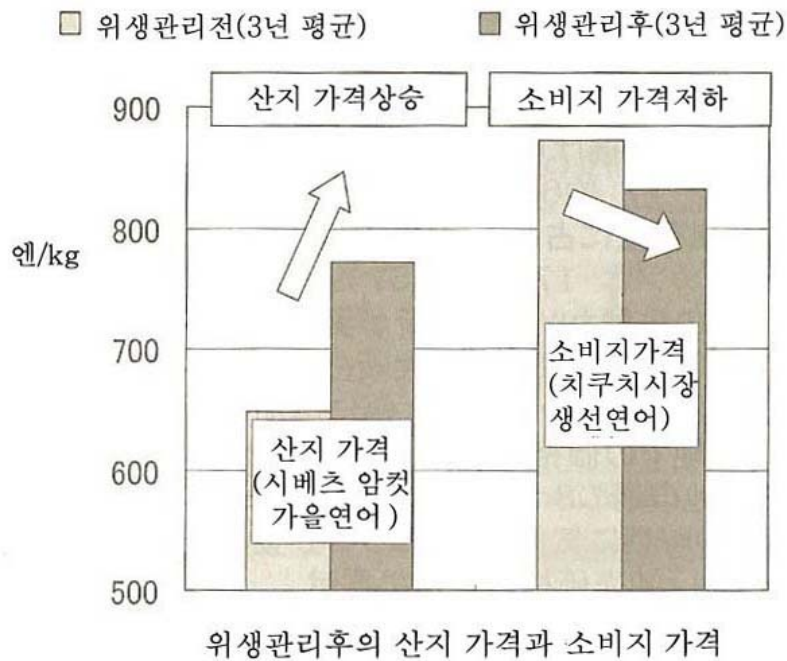
《 다양한 관계자참여에 대한 대처 》



《 생선의 안전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와의 교류확대 》



《 산지에서의 평가UP 》



(2) 가다랑어 유통 시스템을 변혁할 수산기반정비

(미야기현 케센누마 어항)

○ 과제

- 참치연승어선과 가다랑어 일체잡이 어선이 혼재되어 대기과 양륙에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하루 양륙량은 약 300톤이 한계
- 취급량이 증가되지 않아 판로도 고정화됨
  - => 참치연승어선과 가다랑어 일체잡이 어선의 양륙 효율화
  - => 생선 가다랑어 취급량 확대와 새로운 판로개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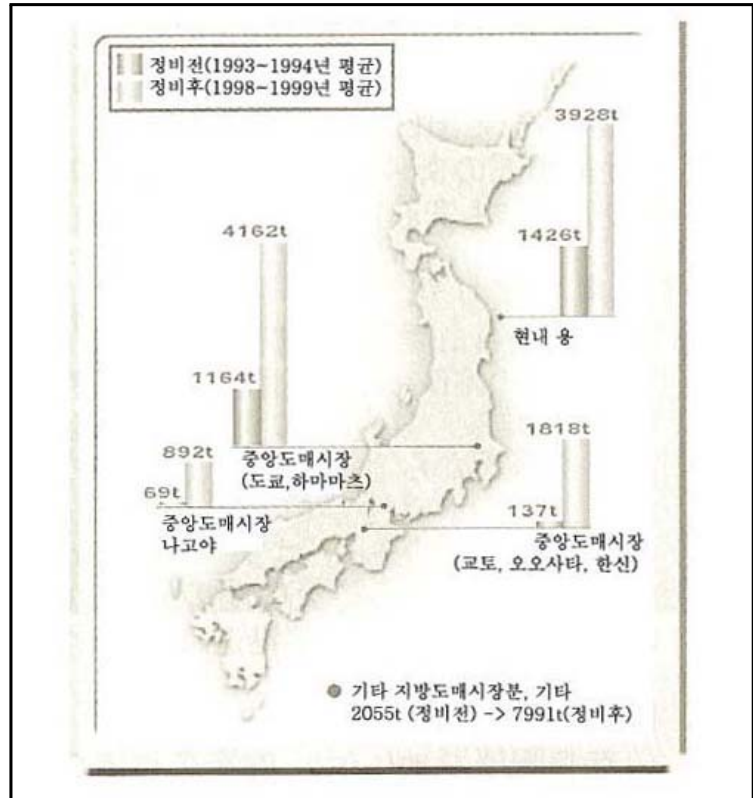
○ 사업 · 대처

- 어항의 양륙기능향상
  - 케센누마 어항수축사업(1988년~2001년)
  - (육양안벽, 용지, 도로 등의 정비)
-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공급체제구축을 위한 위생관리대책
  - 케센누마 지구의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2002년~2011년)
  - (인공지반, 어항정화시설 등의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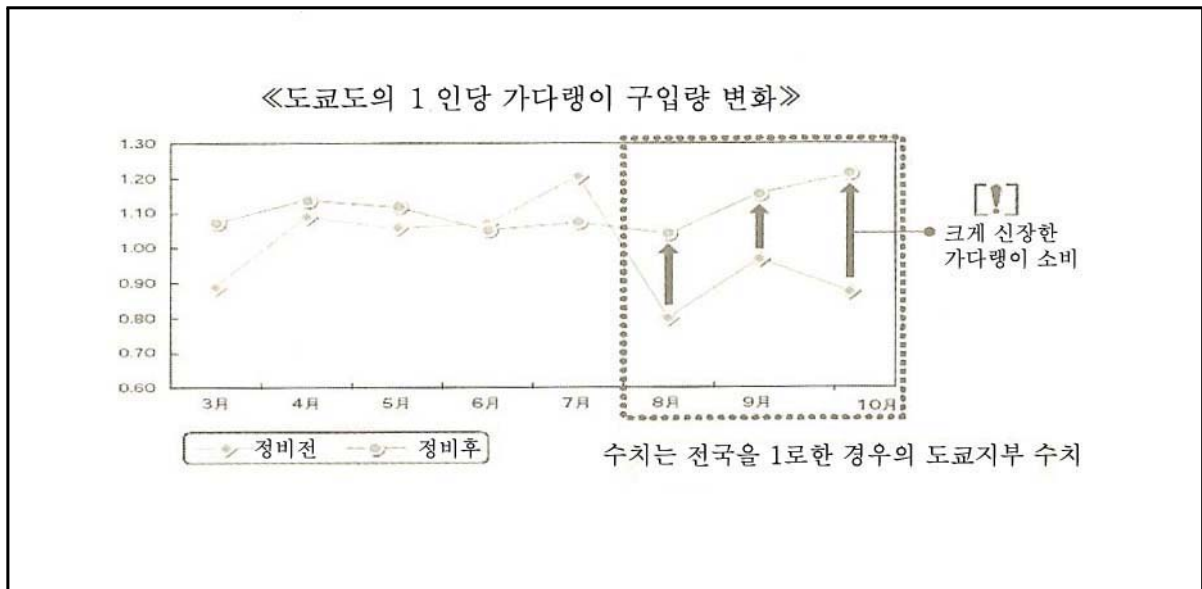
○ 사업효과

- 양륙에서 출하에 이르는 소요시간이 2~3시간 단축
  - 하루 양륙 가능량 증가
    - 약 300톤 => 약 600톤
  - 가다랑어 전체출하량에서 차지하는 생선용 가다랑어 비율이 증대
    - 생선용 가다랑어 17% =>57%
  - 칸사이권으로 생선 가다랑어 출하가 실현
    - 출하소요 시간단축으로 오오사카를 비롯한 서일본시장으로 케센누마산의 생선 가다랑어 출하가 대폭 증가
      - ↳ ☆ 소비지에서의 가격안정과 구입량증가
- 초키지시장의 8~10월의 생선 가다랑어 대다수는 케센누마산.  
이 시기에 케센누마에서 가다랑어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도매가격 안정에 공헌. 또한 도쿄구부의 가다랑어 구입량도 크게 늘어남.

◎ 생선 가다랑어 출하증가  
 -> 칸사이권으로의 가다랑어  
 공급실현(우측그림)



◎ 8월~10월 츠키지시장에서 취급되는 생선가다랑어 대다수가 케센누마산  
 -> 도쿄도부의 1인당 가다랑어 구입량 UP! (하단그림)





(3) 「해업」 진흥 ~ 다른 현의 어련(漁連), 지역주민과 연대  
(카나가와현 미사키 어항)

○ 과제

- 일본유수의 참치 양륙항으로 발전하였으나 원양어업저조 등으로 양륙량, 양륙 금액도 감소. 어항이용요구의 다양화에 대응하며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나갈 필요가 있다.

=> 근린도시권의 조건을 살려 활어 등의 출하거점지로서 정비

=> 재해 발생시에도 안심하고 출하할 수 있는 산지 만들기

○ 사업 · 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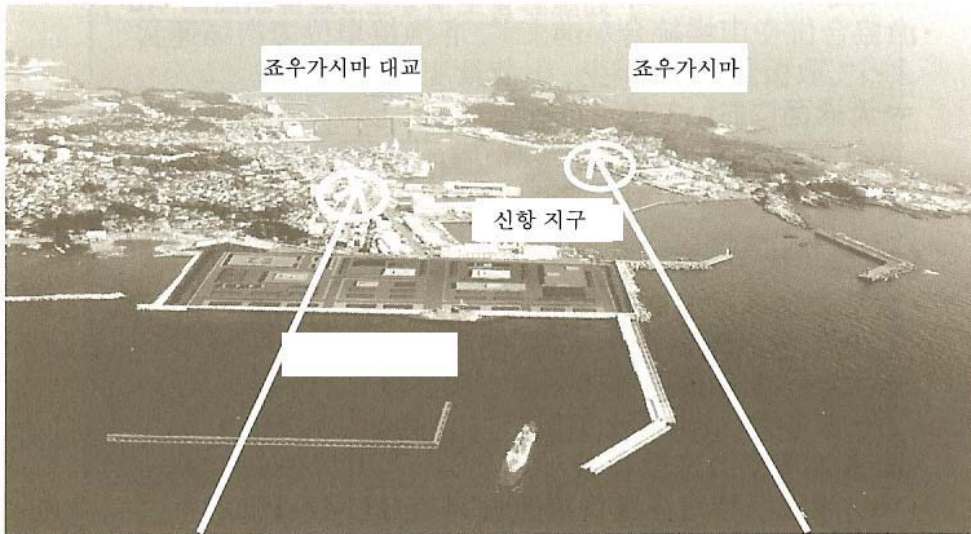
- 도시형 다목적어항으로서의 수산업진흥
  - (양식수면확보를 통한 다른 현의 어련(漁連)과의 연대로 출하거점화, 가공유통시설 집약화, 위생관리의 선진적 대처)
- 수산업진흥에서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해업진흥에 대한 대처  
(수산가공단지 유치, 레저보트 이용 시의 계류시설정비, 어항용지활용으로 「우라리(裏流)」 「하마유우(어협 식당)」 등의 지역진흥을 도모)
- 시설내진화로 방재기능 확보, 조가시마의 고립화방지  
(내진강화안벽정비, 임항도로 교각의 내진화)

○ 사업효과

- 수도권 소비지에 대한 4가지 조건 등으로 유통요구에 대응가능
  - 정량 : 다른 현의 어련(미에, 시코쿠, 큐슈)과의 연대로 참돔, 잭방어, 새끼방어로 이루어진 양식 삼종세트로 정량출하 실현
  - 정질 : 보기 좋고 맛있을 때에 소비자에게 달을 수 있도록 살아있는 시간조정 실현
  - 정가 : 반입량의 안정적인 확보로 일정한 가격으로 출하가 가능
  - 정시 : 일부 양식 활어의 수도권으로의 출하 시 수주 후 약 3시간에 판매처 반입이 가능
- => 수도권, 동 일본에서 미에, 시코쿠, 큐슈로부터의 양식 활어가 보급됨  
활어반입량(전용운반선) 13,700t/회 ->29,700t/년 (2011년 목표)
- 모델 시프트(modal shift) 수송비용 감축, CO<sub>2</sub>배출량 삭감
  - 수송량은 화물10t트럭 1t/회 -> 활어운반선 40t/회  
(40회 왕복분에 해당, 수송비용은 트럭수송의 1/2이하로 감축)

- 배출량은 트럭 172g-CO<sub>2</sub>/tkm -> 선박 38g-CO<sub>2</sub>/tkm(1/4이하로)
- 해업진흥으로 지역 활성화에 공헌
  - ↳ 「우라리(裏流)」 레저 보트로 교류거점은 이용객 100만 명/년
  - 「활어센터」 90~120명 고용(지방고용이 약90%)
  - 자재구입, 수송, 시설이용 등으로 경제파급효과

미사키어항 전경



미사키 피셔리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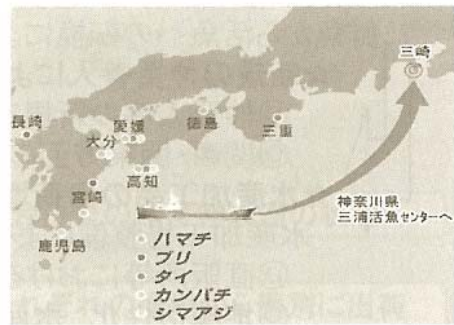
게스트패스



양식



미에, 시코쿠, 큐슈에서 수도권으로



(4) 시장통합을 지원하여 산지의 경쟁력강화 실현

(고우치현 타노우라 어항)

○ 과제

- 어협합병과 시장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각 어협단위로 시장을 운영함으로 취급량 · 종류가 적어 출하량 변동이 큼

=> 유통면에서 다양한 영향

(생선가격저조, 품질관리 불충분, 품질확보 · 출하형태가 한정적, 판로가 한정적 등)

○ 사업 · 대처

- 어항의 양륙기능 집약화

- (22어항에서 양륙 -> 타노우라 어항으로 일원화)

- (취급금액 50억 엔 규모의 새로운 시장탄생)

- (어협합병 · 시장통합을 지원 어협 수 20->3)

- 위생관리형 어항정비

- 타노우라 지구의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2002년~2010년)

- (위생관리형계류시설, 도로, 청정해수도입시설 등 정비)

○ 사업효과

- 산지시장의 기능향상

- 기능의 집약화, 충실화로 작업시간단축

선어 육양에서 출하까지의 소요시간 1.5h => 0.75h

(집약 전 인접한 오오시마 어항과 비교)

- 출하형태의 다양화(양식으로 활어출하가 가능)

선어에서 활어로 전환 단가상승기대

↳ ☆신규 중개상인참가로 새로운 판로확대

◎ 중개상인 등의 신규참가 (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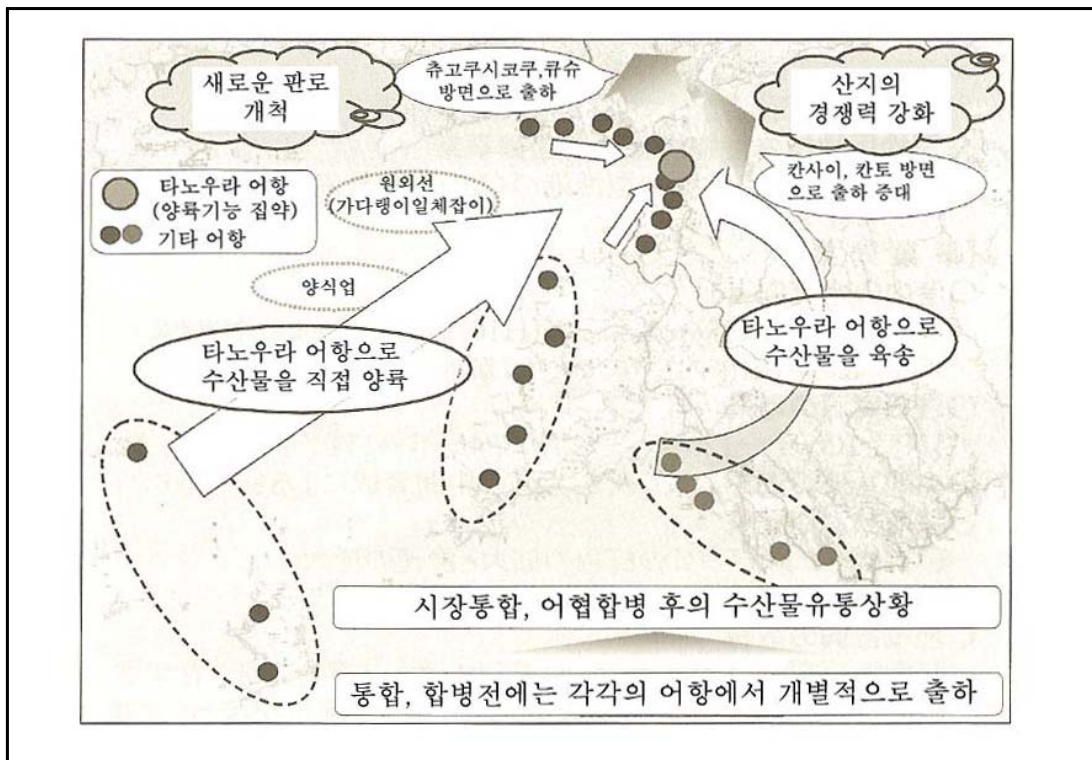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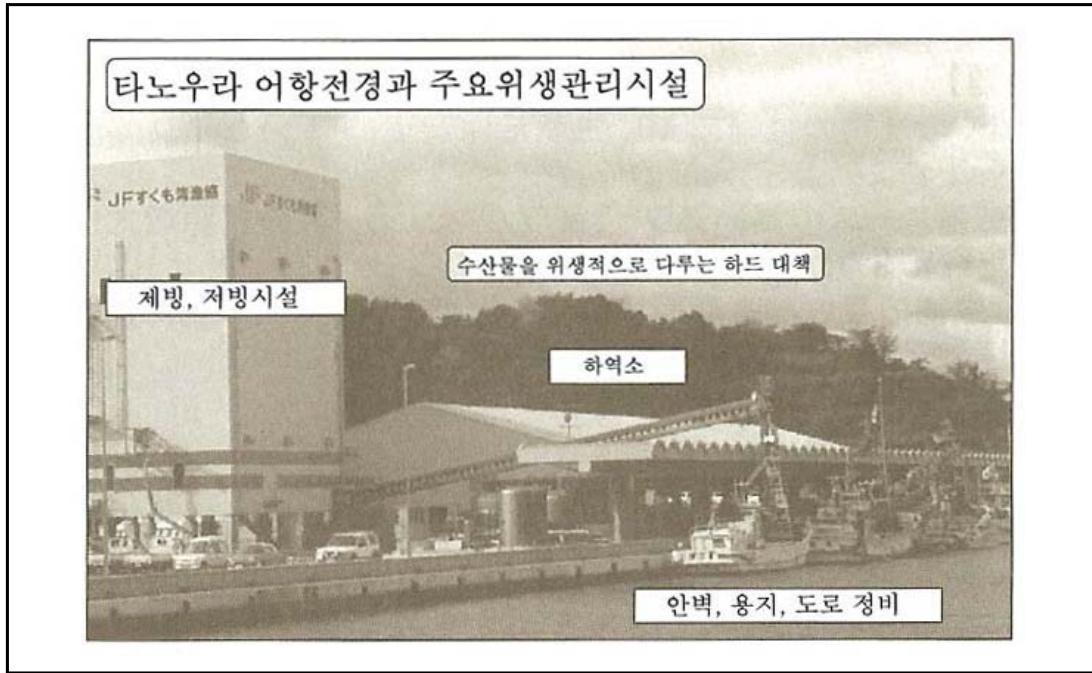
◎ 칸사이 · 칸토우 방면출하가 증가

☆ 수산가공품의 출하증가로 소비자요구에 대응

수산가공장정비로 가공품(으깬 어육 등) 판매

◎ 직판장 등에서의 산지소비 추진

◎ 지역 활성화, 수산진흥, 고용창출



(5) 어항의 종합적인 기능정비 ~ 자연 조화형으로 어항과의 일원화정비

(아키타현 카네우라 어항)

○ 과제

- 어초와 증식장정비로 생산량은 안정되었으나 생선가격저하로 육양금액 신장저조가 문제시 됨  
=> 소비자요구가 높은 전복, 게, 넙치 등의 자원증대를 위한 대처가 필요  
(수산생물의 양호한 생식환경의 장을 어항, 어장에서 일원화하여 정비, 어업육성과 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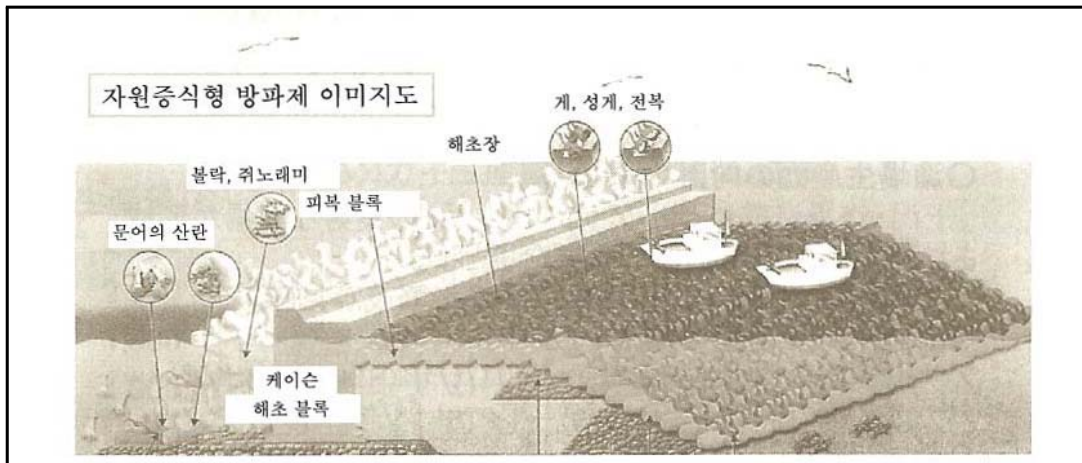
○ 사업 · 대처

- 자연 조화형 어장 만들기
  - 향내의 평온함 확보와 수질향상을 양립한다.
  - (해수교류와 조장조성(마운드부 활용)이 가능한 방파제)
  - 어항의 수역을 어장으로 적극적으로 이용(어장정비와 연대)
- 어업육성과 연대
  - 박지에서의 양식·중간육성
  - 향내에서의 해양자원 등의 증식
  - 어항의 시설정비(투석 마운드 등)와 방류사업과의 연대
- 카네우라 지구의 수산물공급기반정비사업
  - (2002년~2011년, 자연조화형 어항 만들기를 위한 시설정비)

○ 사업효과

- 향내의 수질향상
  - COD2.8mg/L(1995년) -> 1.4mg/L(2004년)  
※ 환경기반유형 B -> 유형 A로
  - DO6.3mg/L(구항 내) -> 6.8mg/L(신항 내) ※ 환경기반유형 B로의 향상
- 해양자원 증식
  - 전복: 10t/년 -> 12t/년, 석굴 : 124t/년 -> 154t/년으로
- 중간육성효과 참돔 : 20만 마리 중간육성으로 자원증가
- 치어방류 연대
  - 조장증대로 전복의 양식장확대와 어획량증대
  - 참돔 등의 방류어종 보육원으로서의 역할
- 지역진흥에 대한 대처

- 어획증가에 따라 가공품 개발 · 판매(가자미 가공품을 지방, 수도권에서 판매), 하타하타 축제 등과 같은 지역 이벤트, 관광, 도시교류와의 연대



(6) 광역적인 간석 · 천장조성으로 어장의 환경개선, 생산력향상

(아이치현 미카와만 지구)

○ 과제

천해수역(수심 10m정도)의 폐쇄성, 유입하천의 환경부하, 매립에 의한 간석소실 등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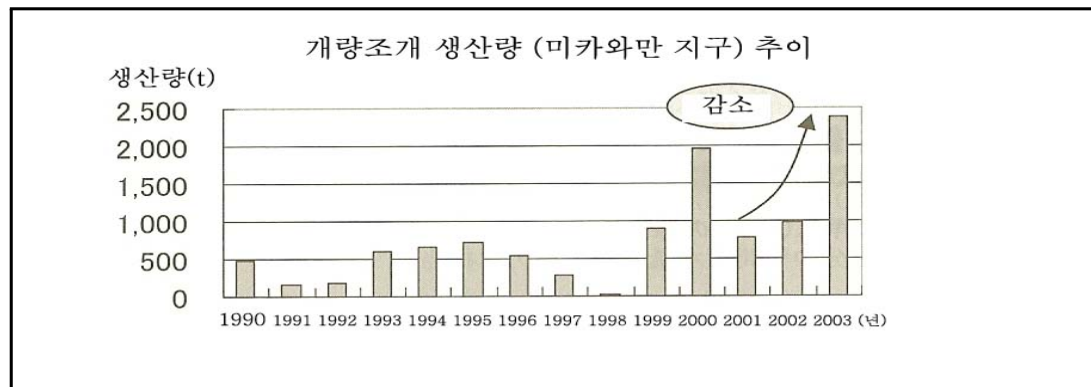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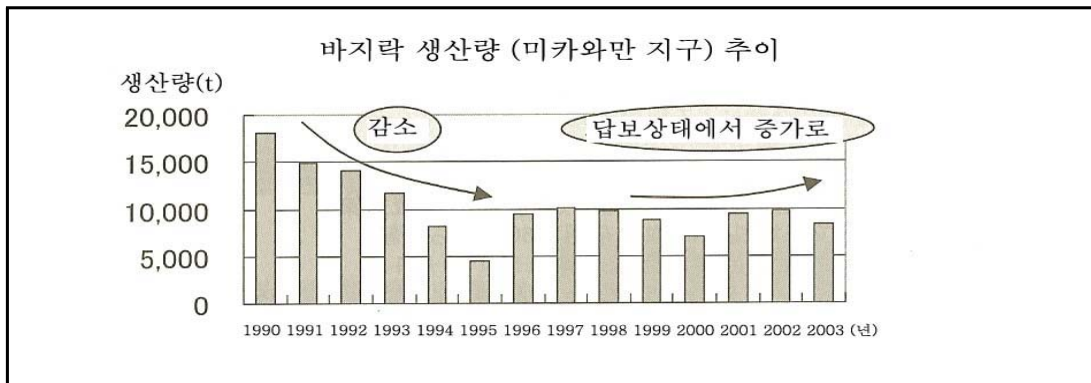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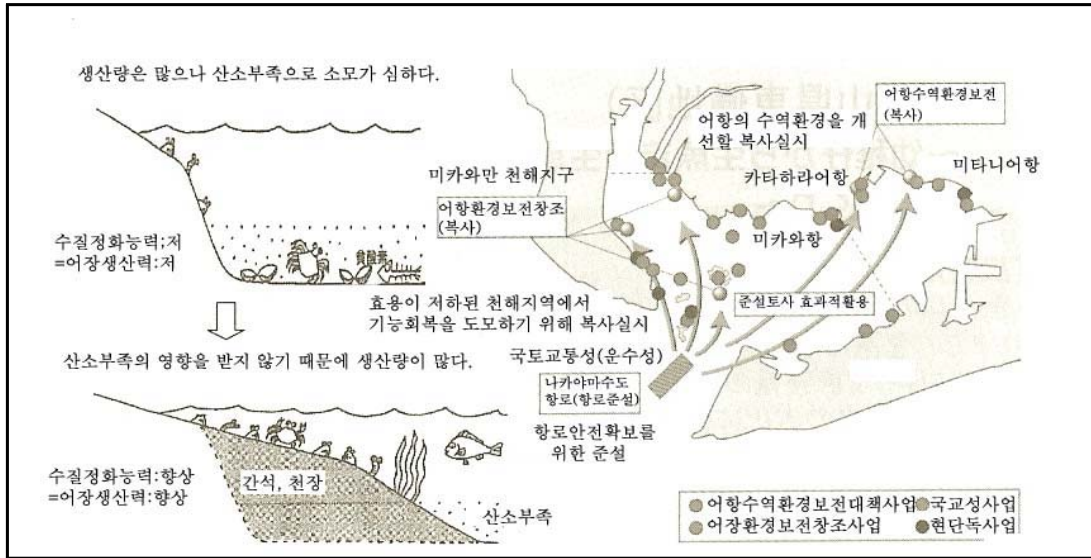
- 만내가 부영양화 -> 적조, 청조 발생
- 유기물이 해저에 침적되어 산소를 소비. 해저는 산소가 빈곤한 상태  
-> 쌍각류 조개 생식이 어려워져 수질정화기능, 어장생산력저하  
=> 해당지구는 현 산하 바지락의 주요어장이지만 더위로 인한 바지락의 대량 폐사가 발생하는 등 어획량감소가 보인다.

○ 사업 · 대처

- 항내의 준설토사를 이용하여 간석 · 천장을 조성
  - 저질악화와 산소부족의 영향이 있는 수역에서 수심 3.0m전후까지 지반을 쌓아올림
- 국토교통성과의 사업연대로 준설토사를 복사에 활용
  - 비용감축을 도모한다.(공사비 5,968백만 엔 감축)
- 미카와만 천해지구의 어장환경보전창조사업
  - (2000년~2004년, 조성 180ha, 토량 158만 m<sup>3</sup> 나카야마 수도항로 정비사업으로 준설토사 이용)

○ 사업효과

- 어장환경의 개선
  - 적조, 청조발생건수는 미세하지만 증가경향에 있으며, 발생 총일수는 1994년을 정점으로 감소경향을 보임
- 어장생산력향상
  - 간석 · 천장조성으로 바지락, 개량조개의 양호한 어장이 형성되어 바지락의 치어방류의 중요한 장이 된다.
  - 조성된 간석 · 천장에서 거머리말조장 번성이 보인다.
- 쌍각 조개류 생산량의 증대
  - 바지락 6,355t/년(1994년~1995년 평균) -> 9,047t/년(2002년~2003년 평균)
  - 개량조개 697t/년(1994년~1995년 평균) -> 1,679t/년(2002년~2003년 평균)
- 도시어촌교류촉진
  - 간석 · 천장에서 바지락조간채취어장으로 활용





(7) 거머리말조장 재생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어장정비

(오카야마현 토우비지구)

~유치어에서 성어까지 생식할 수 있는 다양하고 연계성 있는 어장 만들기 ~

○ 과제

- 어패류의 산란 · 육성의 장으로 수질정화의 장으로 중요한 거머리말조장이 지금까지의 급격한 연안환경의 변화로 감소
- 이로 인한 어획량감소와 수질 · 저질악화가 진행
- 굴 양식어장의 감소화로 굴 성장저하  
=> 거머리말조장의 재생, 유치어보육장 · 성어 생식장 확보  
=> 어장의 감소화 방지와 그 개선이 필요

○ 사업 · 대처

- 거머리말조장 재생을 위한 생육환경개선
  - 거머리말조장 생육환경 개선(①해저면 증축 ②소파시설)
  - 소파시설설치로 평온한 수역창출
  - 어초설치, 치어방류실시, 보호구역설정
  - 어장휴지기에 해저청소(경운) 실시
- 거머리말조장 조성기술 확립(빛 부족 · 파랑경감대책)
- 어협이 거머리말조장 확대 대처를 1980년대부터 지속
- 토우비지구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2002년~2009년)  
(소파시설, 거머리말조장 조성(잠제, 지반증축개량, 복사), 유치어보육장, 미성어 · 성어 생식장 정비)

○ 사업효과

- 거머리말조장 조성 등의 풍요로운 어장창조로 굴양식, 저인망어업 모두가 가능해져 생산성향상
  - 해저경운 등으로 양식 굴 성장이 빨라짐 3년 생산 => 2년으로 출하
  - 굴 생산량 2,119t(1999년) => 2,141t(2003년)
  - 볼락 · 솜뱅이의 어획량 22t(1999년) => 20t(2003년) => 사업 후 84t(2010년)으로 증가.
- 수질정화(질소제거)
  - 약 700명분의 연간 오수량 처리능력에 해당



(8) 신선한 어패류로 연간 30만 명의 방문객을!

(후쿠오카현 닛쇼지구)

~ 생산자 스스로 시행하는 판매에 대한 대처 ~

○ 과제

- 경매로 팔고남은 소량의 다품종 생선을 버리지 않고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좁은 하역소를 이용하여 1955년부터 「고미 시」를 개시
  - 현은 원래부터 외지에서 관광객이 방문하여
    - 그날 양륙된 선어만을 판매하므로 물건이 불충분
    - 하역된 곳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간 · 공간적인 제약을 받으며 비위생적인 인상을 줌
- => 직판시설로서의 기능 확충  
=> 안심과 안전을 요구하는 소비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위생관리의 고도화

○ 사업

- 지구의 기간산지인 어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진흥과 도시주민과의 교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지역산물판매 · 제공시설을 정비
- 판매종사자의 증강, 가공품판매, 택배코너설치로 기능향상
- 신 어촌커뮤니티 기반정비사업(2004년)
  - (활어수조정비, 매장 · 저질 개선, 세면장 · 방문객용 화장실 설치)

○ 사업효과

- 판매력과 위생관리체제가 향상되어 시설에서의 판매액 증가
    - (어가경영유지 · 안정화, 판매액 약1억2천만 엔 향상)
  - 도시주민과의 교류가 촉진되어 관광객 등은 연간 30만 명
    - (약 60%는 칸사이를 중심으로 한 현 이외로부터의 관광객)
- ↳ ☆ 신선하고 맛이 좋은 산지의 확실한 어패류를 싼 가격으로 구입가능
- ☆ 요리방법과 양륙장소 등의 정보 입수가능  
(어부와 직접적인 대면판매)
  - ☆ 어패류의 판매뿐만이 아니라 터칭 그룹으로 아이들도 즐길 수 있다.
  - ☆ 다시 방문하고 싶은 관광지, 소우시키시 미관지구의 뒤를 잇는 현 내 제2위 지역



정비 후의 <고미 시>



(9) 어획고에 좌우되지 않는 관광어항에 대한 대처

(고우치현 쿠보츠지구)

○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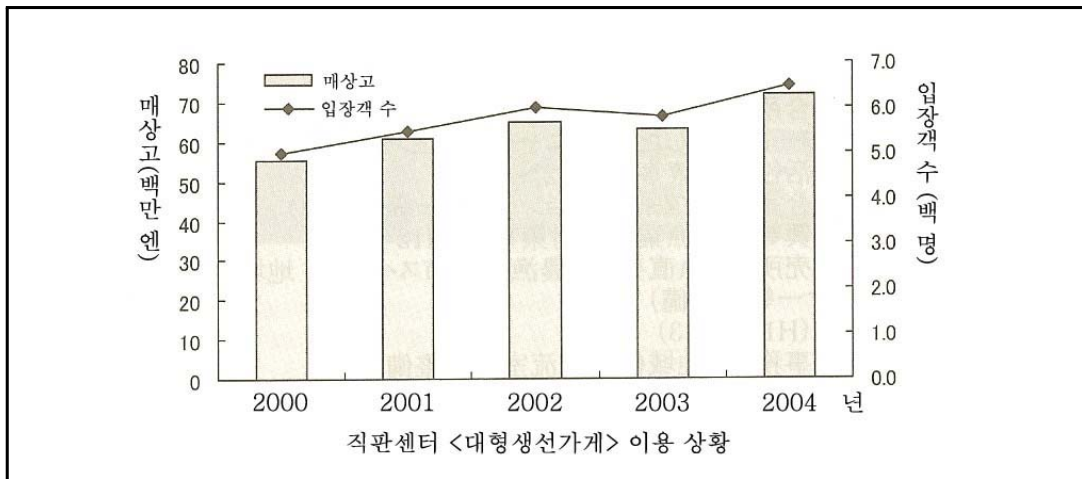
- 어업자의 고령화와 어획량 감소가 현저한 가운데 어업경영은 어획고에 좌우되어 불안정
  - => 어가경영안정을 위해 관광어업 도입
  - => 어업자의 재정개선과 도시주민과의 교류거점 확보

○ 사업 · 대처

- 쿠보츠 어협이 관광정치망, 웨일왓칭(whale watching), 고기잡이어선, 바다의 날 축제, 쿠보츠항 축제, 쿠보츠 일요아침시장 등 개시
  - 어항환경정비사업(1997년)  
(화장실, 휴게실 등 정비)
  - 고우치현 수산업 종합지원사업(현 단비) (1999년)  
(어협직판센터 「대형어류마트」 정비)
  - 강한 수산업 만들기 교부금(2005년)  
(지역산물판매 · 제공시설정비)

○ 사업효과

- 어협의 직판시설로 착실한 매상확보
  - 「대형어류마트」의 매상고 55백만 엔(2000년) => 72백만 엔(2004년)
- 고용기회 창출
  - 2005년 개업한 지역산물판매 · 제공시설로 새로운 고용 6명
    - ↳ ☆ 지구 밖과의 교류가 번성해져 지역 활성화로 이어짐
      - ☆ 지역커뮤니티강화(새로운 교류의장 출현)
      - ☆ 직판시설 등으로 산지소비추진, 지역 활성화, 수산업진흥.



■ 어협체험 등의 이용상황(2003년 실적) ■

내용	이용자수	집객 지역	비고
관광정치망	255명	현내, 도시부	적요
웨일왓칭(whale watching)	56명	현내, 도시부	적요
쿠보츠항구축제	800명	지방, 현내	연 1회
어협직판센터	51,000명	지방, 현내	통상연도

(10) 기존 스탁활용과 교류를 중심으로 한 마을 만들기(시마네현 히시우라 어항)  
~지역의 자립은 주민의 의욕과 행정의 뒷받침~

○ 과제

- 인간(교류), 물건(지역자원 발굴), 돈(외화획득), 정보(네트워크) 등의 거점 미정비  
=> 정기선 이발착시설과 병합된 복합시설정비를 검토  
(농림수산업과 관광업을 종합한 교류사업 혹은 농어촌 체재형 여가활용전개)  
=> 여객선의 거점화를 도모하며 대기실기능을 충실히 하는 등 이용자의 편리성을 높여 구매 · 음식 서포트 기능과 일원화  
(교류인구확대,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로 지역의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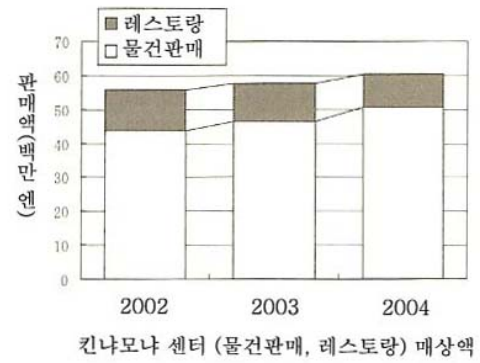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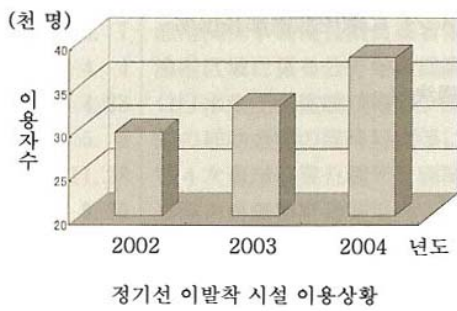
○ 사업 · 대처

- 어항의 기존스톡을 활용하여 지역의 종합적인 거점으로서 각종 시설을 함께 설비한 정기선 이발착 시설을 정비  
(정기선대기실, 선어직판장, 지역식재 제공, 인포메이션센터를 함께 설비한 「킨야모야센터」 정비)
  - 어장어촌활성화 대책사업(2000년~2001년)  
(정기선대기실, 인포메이션센터 등의 정비)
  - 신 산촌진흥 등 농림어업특별대책사업(2000년~2001년)  
(특산품판매소, 선어직매장, 농어민아침시장스페이스, 지역식재제공코너 등 정비)
  - 단독사업(2000년~2001년)  
(항로관리사무소, 지역전승교류실 등 정비)

○ 사업효과

- 마을인구(2,514명)의 10배를 넘는 연간이용자수
    - 본격적인 시설이용이 시작된 이후 시설이용자수 증가
    - 2002년 2.95만 명 -> 2004년 3.81만 명
  - 농수산물, 특산물, 레스토랑 등의 매상증가
    - 2002년 56백만 엔 -> 2004년 60백만 엔
- ↳☆ 「킨야모야 센터」를 중심으로 한 산지소비추진, 지역 활성화, 수산업진흥

정기선 이발착 시설(킨나모나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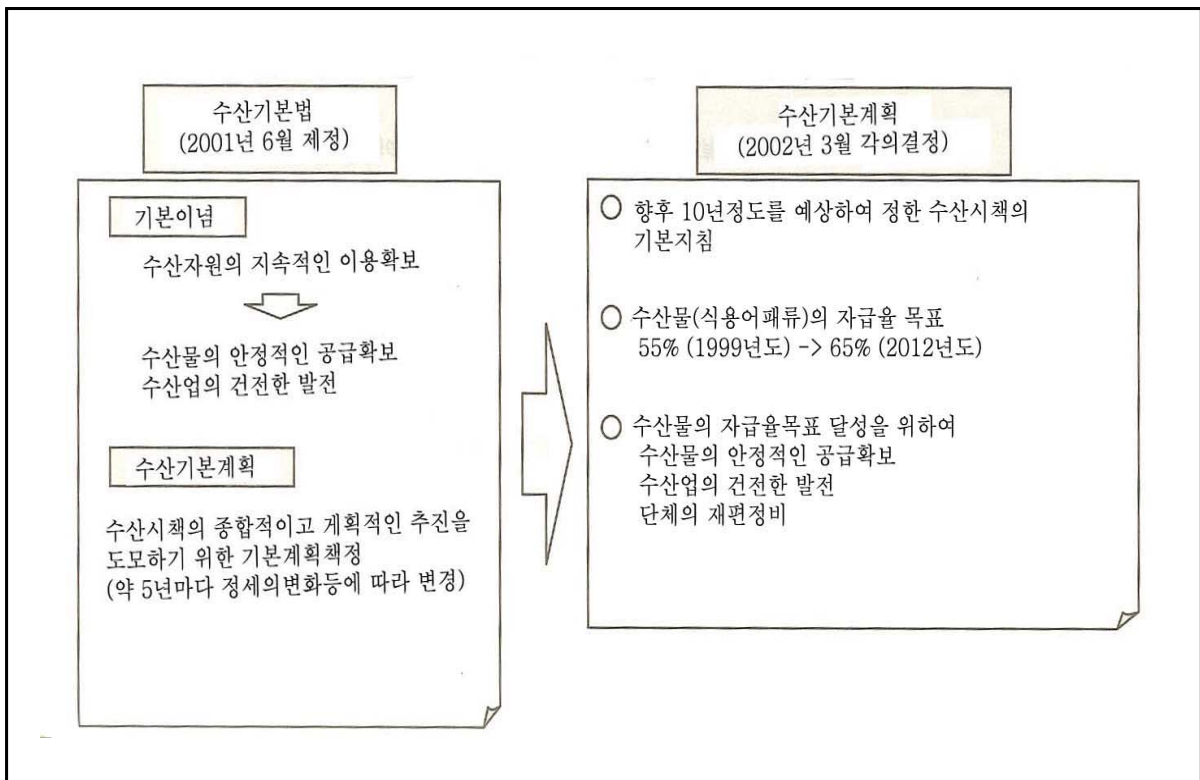




## 제 2 장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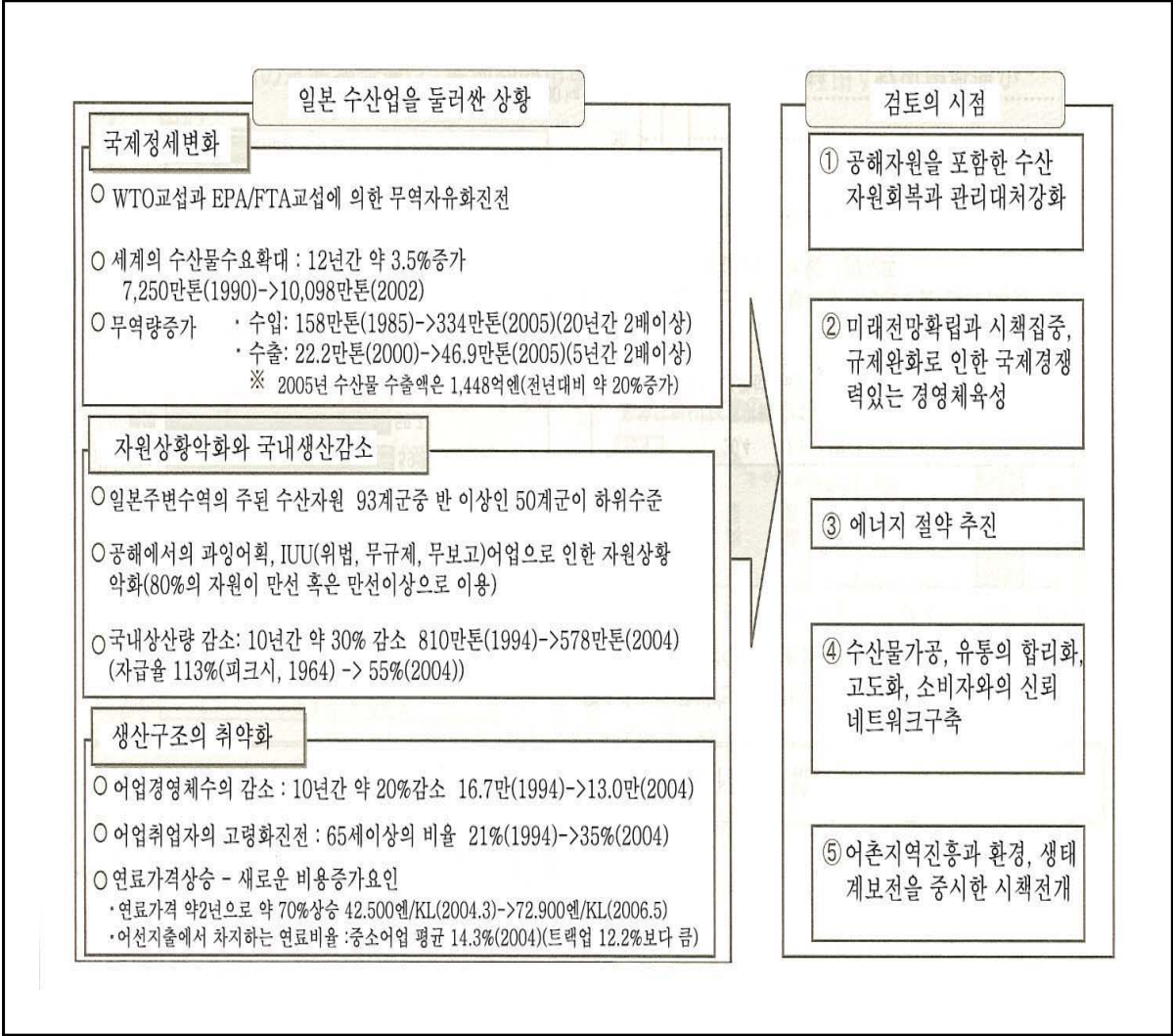
### 1. 수산기본법과 수산기본계획

- 수산정책이념과 기본시책의 방향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2001년 6월 수산기본법 제정
- 수산기본법에 따라 2002년 3월 수산기본계획책정과 자율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갈 향후 수산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의 명확화.



■ 수산기본계획 검토의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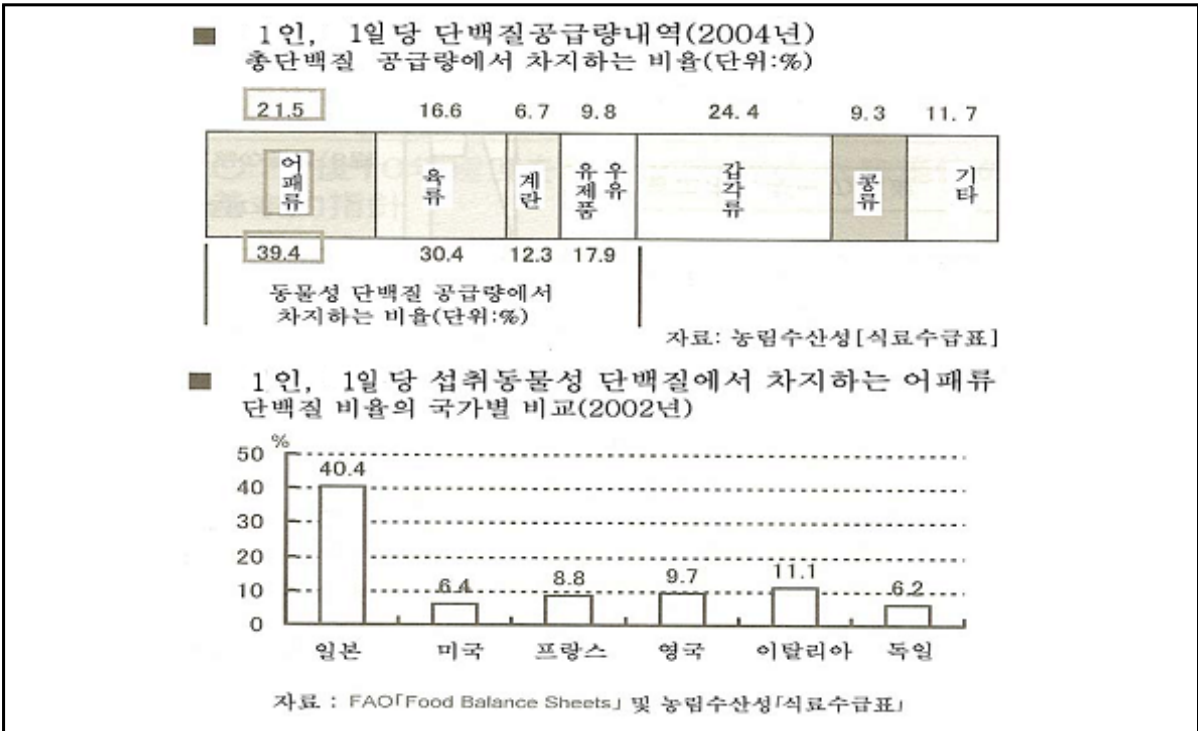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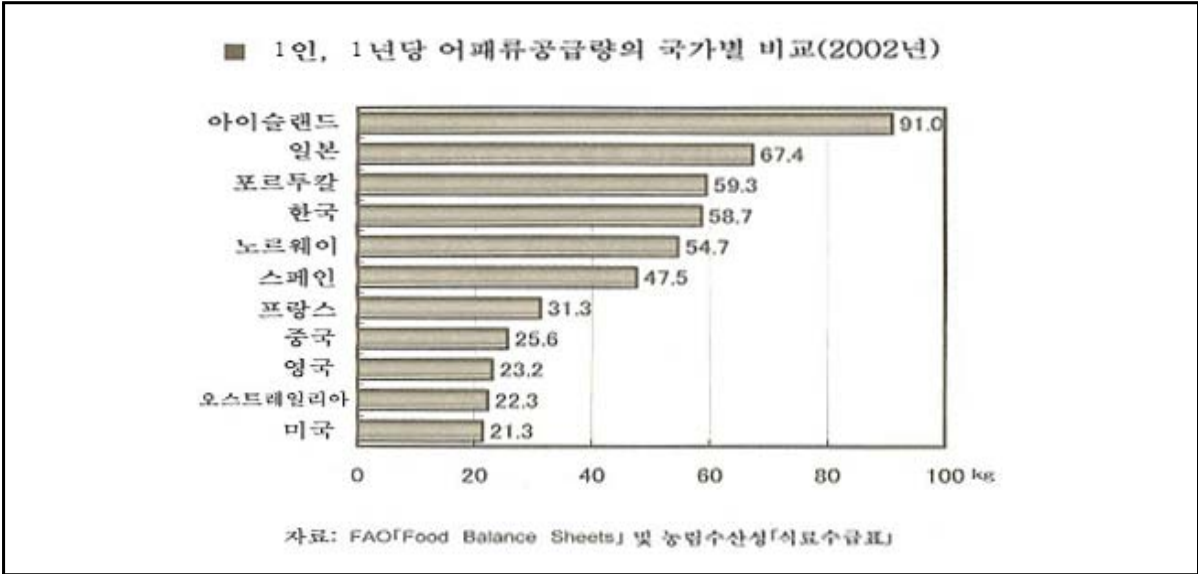
○ 수산기본계획에 따라 국제화 진전, 연료가격상승 등 일본수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2007년 3월 과정을 검토



## 2. 수산업 · 어촌을 둘러싼 정세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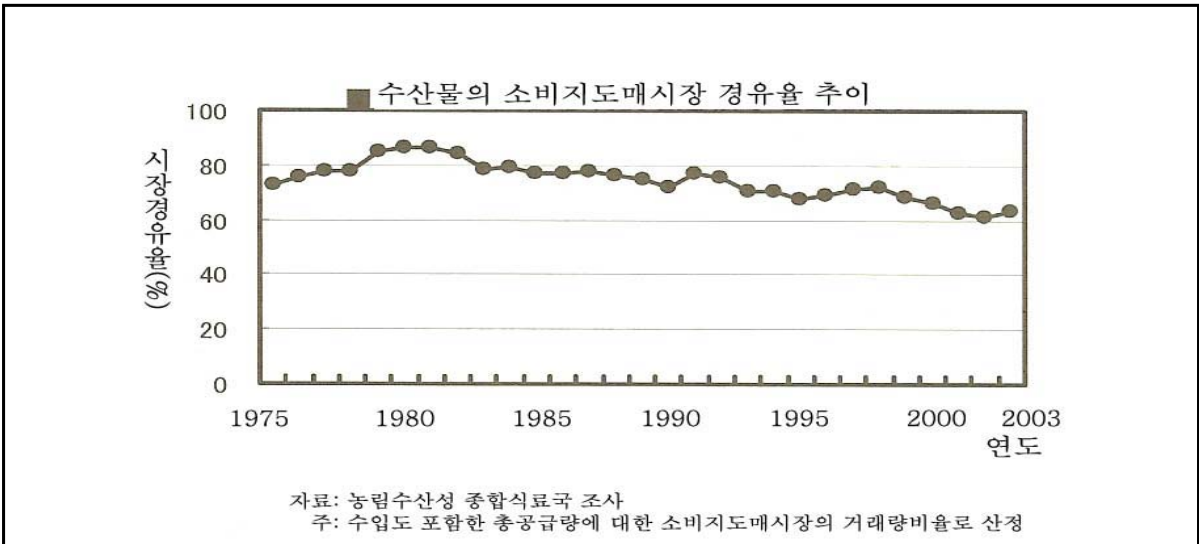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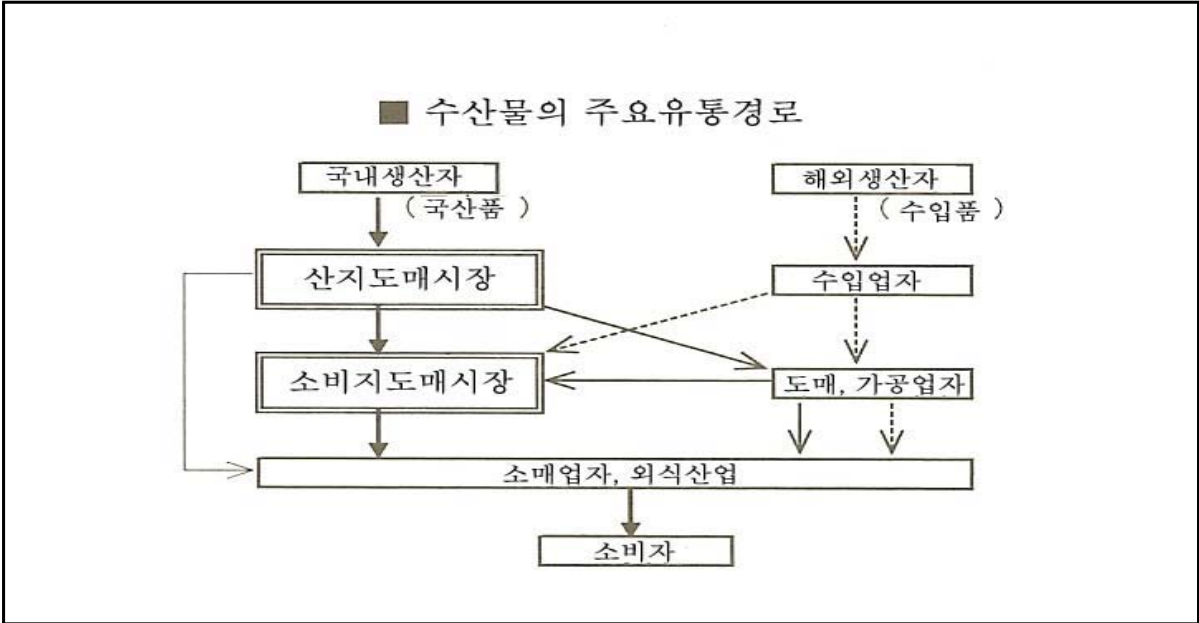
### ■ 일본에서의 수산물의 중요성

○일본은 세계유수의 수산 국가, 동물성단백질의 약 40%를 어패류에서 공급



■ 수산물유통의 현재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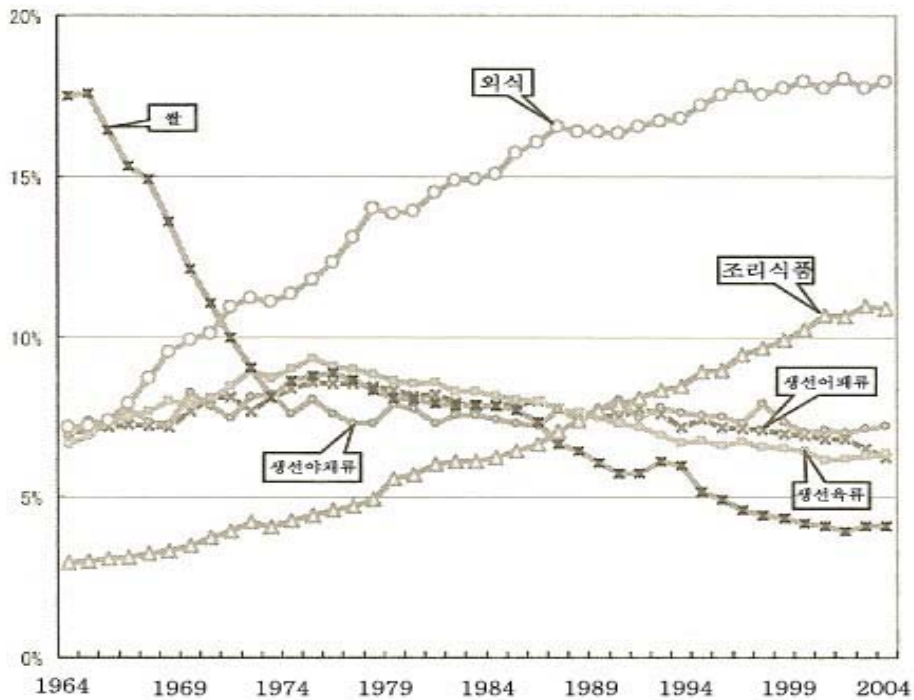
- 일본의 수산물유통은 산지도매시장과 소비지도매시장을 경유하는 시장유통이 중심
- 최근 소비지에서의 시장 외 유통이 확대되고 있어 소비지도매시장 경유율이 1970년대 80%를 넘어섰으나 2003년도에는 63%에 그침



■ 수산물의 소비유통구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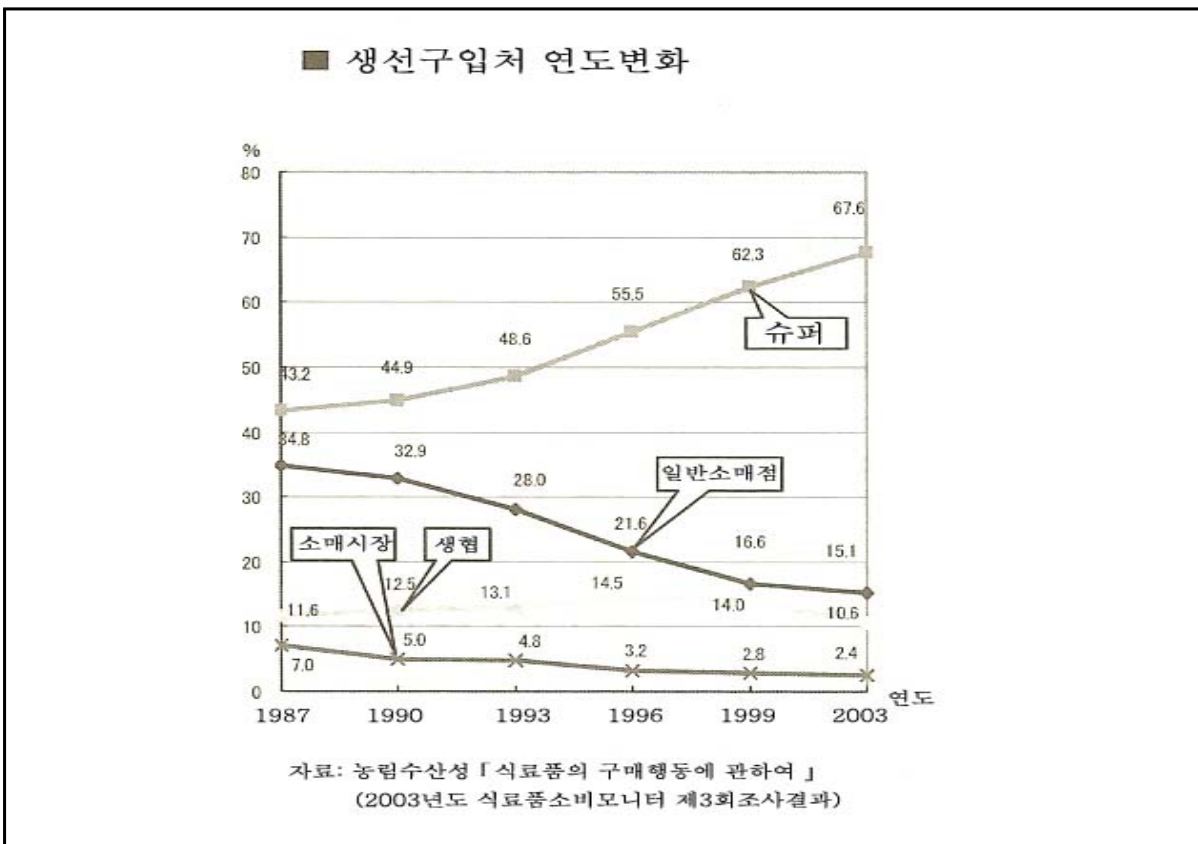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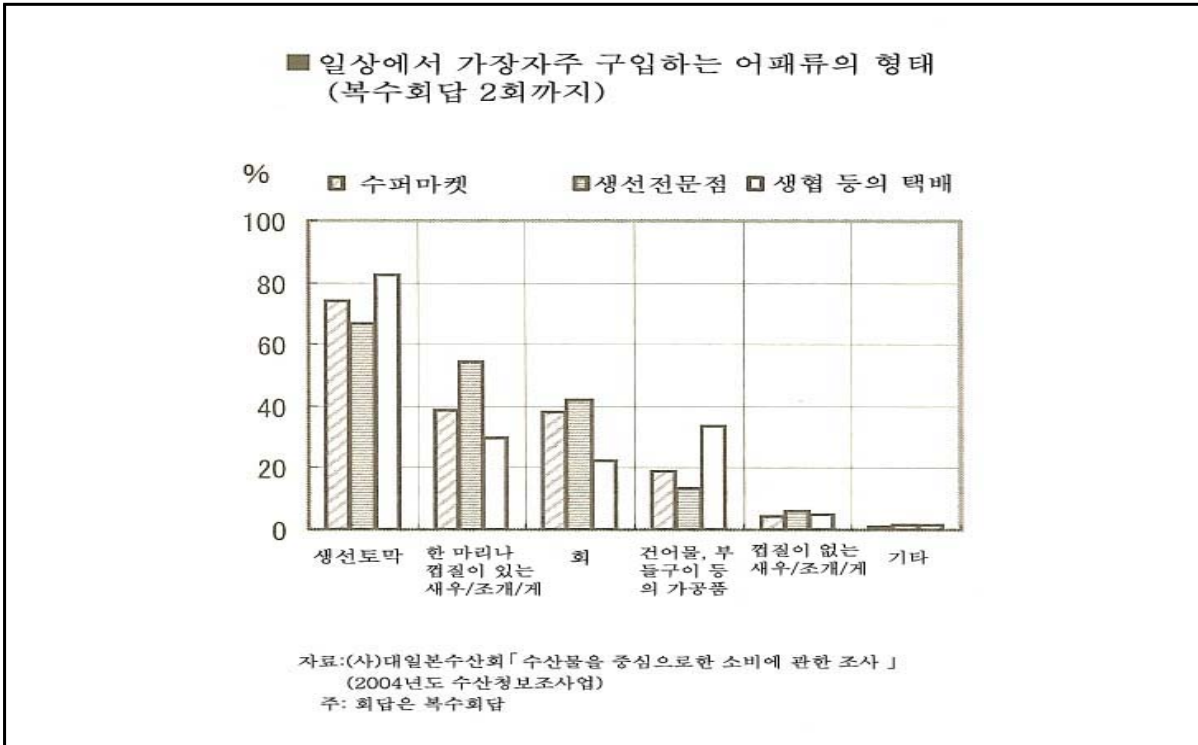
- 가정의 식료 지출 중 어패류는 쌀, 육류 등과 함께 감소경향. 외식과 조리식품 지출액은 증가. 특히 반 조리식품이라고도 불리는 조리식품은 증가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 소비자가 구입하는 것은 한 마리의 생선보다도 생선토막이나 회를 비롯한 가공 처리된 것이 중심

■ 식료지출액에서 차지하는 품목·형태별 비율의 추이



자료: 총무성「가계조사연보」(2인이상의 세대(농림어가세대는 제외))로 작성

주: 「조리식품」은 공업적가공이외 일반적으로 가정과 음식점에서 이루어지는 조리의 전부 혹은 일부를 시행한 음식. 냉동조리식품, 레토르트파우치식품 및 복수소재를 조리한것도 포함. 도시락, 주먹밥, 조리빵, 중화만쥬, 레토르트파우치식품, 각종반찬등. 컵라면, 즉석라면은 포함하지 않는다.



■ 수산물의 세계적 수요증가

- 세계의 어패류 소비량(식용어패류공급량)은 증가추세. 주요지역에서의 국민 1인당 어패류소비량을 살펴보면 중국이 30년 전의 약 5배라는 대폭적인 증가를 보임.
- 세계 인구는 중장기적으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되리라고 예상되며, 또한 1인당 어패류소비량도 증가추세에 있어 앞으로도 세계 어패류 수요는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지역에서의 추이

(식용어패류공급량(조식료 베이스),kg/사람,연도)

	1970~1972年 (평균)	1990~1992年 (평균)	2000~2002年 (평균)
일본	66.2	68.9	66.8
EU	19.6	24.2	25.8
북미	15.0	21.2	22.0
중국	4.8	12.0	25.7

자료 : FAO「Food balance sheets」로 작성

● 세계인구와 수산물공급동향

세계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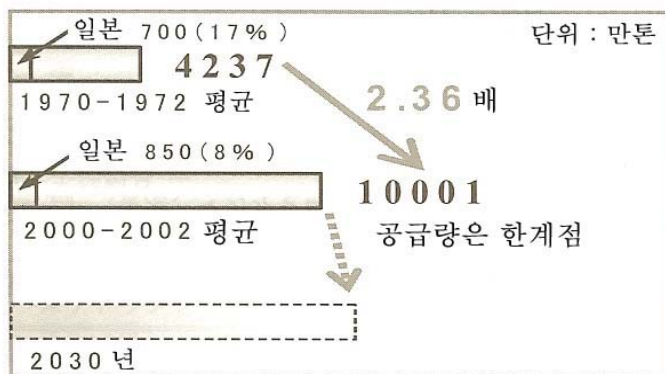
약 37억

↓ 1.62배

약 60억

↓ 1.35배

약 81억



■ 일본의 수산물수입

- 일본은 금액, 수량면에서도 세계최대의 수산물수입국  
 ○ 세계적인 자원상황 악화 등을 배경으로 최근 수년간 수산물수입은 감소경향. 수입액은 1997년을 피크로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수입량도 2001년을 피크로 2002년 이후 수입량이 2001년을 하회하고 있는 실정.

○ 일본의 수산물수입

◦ 수산물 총수입량 추이

(단위: 만 톤)

	1975년	1985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총수입량	71	158	382	382	332	349	334
이중 참치·청새치류	10	15	32	37	34	34	34
새우	11	19	26	26	24	25	24
상어·송어류	1	12	28	27	22	24	22
계	1	3	11	11	11	11	10
장어 조제품	-	1	7	6	4	5	3
5품목 계	23	51	103	106	95	99	94

자료: 재무성 「무역통계」로 작성(2005년은 속보치)

◦ 수산물 총수입액 추이

(단위: 억 엔)

	1975년	1985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총수입액	3,855	11,760	17,237	17,622	15,692	16,371	16,680
이중 참치·청새치류	382	860	2,268	2,434	2,229	2,337	2,205
새우	1,375	3,356	3,022	2,974	2,481	2,380	2,350
상어·송어류	58	1,166	1,101	1,046	1,016	1,036	1,084
계	48	335	816	898	854	807	684
장어 조제품	-	325	667	667	412	657	500
5품목 계	1,864	6,041	7,874	7,977	6,992	7,216	6,823

자료: 재무성 「무역통계」로 작성(2005년은 속보치)



◦ 수입금액 상위5개국의 주요수입품목(2005년)

(단위 : 억 엔)

	금액
중국(홍콩, 마카오는 제외)	3,564
장어 조제품	462
게 조제품	188
새우	185
미국	1,577
대구류	389
대구 알	359
연어, 송어	174
러시아	1,234
게	449
대구 알	237
연어, 송어	142
태국	1,088
새우 조제품	226
오징어	171
새우	160
칠레	
연어 송어류	482
어분	81
성계	65

자료: 재무성 「무역통계」로 작성(수치는 속보치)

### ■ 일본의 수산물수출

- 최근 한국, 중국 등의 해외 판로 개척의 움직임으로 수산물 수출량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최근 5년간 배의 증가세를 보였다.
- 수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는 국내시장가격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높은 수익확보, 어업의 활성화, 이들을 통한 일본 수산물 공급력 유지 · 증대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 ○ 일본의 수산물수출

##### ◦ 수산물 총 수출량 추이

	1975년	1985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총수출량	60.3	78.6	31.3	30.7	37.0	42.4	46.9
이중 연어, 송어류	0.1	0.0	2.9	3.4	6.4	6.1	6.6
명태	-	-	-	1.4	3.2	9.2	6.2
참치, 청새치	0.5	1.5	2.7	3.1	2.6	4.6	2.5
짜넨 제품	-	-	0.7	0.6	0.6	0.6	0.7
가리비	-	-	0.3	0.5	0.9	0.4	0.6
넙치, 가자미류	-	0.9	0.4	0.3	0.2	0.1	0.1
진주(단위 : 톤)	38	21.3	64	47	52	49	59

자료: 재무성 「무역통계」로 작성(2005년은 속보치)

##### ◦ 수산물 총 수출액 추이

	1975년	1985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총수출액	1,687	2,876	1,352	1,365	1,354	1,482	1,753
총수출액(진주는 제외)	1,510	2,050	978	1,033	1,111	1,207	1,451
이중 연어, 송어류	12	2	39	37	74	91	147
명태	-	-	-	14	58	98	78
참치, 청새치류	8	54	108	86	78	126	89
짜넨 제품	-	-	42	40	39	41	47
가리비	-	-	55	91	121	62	109
넙치, 가자미류	-	44	12	10	7	4	4
진주	177	826	375	332	243	275	302

자료: 재무성 「무역통계」로 작성(2005년은 속보치)

◦ 수출금액 상위5개국의 주요수출품목(2005년)

(단위 : 억 엔)

	금액
홍콩	434
진주	139
조개관자 조제품	87
말린 해삼	71
미국	303
진주	79
가리비	63
짜낸 제품	21
중국(홍콩, 마카오는 제외)	271
연어, 송어류	131
계	24
명태	22
한국	194
명태	48
도미(활어)	18
진주	8
태국	129
가다랑어	71
참치, 청새치류	28
연어, 송어류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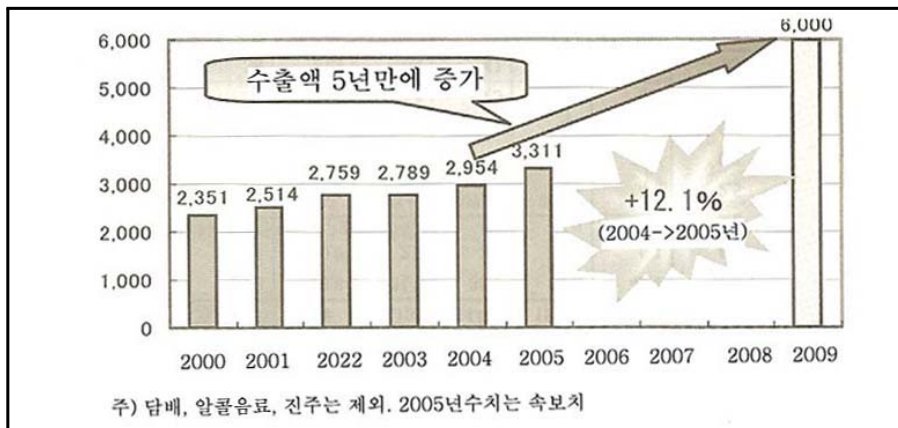
자료 : 재무성 「무역통계」로 작성(수치는 속보치)

■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 배로 증가가 목표

- 농림수산물·식품수출액을 5년간 배로 증가시킨다는 수출확대목표달성을 위하여 농림수산물 등 수출촉진전국협의회를 설립하는 등 관·민이 일치된 대처 체제정비
- 2005년 농림수산물·식품(담배, 알콜음료, 진주는 제외)의 수출실적은 약 3,311억 엔으로 전년대비 +12.1%증가하였다. 이 중에서 수산물은 +19.9%로 대폭 증가하였다.

●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배가 목표

- 수출액이 2004년 3,000억 엔에서 2009년 6,000억 엔으로 배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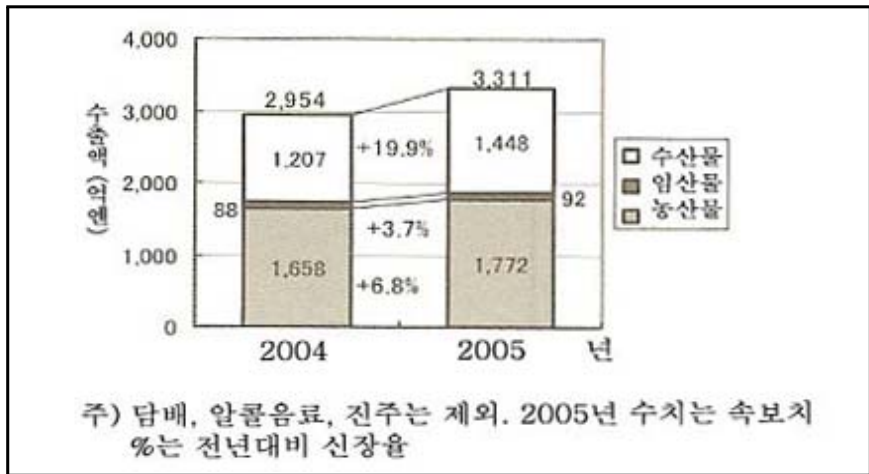


● 관과 민이 일치된 대처체제정비

- 2005년 4월 27일 폭넓은 관계자로 구성된 농림수산물 등의 수출촉진전국협의회가 설립
- 2005년 6월 30일 「농림수산물 등 수출배가행동계획」을 책정하여 대처추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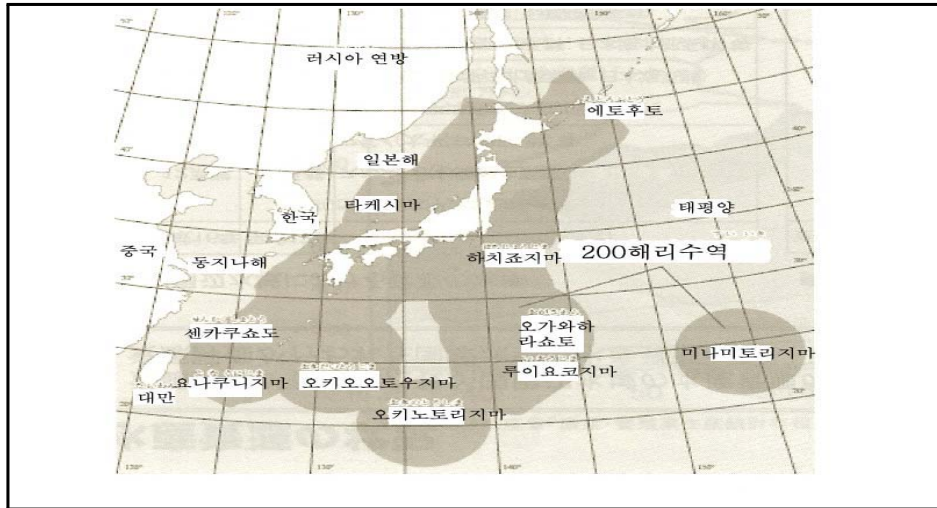
● 산물별 수출실적(2004→2005)



■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 일본의 국토면적은 세계에서 제60위(약38만km<sup>2</sup>)이지만, 배타적 경제수역은 세계에서 제6위로 국토면적의 약 12배인 약 450만 km<sup>2</sup>

○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 배타적 경제수역의 넓이      단위: 만km<sup>2</sup>

		단위: 万km <sup>2</sup>	
1위		미국	762
2위		오스트레일리아	701
3위		인도네시아	541
4위		뉴질랜드	483
5위		캐나다	470
6위		일본	447

(참고) 일본의 국토면적 : 약38만km (세계 제60위)

■ 수산자원의 상황

- 자원평가가 이루어진 일본주변수역의 수산자원 중 반수이상이 하위수준
- 자원평가가 이루어진 국제어업 수산자원 중, 서대서양 흑다랑어 등 약1/4 이하위 수준

○ 일본주변수역의 자원수준

자원수준	2004년	2005년	주요 어종·계군
상위	12계군	13계군	공치(태평양북서부계군) 오징어(추계발생계군) 참돔(태평양중부계군) 등
중위	30계군	30계군	전갱이(태평양계군, 대마난류계군) 바다참게(태평양북부계군, 일본해계군) 도루묵(일본해서부계군, 일본해북부계군)등
하위	49계군	50계군	고등어(태평양계군, 대마난류계군) 명태(일본해북부계군, 태평양계군) 바다참게(오호츠크해계군) 정어리(태평양계군, 대마난류계군)등

자료: 수산청 · (독)수산종합연구소 「일본주변수역의 어업자원평가」

○ 국제어업자원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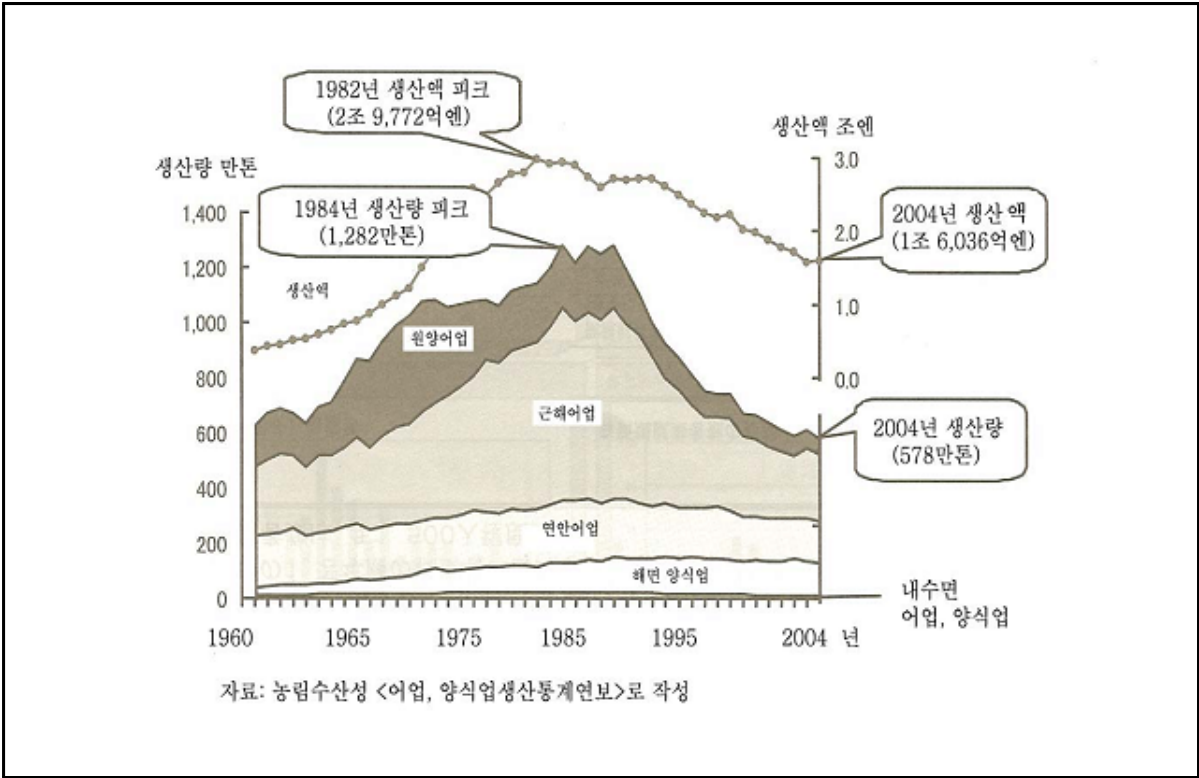
자원수준	2004년	2005년	주요 어종·계군
상위	16계군	15계군	참다랑어(북태평양, 남태평양) 가다랑어(동부태평양, 중서부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연어(일본계) 등
중위	17계군	21계군	흑다랑어(태평양) 눈다랑어(중서부태평양, 인도양) 황다랑어(동부태평양, 중서부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등
하위	11계군	11계군	흑다랑어(서대서양) 인도다랑어(전해역) 눈다랑어(대서양, 동부태평양) 등

※ 각 어종의 계군은 편의상 지역 어업관리기관의 관리수역 내에 하나의 계군으로 간주한다.  
자료: 수산청 · (독)수산종합연구소 「국제어업자원의 현황」

■ 일본의 어업생산량 · 생산액추이

- 일본의 어업생산량은 2004년 578만 톤으로 최고시보다 반감.
- 어업생산액은 2004년 1조6,036억 엔으로 피크 때보다 약 1.3조엔(46%)감소.

○ 어업부분별 생산액 등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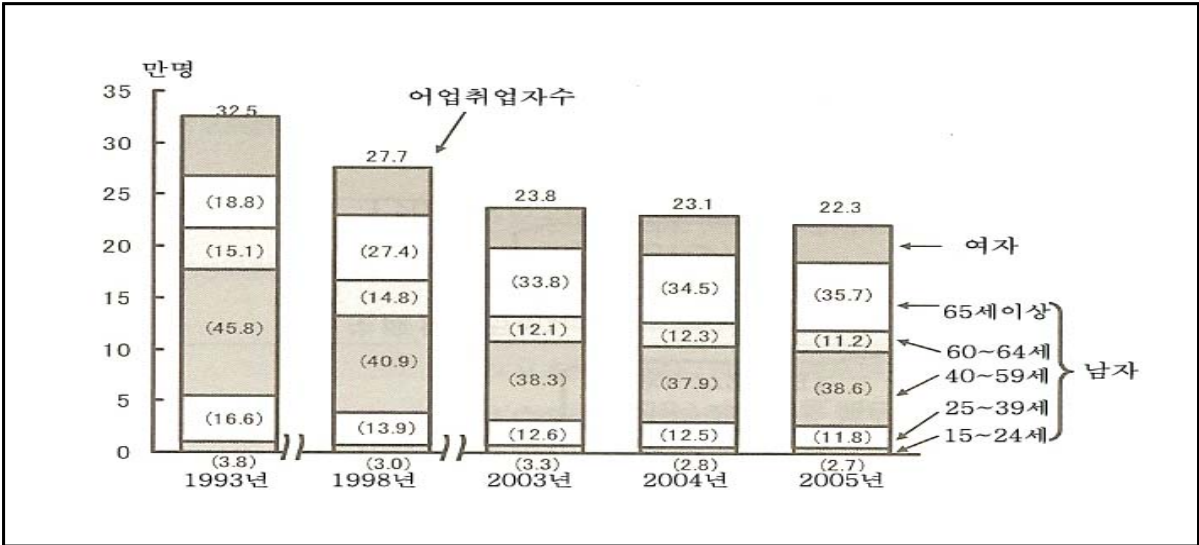




■ 어업취업자수 동향

- 일본의 어업취업자수는 감소되고 있으며 2005년에 약 22만 명.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남자취업자수는 65세 이상이 3분의 1. 청년층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
- 어업 신규취업자수는 연간 1,500명 정도

○ 어업취업자수와 연령구성(남자) 추이



(어업취업자수)

구분	1993년	1998년	2003년	2004년	2005년
총수	32.5	27.7	23.8	23.1	22.3
여자	5.7	4.6	3.9	3.8	3.6
남자	26.7	23.1	19.9	19.3	18.6

자료: 농림수산성 「어업취업동향통계연보」 (2002년)

「어업센서스」 (5,10,15년) 및

「어업취업동향조사보고서」 (2004년)

주: 퍼센트는 남자합계를 100%로 한 구성비율(%)이다.

## ○ 신규취업자수 추이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신규취업자수(명)	1,370	1,370	1,481	1,514	1,423	1,256
(참고)중, 신규참가자(%)	(16.9)	(13.8)	(15.5)	(16.9)	-	-
신규졸업 취업자 수(%)	43.4	42.7	35.2	33.0	-	23.4
이직 전입자(%)	56.6	57.3	62.0	64.2	-	4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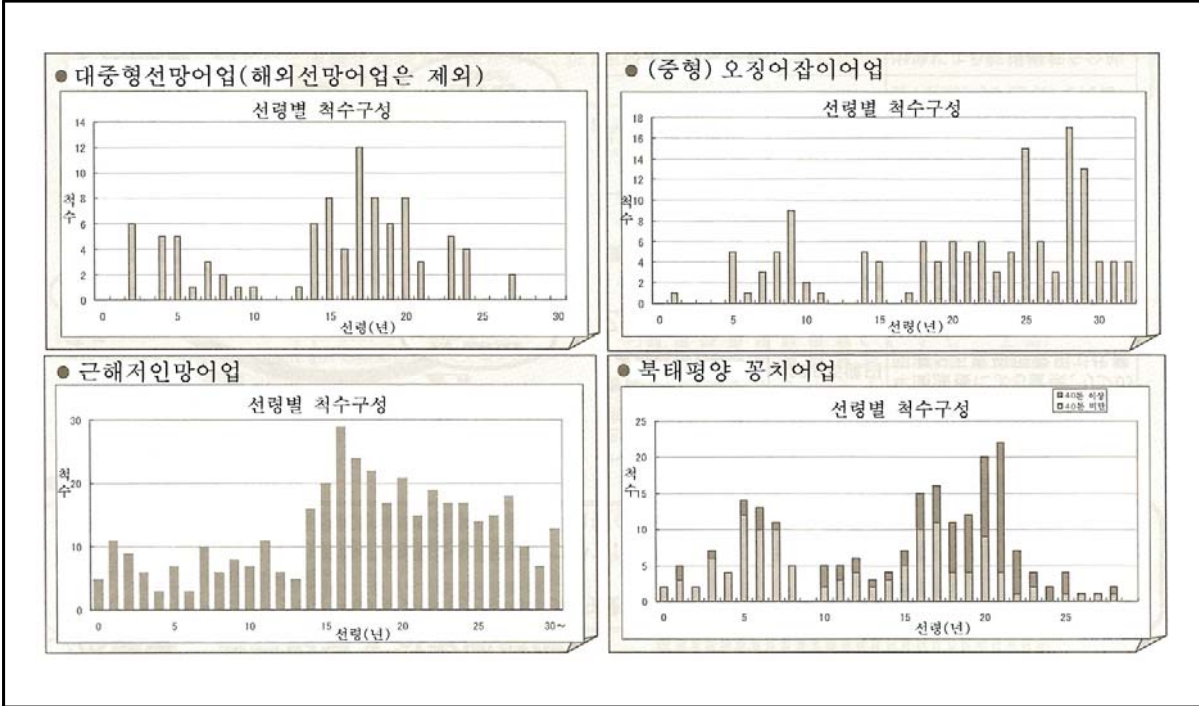
자료: 농림수산성 「농림어업의 신규취업자에 관한 정보수집」(2001년까지) 「신규 취업자조사결과」(2002,2003년), 도도부현이 실시하는 신규취업자에 관한 조사 추계(2004년) 및 (사)대일본수산회 조사(2005년)로 작성

- 주:1) 각 연도 신규취업자수는 전년도 6월부터 해당년도 5월까지의 새로운 어업에 취업한 자의 수이다.
- 2) 신규취업자수의 2002년 이후 수치에는 종래 포함되지 않았던 타 산업종사여가의 재택세대원의 신규취업을 포함하고 있어 2001년 이전과는 이어지지 않는다.
- 3) 신규참가자는 토지와 자금 등을 독자적으로 조달하며 어항경영을 개시한 경영 책임자이다.
- 4) 신규대학졸업자는 학교를 졸업한 자 혹은 졸업한 후 바로 연수를 완료한 자로 해당 연차에 새로이 어업에 취업한 자이다.
- 5) 이직전입자는 다른 사업에 주로 종사해 온 자로 해당 연차에 새로이 어업을 주업으로 삼은 자이다.
- 6) 2002년 이후 신규참여자, 신규 학교졸업자 및 이직전입자 비율은 신규취업자 중 회답이 있었던 자의 경우이다.
- 7) 2004년은 도도부현 조사에 따른 추계결과이므로 2003년과 2004년은 이어지지 않는다.
- 8) 2005년은 (사)대일본수산회에 의한 앙케이트 조사결과이므로 2004년과 2005년은 이어지지 않는다.

■ 어선의 고령화

○ 어선의 선체나이가 높아지고 있어 경영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체력이 저하 되고 있다. 대체어선확보가 중요한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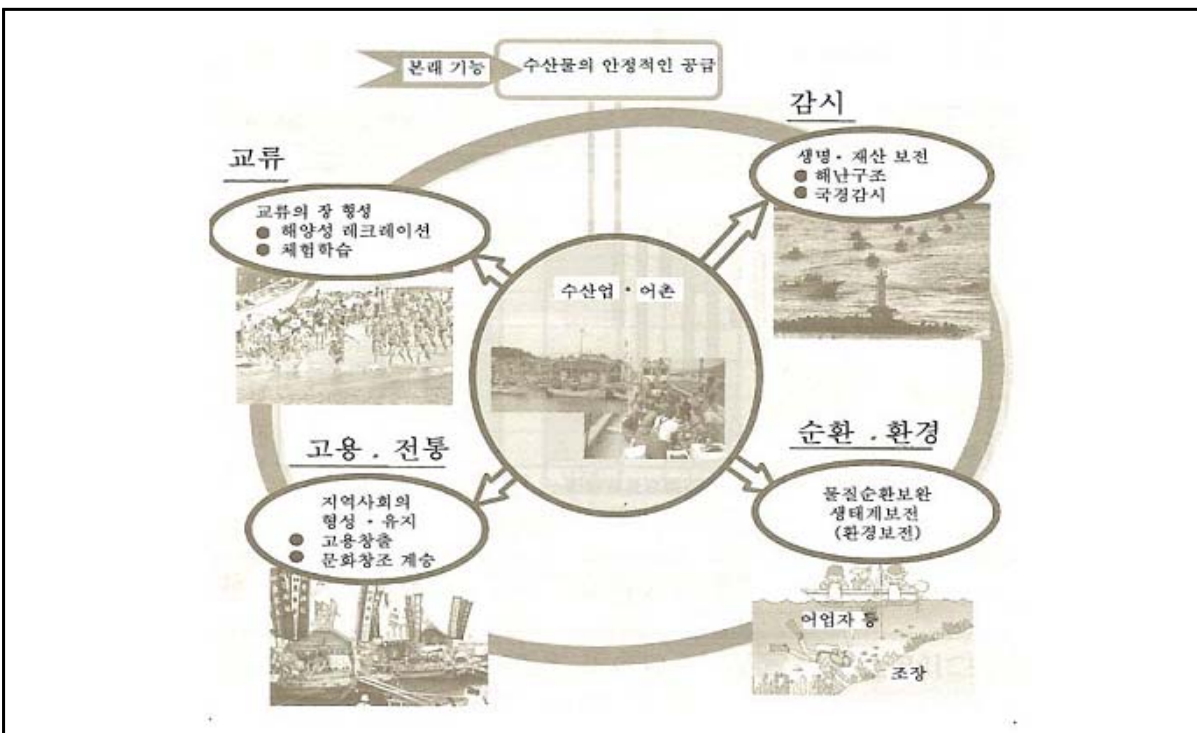
○ 주된 어업종류에서의 어선별 척수구성



■ 수산업 · 어촌이 갖는 다면적인 기능

- 수산업 · 어촌에는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본래적 기능 외에 물질순환 보완, 환경보전, 생명재산보전 등의 다면적인 기능도 있다.
- 수산업 · 어촌의 다면적인 기능의 내용 및 평가는 2004년 8월 일본학술회의가 농림수산대신에게 보낸 답신(「지역환경·인간생활과 관련된 수산업 및 어촌의 다면적인 기능의 내용 및 평가에 관하여」) 으로

○ 수산업 · 어촌의 다면적 기능



○ 수산업 · 어촌이 갖는 다면적인 기능의 평가사례(시산)

기능	지표 · 사례	비고
물질순환의 보완기능(재생자원화 리사이클 기능)	22,675억 엔	연간 어획에 의한 질소, 인의 회수를 하수처리비 용으로 대체
환경보전기능	60,898억엔 1,602억 엔 847억 엔	어패류 등의 해수정화를 하수처리로 대체 해변, 어항, 해저청소비용 어부림 식수에 의한 효과산출
생태계보전기능	2,157억 엔 5,527억 엔	간석의 수질정화를 하수처리(COD제거)비용으로 대체 조장의 수질정화를 하수처리비(질소, 인 회수)로 대체
생명재산보전기능 (국경감시기능 등)	2,017억 엔	출어에 대한 감시기능을 공적기관이 대체
방재 · 구원기능	6억 엔	기름제거비용
보양 · 교류 · 교육기능	13,846억 엔	어촌방문여비

주) 평가액은 (주)미츠비시 종합연구소에 의한 시산(2004년)

### 3. 정책시책의 방향성

#### (1) 수산자원의 회복 · 관리추진

##### ○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등에서의 자원관리

◦ 자원수준에 맞춰 어획을 실현한다는 관점에서 기존 어업법 등에 의한 규제와 함께 TAC제도와 TAE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도모하고 있다.

##### ○ 자원이회복을 위한 대처

[TAC(Total Allowable Catch(어획 가능량)제도]

◦ 어획량의 상한선을 정하여 관리하는 제도

<대상어종>

꽂치, 정어리, 고등어류, 전갱이, 명태, 오징어, 바다참게

[TAE(Total Allowable Effort(어획노력 가능량)제도]

◦ 특정 해역·어업종류·기간에서의 조업척 일수에 상한선을 설정하여 어획노력량을 관리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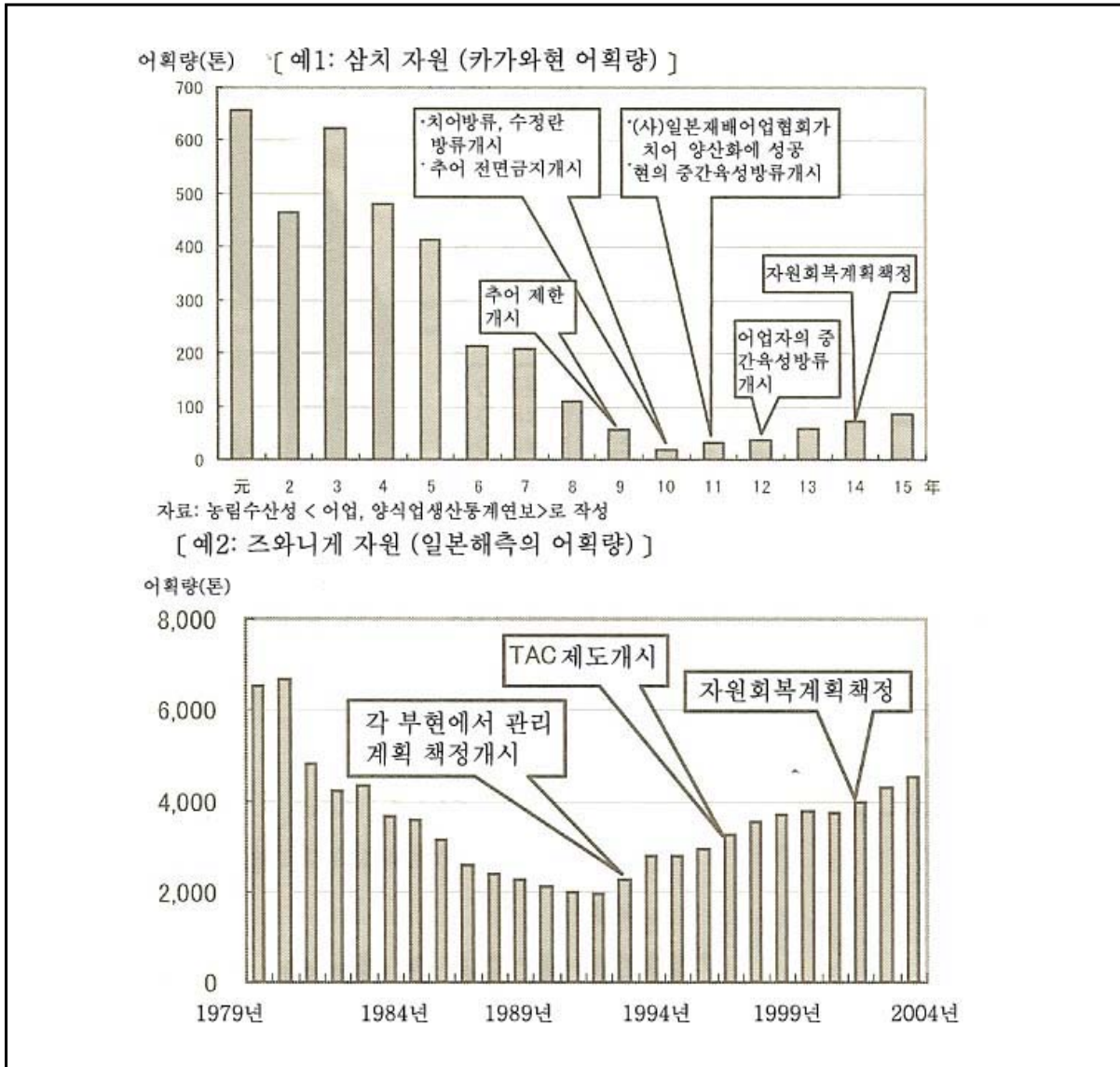
<대상어종>

붉은 가자미, 까나리, 줄가자미, 삼치, 자지복, 참가자미, 문치가자미, 물가자미, 화살오징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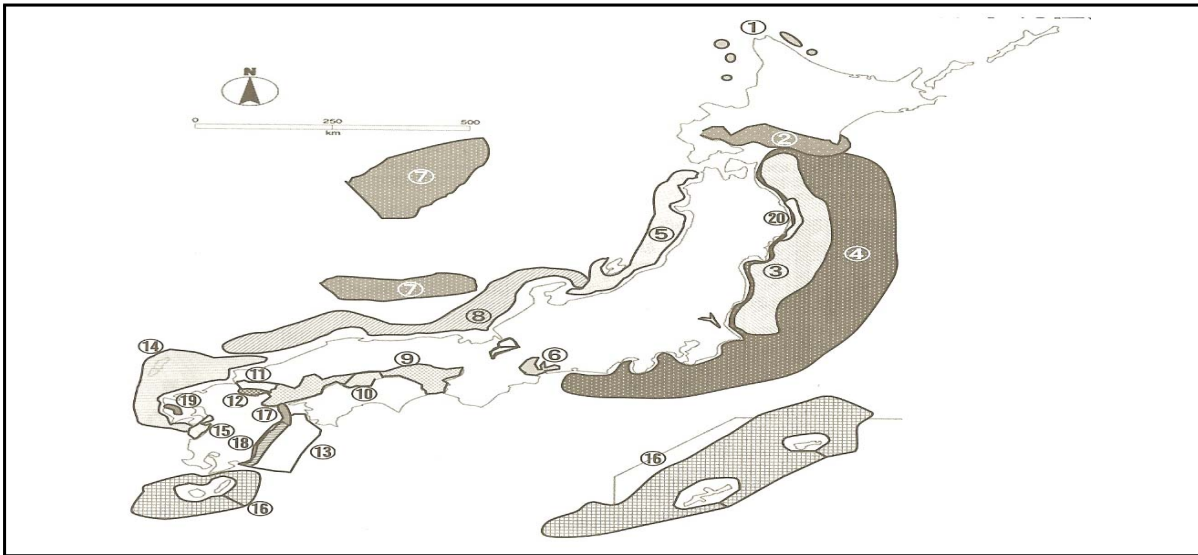
[자원이회복계획]

- 감선, 휴어 기타 어획노력량 삭감, 치어방류, 어장환경보전 등 국가(혹은 도도부현)가 작성하는 계획(자원이회복계획)하에 자원이회복에 대한 대처 추진
- 2005년도부터는 기존의 특정어종에 착안한 자원이회복계획과 어업종류에 착안한 많은 어종에 걸친 포괄적인 자원이회복계획을 작성
- 지금까지 20여개 자원이회복계획(35어종) 책정완료  
(2006년 3월 현재)

○ 자원의 회복의 예



○ 실시중인 자원회복계획의 개략(2006년 3월말 현재)



① 소우야해 협곡 까나리자원회복계획

(2004년 4월 22일 공표)

- 대상자원: 까나리
- 대상어업 종류 : 근해저인망어업
- 계획내용 : 어선감소, 조업기간단축, 휴어일 설정

② 에리모이 서해지역 마츠카와 자원회복계획

(2005년 3월 10일 공표)

- 대상자원 ; 마츠카와
- 대상어업 종류 : 자망어업, 소형정치망어업 등
- 계획내용 : 소형어 채취 제한, 치어방류

③ 태평양 북부 근해성 가자미류 자원회복계획

(2003년 3월 10일 공표)

- 대상자원 : 줄가자미, 버드나무가자미, 홍살치, 휘안광
- 대상어업 종류 : 근해저인망어업, 소형선박저인망어업
- 계획내용 : 보호구역 설정 등

④ 마사파 태평양계군 자원회복계획

(2003년 10월 23일 공표)

- 대상자원 : 마사파
- 대상어업 종류 : 대중형 선망어업 등
- 계획내용 : 휴어 혹은 어선감소로 조업 총일수 감소



⑤일본해 북부 참가자미, 도루묵 자원회복계획

(2003년 7월 1일 공표)

- 대상자원 : 참가자미, 도루묵
- 대상어업 종류 : 근해저인망어업, 소형어선저인망어업, 자망어업, 소형정치망어업
- 계획내용 : 어선감소, 휴어기간, 보호구역 설정, 개량어구도입, 소형어 재방류 등

⑥이세만·미카와만 소형어선저인망어업대상 자원회복계획

(2002년 8월 13일 공표)

- 대상자원 : 자지복, 갯가재, 아나고
- 대상어업 종류 : 소형어선저인망어업
- 계획내용 : 소형어의 채취제한, 휴어기간 설정, 치어방류 등

⑦일본해 근해 게 자원회복계획

(2005년 4월 7일 공표)

- 대상자원 : 게
- 대상어업 종류 : 일본해 게 어업, 게 바구니 어업
- 계획내용 : 휴어, 어선감소, 어구개량 등

⑧일본해 서부 적가자미(바다참게)자원회복계획

(2002년 9월 6일 공표)

- 대상자원 : 적가자미(바다참게)
- 대상어업 종류 : 근해저인망어업, 소형어선저인망어업
- 계획내용 : 보호구역확대, 개량어구 도입 등

⑨ 삼치 세토내해계군 자원회복계획

(2002년 4월 12일)

- 대상자원 : 삼치
- 대상어업 종류 : 흘림망어업 등
- 계획내용 : 휴어기간 설정, 망눈 확대, 어획량제한, 치어방류 등

⑩ 멸치 세노내해계군 자원회복계획

(2005년 3월 31일 공표)

- 대상자원 : 멸치
- 대상어업 종류 : 유인망어업
- 계획내용 : 휴어기간 설정, 정기적인 휴어일 설정

## ⑪ 소형기선저인망어업 대상종(가자미류, 넙치, 새우, 갯가재)자원회복계획

(2002년 11월 19일 공표)

- 대상자원 : 문치가자미, 도다리, 돌가자미, 넙치, 참새우, 갯가재, 가자미
- 대상어업 종류 : 소형기선저인망어업
- 계획내용 : 소형어 채취제한, 어구개량, 휴어기간 설정, 치어방류 등

## ⑫ 오오이타현 토요마에해 바지락 자원회복계획

(2004년 3월 26일)

- 대상자원 : 바지락
- 대상어업 종류 : 소형기선저인망어업 등
- 계획내용 : 금어기간 설정, 채취어 길이제한, 대형치어방류, 자원공급어장조성 등

## ⑬ 화살오징어 태형양계군(남부) 자원회복계획

(2004년 11월 4일 공표)

- 대상자원 : 화살오징어
- 대상어업 종류 : 근해저인망어업
- 계획내용 : 어선감소, 보호구역설정(협의 중)

## ⑭ 큐슈, 야마구치키타니시해역 자지복 자원회복계획

(2005년 4월 15일 공표)

- 대상자원 : 자지복
- 대상어업 종류 : 자지복연승어업
- 계획내용 : 휴어, 소형어 채취제한, 치어방류 등

## ⑮ 쿠마모토현 바지락 자원회복계획

(2005년 3월 30일 공표)

- 대상자원 : 바지락
- 대상어업 종류 : 조개잡이어업
- 계획내용 : 채취어 길이제한, 어획량제한 등

## ⑯ 미나미니시제도해역 마치류 자원회복계획

(2005년 4월 15일)

- 대상자원 : 청도미, 하마도미, 히메도미, 오오히메
- 대상어업 종류 : 저어일체잡이어업, 저위연승어업
- 계획내용 : 보호구역 설정

⑰ 오오이타현 토요일아토 수도지역 참새우자원회복계획

(2005년 8월 4일 공표)

- 대상자원 : 참새우
- 대상어업 종류 : 소형기선저인망어업, 건망어업
- 계획내용 : 어류채취기간 설정, 채취어 길이 제한, 대형치어방류 등

⑱ 미야기 해역 썸뱅이 자원회복계획

(2005년 8월 9일 공표)

- 대상자원 : 썸뱅이
- 대상어업 종류 : 주로 썸뱅이 연망어업을 포함하는 전체어업
- 계획내용 : 금어기간 설정, 채취어 길이 제한, 금어구역 설정 등

⑲ 나가사키현 오오무라만 해역 해삼 자원회복계획

(2005년 8월 30일 공표)

- 대상자원 : 해삼
- 대상어업 종류 : 소형기선저인망어업 해삼어업
- 계획내용 : 금어기간 설정, 체중제한, 그물망 규제, 금어구역 설정 등

⑳ 이와테현 넙치 자원회복계획

(2006년 2월 27일 공표)

- 대상자원 : 넙치
- 대상어업 종류 : 자망어업, 근해저인망어업, 정치망어업, 기타어업
- 계획내용 : 소형어채취규제, 자망눈 규제검토 등

: 광역종 : 국가가 작성

: 지역종 : 도도부현이 작성

○ 수산 에코라벨링

○ 지속가능한 어업에서 얻어지는 어획물을 소비자가 선택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제품에 표시를 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2005년 FAO(국제식량농업기관)은 가이드라인을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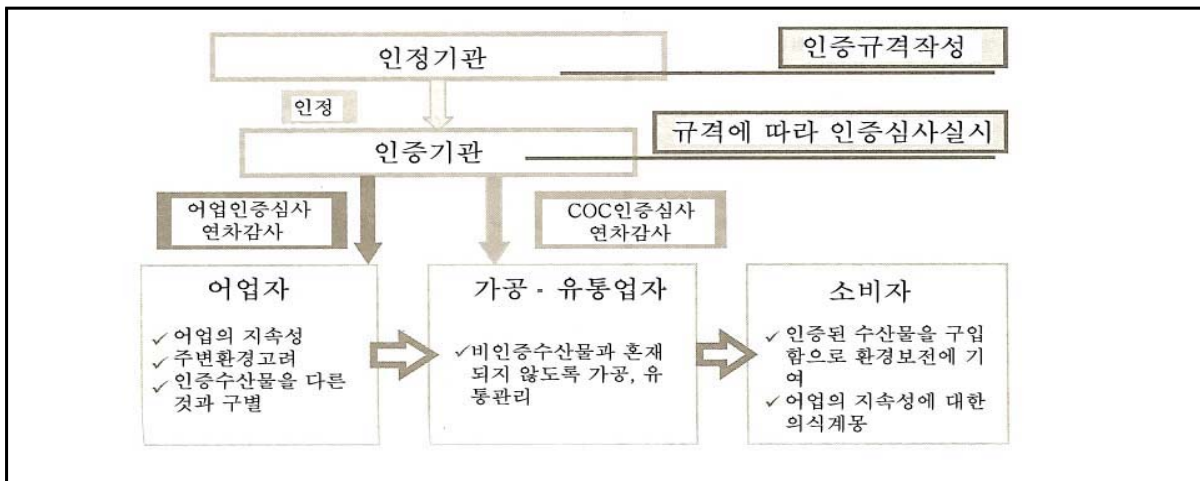
○ 이와 같은 정세 하에서 여러 국가에서는 에코라벨링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i. 에코 라벨링이란

- 전용 로고마크와 함께 상품이 일정한 환경기준(예를 들면 고갈자원어획이 아닌 등)에 적합한 어업에서 생산되었다는 취지를 제품패키지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ii. FAO가이드라인 개요

- FAO는 다음과 같은 제삼자 인증시스템을 제창한다.



iii. 구미 등 여러 국가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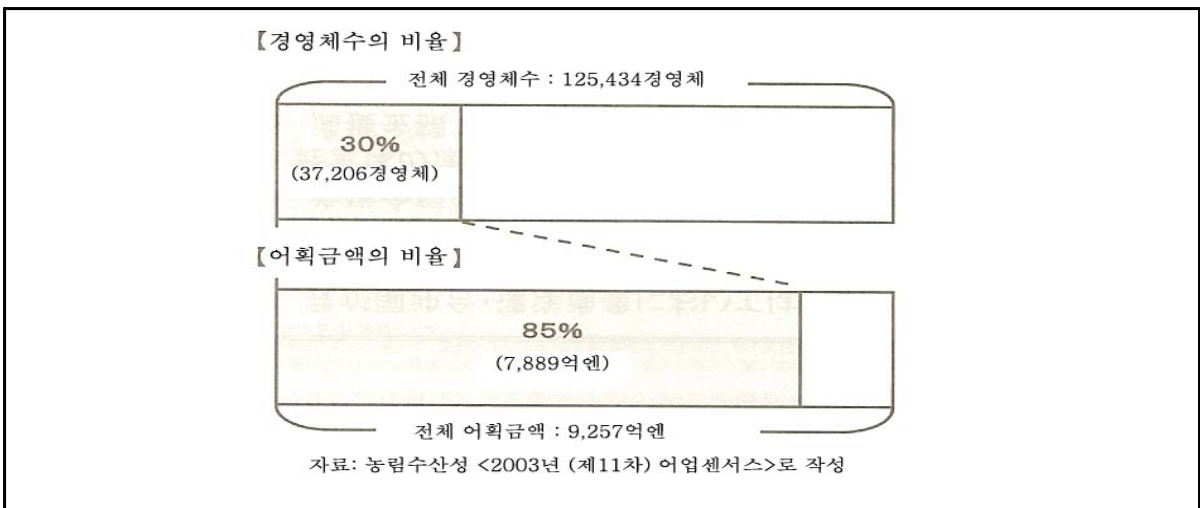
- EU와 미국 등에서는 FAO가이드라인 채택안을 받아 현재 정부차원의 대응방향을 검토 중이다. 또한 에코라벨링은 지속가능한 어업추진뿐 아니라 소매사업자에게 있어서는 상품의 차별화를 도모함으로써 환경의식을 갖는 소비자층을 겨냥하는 기업전략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미의 일부 민간조직이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곳도 있다.
- 예를 들면, 1996년에 WWF(세계자연보호기금)과 유니리버가 인정기관인 MSC(해양관리평의회·본부영국)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알라스카의 연어 등 300건 이상의 어업제품에 대한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MSC 구조는 FAO가이드라인에 준거한다.

(2) 미래전망확립과 국제경쟁력이 있는 경영체 육성 ·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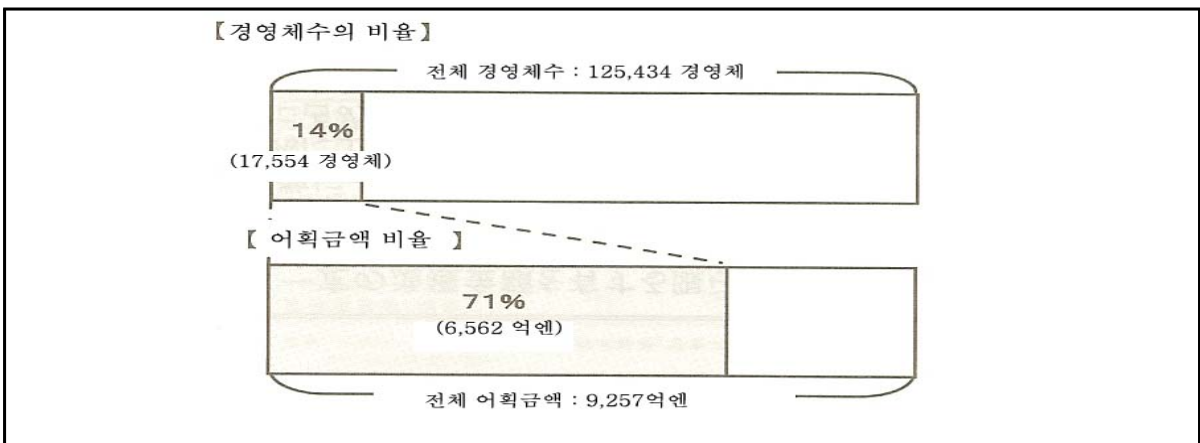
○ 일정한 어획금액을 갖는 어업 경영체의 위상(연안어업)

- 일본 연안어업은 일정한 어획금액을 갖는 한 어업경영체가 생산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상황
- 예를 들면
  - 어획금액 500만 엔 이상의 어업경영체수가 전체 경영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이지만, 이들 어업 경영체의 어획금액이 전체 어획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85%에 이르는 상황
  - 어획금액 1000만 엔 이상의 어업 경영체수가 전체 경영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4%이지만, 이들 어업 경영체의 어획금액이 전체 어획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71%에 이르는 상황 (수치는 2003년)

◦ 연안어업생산에서 어획금액 500만 엔 이상인 어업 경영체의 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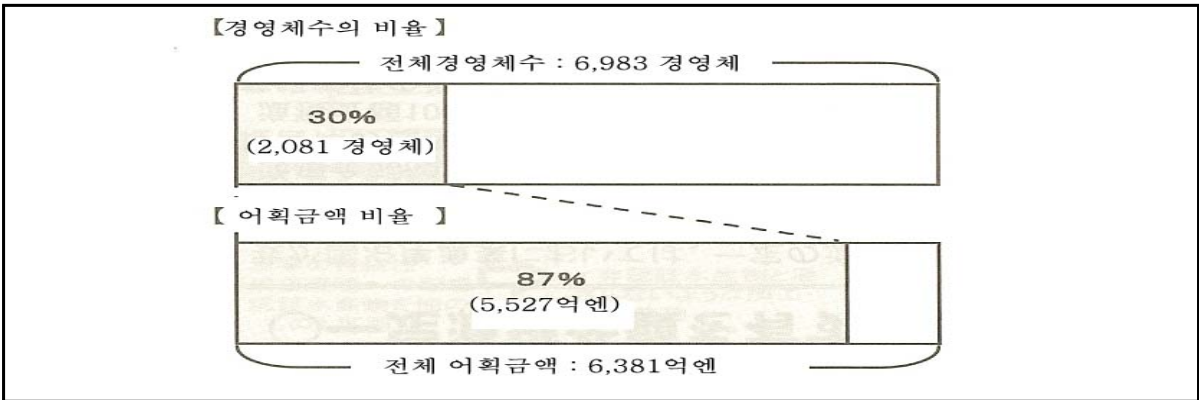
◦ 연안어업생산에서 어획금액 1000만 엔 이상인 어업 경영체의 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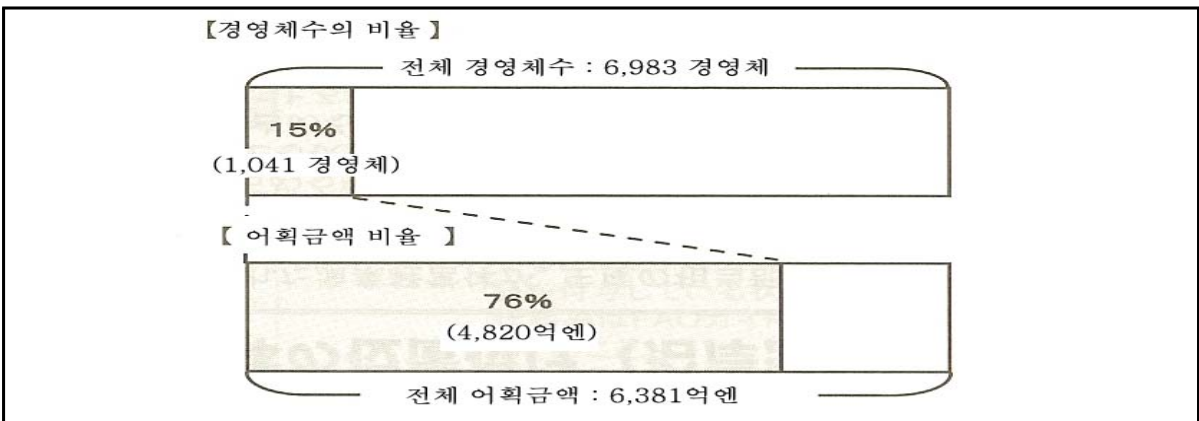
○ 일정한 어획금액을 갖는 어업 경영체의 위상(근해·원양어업)

- 일본 근해·원양어업은 연안어업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어획금액을 갖는 한정된 어업경영체가 생산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
- 예를 들면
  - 어획금액 5000만 엔 이상인 어업경영체수가 전체 경영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이지만, 이들 어업 경영체의 어획금액이 전체 어획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87%에 이르는 상황
  - 어획금액 1억 엔 이상인 어업경영체수가 전체 경영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5%이지만, 이들 어업 경영체의 어획금액이 전체 어획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76%에 이르는 상황 (수치는 2003년)

◦ 근해·원양어업생산에서 어획금액 5000만 엔 이상인 어업 경영체의 위상



◦ 근해·원양어업생산에서 어획금액 1억엔 이상인 어업 경영체의 위상



(3)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가공·유통·소비시책의 현상

○ 수산물 산지시장의 재편·통합의 현상

- 수산물산지시장의 대다수는 어업협동조합을 개설하고 있으나 어업협동조합 그 자체의 규모가 작은 것도 있어 규모가 영세하고 취급상품의 질과 양이 불안정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대응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다.
- 따라서 국가는 산지시장통합이라는 기본적인 생각과 목표상, 적절한 운영을 위한 유의점 등을 정리한 「수산물산지시장통합 및 경영합리화에 관한 방침」(수산청 장관통달)을 2001년 3월 정하여 도도부현에 시장재편정비를 계획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다.
- 「통합방침」은 2010년 산지시장수를 약 500개로 만들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05년 6월 시점에서의 시장수가 876으로 통합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 2003년 취급 고 계층별 산지시장수

(개설자별)

	1억 미만	1억~5억미만	5억~10억미만	10억~20억미만	20억~30억미만	30억~50억미만	50억 이상	총수
지방공공단체	1	4	2	12	3	10	20	52
어업협동조합	170	299	107	83	33	17	23	737
어업협동조합연합회	1	2	5	6	3	3	1	21
회사	9	27	21	13	4	5	15	94
개인	4	2	0	1	0	0	0	7
총계	135	334	135	115	48	35	59	911

자료: 농림수산성 「어업센서스」

주) 본 조사에서 시장이라는 것은 어선으로 인한 수산물의 직접양육이 있으며, 제1차단계의 양육이 이루어지는 시장 및 어선의 직접양육이 없더라도 육송으로 생산지에서 수산물을 반입 받아 제1차 단계의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1996년 전어련에 의한 산지시장 취급규모별 수지상황조사에 따르면 연간 취급액이 10억 엔 미만은 적자, 10억 엔 이상은 흑자로 「산지시장통합방침」에서도 최저규모의 목표를 12억 엔으로 삼고 있다.

◦ 수산물 산지시장수 및 취급량·금액·매수업자 추이

	1993년	1998년	2003년	2005년6월 말	2010년 목표
시장수	1,041	985	911	876	약500
거래량(만톤)	787	610	478	-	-
거래금액(억엔)	20,183	16,913	13,852	-	-
1시장당 거래금액(억엔)	19	17	15	-	-
매수업자수(업자)	40,956	37,533	32,567	-	-
1시장당 매수업자 수(업자)	39	38	36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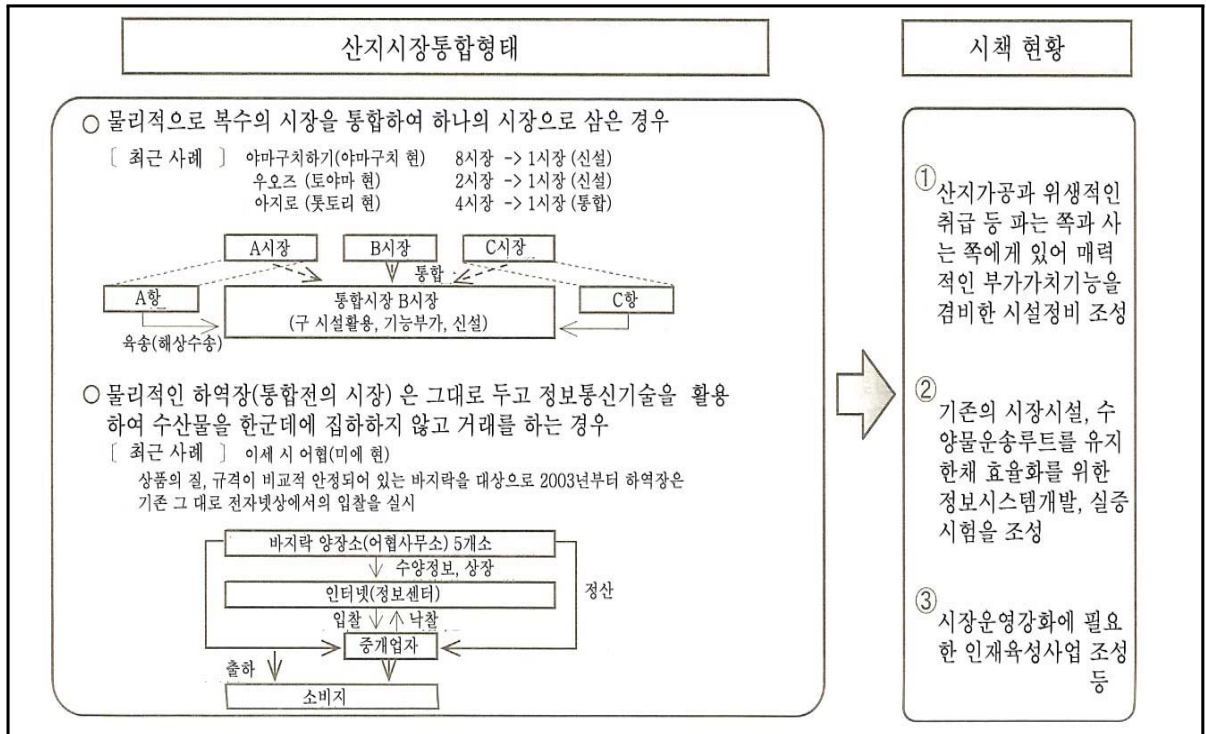
자료: 1993년~2003년 데이터는 농림수산성 「어업센서스」로 작성  
그 밖의 것은 수산청조사

주: 수산물 산지시장수는 중앙도매시장을 제외한 시장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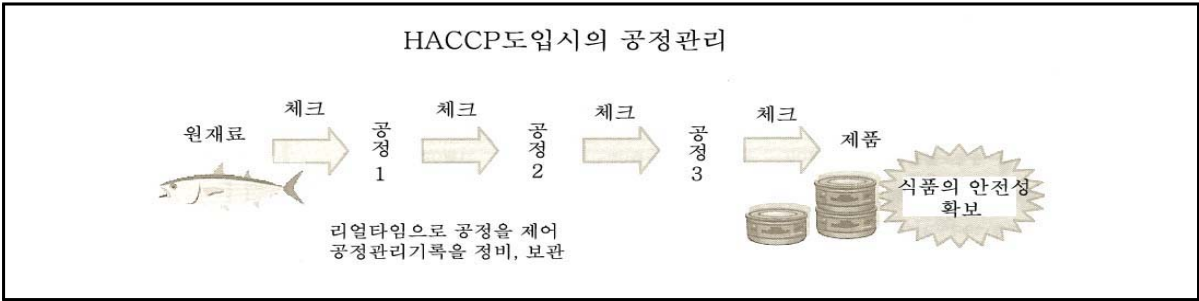
○ 수산물 산지시장의 통합을 위한 대처

○ 통합을 위한 관계자의 합의형성을 위하여 통합 메리트를 최소한으로 한 창의력을 시행하고 있는 산지도 보이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대처로의 지원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 HACCP 시스템

-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위해분석중요관리점)의 약자로 식품의 원재료에서 최종제품에 이르는 제조공정에서 중점적인 관리 포인트를 정하여 위해(보통 생각하여 병과 상처를 일으키는 생물적, 화학적, 물리적요인)에 관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다.
- HACCP에 의한 위생관리는 기존의 최종제품의 채취검사와는 달리 식품의 제조공정의 모든 각도에서 위해를 예측하고 관리함으로써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 발생을 방지 혹은 감소시키는 위생관리 방법이다.



■ 수산가공업에서의 HACCP인정기업수의 추이 ■

(연도 말 현재)

인정기관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후생노동성	대 EU	9	9	11	11	12	19	17
	대미(對美)	48	56	57	62	67	85	85
	마루총	10	14	16	22	27	29	30
	소계	67	79	84	95	106	133	132
(사)대일본수산회	대미	10	27	53	61	72	83	96
기타 민간기관	대미 등				14	25	32	45
합계		77	106	137	170	203	248	273

자료: 수산청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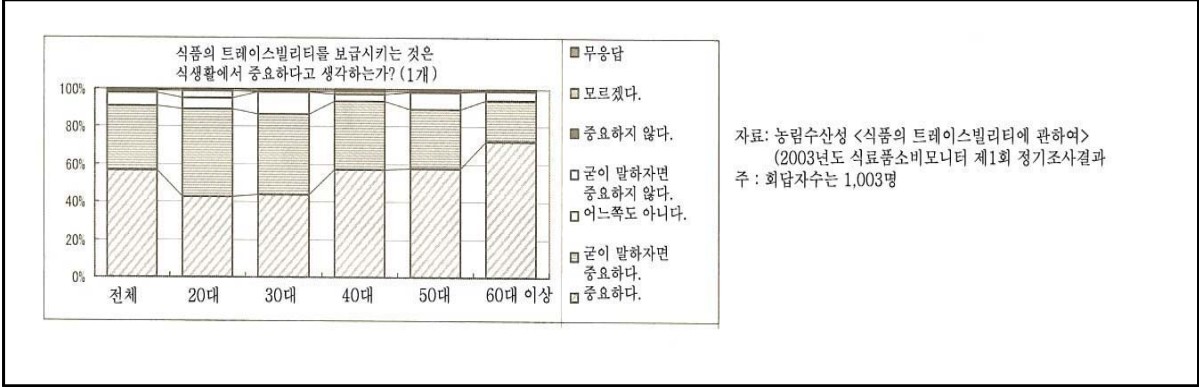
- 주:1) 마루총 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종합위생관리제조과정승인제도(일본판HACCP)
- 2) 「기타 민간기관」은 일본에서의 HACCP심사등록을 하고 있는 ISO심사등록기관 등으로 부터 청취

HACCP 도입 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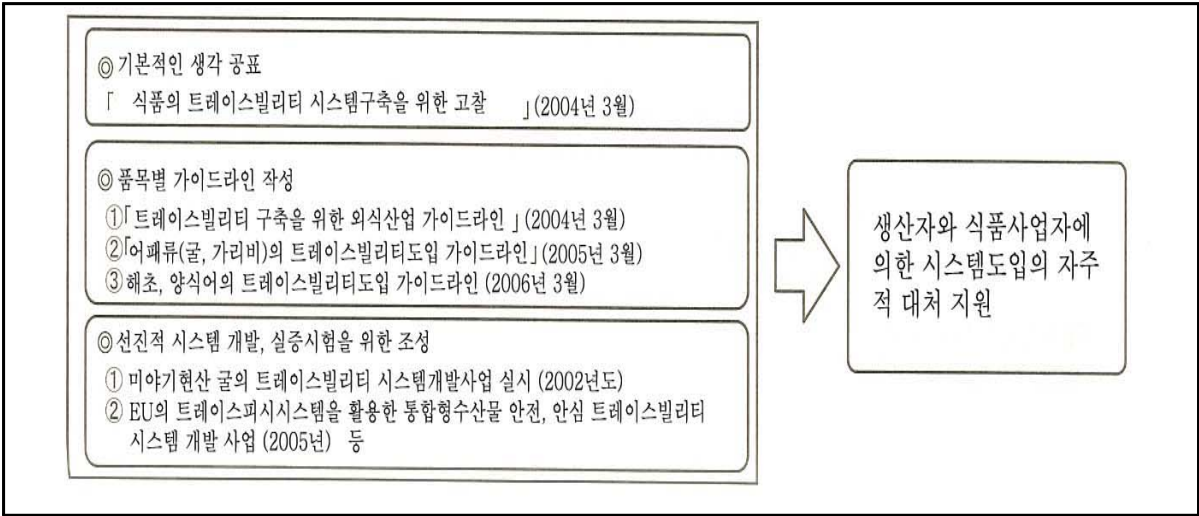
- 바로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조업상태를 모니터링함으로써 리얼타임으로 공정을 제어하여 최종제품 출하시에는 이미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합리적인 시스템이다.
- 공정관리기록을 정비, 보관함으로써 스스로 품질, 위생관리결과가 적정한지를 나중에 확인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드러내 스스로 제품의 안전성을 나타낼 수 있다.

○ 수산물의 트레이스빌리티 도입을 위한 대처

◦ 트레이스 빌리티의 중요성에 관한 소비자의식에 따라 국가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식품으로서의 특성과 생산 · 유통실태에 관한 가이드라인책정과 시스템개발의 조성으로 인한 민간의 자주적인 대처를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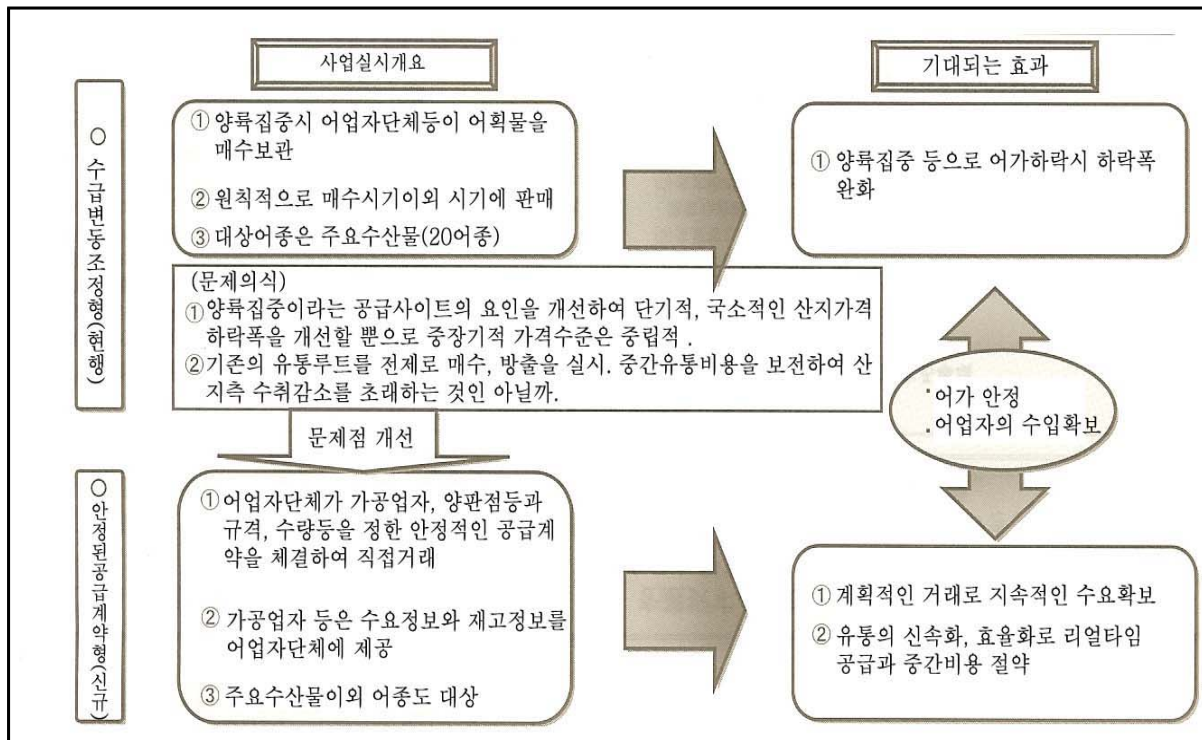


◦ 농림수산성에 의한 트레이스빌리티 시스템도입 촉진 등(수산물관련)



○ 수산물조정보관사업 활용에 의한 유통구조개선

- 수산물조정보관사업은 양륙이 집중되기 쉬운 수산물의 특성을 완화하며,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생산자의 수입확보를 위한 유통구조개혁은 유효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 따라서 2006년부터 산지가 수용자를 요구하는 종류, 규격, 수량의 수산물을 수요자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 일정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조정보관사업을 활용하여 산지와 수요자와의 직접거래를 추진



○ 식생활 육성 · 어식 보급으로의 대처

-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식(食)」에 관한 지식과 「식」을 선택하는 힘을 습득하여 건전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인간을 육성할 수 있는 「식육」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식생활 육성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식육기본법에 따라 2006년 3월에 「식육추진기본계획」을 결정. 계획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이 대상.

○ 식생활육성추진기본계획의 개요(사항 발췌)

**제1 식생활육성추진과 관련된 시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

국민의 심신건강증진과 풍요로운 인간형성  
 음식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이해  
 식생활육성추진운동전개  
 아이들의 식생활육성에서의 보호자, 교육관계자 등의 역할  
 음식과 관련한 체험활동과 식생활육성추진활동실천  
 전통적인 음식문화, 환경과 조화를 이룬 생산 등으로의 배려 및 농어촌의 활성화와 식료자급을 향상으로의 헌신 등

**제2 식생활육성추진목표와 관련된 사항**

- 아침식사를 거르는 국민의 비율  
 (아이들 4% → 0%, 20대 남성 30%, 30대 남성 23% → 15%)
- 학교급식에서 지역산물을 사용하는 비율(21% → 30%)
- 「식사밸런스가이드」 등을 참고로 식생활을 영위하는 국민의 비율(60%)
- 식생활육성추진과 관련한 볼런티어의 수(20% 증)
- 교육 품 대처가 시행되고 있는 시정촌의 비율(60%)
- 식품의 안전성에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국민의 비율(60%)
- 추진계획을 작성·실시하는 자치단체의 비율(도도부현 100%, 시정촌 50%)

**제3 식생활육성의 종합적인 촉진과 관련된 사항**

- (1) 가정에서의 식생활육성추진
- (2) 학교, 보육소 등에서의 식생활육성추진
- (3) 지역에서의 식생활개선을 위한 대처추진
- (4) 식생활육성추진운동전개
- (5)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교류의 촉진, 환경과 조화를 이룬 농림어업의 활성화 등
- (6) 음식문화계승을 위한 활동으로의 지원 등
- (7) 식품의 안전성, 영양 기타 식생활과 관련된 조사, 연구, 정보제공 및 국제교류 촉진

**제4 식생활육성추진과 관련된 시책 등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도도부현 등에 의한 추진계획의 책정촉진  
 기본계획의 검토 등

## 제 3 장 일본의 어항역사

### 1. 메이지 중기까지의 어항

- 일본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더욱이 근해는 어패류가 풍부하여 오래 전부터 어업을 경영하였고, 어식민족으로서 번창하여 연안 일대에 어업취락을 형성해 왔다.
- 에도시대가 되면서 그물어법이 발달하여 다량의 어획이 가능하게 되어 단지 식량으로서 뿐만 아니라 청어나 정어를 비료로서 이용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수산물의 거래가 활발하게 되어 각지에 수산물 도매상이 생겨났다.
- 또 각 번<sup>1)</sup>(藩)에서도 어업의 진흥을 도모하였으므로 연안 어촌의 수는 점차 증가하여 갔다.
- 그러나 당시의 어업형태는 소규모였고 어선도 소형으로 대부분 내해·내항 등 천연의 해안·곶의 음지·하구 등을 어선의 계류, 어획물의 양륙장소로서 이용하고 있었다.
- 그러나 「文祿年間(1595년경), 이즈(伊豆)(시즈오카현) 이토(伊東)에서는 성주 히코사카 소오사카베(彦坂小刑部)가 방파제 및 그 외의 시설을 축조했다」라는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을 시작으로
  - ① 寛永年間(1630년경)~ 延宝年間(1675년경)에 걸쳐서 토사(土佐)(코우치현)의 구츠로(津呂)항과 무로토(室戸)항이 코우치번(藩)의 집정 노나카 겐잔(野中兼山)에 의해 개발되었다. 동 어항은 거친 바다에 접한 굴착식 어항의 표본으로 오늘의 어항기초가 되었다.
  - ② 享保年間(1720년경), 토사(土佐)(코우치현)의 산신(三津)항에서 이 지역의 타다스케노쥬(多田助之丞)가 혼자서 수축을 실시하였으며, 더욱이 延享元年(1744년), 文政 2년(1819년) 2회에 걸쳐서 현지의 포경업조합이 수축공사를 실시하였으나, 安政元年(1854년)의 대지진에 의해서 지반이 융기하여 항구의 기능을 소실했다.
  - ③ 寛政年間(1790년경), 히타치(常陸)(이바라키현) 나카미나토(那珂湊)에서 운하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1) 일본 역사에서 도쿠가와 시대[徳川時代 : 1603~1868]에 가신이나 영주들이 지배하던 봉토(封土).

- ④ 安政年年(1855년경), 안보우(安房)(치바현) 후나카타(船形)항에서 길이 55m(약 30間)의 제방이 축조 되었으나, 그 후의 파랑에 의해서 붕괴되었다. 그러나 이 제방은 메이지 26년(1894년)에 다시 마을비용으로 축조되어 최근까지 85m(47間)의 제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 ⑤ 文久 2년(1862년), 사츠마(薩摩) 번주 시마즈(島津)가 같은 번의 쿠시키(串木野)항의 수축공사를 실시하여 오세(小瀬)선류장을 쌓아 올렸다. 등의 수많은 기록이 남아 있다.
- 그러나 당시의 어업은 토쿠가와(徳川)막부에 의한 쇄국정책의 영향을 받아 전형적인 연안성의 어업으로 어선도 폭 2m 전후의 소형 일본식 목조선이 대부분으로 「어항」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디까지나 거주지의 「바닷가」 혹은 「포」라고 하는 개념에서 탈피하지 못하여 그 시설도 「파지(波止)」라고 불린 지극히 소규모의 사석제방이나 목조부두 정도에 머무르고 있었다.

## 2. 근대적 어항건설의 개막

- 근대적인 어항건설이 시작된 것은 메이지(明治) 후반부터이다. 정부는 메이지 33년(1900년)에 「원양어업 장려법」을 공포하여 연안어업으로부터 앞바다, 원양어업을 장려했으므로 어획기술, 항해방법의 진보 등과 함께 어선의 대형화, 동력화가 진행되어 앞바다, 원양어업도 발달하며 어획량도 급증하게 되었다. 이것에 수반하여 어선의 안전확보, 어획물 처리의 편리 등이 요구되었고 어항축조의 요구가 급속히 높아져 왔다. 메이지 37, 8년(1904, 5년) 러일전쟁의 결과, 사할린, 연해주 해역에 해외주재 일본인의 출어가 급증하면서부터 해외어업으로의 진출이 급격하게 발전하게 되었고, 메이지 41년(1908년) 일본에서 최초의 어항수축에 관한 요구로써 「이즈(伊豆)시키네(式根)섬에서의 어선 피난항 축설보조금 하부」라는 청원서가 제출되었으며 이것을 받아들인 정부는 국고 보조금 2만엔을 지출하였으며 도쿄, 치바, 카나가와, 시즈오카의 각 현에서도 각각 5만엔을 지출하여 메이지 43년(1910년)에 선류장을 축설했다. 이것이 어항수축에 대한 국고 조성의 시작이다.
- 이것을 계기로써 각지에서 어항수축에 관한 요구서가 각지에서 제출되었으므로 정부는 어선근거지의 현장답사를 계획하여 메이지 42년(1909년)부터 타이쇼 3년(1914년)까지 약 5년간에 200여곳의 어선근거지를 조사하였다.
- 또 한편으로 해외어항의 현지조사에 의한 기술도입을 검토하는 등, 메이지 43년

(1910년)에 「원양어업 장려법」의 개정안이 제26 제국의회를 통과하여 동년 3월 12일 법률 제20호로 공포되었다. 이 개정에 의해서 어항조사에 관한 비용이 동 장려비에서 지출되어 농상무성은 전국에 걸친 어항의 현장답사를 개시하는 한편, 수산국 기사 세키구치 시로(関口四良)를 원양어업 연습생으로서 메이지 45년(1912년) 및 타이쇼 2년(1913년) 2회에 걸쳐서 유럽에 파견하여 영국, 독일, 네델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등 어업을 자세히 조사하게 하고 또 그 시기에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개최된 만국항해회의에 출석시켜 어항에 관한 여러 문제의 연구를 실시하게 했다.

### 3. 어항수축 보조제도의 확립

- 이러한 내외 어항조사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농상무성은 타이쇼 3년(1914년), 전국적인 「어항망계획」과 이것에 대한 「어항수축보조 초안」을 입안하여 예산화를 요구하였으나 재정난으로 보류, 타이쇼 7년(1918년)에 간신히 「어항수축은 특별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 매년 예산에 의해서 고려한다. 사업계획은 내무성 및 농상무성이 협의 후 정하여 농상무대신이 실시한다.」라고 하는 테라우찌(寺内) 내각의 내각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동년부터 국고보조에 의한 본격적인 어항정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 그 해의 국고보조금은 27만엔으로 오나하마(小名浜)(후쿠시마현), 시라하마(白浜)(치바현), 노우(能生)(니가타현), 나키리(波切)(미에현), 아부라츠(油津)(미야자키현)의 각 어항이 착공되었고 다음 타이쇼 8년(1919년)에는 29만엔으로 하치노헤(八戸)(아오모리현) 등 7항, 타이쇼 9년(1920년)에는 26만엔으로 토미에(富江)(나가사키현), 타키(滝)(이시카와현) 등 9항, 타이쇼 10년(1921년)에는 23만엔으로 미사키(三崎)(카나가와현), 쿠시키노(串木野)(카고시마현) 등 11항, 타이쇼 11년(1922년)에는 22만엔으로 무로츠(室津)(코우치현) 등 12항, 타이쇼 12년(1923년)에는 23만엔으로 초오시(銚子)(치바현), 에토모(恵曇)(시마네현) 등 15항이 잇달아 착공되었다. 이것들은 당시 가장 필요한 비교적 대규모 어항들이었다.
- 한편 타이쇼 말기의 경제불황로 인한 농어촌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농어촌 진흥대책이 실시되었는데 그 일환으로 타이쇼 14년(1925년)에 「어업공동시설 장려규칙」이 성령 제21호로 공포되어 어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선류장, 양륙장 등 시설이 가설되었는데 이러한 시설에 대해 4할의 국고보조금이 지출되었다.
- 그러나 이것들은 주로 원양어업의 대형어선이나 연안어업의 소형어선에 대한 어



항이나 선류장이며, 그 중간적인 근해어업의 중소형어선에 대한 소규모어항의 조성이 남아 있었다.

- 쇼와 4년(1929년)에 이르러 농촌 진흥비 중에 「소규모어항 설비비」가 계상되어 소규모어항의 수축뿐만 아니라 육상시설도 조성되어 대규모어항, 소규모어항, 선류장을 3개의 기둥으로 하는 어항정비에 대한 국고보조제도가 일단 확립되게 되었다.
- 이외 홋카이도에서도 타이쇼 8년(1919년)부터 척식비로 도청 직영의 어항수축사업이 실시되었으며 선류장에 대해서는 시정촌의 보조사업으로서 정비되었다. 또 사하린, 대만에서도 직영공사로서 어항정비가 이루어졌다.
- 또한 쇼와 7년(1918년)이후 3년에 걸쳐 경제불황대책으로서 「시국광구농업 토목비」가 계상되어 사회정책면이기는 하지만 어항, 선류장, 선양장에 대해 조성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어항시설의 보급 등에 끼친 영향은 크고 근대 어항발전에 하나의 초석이 되었다.

#### 4. 어항수축의 발전과 좌절

- 이렇듯 전쟁 전의 어항수축 역사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 타이쇼 7년(1918년)부터 실시된 대규모어항을 중심으로 하는 수축사업에서는 쇼와 15년(1940년)까지 총공사비 약 4,000만엔이 투자되었으며 그 중 1,500만엔이 국고보조로 전국의 대규모어항 60개항을 착공하여 그중 약 반수의 공사를 준공했다. 또 농어촌의 경제재건을 주목적으로 시작한 선류장, 선양장 시설의 축조는 타이쇼 14년(1925년)부터 쇼와 7년(1932년)까지 공사비 371만엔(국고보조 113만엔)을 가지고 130개소를 완성. 쇼와 11년(1936년)에 산업장려비와 예산비목이 변경된 후에도 쇼와 15년(1940년)까지 공사비 500만엔을 들여 134개소의 설비를 완성하였다.
- 그 후 쇼와 4년(1929년)부터 시작된 중소규모어항의 설비 및 어항육상시설의 조성은 쇼와 13년(1938년)까지 전공사를 완료. 총공사비 410만엔(국고보조 약 168만엔)으로 17항을 완성하고 쇼와 7, 8, 9년(1932, 33, 34년)의 시국광구농업 토목비의 일환으로서 실시된 소규모어항 및 선류시설도 소규모어항 총공사비 약 615만엔(국고보조 약 307만엔)으로 40개항, 선류장, 선양장시설은 동 1,442만엔(동 1,082만엔)으로 1,172개소라는 막대한 성과를 올렸다.
- 이 시기에는 어업의 발전이 드디어 눈 뜨게 되어 북쪽은 북양으로부터 남쪽은 남방양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어장에 일본의 어선이 웅비하게 되어 수산국 일본

의 깃발이 휘날리게 되었지만 이것에 수반하여 어항의 정비도 일단 활발하게 늘어갔다. 그러나 쇼와 12년(1937년) 중일전쟁을 계기로 해서 전시체제가 점차 강화되기 시작하여 시멘트, 강재 등의 자재부족이나 노동력의 감소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고, 쇼와 16년(1941년) 태평양전쟁의 발발에 의해서 원양어선은 모두 군에 징용 되는 등, 어업자체가 쇠퇴의 길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모처럼 성운을 타고 있던 어항의 수축도 쇼와15~16년(1940~41년)경을 경계로 일시에 좌절상태로 빠져들게 되었다.

## 5. 전후의 부흥(공공사업으로 지정)

- 종전 후, 일본의 재건부흥에 있어서 우선 부과된 큰 문제는 국민의 허기를 달래는 식량의 확보였다. 그 중에서도 동물성 단백질 식량확보의 면에서 어업의 부흥이 중시되게 되었다. 종전시 쇼와 20년(1945년)의 총어획량은 182만톤으로 전쟁전의 약 40%, 어선세력은 총척수 28만척으로 전쟁전의 약 76%, 총톤수에서는 반이하로 침체되었으며 특히 대형선박의 타격이 컸다. 또 어장은 치시마(千島), 사할린, 시나(支那)해 등의 호어장을 죄다 잃은 뒤, 점령정책에 의해 맥아더 라인이 설치되어 극도의 제약을 받았다. 한편 어업의 생산기반인 어항의 방파제, 안벽 등의 기본시설, 또는 냉장고, 제빙소 등의 기능시설은 전쟁으로 인하여 괴멸 상태였다.
- 여기서 정부는 GHQ(일본 점령하의 연합군 총사령부)에 대해 산업부흥과 식량확보의 차원에서 「어업진흥책의 확립」에 대해 강하게 요구함과 동시에 스스로도 쇼와 21년(1946년)에 재정용자에 의한 「부흥금융공고」를 설립, 어선 건조, 어업 시설 및 어항시설의 건설 등에 대한 용자를 실시했다.
-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인정한 GHQ는 맥아더 라인의 완화를 순차로 실시함과 동시에 어업진흥을 중요한 국책으로 취하게 되었다.
- 한편 GHQ는 쇼와 21년(1946년) 5월 「일본공공사업원칙」을 정하고 공공사업으로 실시해야 할 사업의 기본적 지침을 나타내었으나, 정부(제1차 요시다 내각)는 이것을 근거로 하여 쇼와 21년(1946년) 9월의 내각회의에서 「공공사업처리요강」을 결정했다.
- 이것에 의해서 종래 산업장려비로 취급하여 온 어항수축 및 선류장, 선양장의 조성 및 재해복구사업은 공공사업에 포함할 수 있게 되어, 쇼와 22년(1947년)부터 농림성 소관의 어항정비 및 그 재해복구사업을 공공사업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또 종래 내무성 소관으로 홋카이도 척식비로 실시되었던 홋카이도의 어항수축사업도 쇼와 22년(1947년) 내무성이 해체됨에 따라 농림성으로 이관하여 함께 정비하게 되었다.

- 이와 같이하여 어항법이 제정된 쇼와 25년(1950년)까지 총사업비 약 39억엔(국비 18억엔)을 가지고 총계 567개항의 어항정비사업이 진행되었다.
- 쇼와 25년(1950년)에는 「미국 대일원조물자 등 처리특별회계」가 신설되었다. 본래 이 자금은 국채상환이나 수출촉진, 경제재건 등에 그 용도가 지정되었지만, 이 자금을 이용하여 어항정비를 촉진할 것을 GHQ 등에 제의한 결과, 이것이 인정되어 미사키(三崎), 아이즈(焼津), 나가사키(長崎) 3개어항에 총액 2억 3천만엔이 25년도 예산에 상정되었다.
- 이러한 동안, 사단법인 어항협회가 설립되고 얼마 되지 않은 쇼와 23년(1948년) 7월에는 농림성 수산국이 외국(外局)에서 수산청으로 승격됨과 동시에 어항행정을 담당하는 어항과가 신설되어 여기에 어항정비추진의 기반이 확립되었던 것이다.

## 6. 어항법의 제정과 이후의 어항

- 이러한 정세 아래에서 일본의 어업은 쇼와 24년(1949년) 9월 맥아더 라인의 제3차 확장, 동 24년 「가다랑어 · 참치어업 단속규칙」의 제정, 동 12월 「어업법」의 개정, 다음 25년(1950년) 동법 시행, 동 25년 5월 맥아더 라인 제4차 확장(모선식 참치어업허가) 등에 의해서 급속히 부흥하여 어선세력도 증가, 쇼와 22년(1947년)에는 동력 어선척수가 8만 8천척으로 전쟁 전 최고인 7만 1천척(1939년)을 23.4% 상회하게 되었다. 또 어획량도 큰 폭으로 증대했다. 이와 함께 어업의 생산기반으로서의 어항정비확충의 요구가 전국적으로 높아짐과 동시에 종래의 방식에 의한 정비가 아닌 장기적인 시야에 서서 계획적이며 유기적인 어항정비의 기본방침을 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강하게 요청되었다.
- 이시기에 어업진흥상 어항정비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쇼와 22년(1947년) 5월에 소집된 제1회 국회 중의원 수산위원회의 어항대책 소위원회에서 전국의 어항실정조사를 실시하는 「어항조사회」를 설치하고 「어항법」의 제정에 대해서 검토하게 하였다. 어항조사회는 쇼와 23년(1948년) 8월 이래, 어항법안 작성에 대해서 제1차 초안을 작성하여 쇼와 24년(1949년) 12월 2일, 중의원 수산위원회에 제출했다. 동 위원회는 각 조항을 심의, 제2차 초안을 정리하여 GHQ의 승낙을

요구하였으나, GHQ에서 수정을 요구, 수정 및 검토를 하여 제3차 초안을 정리 제출하여 가까스로 GHQ의 승인을 얻을 수 있었다. 동 위원회는 쇼와 25년(1950년) 4월 이것을 어항법안으로 정식으로 의결하여 중의원 본회의에 상정했다.

- 중의원에서는 동 법안을 의원제안으로서 단시간에 가결, 또한 참의원도 원안대로 가결하여 쇼와 25년(1950년) 5월 2일, 법률 제137호로 공포되었다.
- 이 「어항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어항의 지정, 제3장 어항심의회, 제4장 어항수축사업, 제5장 어항의 유지관리, 제6장 잡칙, 제7장 벌칙,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항사상 획기적이며 의원 입법으로서 성립한 어항정비사업의 기본법이다.
- 이것에 의해서 어항수축사업은 국회의 승인을 얻은 정비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가장 먼저 법의 적용을 받는 어항의 지정이 필요했다. 거기서 쇼와 25년(1950년) 8월 28일 제1회 어항심의회에 어항 지정을 위한 답신을 요구, 다음해 26년(1951년) 6월 29일, 제1차 지정에 의하여 홋카이도의 75개항(제1종 어항 34항, 제2종 어항 18항, 제3종 어항 12항, 제4종 어항 11항)이 고시되었으며 이후 수차례에 걸쳐 지정절차를 실시하여 헤세이 9년말(1997년)에는 2,944항에 이르렀다.
- 이렇게 해서 「어항법」에 근거한 최초의 어항정비계획은 법률 공포와 함께 책정 작업에 착수, 쇼와 26년(1951년) 5월 제10회 국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이것이 제1차 어항정비계획으로 총사업비 544억엔으로 450항을 정비하는 것이었다.
- 이래 헤세이 5년(1993년)도까지 순차대로 8차에 걸칠 계획이 책정되어 헤세이 6년(1994년)도부터는 제9차 어항정비장기계획이 발족했다. 이것은 헤세이 13년(2001년)도까지의 8년간 총사업비 3조엔으로 수축사업 480항, 개수사업 약 720항 및 국부개량사업 등의 기본적 시설정비 외, 어항어촌의 환경정비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획기적인 계획이었다.
- 이시기에 어항행정조직도 쇼와 34년(1959년) 4월에는 어항부가 창설되어 계획과, 건설과의 2과제로 되었으며 더욱 이 쇼와 48년(1973년) 6월에는 방재해안과가 설치되어 1부 3과제로 되었다.

## 제 4 장 일본어항어장정비법

### 1. 총칙

#### ■ 이 법률의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에 의한 수산물의 공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과의 조화에 배려하면서 어항어장정비사업을 종합적이고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어항의 유지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아울러 풍요롭고 살기 좋은 어촌의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어항의 의의

제2조 이 법률에서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업근거지가 되는 수역 및 육역과 시설의 총합체로서 제6조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 ■ 어항시설의 의의

제3조 이 법률에서 「어항시설」이란 다음에 제시하는 시설로서 어항의 구역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

##### ① 기본시설

- 가. 외곽시설 : 방파제, 방사제, 방조제, 도류제, 수문, 갑문, 호안, 제방, 돌제 및 흙벽
- 나. 계류시설 : 안벽, 물양장, 계선부표, 계선말뚝, 잔교, 부잔교 및 선양장
- 다. 수역시설 : 향로 및 박지

##### ② 기능시설

- 가. 수송시설 : 철도, 도로, 주차장, 교량, 운하 및 헬리포트
- 나. 항행보조시설 : 향로표식 및 어선의 입출항을 위한 신호시설 및 조명시설
- 다. 어항시설용지 : 각종 어항시설의 부지
- 라. 어선어구보전시설 : 어선보관시설, 어선수리장 및 어구보관수리시설
- 마. 보급시설 : 어선을 위한 급수, 급방, 급유 및 급전시설
- 바. 증식 및 양식용시설 : 수산종묘생산시설, 양식용이료 보관·조제시설, 양식용 작업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 사. 어획물의 처리, 보장 및 가공시설 : 하역소, 하역기계, 축양시설, 수산창고, 야적장, 제빙, 냉동 및 냉장시설과 가공장
- 아. 어업용 통신시설 : 육상무선전신, 육상무선전화 및 기상신호소
- 자. 어항후생시설 : 어항관계자의 숙박소, 욕장, 진료소 기타의 복리후생시설
- 차. 어항관리시설 : 관리사무소, 어항관리용 자재창고, 선박보관시설 기타의 어항의 관리를 위한 시설
- 카. 어항정화시설 : 공해방지를 위한 도수시설 기타의 정화시설
- 타. 폐유처리시설 : 어선내에서 발생한 폐유의 처리를 위한 시설
- 파. 폐선처리시설 : 어선의 파쇄 기타의 처리를 위한 시설
- 하. 어항환경정비시설 : 광장, 식재, 휴게소 기타의 어항환경정비를 위한 시설

#### ■ 어항어장정비사업의 의의

제4조 이 법률에서 「어항어장정비사업」으로는 제1호에 명시하는 사업으로 국가가 시행하는 것, 또는 동호 또는 제2호에서 제시하는 사업으로서 지방공공단체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이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 ① 어항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보수 또는 제각, 어항 구역내의 토지 결괴의 방지 또는 어항 구역내에의 토사 유입의 방지, 기타 어항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 및 이것들의 사업 이외의 사업에서 어항에서의 오락 기타 공해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퇴적 배제, 오락수의 정화 기타 공해방지를 위한 사업
- ② 뛰어난 어장으로 형성되어야 할 상당규모의 수면에서 행하는 어초의 설치, 수산 동식물의 증식장 및 양식장의 조성 기타 수산동식물의 증식 및 양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및 어장으로서의 효용이 저하하고 있는 수면에서의 그 효용을 회복하기 위한 퇴적물의 제거 기타 어장의 보전을 위한 사업

#### ■ 어항의 종류

제5조 어항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제1종어항 : 그 이용범위가 지방의 어업을 주로 하는 것
- 제2종어항 : 그 이용범위가 제1종어항보다 넓고, 제3종어항에 속하지 않은 것
- 제3종어항 : 그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것
- 제4종어항 : 도서 기타 벽지에 있어서 어장의 개발 또는 어선의 피난상 특히 필요한 것

## 2. 어항의 지정

### (1) 제6조

- ① 제1종어항으로서 그 구역이 하나의 시정촌의 구역에 한하는 것은 시정촌장이 관계지방공공단체의 의견을 듣고 명칭 및 구역을 정하여 지정한다.
- ② 제1종어항으로서 그 구역이 둘 이상의 시정촌의 구역에 걸치는 것 및 제2종어항은 도도부현지사가, 관계지방공공단체의 의견을 듣고, 명칭 및 구역을 정하여 지정한다.
- ③ 그 구역이 둘 이상의 도도부현의 구역에 걸치는 제1종어항 및 제2종어항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수산대신이 수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또 관계지방공공단체의 의견을 듣고, 명칭 및 구역을 정하여 지정한다.
- ④ 제3종어항 및 제4종어항은 농림수산대신이 수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또 관계지방공공단체의 의견을 듣고, 명칭 및 구역을 정하여 지정한다.
- ⑤ 시정촌장 또는 도도부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어항에 대하여 사정의 변경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지방공공단체의 의견을 듣고, 당해지정의 내용을 변경하고 또는 당해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⑥ 농림수산대신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어항에 대하여 사정의 변경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또 관계지방공공단체의 의견을 듣고, 당해 지정의 내용을 변경하고, 또는 당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지정의 내용의 경미한 변경으로 농림수산대신이 미리 수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수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 ⑦ 시정촌장 또는 도도부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지정 또는 제5항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 어항의 구역을 정하고, 또는 이것을 변경코자 할 때는 당해어항의 구역에 대하여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⑧ 농림수산대신은 전항의 인가를 하고자 할 때는, 수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6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⑨ 농림수산대신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지정 또는 제6항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 어항의 구역을 정하고 또는 이것을 변경코자 할 때, 또는 시정촌장 또는 도도부현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지정 또는 제5항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 제7항의 인가를 하고자 할 때는 당해어항의 구역에 대하여 국토

교통대신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⑩ 시정촌장, 도도부현지사 또는 농림수산대신은 하천법(1964년 법률제167호)제3조제1항에 규정하는 하천의 하천구역 또는 해안법(1956년법률제101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해안보전구역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지정 또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당해어항의 구역에 대하여 당해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자 또는 당해해안보전구역을 관리하는 해안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⑪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지정 및 제5항 및 제6항의 변경 또는 취소는 고시로 한다.

## (2) 어항어장정비기본방침

### 제6조의2

- ① 농림수산대신은 어항어장정비사업의 추진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어항어장정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정해야 한다.
- ② 어항어장정비기본방침에서는 다음에 계기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 i. 어항어장정비사업의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
  - ii. 어항어장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실시에 관한 사항
  - iii. 어항어장정비사업의 시행상 필요한 기술적 지침에 관한 사항
  - iv. 어항어장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배려해야 할 환경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 v. 기타 어항어장정비사업의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 ③ 농림수산대신은 어항어장정비기본방침을 정하고자 할 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동시에 수산정책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농림수산대신은 어항어장정비기본방침을 정했을 때는 지체없이 이것을 공표해야 한다.
- ⑤ 농림수산대신은 정세의 추이에 따라 필요가 발생한 때는 어항어장정비기본방침을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 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어항어장정비기본방침의 변경에 대하여 준용한다.

## (3) 어항어장정비장기계획

### 제6조의3

- ① 농림수산대신은 어항어장정비사업의 종합적이고도 계획적인 실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어장정비기본방침에 맞게 어항어장정비 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이하 「어항어장정비장기계획」이라 한다.)의 안을 작성하고, 각의의 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어항어장정비장기계획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수산업 기반의 정비에 있어서의 과제에 적확에 대응하는 관점에서 계획기간에 관한 어항어장정비사업의 실시 목표 및 사업량을 정하기로 한다.
- ③ 어항어장정비장기계획은 수산물의 가공 및 유통개선의 동향 및 수산동식물의 증식 및 양식의 추진동향에 배려하여 정하기로 한다.
- ④ 농림수산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어항어장정비장기계획의 안을 작성하고자 할 때는 관계 도도부현지사 및 수산정책심의회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 농림수산대신은 어항어장정비장기계획에 관한 제1항의 각의 결정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이것을 공표해야 한다.
- ⑥ 어항어장정비장기계획은 수산업의 사정, 수산자원의 상황, 경제사정등의 변동에 따라서 필요가 생겼을 때는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 ⑦ 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어항어장정비장기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준용한다.

#### 제6조의4

- ① 국가는 어항어장정비장기계획의 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3. 수산정책심의회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 ■ 조사등

제13조

- ① 수산정책심의회는 공무원, 수산업자 또는 수산업에 관한 단체 기타의 관계자에 대하여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또는 관계인의 출두를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수산정책심의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무원, 수산업자 또는 수산업에 관한 단체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필요한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두를 요구받은 자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려비 및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 ■ 심의의 공개등

제14조

- ① 수산정책심의회는 어항어장정비기본방침 또는 어항어장정비장기계획에 관한 심의는 공개하여 행한다.
- ② 수산정책심의회는 전항의 심의에 이용되었던 자료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③ 수산정책심의회는 어항어장정비기본방침 또는 어항어장정비장기계획에 대하여 심의할 때 기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때는 공청회를 열 수 있으며, 또는 농림

수산대신의 지시 또는 수산정책심의회가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는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 4.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

##### ■ 어항의 정비계획

제17조

- ① 농림수산대신은 수산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치고, 또, 관계지방공공단체의 의견을 듣고 어항의 정비계획을 정하고 각의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 ② 내각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의 정비계획을 결정한 때는 이것을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의 어항의 정비계획의 변경은 전2항에 규정하는 수속에 준하여 행하기로 한다.
- ④ 내각은 매년도, 국가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제1항의 어항의 정비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 시행자

제18조

- ① 어항수축사업은 국가, 어항 소재지의 지방공공단체 또는 어항을 지구에 가지고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이 아니면 시행할 수 없다.

##### ■ 지방공공단체가 시행하는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

제17조

- ① 지방공공단체가 어항어장정비사업중 중요한 것이라 하여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하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제19조의3 제1항의 특정제3종어항에 관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어항어장정비기본방침에 의거하여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계획을 정하고, 지체없이

이것을 농림수산대신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지방공공단체는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확보함에 있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다른 지방공공단체와 공동하여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계획의 작성, 신고 및 공표를 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계획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에 관하여 목적, 그 시행에 관한 구역 및 공사에 관한 사항, 사업비에 관한 사항, 효과에 관한 사항 기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 ③ 지방공공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는 관계지방공공단체 및 관계어항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지방공공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는 미리 농림수산성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취지를 공고하고 당해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계획의 안을 당해 공고일부터 20일간 공중의 종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을 때는 당해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계획의 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동항의 종람기간만료일까지 당해지방공공단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⑥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있을 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는 당해 의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⑦ 농림수산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어항어장정비기본방침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는 당해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이것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⑧ 지방공공단체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는 지체없이 당해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을 행하여야 한다.
- ⑨ 농림수산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계획에 대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그 취지를 당해지방공공단체에 통지해야 한다.
- ⑩ 지방공공단체는 사정의 변경 기타 사유에 따라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계획의 변경(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미한 변경(이하 「경미한 변경」이라 한다.)을 제외한다.)을 했을 때는 지체없이 이것을 농림수산대신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공표해야 한다.
- ⑪ 전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계획의 변경(경미한 변경을 제외한

다.)에 대하여는 제3항에서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제6항까지의 규정에 의거할 필요가 없다.

- ⑫ 지방공공단체는 사정의 변경 기타 사유에 따라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제19조의3 제1항의 특정 제3종 어항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다음 항 및 다음 조제8항 및 제9항에 있어서 동일하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고, 또는 그 시행을 정지한 때는 지체없이 이것을 농림수산대신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폐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폐지한 취지, 그 이유 기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의정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시행을 정지한 취지, 그 이유 기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⑬ 지방공공단체는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고, 또는 그 시행을 정지하고자 할 때는 관계지방공공단체 및 관계어항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수산업협동조합이 시행하는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

제18조

- ① 수산업협동조합이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제19조의3 제1항의 특정 제3종 어항에 관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어항어장정비기본방침에 의거하여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계획을 정한 뒤, 농림수산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수산업협동조합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았을 때는 지체없이 당해허가에 관한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계획의 작성에 대하여는 전조제2항에서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동조제5항중 「당해지방공공단체」라는 것은 「당해수산업협동조합」으로, 동조제6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는」라는 것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을 하려면」으로 각각 대입하여 읽는 것으로 한다.
- ④ 수산업협동조합은 사정의 변경 기타 사유에 따라서 필요가 있을 때는 농림수산대신의 허가를 받아서 제1항의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계획의 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 ⑤ 수산업협동조합은 전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계획의 변경을 했을 때는 지체없이 이것을 공표해야 한다.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계획의 변경(경미한 변경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전조제3항에서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들에 의할 필요가 없다.
- ⑦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전조제5항중 「당해지방공공단체」라 있는 것은 「당해수산업협동조합」으로, 동조제6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는」 있는 것은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을 하려면」으로 각각 대입하여 읽는 것으로 한다.
- ⑧ 수산업협동조합은 사정의 변경 기타 사유에 따라서 필요가 있을 때는 농림수산대신의 허가를 받아서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고, 또는 그 시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조제1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⑨ 수산업협동조합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서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고 또는 그 시행을 정지했을 때는 지체없이, 폐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폐지한 취지, 그 이유 기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의 정지인 경우에 있어서는 시행을 정지한 취지, 그 이유 기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⑩ 농림수산대신은 제1항, 제4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데 대해서는 미리 수산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기준에 의거하여야 한다.

#### ■ 국가가 시행하는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

##### 제19조

- ① 국가가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수산대신은 어항어장정비기본방침에 의거하여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지체없이 이것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계획의 작성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동조제5항중 「당해지방공공단체」라 있는 것은 「농림수산대신」으로 대입하여 읽는 것으로 한다.
- ③ 농림수산대신은 사정 변경 기타 사유에 따라서 필요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 제1항의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계획의 변경(경미한 변경을 제외한다.)을 했을 때는 지체없이 이것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계획의 변경(경미한 변경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7조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의하지 않아도 된다.

- 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제17조제5항중 「당해지방공공단체」라 있는 것은 「농림수산대신」으로 대입하여 읽기로 한다.
- ⑥ 농림수산대신은 사정의 변경 기타 사유에 따라서 필요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고 또는 그 시행을 정지한 때는 지체없이, 폐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폐지한 취지, 그 이유 기타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시행 정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시행을 정지한 취지, 그 이유 기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⑦ 전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의 폐지 또는 그 시행의 정지에 대하여는 제17조제1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토지 또는 수면의 측량등

제19조의2

- ① 지방공공단체 또는 국가는 제17조제1항 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계획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는 5일전에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 타인의 토지 또는 수면에 출입, 측량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을 하는 자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해야 한다.
-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국가는 지체없이 동항의 출입, 측량 또는 검사에 의해서 실제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④ 전3항의 규정은 제17조제10항 또는 전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계획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 특정제3종어항에 관한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

제19조의3

- ① 특정제3종어항(제3종어항중 수산업의 진흥상 특히 중요한 어항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에 대하여도 그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계획은 농림수산대신이 어항어장정비기본방침에 의거하여 이것을 정한다.
- ② 농림수산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서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계획을 정한 때는

지체없이 이것을 공표해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계획의 작성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에서 제5항까지, 및 전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17조제3항중 「관계지방공공단체」라 있는 것은 「당해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될 자, 관계지방공공단체」로, 동조제5항중 「당해지방공공단체」라 있는 것은 「농림수산대신」으로 각각 대입하여 읽는 것으로 한다.
- ④ 수산업협동조합이 제1항의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계획에 의거하여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수산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 농림수산대신은 사정의 변경 기타 사유에 따라서 필요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 제1항의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계획의 변경(경미한 변경을 제외한다.)을 한 때는 지체없이, 이것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⑥ 전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계획의 변경(경미한 변경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7조제3항에서 제5항까지, 또 전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것은 요하지 않는다.
- ⑦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제17조제4항중 「관계지방공공단체」라 있는 것은 「당해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될 자, 관계지방공공단체」로, 동조제5항중 「당해지방공공단체」라 있는 것은 「농림수산대신」으로 각각 대입하여 읽는 것으로 한다.
- ⑧ 농림수산대신은 사정의 변경 기타 사유에 따라서 필요가 있을 때는 제1항의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계획에 의거한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당해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 또는 그 시행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당해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당해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의 전부또는 일부의 폐지 또는 그 시행의 정지를 하여야 한다.
- ⑨ 농림수산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하고자 할 때는 당해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의 시행자, 관계지방공공단체 및 관계어항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⑩ 농림수산대신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한 때는 지체없이 폐지의 요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폐지의 요구를 한 취지, 그 이유 기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의 정지의 요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시행 정지의 요구를 한 취지, 그 이유, 기타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 비용의 부담 및 보조

제20조

- ① 국가가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국가는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당해어항의 어항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담시킬 수 있다.
- ② 국가 이외의 자가 제3종어항 또는 제4종어항에 대하여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호의 기본시설의 수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표의 상란 및 중란에 정하는 구분에 따라 각각 그 하란에 정하는 비율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시행자	어항의 종류	국가의 부담비율
지방공공단체	제3종어항	북해도에 있어서는 100분의 70(계류시설에 대하여는 100분의 60), 기타의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50(특정제3종어항의 외곽시설에 대하여는 3분의 2)
	제4종어항	북해도에 있어서는 100분의 70(계류시설에 대하여는 3분의 2), 기타의 지역에 있어서는 3분의 2(계류시설에 대하여는 100분의 50)
수산업협동조합	제3종어항	북해도에 있어서는 100분의 90(계류시설에 대하여는 100분의 75), 기타의 지역에 있어서는 특정제3종어항에 대하여는 100분의 70(계류시설에 대하여는 100분의 60), 기타의 제3종어항에 대하여는 100분의 60(계류시설에 대하여는 100분의 50)
	제4종어항	북해도에 있어서는 100분의 90(계류시설에 대하여는 100분의 80), 기타의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75(계류시설에 대하여는 100분의 60)

- ③ 국가 이외의 자가 제1종어항 또는 제2종어항에 대하여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제3조제1호의 기본시설의 수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표의 상란에 정하는 구분에 따라 각각 그 하란에 정하는 비율을 가지고 당해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의 시행자에 보조한다.

시행자	국가의 보조비율
지방공공단체	북해도에 있어서는 100분의 70(계류시설에 대하여는 100분의 60), 기타의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50
수산업협동조합	북해도에 있어서는 100분의 90(계류시설에 대하여는 100분의 75), 기타의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50

- ④ 국가 이외의 자가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국가는 전2항에 규정하는 것의 외에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해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당해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⑤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고, 또는 보조하게 되는 금액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 한다.

■ 다른 공작물과 효용을 겸하는 어항시설의 공사비용의 부담

제20조의2

- ① 어항시설로 다른 공작물과 효용을 겸하는 것의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의 비용 부담에 대하여는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의 시행자와 당해공작물의 관리자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의 시행의 허가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의 시행의 위탁

제21조

- ①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의 시행의 허가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농림수산대신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②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수산업협동조합인 때는 미리 농림수산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의 인가 및 전항후단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제18조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삭제(2001. )

■ 시행자에 대한 명령 및 허가의 취소

제23조

- ① 농림수산대신은 사정의 변경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 또는 그 시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② 농림수산대신은 수산업협동조합이 하는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률, 이 법률에 의거한 명령 또는 이들 법령에 의거하여 하는 행정청의 처분에 위반하고, 또는 완료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당해 수산업협동조합이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계획에 있어서 정해진 기한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때는 당해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의 시행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토지, 수면 등의 사용

제24조

- ①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가 있을 경우는 5일전에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통지하여 타인의 토지 또는 수면에 출입하고 또는 이것을 일시 재료를 놓아두는 자리로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산업협동조합의 시행에 관련한 때에는 출입,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수면의 구역 또는 사용의 기간을 정하여 미리 농림수산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하는 자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어항수축사업의 시행자는 지체없이 동항의 출입 또는 사용에 의하여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고 또는 상당한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 국가가 시행하는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에 의하여 발생한 토지 등의 관리 및 처분

제24조의2

- ① 국가가 시행하는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에 의하여 발생한 토지 또는 공작물은 농림수산대신이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또는 처분한다.
- ② 농림수산대신은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항의 토지 또는 공작물로 어항시설인 것의 관리를 어항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③ 농림수산대신이 제1항의 토지 또는 공작물을 어항관리자에게 양도할 경우의 양도의 대가는 어항관리자가 부담한 비용의 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범위내에서 무상으로 한다.

## 5. 어항의 유지관리

### ■ 어항관리자의 결정

#### 제25조

- ① 다음의 각호에 제시하는 어항의 어항관리자는 당해 각호에 정하는 지방공공단체로 한다.
  - i. 제1종어항으로서 그 소유지가 하나의 시정촌에 한하는 것 당해어항의 소유지의 시정촌
  - ii. 제1종어항 이외의 어항으로서 그 소유지가 하나의 도도부현에 한하는 것 당해어항의 소유지의 도도부현
  - iii. 전2호에 제시하는 어항 이외의 어항 농림수산대신이 수산정책심의회 의논을 거쳐 정하는 기준에 따라, 또한 관계지방공공단체의 의견을 듣고, 당해어항의 소재지의 지방공공단체중에서 고시로 지정하는 하나의 지방공공단체
-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항소재지의 지방공공단체는 수산정책심의회 의논을 거쳐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하여 당해지방공공단체중 하나의 지방공공단체를 당해 어항의 어항관리자로서 선정하고,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를 농림수산대신에 신고할 수 있다. 이것을 변경코저 할 때도 같다.
- ③ 농림수산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수리한 때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어항관리자를 고시한다.

### ■ 어항관리자의 직책

#### 제26조

- ① 어항관리자는 어항관리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적정하게 어항의 유지, 보전 및 운영 기타 어항의 유지관리를 하는 책임을 지는 외에 어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및 통계자료의 작성을 하는 것으로 한다.

### ■ 어항관리회

#### 제27조

- ① 어항관리자는 어항에 어항관리회를 둘 수 있다.
- ② 어항관리회는 어항관리자의 자문에 응하고, 어항의 유지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관리회를 설치한 어항의 어항관리자는 어항관리규정의 제정 기타 어항의 유지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어항관리회의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④ 어항관리회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어항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 삭제

제29조 삭제

제30조 삭제

제31조 삭제

제32조 삭제

제33조 삭제

■ 어항관리규정의 제정 및 변경

제34조

- ① 어항관리규정에 있어서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어항관리자가 관리하는 어항시설의 유지, 보전 및 운영 기타 당해어항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어항관리자는 어항관리규정을 제정하고 또는 변경한 때는 지체없이 이것을 공시하는 동시에 농림수산대신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농림수산대신은 어항의 유지관리의 적정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어항관리자에 대하여 어항관리규정에 대하여 필요한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 ④ 농림수산대신은 수산정책심의회회의 의논을 거쳐 모범어항관리규정예를 정할 수 있다.

## ■ 이용의 대가의 징수

### 제35조

- ① 어항관리자는 어항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어항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사용료, 수수료, 점용료 등 그 이용의 대가를 징수할 수 있다.

## ■ 토지, 수면 등의 사용 및 수용

### 제36조

- ① 제24조의 규정은 어항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가 있을 경우에 준용한다.
- ② 어항관리자는 비상재해를 위하여 급박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현장에 있는 자를 복구, 위해방지 기타의 업무에 협력시키고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좌에 계기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 i. 필요한 토지, 수면, 선박 또는 공작물을 사용하는 일
  - ii. 토석, 죽목 기타의 물건 (전항에 계기하는 물건은 제외)을 사용화하고, 또는 수용하는 일
- ③ 제24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처분을 한 경우에 준용한다.

### 제36조의2

- ① 어항관리자는 그 관리하는 어항에 대하여 어항대장을 조제하여야 한다.
- ② 어항대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다.

## ■ 어항시설의 처분의 제한

### 제37조

- ① 어항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어항관리자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당해시설의 형질 또는 소재하는 장소의 변경, 양도, 임대 또는 수거 기타의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계획 또는 어항관리규정에 따라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어항관리자는 어항의 보전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위반자의 부담으로 한다.

■ 어항시설의 이용

제38조

- ① 국가 및 어항관리자 이외의 자가 기본시설인 어항시설을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또는 이것들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이용방법 및 요율을 정해서 어항관리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동일하다.

■ 어항의 보전

제39조

- ① 어항 구역내의 수역 또는 공공공지에 있어서 공작물의 건설 또는 개량(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을 수반하는 것을 제외한다.), 토사의 채취, 토지의 굴삭 또는 성토, 오수의 방류 또는 오물의 방기 또는 수면 또는 토지의 일부 점용(공유수면의 매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항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계획 또는 어항관리규정에 의하여 하는 행위 또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경이한 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② 어항관리자는 전항의 허가의 신청에 관한 행위가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의 시행 또는 어항의 이용을 현저히 조해하고 기타 어항의 보전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닌한 동항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 ③ 어항관리자는 제1항의 허가에 어항의 보전상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국가의 기관 또는 지방공공단체(어항법 (1950년법률제218호)에 규정하는 항무국을 포함한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요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어항관리자와 협의 하는 것으로 충분한다.
- ⑤ 누구도 어항의 구역(제2호 및 제3호에 있어서는 어항시설의 이용, 배치 기타의 상황에 따라 어항의 보전상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어항관리자가 지정한 구역에 한한다.) 내에 있어서, 함부로 다음에 계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i. 기본시설인 어항시설을 손상하고, 또는 오손하는 일
  - ii. 선박, 자동차기타의 물건으로 어항관리자가 지정한 것을 버리고, 또는 방치하는 일
  - iii. 기타 어항의 보전에 현저히 지장을 미치는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행하는 일
- ⑥ 어항관리자는 전항 각호열기 이외의 부분을 규정 또는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할 때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것을 폐지할 때도 동일한 것으로 한다.

- ⑦ 전항의 지정 또는 그 폐지는 동항의 공시에 있어서 그 효력을 발생한다.
- ⑧ 도도부현지사(항만법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유수면매립법(1921년 법률제57호)의 규정에 의한 도도부현지사의 직권을 행하는 항만관리자를 포함한다.)는, 어항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공유수면의 매립에 대하여, 동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하고자 할 때는 어항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딘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i.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에 의하여 하는 매립
  - ii. 전호에 제시하는 것 외에 어항시설의 정비를 위한 매립
  - iii. 전2호에 제시하는 것 외에 제1종어항, 제2종어항 또는 제4종어항의 구역내의 매립으로서 당해어항의 이용을 현저히 조해하지 않는 것

#### ■ 감독처분

##### 제39조의2

- ① 어항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딘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고, 그 효력을 정지하고, 또는 그 조건을 변경하고, 또는 그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선박, 자동차 기타 건물(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의 개축, 이전 또는 제각 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 i. 전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ii.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붙인 조건에 위반한 자
  - iii.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 ② 어항관리자는 어항의 구역내의 토지, 축목, 또는 공작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토지의 흠과, 토사 또는 오수의 류출 기타 토지, 축목 또는 공작물 등이 어항에 미칠 우려가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기타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축, 이전, 제각 또는 원상회복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요한 비용은 당해 명령을 받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 과실없이 당해 조치를 명해야 할 자를 확지할 수가 없을 때는 어항관리자는 당해 조치를 스스로 행하고, 또는 그 명한 자, 또는 위임한 자에게 이것을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당해 조치를



행할 취지 및 그 기한까지에 당해 조치를 행하지 않을 때는 어항관리자 또는 그 명한 자, 또는 위임한 자가 당해 조치를 행하는 취지를 미리 공고해야 한다.

- ⑤ 어항관리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 등을 제작하고, 또는 제작시킨 때는 당해 공작물 등을 보관해야 한다.
- ⑥ 어항관리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 등을 보관한 때는 당해 공작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 기타 당해 공작물 등에 대하여 권원을 갖는 자(이하 이 조에 있어서「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당해 공작물 등을 반환하기 위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령으로 정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 ⑦ 어항관리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한 공작물 등이 멸실하고, 또는 파손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일부터 기산하여 3월을 경과하여도 아직 당해 공작물 등을 반환할 수 없을 경우에 있어서,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당해 공작물 등의 가액에 비하여 그 보관에 상당하지 않는 비용 또는 수고가 소요될 때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작물 등을 매각하고, 그 매각한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 ⑧ 어항관리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등의 매각에 대하여 매수인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 동항에 규정하는 가격이 현저히 낮을 때는 당해 공작물 등을 폐기할 수 있다.
- ⑨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 대금은 매각에 필요한 비용에 총당할 수 있다.
- ⑩ 제4항에서 제7항까지에 규정한 공작물 등의 제작, 보관, 매각, 공시 기타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당해 공작물 등의 반환을 받아야 할 소유자 등 기타 제4항에 규정하는 당해 조치를 명할 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⑪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을 경과해서도 아직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한 공작물등(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 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 있어서 같다.)을 반환할 수가 없을 때는 당해 공작물 등의 소유권은 당해 공작물등을 보관할 어항관리자에게 귀속한다.

■ 부담금의 통지 및 납입수속 등

제39조의3

- ① 전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액의 통지 및 납입수속 기타 부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 ■ 경과조치

- ① 제39조의4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어항의 지정할 때 실제로 나타나는 권원에 의거,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요하는 행위를 행하고 있는 자는 종전과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당해 행위에 대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어항구역의 변경시 실제로 권원에 의거, 그 변경에 수반하여 새로이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요하게 되는 행위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 ■ 토사채취료 및 점용료

- ① 제39조의5 어항관리자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항 구역내의 수역(어항관리자 이외의 자가 그 권원에 의거하여 관리하는 토지에 관한 수역을 제외한다.) 및 공공공지에 대하여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취 또는 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사채취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동조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② 어항관리자는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전항의 토사채취료 또는 점용료의 징수를 모면한 자로부터 그 징수를 모면한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토사채취료 및 점용료와 전항의 과태금은 당해 어항관리자의 수입으로 한다.

## 6. 잡칙

### ■ 어항시설로 간주하는 시설

#### 제40조

- ① 제3조에 계기하는 시설로서,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어항의 구역내에 없는 것에 대하여도 시정촌장 또는 도도부현지사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농림수산대신의 인가를 받아 지정한 것은 이것을 어항시설로 간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농림수산대신은 인가를 하고자 할 때는 수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제3조에 계기하는 시설로서, 제6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어항의 구역내에 없는 것에 대하여도 농림수산대신이 수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것은 이것을 어항시설로 간주한다.
- ③ 시정촌장, 도도부현지사 또는 농림수산대신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지정을 했을 때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당해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조사, 측량 및 검사

#### 제41조

- ① 시정촌장, 도도부현지사 또는 농림수산대신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의 구역을 정하고 또는 이것을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어항관계자 또는 그 조직하는 단체에 대해 필요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또는 5일전에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 타인의 토지 또는 수면에 출입, 측량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농림수산대신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어항관리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집행에 관한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또는 그 직원에게 사업장, 사무소 기타의 장소에 출입하고, 질문시키고, 또는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시킬 수 있다.
-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측량,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경우에는 시정촌장, 도도부현지사 또는 농림수산대신은 지체없이 동항의 출입, 측량 또는 검사에 의하여 현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 국토교통대신에 대한 협의

### 제42조

- ① 어항관리자는 주로 운수용으로 제공되는 시설에 대하여 제38조의 인가를 하고, 또는 제39조제1항의 허가를 하고자 할 때는 국토교통대신과 협의하여야 한다.

## ■ 불복 제기

### 제43조

- ① 이 법률 또는 이것에 의거하는 명령 또는 어항관리규정에 따라서 한 어항관리자의 불복이 있는 자는 농림수산대신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농림수산대신은 이 법률 또는 이것에 의거하는 명령 또는 어항관리규정에 의거하는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이의 제기가 있을 때는 수산정책심의회회의 의견을 듣고, 재결 또는 결정을 하여 한다.
- ③ 수산정책심의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미리 기일 및 장소를 통지하여 심사청구인 또는 이의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공개에 의한 의견의 청취를 하여야 한다.

## ■ 도도부현 등이 처리하는 사무

### 제44조

- ① 이 법률에서 정하는 농림수산대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도부현지사 또는 시정촌장(특별구의 구장을 포함한다.)이 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 경과조치

### 제44조의2

- ① 이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령 또는 농림수산성령을 제정하고, 또는 개폐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각 정령 또는 농림수산성령으로 그 제정 또는 개폐에 수반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내에 있어서, 소요의 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

## 7. 벌칙

제45조 다음의 각호의 어딘가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4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농림수산대신의 허가를 받지 않고, 타인의 토지 또는 수면에 출입, 또는 이것을 사용한 자
  - (2)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3) 제39조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동항의 건설, 개량, 채취, 굴삭, 성토, 방류, 방기 또는 점용한 자
  - (4)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본시설인 어항시설을 손상하고, 또는 오손한 자
- 제46조 다음의 각호의 어딘가에 해당하는 자는 39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1조제2항 후단의 허가를 받지 않고,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탁한 자
- (2) 제38조의 인가를 받지 않고, 기본시설인 어항시설을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또는 이들 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한 자
- (3)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4) 제4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출입, 측량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7조

- (1)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인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2조의 위반행위를 했을 때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본조의 형을 과한다.

## 부칙

- (1) 이 법률시행의 기일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은 195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중 략

## 부칙

### ■ 시행기일

제1조

- ① 이 법률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조 및 부칙제3조의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 어항어장정비기본방침에 관한 경과조치

### 제2조

- ① 농림수산대신은 이 법률의 시행전에 있어서도 이 법률에 의한 개정후의 어항어장정비법(이하 「신법」이라 한다.)제4조에 규정하는 어항어장정비사업에 대하여 신법제6조의2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의 예에 따라서 어항어장정비사업의 추진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할 수 있다.
- ② 농림수산대신은 전항의 어항어장정비사업의 추진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한 때는 지체없이 이것을 공표해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어항어장정비사업의 추진에 관한 기본방침은 이 법률 시행일(이하 「시행일」이라고 말한다.)에 있어서 신법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어항어장정비기본방침으로 본다.

## ■ 어항어장정비장기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 제3조

- ① 농림수산대신은 이 법률의 시행전에 있어서도 신법제4조에 규정하는 어항어장정비사업에 대하여 신법제6조의3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한 예에 따라서 어항어장정비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안을 정하여, 각의의 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동조제1항중 「어항어장정비기본방침」이라고 있는 것은 「어항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부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어항어장정비사업의 추진에 관한 기본방침」으로 대입하여 읽는 것으로 한다.
- ② 농림수산대신은 전항의 어항어장정비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에 대하여 동항의 각의결정이 있었을 때는 지체없이 이것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어항어장정비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은 시행일에 있어서 신법제6조의3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어항어장정비장기계획으로 간주한다.

## ■ 비용의 부담 및 보조에 관한 경과조치

### 제4조

- ① 이 법률에 의한 개정전의 어항법(이하 「구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어항수축사업에서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어항관리자의 부담에 대하여는 구법제20조제1항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 효력을

갖는다.

- ② 구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공공단체가 시행하는 어항수축사업에 관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중 2001년도이전 년도의 세출예산에 관한 것으로서 2002년도 이후의 년도에 이월된 것에 대하여는 구법제20조 제2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 효력을 갖는다.

■ 자금 대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 ① 이 법률의 시행전에 국가가 대부한 구법 부칙제2항에서 제4항까지와 제11항에 규정하는 자금에 관한 대부금에 대하여는 구법 부칙제2항에서 제14항까지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 효력을 갖는다.

■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 ① 이 법률의 시행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 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제7조

- ① 부칙 제2조에서 전조까지에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의 일부 개정

제8조

- ① 지방자치법(1947년 법률제67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부칙제6조제4호중 「어항법」을 「어항어장정비법」으로 개정한다.

■ 수산업협동조합법의 일부 개정

제9조

- ① 수산업협동조합법(1948년 법률제242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② 제11조제 9항제3호중 「어항법」을 「어항어장정비법」으로 개정한다.

■ 지방교부세법의 일부 개정

- ① 제10조 지방교부세법(1950년 법률제211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② 제12조제2항의 표 제7호중 「어항법」을 「어항어장정비법」으로 고친다.

■ 지방세법의 일부 개정

- ① 제11조 지방세법(1950년 법률제226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제10조제4항중 「어항법」을 「어항어장정비법」으로 개정한다.

■ 토지수용법의 일부 개정

- ① 제12조 토지수용법(1951년 법률제219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② 제3조제10호중 「어항법」을 「어항어장정비법」으로 고친다.

■ 기업합리화 촉진법의 일부 개정

- ① 제13조 기업합리화 촉진법(1952년 법률제5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② 제8조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중 「어항법」을 「어항어장정비법」으로 개정한다.

■ 도로법의 일부 개정

- ① 제14조 도로법(1952년 법률제180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② 제7조제1항 제1호중 「어항법」을 「어항어장정비법」으로 고친다.

■ 이도진흥법의 일부 개정

- ① 제15조 이도진흥법(1953년 법률제72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② 제9조제1항 및 별표(2) 「어항법」을 「어항어장정비법」으로 개정한다.

■ 엄미군도 진흥개발특별조치법의 일부 개정

- ① 제16조 엄미군도진흥개발특별조치법(1954년 법률제189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② 별표어항의 항중 「어항법」을 「어항어장정비법」으로 고친다.

■ 해안법의 일부 개정

- ① 제17조 해안법(1956년 법률제101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② 제4조제1항중 「어항법」을 「어항어장정비법」으로 고친다.



■ 조세특별조치법의 일부 개정

- ① 제18조 조세특별조치법(1957년 법률제26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② 제83조제2항중 「어항법」을 「어항어장정비법」으로 고친다.

■ 사태등 방지법의 일부 개정

- ① 제19조 사태등 방지법(1958년 법률제30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② 제48조제1항중 「어항법」을 「어항어장정비법」으로 고친다.

■ 하천법의 일부 개정

- ① 제20조 하천법(1964년 법률제167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② 제6조제5항중 「어항법」을 「어항어장정비법」으로 개정한다.

■ 외국인 어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 ① 제21조 외국인 어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1967년 법률제60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② 제2조제8항 및 제6조제5항중 「어항법」을 「어항어장정비법」으로 개정한다.

■ 급경사지의 붕괴에 의한 재해방지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 ① 제22조 급경사지의 붕괴에 의한 재해방지에 관한 법률(1969년 법률제57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② 제12조제3항중 「어항법」을 「어항어장정비법」으로 개정한다.

■ 해양수산자원개발촉진법의 일부 개정

- ① 제23조 해양수산자원개발촉진법(1971년 법률제60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② 제3조제4항중 「연안어장정비개발법(1974년 법률제49호)제3조의 연안어장정비개발계획(이하 단지, 「연안어장정비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어항어장정비법(1950년 법률제137호) 제6조의2 어항어장정비기본방침(이하 「어항어장정비기본방침」이라 한다.) 및 동법제6조의3의 어항어장정비장기계획(이하 「어항어장정비장기계획」이라 한다.)」으로 개정한다.
- ③ 제7조제3항중 「연안어장정비개발계획」을 「어항어장정비기본방침 및 어항어장정비장기계획」으로 고친다.

■ 총승진흥개발특별조치법의 일부 개정

- ① 제24조 총승진흥개발특별조치법(1971년 법률제131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② 별표어항의 항중 「어항법」을 「어항어장정비법」으로 개정한다.

■ 해상교통안전법의 일부 개정

- ① 제25조 해상교통안전법(1972년 법률제115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② 제1조제2항제3호중 「어항법」을 「어항어장정비법」으로 개정한다.

■ 연안어장정비개발법의 일부 개정

제26조

- ① 연안어장정비개발법(1974년 법률제49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② 제1조중 「연안어장정비개발사업을 종합적이고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 및 」을 삭제하고, 「조치를 강구함으로써」의 아래에 「, 어항어장정비법(1950년 법률제137호)에 의한 조치와 어울려서」를 추가한다.
- ③ 제2조에서 제5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④ 제2조에서 제5조까지 삭제
- ⑤ 제6조제3항중 「연안어장정비개발사업」을 「어항어장정비법제4조의 어항어장정비사업(이하 「어항어장정비사업」이라 한다.)」로 개정한다.
- ⑥ 제7조의2제2항제4호중 「연안어장정비개발사업」을 「어항어장정비사업」으로 개정한다.
- ⑦ 제28조중 「, 연안어장정비개발사업」을 삭제하고, 「방류효과실증사업의 실시를」의 아래에 「어항어장정비사업의 실시 및」을 추가한다.
- ⑧ 부칙제2항에서 제6항까지를 삭제하고, 부칙제1항의 표제 및 항번호를 삭제한다.  
(연안어장정비개발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27조

- ① 이 법률의 시행시 현재에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전의 연안어장정비개발법(이하 「구연안어장정비개발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는 기본방침은 시행일에 있어서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후의 연안어장정비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기본방침으로 본다.
- ② 이 법률의 시행전에 국가가 대부한 구연안어장정비개발법 부칙제2항에 규정하는 자금에 관한 대부금에 대하여는 구연안어장정비개발법부칙제2항에서 제6항

까지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있어서도 바로 그 효력을 갖는다.

■ 지진방재대책강화지역에 있어서의 지진대책긴급정비사업에 관한 국가 재정상의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 ① 제28조 지진방재대책강화지역에 있어서의 지진대책긴급정비사업에 관한 국가의 재정상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1980년 법률제63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② 제3조1항 제4호중 「어항법」을 「어항어장정비법」으로 고친다.

■ 지가세법의 일부 개정

- ① 제29조 지가세법(1991년 법률제69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② 별표제1제13호나 및 제19호중 「어항법」을 「어항어장정비법」으로 개정한다.

■ 지진방재대책특별조치법의 일부 개정

- ① 제30조 지진방재대책특별조치법(1995년 법률제111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② 제3조제1항제5호중 「어항법」을 「어항어장정비법」으로 개정한다.

■ 원자력발전시설등 립지지역의 진흥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일부 개정

- ① 제31조 원자력발전시설등 립지지역의 진흥에 관한 특별조치법(2000년 법률제148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② 별표어항의 항중 「어항법」을 「어항어장정비법」으로 개정한다.

■ 수산기본법의 일부 개정

- ① 제32조 수산기본법(2001년 법률제89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② 제36조제3항중 「어항법」을 「어항어장정비법」으로 개정한다.